

#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박은정·유해미·조혜주·김연진·서효진·정은희





#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저 자

박은정, 유해미, 조혜주, 김연진, 서효진, 정은희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혜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강사)

공동연구자 서효진 (네덜란드 틸버그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공동연구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10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컴퍼니 02-2269-991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92-3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현 정부에서 도입한 부모급여를 비롯하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아동 대상 현금급여가 최근 크게 확대되었다. 첫 현금 수당인 가정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와 더불어 2009년에 도입되고, 2018년에서야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다. 2022년 영아수당에 이어 2023년에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올해는 0세아에게 월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게다가 22대 국회에서는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이제는 현금급여 제도의 단순한 확대에서 더 나아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정합성을 갖춘 체계 구축을 위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발적으로 도입된 현금급여 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현금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아동 현금급여 제도 설계 내용을 분석하여 개편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OECD 국가의 아동 및 가족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동향과 주요국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금급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현금급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 수요자의 경험과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 요소에 따라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시나리오별 재정 추계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 현금급여 체계의 재구조화를 전체 육아정책의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 고견을 더해주시는 전문가분들과 심층면담 참여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을 담았으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



<b>요약</b>	<b>1</b>
<b>I. 서론</b>	<b>15</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2. 연구 내용 및 범위 .....	20
3. 연구 방법 .....	23
<b>II. 이론적 검토 및 제도 현황</b>	<b>31</b>
1.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33
2. 현금급여 관련 제도 검토 .....	46
3. 소결: 현금급여 제도 개편 쟁점 .....	84
<b>III. 해외 사례 분석</b>	<b>91</b>
1. OECD 국가 정책 현황 .....	93
2. 주요국 심층 사례 분석 .....	132
3. 소결 .....	181
<b>IV. 현금급여 제도 개편 수요 및 의견</b>	<b>189</b>
1. 현금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 .....	191
2. 육아가구의 수요 및 경험 분석 .....	224
3. 소결: 주요 요인 도출 .....	241
<b>V. 정책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b>	<b>247</b>
1. 종합적 정책 시나리오 .....	249
2. 정책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	258
3. 정책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	277

---

<b>VI.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및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b>	<b>293</b>
1. 현금급여 제도 개편 .....	295
2.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 .....	303
<b>참고문헌</b> .....	<b>309</b>
<b>Abstract</b> .....	<b>337</b>
<b>부록</b> .....	<b>341</b>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1차 질문지 .....	343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2차 질문지 .....	354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고자료 .....	364
4. 집단별 FGI 질문지 .....	369
5. OECD 주요국 자녀장려세제 지급액 및 지급요건 .....	416
6. 부표 .....	419

---



## 표 목차

〈표 Ⅰ-2-1〉 현금급여 구분 기준 .....	22
〈표 Ⅰ-3-1〉 FGI 개요(안) .....	25
〈표 Ⅰ-3-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	26
〈표 Ⅰ-3-3〉 정책 포럼 개요 .....	28
〈표 Ⅱ-1-1〉 아동수당 개편 방안 선행연구 .....	38
〈표 Ⅱ-1-2〉 양육수당 개편 방안 선행연구 .....	39
〈표 Ⅱ-1-3〉 부모급여(영아수당 포함) 도입 방안 선행연구 .....	40
〈표 Ⅱ-1-4〉 현금급여의 빈곤 및 불평등 영향 관련 주요 선행연구 .....	42
〈표 Ⅱ-1-5〉 현금급여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 영향 관련 주요 선행연구 .....	43
〈표 Ⅱ-1-6〉 현금급여의 아동가구 소비 및 지출 영향 관련 주요 선행연구 .....	44
〈표 Ⅱ-1-7〉 현금급여의 출산율 영향 관련 주요 선행연구 .....	45
〈표 Ⅱ-2-1〉 아동수당제도 주요 연혁: 지원대상 및 급여수준 변화(2018-2023) .....	50
〈표 Ⅱ-2-2〉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예산 추이(2018~2024) .....	52
〈표 Ⅱ-2-3〉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예산: 2023-2024년 .....	54
〈표 Ⅱ-2-4〉 가정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보육의 정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 .....	55
〈표 Ⅱ-2-5〉 가정양육수당 주요 연혁: 지원대상 및 급여수준 변화(2009-2024) .....	55
〈표 Ⅱ-2-6〉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예산 추이(2009/2010/2013/ 2016/2018/2020~2023) .....	58
〈표 Ⅱ-2-7〉 자녀세액공제 기준 및 금액 .....	60
〈표 Ⅱ-2-8〉 자녀세액공제 신고 인원 및 공제 금액 .....	60
〈표 Ⅱ-2-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산정 .....	61
〈표 Ⅱ-2-10〉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2018~2022년) .....	62
〈표 Ⅱ-2-11〉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	64
〈표 Ⅱ-2-12〉 2023년 보육예산(국비기준) .....	64
〈표 Ⅱ-2-13〉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금액(2024년 3. 1. 기준) .....	65
〈표 Ⅱ-2-14〉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2024년 3. 1. 기준) .....	65
〈표 Ⅱ-2-15〉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2024년 3. 1. 기준) .....	66

---

〈표 II-2-16〉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	66
〈표 II-2-17〉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2022) .....	67
〈표 II-2-18〉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대상 .....	69
〈표 II-2-19〉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	70
〈표 II-2-20〉 시간제서비스의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	71
〈표 II-2-21〉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	72
〈표 II-2-22〉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	73
〈표 II-2-23〉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	74
〈표 II-2-24〉 시간제보육지원 예산(국비기준) .....	75
〈표 II-2-25〉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	75
〈표 II-2-26〉 초등 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2017-2020) .....	77
〈표 II-2-27〉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	80
〈표 II-2-28〉 성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지원금 추이: 고용보험 DB(2015년~2023년) .....	81
〈표 II-2-29〉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및 비중: 육아휴직통계(2015년~2022년) .....	81
〈표 II-2-30〉 출산휴가 제도 개요 .....	82
〈표 III-1-1〉 OECD 주요국의 아동 연령대별 공공 지출 비율 추이(2003/2007/2013/2019년) .....	96
〈표 III-1-2〉 OECD 주요국의 0~5세 공공 지출 투자 규모(2019년) .....	98
〈표 III-1-3〉 주요국의 아동(가족)수당 지급대상 .....	111
〈표 III-1-4〉 주요국의 아동(가족)수당 지급 연령 .....	114
〈표 III-1-5〉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요건: 거주 및 국적 세부요건 .....	115
〈표 III-1-6〉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과 지급방식: 소득수준 적용 차등 지급 국가 .....	118
〈표 III-1-7〉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과 지급방식: 소득수준 미적용 차등 지급 국가 .....	121
〈표 III-1-8〉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방식 .....	124
〈표 III-1-9〉 주요국의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요건 .....	125
〈표 III-1-10〉 주요국의 양육수당 지급액 .....	128
〈표 III-1-11〉 주요국의 자녀 세제지원 방식 및 지급대상 .....	130
〈표 III-2-1〉 독일 아동수당 지급액(2020년 이후) .....	140
〈표 III-2-2〉 독일 세액공제액(2020년 이후) .....	140

---



---

〈표 V-1-20〉 아동수당 확대 시 유관제도의 개편 필요성 여부	221
〈표 V-1-21〉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222
〈표 V-1-22〉 현금급여 수요자 체감도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사항	223
〈표 V-2-1〉 양육비 산출 포함 재정패널 조사(15차) 항목	224
〈표 V-2-2〉 심층면담 참여자 배경1(한자녀 가구)	225
〈표 V-2-3〉 심층면담 참여자 배경2(다자녀 가구)	227
〈표 V-2-4〉 심층면담 참여자 배경3(저소득 가구)	228
〈표 V-2-5〉 자녀연령별 1인당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229
〈표 V-2-6〉 소득분위별 1인당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231
〈표 V-2-7〉 자녀수별 자녀1인당 연간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232
〈표 V-2-8〉 현금 지원 제도 만족도	233
〈표 V-2-9〉 양육지원 제도별 중요도 및 도움정도: FGI 참여자 응답	234
〈표 V-2-10〉 아동수당 개편 시 우선순위: FGI 참여자 응답	236
〈표 V-3-1〉 현금급여 정책 시나리오의 주요 요인 도출 관련 분석 결과	241
〈표 V-3-2〉 2024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주요 내용	244
〈표 V-1-1〉 시나리오 I 핵심 내용	256
〈표 V-1-2〉 시나리오 II 핵심 내용	257
〈표 V-2-1〉 15차 재정패널 데이터의 현금급여	259
〈표 V-2-2〉 아동가구의 개편안별 평균 현금급여액과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260
〈표 V-2-3〉 아동 연령별 개편안별 경상소득과 양육비	263
〈표 V-2-4〉 아동연령별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률	264
〈표 V-2-5〉 아동연령별 개편안별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265
〈표 V-2-6〉 소득계층별 개편안별 경상소득	268
〈표 V-2-7〉 소득계층별 개편안별 양육비와 양육비 부담률	269
〈표 V-2-8〉 소득계층별 개편안별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270
〈표 V-2-9〉 자녀수별 개편안별 경상소득	273
〈표 V-2-10〉 자녀수별 개편안별 1인당 양육비와 양육비 부담률	273
〈표 V-2-11〉 자녀수별 개편안별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274
〈표 V-3-1〉 장래 인구변동 추계: 2024~2040년	278
〈표 V-3-2〉 가구유형별 추계가구	278
〈표 V-3-3〉 연령별 아동 인구 추계: 2024년~2029년	279
〈표 V-3-4〉 물가상승률 반영한 아동수당 월 지급액	280
〈표 V-3-5〉 시나리오 1안 소요재정 추계	282

---

---

〈표 V-3-6〉 시나리오 2안 소요재정 추계 .....	283
〈표 V-3-7〉 시나리오 3안 소요재정 추계 .....	284
〈표 V-3-8〉 출생순위별 비율: 2010, 2015, 2020, 2023년 출생아 .....	285
〈표 V-3-9〉 최근 10년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비율: 2014~2023년 .....	285
〈표 V-3-10〉 다자녀 아동수당 소요재정 산출 .....	286
〈표 V-3-11〉 시나리오 4안 소요재정 추계 .....	286
〈표 V-3-12〉 시나리오 6안 소요재정 추계 .....	287
〈표 V-3-13〉 소득 10분위별 평균 경상소득 및 아동가구 비율 .....	288
〈표 V-3-14〉 소득수준별 추가 아동수당 소요재정 추계 .....	289
〈표 V-3-15〉 시나리오 5안 소요재정 추계 .....	290
〈표 V-3-16〉 시나리오 7안 소요재정 추계 .....	291
〈표 VI-1-1〉 현금급여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	297
〈표 VI-1-2〉 정책 시나리오별 연간 총 소요재정 .....	298
〈표 IV-2-1〉 개편안에 따른 아동수당법 법률 개정안 .....	303
〈표 VI-2-2〉 현금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안) .....	308

---



## 그림 목차

[그림 Ⅰ-3-1] FGI 집단 구성(안) .....	24
[그림 Ⅰ-3-2] 정책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분석 과정 .....	28
[그림 Ⅰ-3-3] 연구 흐름도 .....	29
[그림 Ⅱ-2-1] 연령별 아동가구 대상 현금성 지원 및 비용 지원 .....	48
[그림 Ⅱ-2-1] 유치원 원아수 및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 추이(2000-2022) .....	67
[그림 Ⅱ-2-2]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2008-2022) .....	68
[그림 Ⅱ-2-3] 아이돌보미 현황 .....	73
[그림 Ⅱ-2-4] 아이돌봄 이용자 현황 .....	74
[그림 Ⅱ-2-5]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2021-2022) .....	78
[그림 Ⅱ-3-1]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 변화 .....	88
[그림 Ⅲ-1-1] OECD 국가의 가족급여 관련 공공 지출 비율(2019년) .....	94
[그림 Ⅲ-1-2]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대별 가족 관련 공공 지출 추이(2003/2007/2013/2019년) .....	95
[그림 Ⅲ-1-3]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대별 공공 지출 비중(2019년) .....	96
[그림 Ⅲ-1-4] OECD 국가의 0~5세아 대상 지원 부문별 공공 지출 투자 규모(2019년) .....	97
[그림 Ⅲ-1-5] OECD 국가의 가족 유형 및 가구소득에 따른 현금급여 수준(2018년): 전일제근로 가구의 평균 임금 대비 현금급여 비율 .....	100
[그림 Ⅲ-1-6] OECD 국가의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현금지원 수준(2018년): 전일제근로 가구의 평균 임금 대비 현금급여 비율 .....	101
[그림 Ⅲ-1-7] OECD 국가의 자녀수에 따른 현금지원 수준(2018년): 전일제 근무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현금급여 비율 .....	102
[그림 Ⅲ-1-8] OECD 국가의 만 0~2세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2020년 또는 최신 년도 데이터 기준) .....	103
[그림 Ⅲ-1-9] OECD 국가의 만 3~5세아의 보육·교육서비스 등록율 (2020년 또는 최신 년도 데이터 기준) .....	104
[그림 Ⅲ-1-10] OECD 국가의 가구소득에 따른 만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2020년 또는 최신 년도 데이터 기준) .....	105
[그림 Ⅲ-1-11] OECD 국가의 모(母)의 학력에 따른 만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2020년 또는 가장 최신 년도 기준) .....	106

---

[그림 Ⅲ-1-12] OECD 국가의 모(母)의 학력에 따른 만 0~2세 보육·교육서비스 평균 주중 이용시간(2020년 또는 최신 년도 기준) .....	107
[그림 Ⅲ-1-13] OECD 국가의 모의 취업률 (2021년 또는 최신 년도 데이터 기준) .....	108
[그림 Ⅲ-1-14] OECD 국가의 모의 취업률 추이(2006-2021년) .....	108
[그림 Ⅲ-1-15] OECD 국가의 자녀 연령에 따른 모의 취업률 (2021년 또는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 .....	109
[그림 Ⅳ-1-1] 제도별 중요도-적절성 분석 산점도: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	200
[그림 Ⅳ-1-2] 제도별 중요도-적절성 분석 산점도: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	202
[그림 Ⅳ-1-3] 제도별 중요도-적절성 분석 산점도: 출산율 제고 .....	204
[그림 Ⅳ-1-4] 제도별 중요도-적절성 분석 산점도: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	206
[그림 Ⅳ-1-5] 제도별 중요도-적절성 분석 산점도: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	208
[그림 Ⅳ-2-1] 자녀연령별 1인당 항목별 지출액 비교 .....	229
[그림 Ⅴ-2-1] 개편안별 가구의 경상소득 .....	261
[그림 Ⅴ-2-2] 개편안별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	262
[그림 Ⅴ-2-3] 아동연령별 개편안별 현금급여액,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	266
[그림 Ⅴ-2-4] 아동연령별 개편안별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	267
[그림 Ⅴ-2-5] 소득계층별 개편안별 현금급여액,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	271
[그림 Ⅴ-2-6] 소득계층별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	272
[그림 Ⅴ-2-7] 자녀수별 개편안별 현금급여액,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	275
[그림 Ⅴ-2-8] 자녀수별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균등화 개인 .....	276
[그림 Ⅴ-2-9]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률과 개편안별 부담완화효과: 가구 .....	277
[그림 Ⅵ-1-1] 현금급여 개편을 위한 부가급여 시나리오 안 .....	302

---



## 부록 표 목차

〈부표 6-1〉 현금급여 제도 개편 시 정책 환경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419
〈부표 6-2〉 현금급여 개편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	421
〈부표 6-3〉 아동수당 확대 시 유관제도의 개편 필요 사항 및 이유	423
〈부표 6-4〉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선택 이유	425
〈부표 6-5〉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현행	426
〈부표 6-6〉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1안	427
〈부표 6-7〉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2안	428
〈부표 6-8〉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3안	429
〈부표 6-9〉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4안	430
〈부표 6-10〉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5안	431
〈부표 6-11〉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6안	432
〈부표 6-12〉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7안	433
〈부표 6-13〉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현행	434
〈부표 6-14〉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1안	434
〈부표 6-15〉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2안	434
〈부표 6-16〉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3안	435
〈부표 6-17〉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4안	435
〈부표 6-18〉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5안	435
〈부표 6-19〉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6안	436
〈부표 6-20〉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7안	436
〈부표 6-21〉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현행	436
〈부표 6-22〉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1안	437
〈부표 6-23〉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2안	437
〈부표 6-24〉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3안	437
〈부표 6-25〉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4안	438
〈부표 6-26〉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5안	438
〈부표 6-27〉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6안	438
〈부표 6-28〉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7안	439

## 1. 서론

###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개별 현금급여 제도의 단일한 정량적 효과성 연구들은 합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는 데에 한계를 가짐.
  - 개별 제도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전체 현금급여 제도 및 육아정책과의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음.
- 획일화된 보편주의 관점 속에서 산발적으로 도입된 우리나라 현금급여 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현금급여의 제도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통합적 논의 필요함.
- 본 연구는 전체 육아정책의 방향성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현금급여 제도의 세부 설계 관련 요인을 검토하고, 부모 및 아동의 욕구와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현금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중장기적인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

### 나. 연구내용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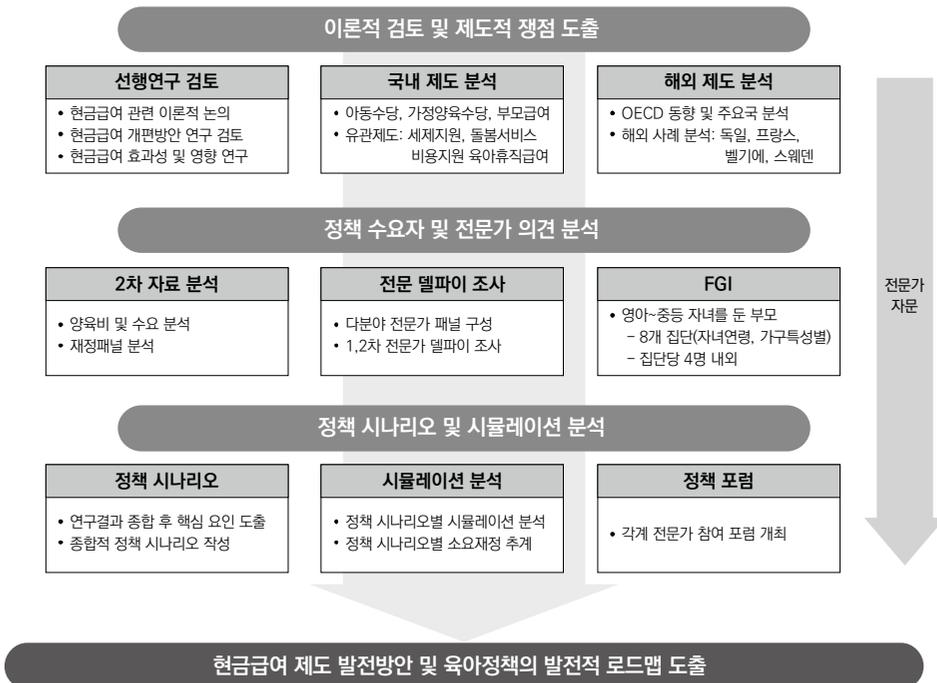
- 국내외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를 심층 분석하여 현금급여 제도 개편 쟁점 도출
  - 해외 사례 분석에서 OECD 주요국의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 설계의 특성을 도출하고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4개국 심층 분석
-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현금급여 제도별 쟁점을 검토하고 개편 필요성 및 방향성 타진
  - 아동 연령별,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심층면담 집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용 경험을 비롯하여 정책 인식 및 정책 수요의 원인 파악
- 정책 시나리오 도출 및 시뮬레이션 분석
  - 전체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 요인 도출하고, 종합적 정책

시나리오 작성

- 정책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각 시나리오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 분석
  - 정책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 아동 대상 현금급여 체계의 재구조화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
- 본 연구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을 중심으로 현금급여 제도 개편을 제시하고, 유관제도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등 세제지원 제도 개편을 정책 시나리오에 포함
-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육아휴직급여 등 유관 제도의 개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정책 로드맵을 제시
  - 다만, 격차가 큰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되, 육아정책 로드맵에서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포함

다. 연구 흐름도

□ 본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연구의 흐름도 제시



## 2. 이론적 검토 및 제도 현황

### 가.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현금급여 제도 설계 시 급여대상의 표적화(Targeting), 현금급여 지급 수준, 현금급여 대상 선정 기준, 급여 지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정액급여와 욕구에 따른 급여가 모두 보편적 할당 방식이며 한 제도 내에 동시에 도입될 수 있는 보편주의 방식
- 아동수당 도입 후 수행된 개편 방안 연구에서는 크게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만 17세~18세),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실직가구 등 취약성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가급여 지급을 핵심적인 제도 개편 방안으로 제시
- 초기 연구들에서는 양육수당 지급연령을 만 3세 미만으로 제한, 양육수당 급여액 상향 조정, 소득기준 완화, 아동수당 제도 도입 필요가 핵심적인 개편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제안
- 현금급여의 효과성 및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주제는 크게 아동 및 아동가구의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동가구의 소비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구분

### 나. 관련 제도 검토

- 보편적 현금급여 0~7세인 아동기 초기까지만 집중
  -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 적용한 선별적 현금급여인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인 전체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
  -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전제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가구에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나, 제도 내에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 대상 차등지급
-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지급 방식 혼합
-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통해 아동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현금급여와 유사하게 공적 이전 소득을 발생시키는 제도
  -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연동되어 지급연령 조정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에게 지급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선별적인 세제지원
- 돌봄 비용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외하고 보육료, 유아학비, 시간제보육, 초등돌봄 비용 지원 모두 소득수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
-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급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구분되어 있음.

#### 다. 주요 쟁점 사항

- 아동수당은 도입 이후 지급연령 및 지급액 상향에 대한 논의 꾸준히 제기
  -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지급액은 도입 후 조정 없이 월 10만원 지급
  - 지급액 조정방식 방안은 지금까지 정책화되지 못함.
-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가정양육의 형평성을 논리로 가정양육을 하는 취학전(만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확대
  - 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축소 및 폐지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
  - 0, 1세 양육비를 상회하는 높은 급여수준의 부모급여의 도입과 만 3세부터 공통적인 누리과정 적용 및 유초 연계 교육이 강조되는 정책적 맥락
  - 취약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의 유지 또는 특별수당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논의
- 부모급여는 2023년 도입 당시부터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제도의 성격 및 지급 방식
  - 영아기 소득보장 성격의 제도인지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인지에 따른 제도 성격 논쟁
  -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혼합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 현금급여의 확대는 아동가구에게 지급되는 다른 부문의 현금성 지원 및 비용 지원과도 함께 검토
-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내에 차등지급할 것인지, 별도의 선별 급여로 지급할 것인지에 따라 전체 현금급여 제도 설계의 틀 상이

### 3. 해외 사례 분석

#### 가. OECD 국가 정책 현황

-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지출이 많고, 현금급여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음
-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면서 한 쪽 부모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나머지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부모 모두 평균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시), 풀타임 근로자 기준 평균 임금의 5% 정도를 가족수당으로 지급
- 독일과 벨기에 플란데런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아동수당(가족수당) 차등지급
  - 다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별도 현금지원 제도로 독일은 아동수당보조금, 벨기에 플란데런 지역은 연간 가구소득 및 자녀수를 고려한 사회수당 추가 지급
  - 차등지급 기준은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특징이 구분되지 않고 국가별로 적용 기준이 상당히 상이
  - 아동수당(가족수당) 지급액 자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국가는 4개국이나, 독일과 벨기에 플란데런과 유사하게 저소득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추가 수당이나 세제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다수
  - 다수의 국가는 다자녀의 경우에 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
- 양육수당 제도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헝가리 5개국만 실시
  - 가정양육을 전제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만 2~3세까지만 지급
  -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가정양육수당은 대다수 국가가 지급기간에 한정을 두어 최대 7개월~1년 이내로 단시간 지급거나 근로시간 및 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에 제한
- 세제지원을 통한 아동가구 지원은 사민주의 국가에서 거의 실시하지 않으며, 주로 보수주의 국가와 동유럽(폴란드, 헝가리) 국가에서 실시
- 아동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장 제도로써 아동수당 제도가 기초가 되고 있음
  - 대다수 국가가 아동수당 지급액의 조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수당을 핵심적인 현금지원 제도로 실시

〈요약 표 1〉 주요국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제도 특성 종합

단위: 세, %

구분	지급 연령 (미만)	연장 연령 (미만)	차등지급 기준					지급 수준(%)	지급액 조정방식
			소득	출생 순위	자녀 수	연령	한 부모		
스웨덴	16	20			○			6.0	아동당 소비지출액 반영, 국회 결정(관련법)에 따라 비정기적 조정
핀란드	17	-		○		○	○	5.5	매년 생활비지수 반영
덴마크	18	-	○			○		5.3	매년 경기변동 반영 조정비율 적용
노르웨이	18	-				○	○	3.9	정부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
독일	18	25						9.2	관련법에 따라 비정기적 조정
프랑스	20	-	○		○	○		4.0	매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반영
벨기에 (플란데런)	19	25						8.6	매년 2%씩 증가
벨기에 (왈로니)	21	25				○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아동수, GDP 실질 성장 등 다양한 지표 반영
오스트리아	19	25			○	○		10.5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폴란드	18	24			○	○	○	11.0	3년마다 가족소득지원 임계치 반영, 정부가 조정
헝가리	17	23			○		○	7.9	매년 국가예산법에 따라 조정
영국	16	20	○	○				4.6	정부가 주기적으로 결정
호주	16	20	○	○	○	○	○	2.6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이스라엘	18	-		○	○			2.7	-

주: 1) 지급수준은 양부모 맞벌이 가구의 전일제 근로자 기준 평균 임금에서 가족수당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시됨.

2)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OECD 평균은 양부모(외벌이)는 4.2%, 양부모(맞벌이)는 5.0%임.

자료: 본 연구의 III 장 1, 2절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음.

## 나. 주요국 심층 사례분석

□ 독일은 2002년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개혁으로 보육서비스 특히 영아 보육서비스가 강화되고, 성평등한 돌봄과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 지원 제도가 확장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현금급여 제도를 통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 라는 적극적인 소득보장도 함께 추진

- 아동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가 2025년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음.

- 프랑스는 가족 관련 현금급여 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나, 1980년대 부터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독일과 차이가 있음.
  - 프랑스 현금급여 제도에서는 자녀수,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이 핵심적이며, 이는 출산장려 기제를 도입했던 초기 모델의 전통과 가구의 양육비 부담에 따른 재분배의 원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육아휴직급여 수준은 높지 않음.
- 벨기에는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합주의 보수주의 국가이며 현금급여 지출 비중이 매우 높음.
  - 벨기에는 0~5세 공공 지출 투자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국가이며, 돌봄서비스 이용률도 높은 편
  -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액이 크게 증가
  - 프랑스처럼 다양한 현금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가족수당 지급수준의 충분성 확보
- 스웨덴은 사민주의 복지체계를 대표하는 국가이며, 가족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제도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발달시켜온 국가
  - 현금급여가 발달된 국가는 아니지만 보편적인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다자녀추가수당 지급

#### 4. 현금급여 제도 개편 수요 및 의견

##### 가. 현금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

-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의 목적에 관한 전문가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임.
  -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88.4%)’,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62.8%)’ 순으로 나타남.
  - 부모급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83.7%)’, ‘출산율 제고(55.8%)’, 가정양육수당의 목적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69.8%)’,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41.9%)’ 순임.

- 목적별 제도 중요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가 6.33점으로 전체 응답 중 유일하게 6점 이상
  - 5점 이상인 항목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부모급여(5.42점)와 아동수당(5.12점)
- 지원 수준의 적절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으로 2.58점에 불과하며, 다음으로 낮게 나타난 항목은 아동수당의 ‘지급액( 2.93점)’
- IPA(중요도-적절성) 분석 결과에서, 전문가들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 아동 지원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액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며, 부모급여는 대체로 중간 부분에 집중되어 분포되어있고,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제외한 다른 제도 목적에서 중요도가 낮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아동수당이 6.02점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양육수당이 5.65점, 부모급여가 5.44점 순임.
  - 아동수당 지급연령의 경우 만 0~18세(75.0%)가 가장 지지도가 높고, 지급액의 조정방식은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와 연동하여 상향하는 방안(42.5%)과 정액급여 일시 상향(25.0%)에 대한 지지가 높음.
  - 아동수당 차등지급에 대한 1순위 응답에서 소득수준별 차등이 41.2%, 1, 2 순위를 합한 응답률 기준으로 64.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다음으로 자녀수와 아동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순임.
- 가정양육수당 개편 방안으로는 전면 폐지(42.5%) 찬성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폐지하되 특별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지급(25.0%)이 높게 나타남.
- 부모급여 지급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바우처와 현금이 통합된 현행 지급방식 유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37.5%), 그 다음으로는 보육료를 포함하여 전액 현금 지급(22.5%)임.
- 정책적 환경 요인 중에서 현금급여 개편 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 1순위 응답에

서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40.0%),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27.5%) 순으로 나타남.

-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보편적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 시에 일차적인 목적은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62.5%),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25.0%)임.

#### 나. 육아가구의 수요 및 경험 분석

- 재정패널 조사 15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0~17세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산출
  - 연령 증가에 따라 대체로 자녀 양육비가 증가 추이를 보여 만 16~17세에는 양육비가 평균 연 1,700만원 이상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6세와 초등학교 고학년 진학하는 만 10세, 고등학생인 만 16세에 양육비 부담률의 증가폭이 컸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 부담률이 증가
- 아동가구의 소득을 10분위로 구분하여 양육비와 양육비 부담률 산출
  - 1분위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연 2,257만원으로 2분위와도 소득수준 격차가 크며, 양육비 부담률이 52.6%로 산출
  - 2분위 이후로는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양육비는 증가하나 양육비 부담률은 감소
- 부모 FGI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아동수당 개편으로 지급연령 확대, 월 지급액 상향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와 부모 모두 일치하였음.
  - 다만,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 수급 경험이 있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지급액 상향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부모도 가정양육수당의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다. 주요 요인 도출

-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 요인,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요인, 고용 및 노동시장 요인, 제도 간 조정 요인, 국가 재정 관리 및 재정 확보 요인 검토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요인 도출

〈요약 표 2〉 현금급여 정책 시나리오 주요 요인 도출 관련 분석 결과

구분	해외 제도 분석	전문가	정책 수요자
아동수당 지급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주요국 지급연령 16~20세까지 분포: 18세 미만 지급 국가 다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미만까지 지급 응답이 다수(7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우선적 개편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li> <li>연령증가에 따라 양육비용 증가</li> </ul>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국가가 지급액 조정 방식 도입 실시</li> <li>OECD 국가 중 매년 물가 변동 반영 국가 다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 연동 상향 방식 지지가 가장 높음</li> <li>다음으로 법률 개정 통한 정액급여액 일시 상향</li> </ul>	-
아동수당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지급수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25~30만원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상향 급여액 20만원, 30만원 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만원~50만원 다수 응답</li> </ul>
아동수당 차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주요국 분석에서 대다수의 국가가 아동수당(가족수당) 제도에 소득수준, 출생순위, 자녀수, 연령, 한부모 여부 등을 적용하여 지급기준이나 지급액에 차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는 아동수당 차등보다 모든 아동 동일 지급이 다소 높음 → 아동수당 지급액 자체에 차등보다는 집단의 육구 차이를 반영한 부가급여 방식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와 부모 면담 결과 다소 상이: 연령별 차등, 자녀수별 차등, 한부모 가구,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순위 및 자녀수를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국가가 가장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차등 적용할 경우 자녀수별 차등 적용이 가장 높은 지지(7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 지급액 및 유관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국가는 절반 정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외에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아동연령별 차등 적용 순</li> </ul>	
가정양육수당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국가 분석에서 가정양육을 전제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본 만 2~3세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기간에만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양육수당 전면 폐지와 특별 대상 양육수당 지급 유지가 다수 의견을 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양육수당의 중요성과 제도 필요성을 양육지원 중에서 가장 낮게 인식</li> </ul>
부모급여 현행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지급방식을 유지하거나 보육료 포함 전액 현금 지급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 경험이 있는 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li> </ul>

## 5. 정책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 가. 종합적 정책 시나리오

□ 전체 시나리오는 크게 아동수당 일괄 정액급여 시나리오 I 과 아동수당에 부가급여를 추가 설계한 시나리오 II로 구분

- 시나리오 II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 각각 다자녀 아동수당과 추가 아동수당을 조합하여 4개 시나리오로 구성

〈요약 표 3〉 시나리오 I 핵심 내용

구분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시나리오 I : 일괄 정액 급여	시나리오 1	• 만 17세 x 물가상승률 반영	• 유지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만 존치	• 아동수당 지급연령 연동: 만 18세~만 20세 유지	• 유지
	시나리오 2	• 만 17세 x 월 20만원	• 유지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만 존치	• 아동수당 지급연령 연동: 만 18세~만 20세 유지	• 유지
	시나리오 3	• 만 17세 x 월 30만원	• 유지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만 존치	• 아동수당 지급연령 연동: 만 18세~만 20세 유지	• 유지

〈요약 표 4〉 시나리오 II 핵심 내용

구분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시나리오 II : 부가급여 추가	시나리오 4 (시나리오 1-A)	• 만 17세 x 물가상승률 반영 [부가급여 A: 다자녀 아동수당] • 둘째아: 월3만원 • 셋째아 이상: 월4만원	• 유지
	(시나리오 1-B)	• 만 17세 x 물가상승률 반영 [부가급여 B: 추가 아동수당] • 시나리오 5 I (차상위/소득1, 2분위): 월10만원 • II(차상위 초과~연7000만원미만/소득3~7분위):월5만원	• 아동수당으로 통합
	시나리오 6 (시나리오 2-A)	• 만 17세 x 월 20만원 [부가급여 A: 다자녀 아동수당] • 둘째아: 월3만원 • 셋째아 이상: 월4만원	• 유지
	시나리오 7 (시나리오 2-B)	• 만 17세 x 월 20만원 [부가급여 B: 추가 아동수당] • I (차상위/소득1, 2분위): 월10만원 • II(차상위 초과~연7000만원미만/소득3~7분위):월5만원	• 아동수당으로 통합

주: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자녀세액공제는 시나리오 I 과 동일

## 나. 정책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및 소요재정 추계

-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3안이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가장 높고, 7안, 6안, 2안, 5안, 4안, 1안 순
  - 아동연령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는 3안이 0.6~2.1%pt이며, 가장 낮은 1안은 0.1~0.8%pt 수준
  - 현재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인 만 7세 이하에 비해 시나리오에 신규로 포함되는 만 8세 이상이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가 큼.
- 소득수준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 분석에서는 양육비 부담률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모든 시나리오에서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도 큼
  - 중위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는 3안, 7안 다음으로 6안, 5안, 2안, 4안, 1안 순
- 자녀수별로는 기존 시나리오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남.
  -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자녀수가 증가할 때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의 증가 폭이 큼.
  - 그러나 다자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4, 6안에 비해 5, 7안에서 오히려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
- 아동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3안의 소요재정 규모가 약 25조로 가장 크고, 7안, 6안, 2안, 5안, 4안, 1안 순
  - 투입 재정에 규모가 클수록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도 크게 나타남.
  - 다만,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이 투입되는 5안이 저소득계층에서 보다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큼.

## 6.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및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

### 가.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 발전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 기본방향 1: 현금급여 제도의 합목적성 추구: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및

양육비 부담 완화

- 기본방향 2: 아동수당 중심의 통합적 현금급여 체계 구축
- 기본방향 3: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 현금급여 제도 틀 구축
- 기본방향 4: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현금급여 체계 구축: 보편주의 내 표적화(targeting)

□ 시나리오별 검토 결과

- 시나리오 3안이 가장 양육비 부담을 완화 효과가 큼: 현행 재정 규모의 약 5배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 7안은 시나리오 3안에 비해 약 6조 정도 재정 규모가 작으면서 소득계층이나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을 완화 효과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안
- 6안에 비해 소득수준별로 지급하는 7안이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을 완화효과도 더 큼.
- 아동가구 현금지원 제도의 방향성 설정에 따라 시나리오 선택 가능
  - 5안: 자녀장려금 제도를 아동수당에 통합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하되 재정적 부담이 적은 방안
  - 6안: 다자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아동수당에 도입하면서 전체 아동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효과를 동시에 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선택 가능한 방안

나.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

〈요약 표 5〉 현금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안)

구분	단기 (~2026)	중장기 (2027~)
제도적 기반	[법률 개정] • 아동수당법 개정 • 영유아보육법 개정 • 소득세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통합적·유기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전체 가구당, 아동당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를 유기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체계 구축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구분		단기 (~2026)	중장기 (2027~)
현금 급여	아동수당	[정책 우선순위] 1) 아동수당 연령 상향 2)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 방식 결정 3)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4) 아동수당 부가급여 도입	•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 방식에 따른 정기적 조정
	가정 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축소 - 일반 가정양육수당 폐지 - 농어촌/장애 아동 양육수당 존치	• 가정양육수당 폐지
	부모급여	• 현행 지급수준 유지 • 부모급여 제도적 성격 명확화	[부모급여 성격 규정에 따른 안] • 영아기 소득보장을 위한 수당 제도: 현행 제도에서 지급액 조정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 • 육아휴직급여의 기초 정액급여: 육아휴직급여 제도와의 통합 추진
세제 지원	자녀 세액공제	•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연동하여 자녀장려세제 연령 축소: 18~20세	-
	자녀 장려금	• 아동수당에 소득수준별 추가 아동수당(부가급여) 도입 시 자녀장려금 폐지	-
유관 제도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육아휴직 재정을 위한 별도 기금이나 독립 계정 분리
	돌봄 지원	• 공공 영아 보육 서비스 강화	• 현금 지원 제도와 돌봄 비용 지원 제도의 분리 • 농어촌/장애아 아동의 보육 서비스 공백 해소

# I

---

#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아동 및 아동가구에 대한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도입이 뒤늦게 이루어진 국가이다. 2009년 가정양육수당, 2018년 아동수당 도입 이후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현금급여 제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현금급여 제도가 최근에 들어 확대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 이면에 초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009년에 가장 먼저 도입된 가정양육수당은 무상보육 확대와 맞물려 크게 확대되었다. 아동수당을 채택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보편적 현금급여로서 아동수당을 도입한 상태에서 양육수당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를 보완하는 가정양육 지원의 성격을 갖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 속에서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동수당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학령 전 만 7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확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가정양육수당의 확장은 이후 도입되는 아동대상 현금급여가 보육서비스와 대체되는 급여 성격을 갖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수당의 도입과 도입 후 확대는 상당히 지연되었다(김은지, 2022; 박은정 외, 2022; 송다영, 박은정, 2019). 2018년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24). 2022년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저출산 대응책으로 중앙 정부의 현금급여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영아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 영아수당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영아기 집중투자를 제시하면서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2022년 도입되었다. 부모의 가정양육 선호가 높고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만 0~1세 영아가구에게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만으로 충분한 양육지원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영아수당이 도입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21: 77).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보편적 수당으로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도록 하여 가정양육수당과 같이 급여 형태가 현금과 서비스 간에 대체되도록 설계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4). 2023년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인해 영아수당은 도입 1년 만에 통폐합되었으나, 지급대상이 동일한 보편적 수당으로 동일한 전달체계 내에서 부모급여와 유사한 제도적 설계를 가지고 있었다.

2023년에는 높은 지급 수준을 가진 보편적 수당으로 부모급여가 도입되었다. 2024년부터는 지급 수준을 보다 상향하여 만 0세 대상 월 100만원, 만 1세 대상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박은정 외(202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4년 부모급여 지급 시 부모급여가 양육비를 상회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부모급여의 목적은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와 소득보장 강화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8. 19.). 부모급여가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급 수준이 높은 부모급여가 영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돌봄 불평등성 등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박은정 외, 2022).

현 정부는 부모급여의 도입과 함께 현금급여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5대 핵심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는 그간 저출산 대응 정책을 평가하면서 불명확한 목표 설정, 근거 기반 평가 미흡, 백화점식 과제 나열, 실수요자의 정책 요구도 반영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수당서비스시간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도입되었음을 지적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3. 28.). 또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부모급여 도입 및 단계적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세제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3. 28.). 이를 통해 현 정부가 현금급여 체계를 검토하고 확대하여 육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명확한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의 확대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제도적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 전반과 현금급여의 제도설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정책, 육아정책에서 현금 제도는 서비스, 시간 지원 정책과의 조합 및 정책형성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적 조합이나 맥락에 따라 개별 제도의 성격이나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 속에서 개별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윤승희, 2015; 이승윤 외, 2014). 즉, 육아정책 전반의 체계와 지향점이 현금급여 제도의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전체 육아정책의 맥락을 고려하여 현금급여 제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보육서비스와 혼합된 형식으로 일괄 정액급여 방식만을 채택해온 아동 대상 현금급여에 대한 문제의식도 필요하다. 한국에서 보편주의 현금급여 제도는 인구학적 기준(데모그란트)에 따라 일률적인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실제로는 보편주의가 정액급여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유해미 외, 2021; 이상은, 2021). 프랑스, 독일, 북유럽 국가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보편주의에 속하는 아동가구 대상 수당제도일지라도 소득수준, 가구유형, 자녀수, 자녀연령, 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한국과 같이 획일적인 정액급여만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유해미 외, 2021).

또한 유사한 성격의 현금급여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전체적인 제도적 맥락 속에서 세부 제도 설계나 제도적 정합성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윤승희, 2015). 또한 현금급여의 계량적인 효과성 분석 연구결과가 합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현금급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Goldstein et al., 2017; Laroque & Salanié, 2003; Parent & Wang, 2007).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현금급여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김사현, 홍경준, 2014; 최영, 김슬기, 2017).

한편, 지금까지 현금급여 제도가 미치는 다면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아동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제도는 경제적 측면,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측면뿐만 아니라 출산율, 여성 노동시장 참여, 사회적 불평등 감소 효과 측면에서도 연구되었다. 동일한 제도일지라도 어떠한 관점에서 효과성이나 파급효과를

보느냐에 따라 제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현금급여는 아동 빈곤 해소 및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기도 하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남재현, 2021; 정찬미, 2017; 최영, 2017; Blundell & Macurdy, 1999).

요컨대 개별 현금급여 제도의 단일한 측면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성 연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제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액 산출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전체적인 현금급여 제도 및 육아정책과의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보편주의 관점 속에서 산발적으로 도입된 우리나라 현금급여 제도를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현금급여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논의를 넘어선 중장기적인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적인 육아정책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현금급여 제도의 세부 설계 관련 요인을 검토하고, 제도 간 정합성과 함께 부모 및 아동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도 발전방안은 한국의 현금급여 제도의 목적 부합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현금급여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를 심층 분석하여 현금급여 제도 개편 쟁점을 도출한다. 먼저, 국내 현금급여 제도의 도입 및 확대 과정의 제도적 맥락과 제도 내용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중심으로 현금급여 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세제 지원,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급여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 분석은 OECD 국가 동향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 설계의 특성을 도출한다. 또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4개국의 현금급여 제도

형성 및 변화 과정, 지급기준 및 지급액 책정 방식, 현금급여 제도 관련 정책적 이슈를 심층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국내외 제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 개편의 쟁점을 도출한다.

둘째,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 요인과 정책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한다. 다양한 분야의 현금급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금급여 제도별 쟁점 및 통합적 개편을 위한 개선 방향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셋째, 정책 수요자의 현금급여 수급 경험과 욕구를 파악한다. 전문가 의견 조사와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개편 방향을 정하기 위해 아동 연령별,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심층면담 집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용 경험을 비롯하여 정책 인식 및 정책 수요의 원인을 파악한다.

넷째, 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책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책 시나리오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앞서 실시한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분석, 정책 수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다섯째, 아동 대상 현금급여 체계의 재구조화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의 발전 방안을 세제 지원,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등 전체적인 육아정책의 맥락을 고려하여 도출한다. 또한 현금급여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현금급여 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육아정책으로의 발전적 로드맵을 제안한다.

## 나. 연구 범위

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며, 서비스, 재화, 바우처, 현금으로 구분되기도 한다(Gilbert & Terrell, 1974/2007). 현금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인 현금 직접 지급과 가치분소득을 확보해주는 세제 지원이 포함된다(윤홍식 외, 2019: 367~368).

한편, 현금급여는 급여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먼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의에서 지급대상 기준으로 급여를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보편성이 큰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는 현실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실현되기 어렵다.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일반적으로 보편적 현금급여로 인식되는 급여가 있다. ‘기여 기반’은 사회보험에 납부한 기여금에 따른 급여이다. 현행 한국의 육아휴직급여는 ‘기여 기반’ 급여라고 할 수 있다. ‘자산조사 기반’ 급여는 소득 및 자산조사에 따라 지급되는 선별적 급여이다. 다음으로, 현금급여는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모든 지급대상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정액급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득비례급여,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표 I-2-1 참조). 이러한 현금급여 제도는 한 기준에 따라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가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표 I-2-1〉 현금급여 구분 기준

구분	내용
지급대상 기준에 따른 구분	모든 사회구성원
	인구학적 기준
	기여 기반
	자산조사 기반
급여지급 방식에 따른 구분	정액급여
	소득비례급여
	아동 및 가구특성별 차등 급여 (자녀수, 출생순위, 연령, 장애 등)

자료: 윤홍식 외(2019), 이상은(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의 개편 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세 제도도 세부적인 지급형태나 지급기준이 상이하기는 하나, 아동 및 아동 가구 대상 현금급여 중 지급대상이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정액급여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연령 기준만으로 적용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정액급여이며,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급형태가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이 병행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전제로 하여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와 성격이 다소 상이한 현금급여이나, 제도 개편에 있어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아동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이다. 물론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등 돌봄 비용 지원과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아수당, 부모급여가 모두 보육료와 대체되는 성격을 가진 급여로 실시되고 있어 가정양육수당과 일정 부분 겹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양육수당의 지급형태를 고려했을 때에도 비용 지원보다는 현금성 지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유관제도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등 세제지원, 첫만남이용권,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등), 육아휴직급여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중앙 정부에서 실시하는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지자체 현금지원의 경향이나 규모를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아동수에 따른 아동당 양육비를 살펴보고, 중앙정부 차원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므로 지자체 현금지원을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3. 연구 방법

#### 가. 문헌연구

첫째, 현금급여 관련 이론 연구, 현금급여 개편 관련 선행연구,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의 효과성 및 영향 평가 연구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다. 둘째, 국내외 아동 대상 현금급여 관련 제도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해외 사례는 OECD의 각국 관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MISSOC database, EUROSTAT 등 국제 통계 DB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국의 제도 관련 홈페이지 자료, 각국 연구 자료, 정부 문건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 나. 2차 자료 분석

육아가구의 현금급여 지원 수요를 검토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였으며, 통계청 승인통계인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 18세까지 연령별 양육비를 도출한다. 시나리오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에는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국가예산정책처 자료, 부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을 활용한다.

## 다. 집단심층면담(FGI)

FGI는 현금급여 수급 대상인 육아가구의 제도 이용 경험 및 급여 사용의 양상과 소득 지원 수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실시한다.

면담 대상자는 자녀 연령과 가구특성을 축으로 하여 총 8개 집단으로 구분하며, 집단별로 4명 내외로 구성하였다. 자녀 연령은 영아, 유아, 초등 자녀, 중등 자녀로 구분하였다. 현재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연령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초등 학령기 전 연령을 포괄하여 중등 자녀를 둔 부모의 욕구도 파악하고자 중등 자녀 집단을 추가하였다.

1 자녀 가구는 저소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로 구성한다. 즉,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녀 가구를 연령별로 4개 집단을 구성한다. 가구특성으로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각각 2개 집단을 구성하였다.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영유아 가구(만 5세 이하)와 초등으로 연령을 구분한다. 여기에서 저소득 가구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sup>1)</sup>로 하였다.

추가적인 집단 구성 요건으로는 막내자녀 기준으로 집단당 영유아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50%씩 할당<sup>2)</sup>하여 모집하고, 읍면동 지역 아동이 집단당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I-3-1] FGI 집단 구성(안)

구분	영아	유아	초등	중등
1 자녀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다자녀	집단5		집단6	
저소득	집단7		집단8	

- 주: 1) 1 자녀 집단에 저소득 가구가 포함되지 않음.  
 2) 저소득 가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임.  
 3) 다자녀 가구는 2자녀 이상 가구(쌍생아 포함)이며, 성인자녀를 둔 가구는 제외함.  
 4) 막내자녀 연령 기준임(모집시기 2024년 6월 기준 연령).

- 1) 법정 저소득 가구(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을 위해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2) 기관 이용 아동: 기관 미이용 아동 = 50:50 (막내자녀 기준)

〈표 I-3-1〉 FGI 개요(안)

구분	내용
면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8개 집단, 집단당 4명 내외</li> <li>• 집단 구분: 자녀연령(막내자녀 연령 기준) x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연령: 영아(만 2세까지), 유아(만 3~5세), 초등 자녀, 중등 자녀</li> <li>- 가구 특성: 다자녀 가구(2명 이상), 저소득 가구(기준 중위소득 80% 이하)</li> </ul> </li> </ul>
면담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6월~7월</li> </ul>
면담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li> <li>• 화상면담</li> </ul>

## 라.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관련 영역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거나 상황을 예측하고자 사용되는 조사방법이다. 일반적인 설문조사로는 결론내기 어려운 쟁점이나 정책 방향성 등을 탐색하는 연구에 적합하다(이호용 외, 2020; Rowe et al., 1991).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현금급여 제도의 개편에 관한 정책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요소를 도출해야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단일 대안이 아니라 복수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다면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회복지학, 아동학, 가족학, 경제학,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53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요청하였다. 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웹기반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조사에서는 53명 중 응답을 완료한 수는 43명으로 약 81% 응답률을 보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1차 응답자 43명 중 약 93%인 40명이 응답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I-3-2〉와 같다.

〈표 I-3-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학, 아동학, 가족학, 경제학,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li> <li>• 전문가 패널 구성: 총 53명</li> </ul>
조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조사: 5월 10일~5월 22일</li> <li>• 2차 조사: 6월 26일~7월 9일</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기반 온라인 조사: 이메일 기반</li> <li>• 질문구성: 구조화 질문과 반구조화 질문 혼합 구성</li> </ul>
조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조사</li> </ul>
	전문가 일반사항
	현금급여 제도의 목적 및 목표
	현금급여 제도 목적별 중요도 평가 및 이유
	현금급여 제도별 지원 수준의 적절성 평가 및 이유
	제도별 개편 필요성 및 이유
	아동수당 제도 개선 우선순위
	정책 환경 요인 및 이유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유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조사</li> </ul>
	아동수당 적정 지급연령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방식 및 이유
	아동수당 차등 지급 적용 필요 여부/ 적용 방식 및 이유
	가정양육수당 개편 방식 및 이유
	부모급여 지급방식 개편 방안 및 이유
	현금급여 통합적 개편 목적 우선순위 및 이유
	현금급여 개편 관련 방향성 동의 정도 및 이유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 자녀세액공제 개편안 및 이유
	정책 환경 요인 우선순위
	현금급여 수요자 체감도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 및 이유
아동수당 제도 확대 시 필요한 유관 제도 개편 및 이유	
기타 의견	

## 마. 정책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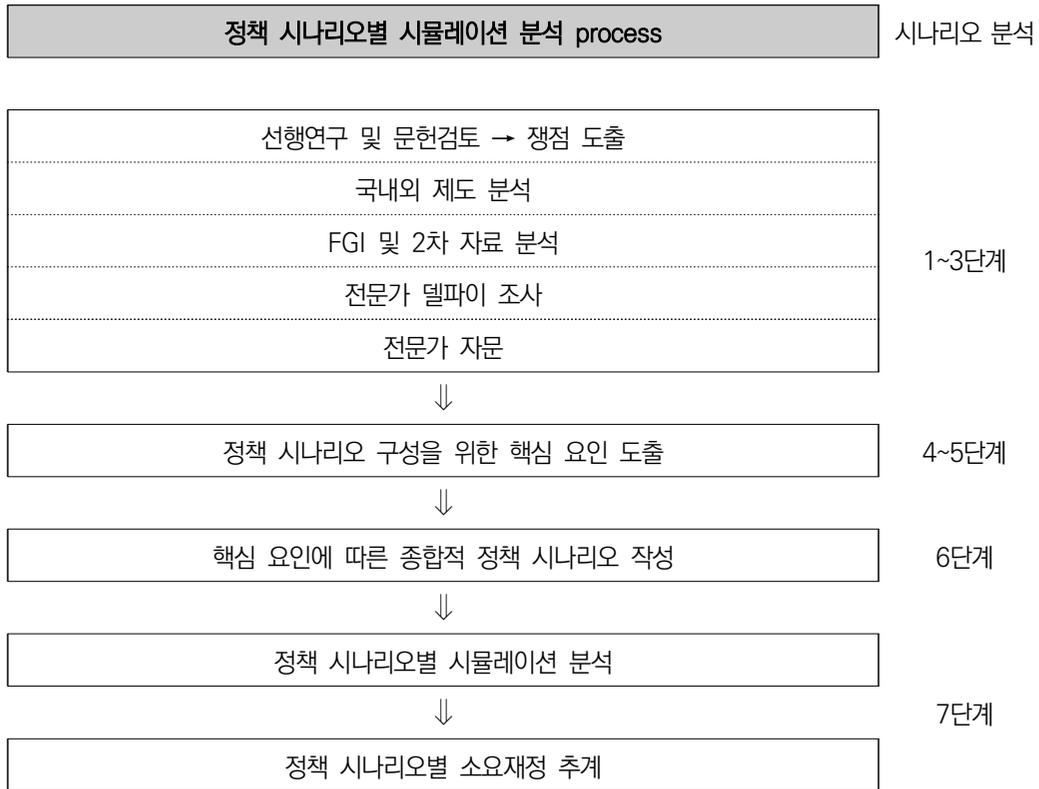
앞서 실시한 국내외 제도 분석, 수요자인 육아가구의 제도 이용 경험 및 욕구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적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주요 요인을 결정한다. 즉, 지급 대상(자녀연령, 가구소득, 가구특성 등), 지급 수준, 파급 효과, 정책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된 핵심 요인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정책 시나리오의 단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안종배 외, 2014; 이호용 외, 2020). 본 연구의 정책 시나리오 분석도 다음에 제시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 1단계: 분석 범위 한정, 전략적 관심사 정의
- 2단계: 주요 결정 요인의 명확화
- 3단계: 주요 환경 요인 검토
- 4단계: 주요 요인 분석
- 5단계: 시나리오 논리 개발
- 6단계: 시나리오 작성
- 7단계: 시나리오 대안별 의미 해석 및 시나리오 점검

본 연구에서는 작성된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한 모형별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고, 소요재정을 도출하여 정책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양육비 분석에서는 0~18세까지 양육비용을 산출하고,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 비율인 양육비 부담률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시뮬레이션 분석에는 아동 연령, 가구소득, 자녀수 항목을 투입하고, 시나리오별로 아동가구 현금급여의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각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계하여 종합적으로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그림 I-3-2] 정책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분석 과정



### 사. 정책 포럼 개최

아동 대상 현금급여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한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적 로드맵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표 I-3-3〉 정책 포럼 개요

구분	내용
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4년 11월 1일(금), 10~12시</li> <li>• 장소: 명동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li> </ul>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관련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과 남겨진 과제들</li> </ul>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발표 1: 한국 아동 관련 현금 및 조세지원 정책의 현황 및 과제</li> <li>• 주제발표 2: 아동 대상 현금급여 체계 개편안과 향후 과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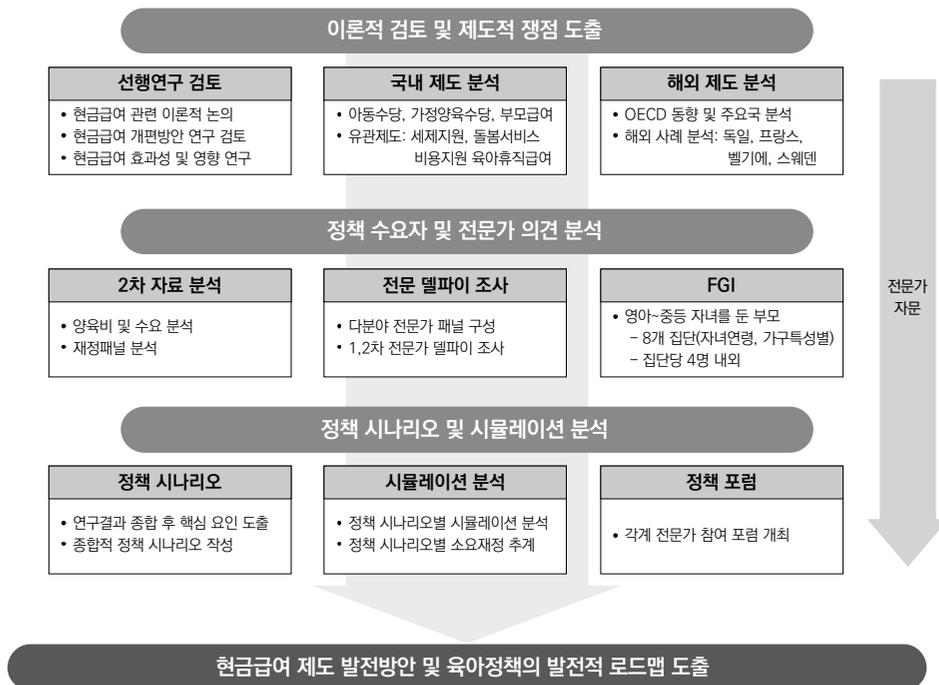
### 아.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전반적인 연구 과정에서 아동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향 검토, 질문지 구성, 정책 시나리오 도출 등 조사 및 분석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구의 엄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아젠다 및 방향성을 파악하고 연구의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 자. 연구 흐름도

본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연구의 흐름도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3-3] 연구 흐름도





# II

## 이론적 검토 및 제도 현황

- 01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02 현금급여 관련 제도 검토
- 03 소결: 현금급여 제도 개편 쟁점



## II. 이론적 검토 및 제도 현황

### 1.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가. 현금급여 관련 이론적 쟁점

##### 1) 급여형태로서 현금급여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분류된다. 현금급여의 이론적 논리는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보장과 효용의 극대화이다. 여기에서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는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다. 그러나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Gilbert & Terrell, 1974/2007: 225-226). 현금급여의 수급자는 지급된 급여의 목적과 달리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합리적인 최선의 판단은 선택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나, 의료 서비스와 같이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윤홍식 외, 2019: 363~366).

반면, 현물급여는 급여를 원래 정책 의도대로 사용되도록 통제 할 수 있는 급여 형태이다. 가치재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물급여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물급여는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통제하거나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물급여도 정부의 개입이 수요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현금급여에 비해 더 많은 운영 비용을 발생시켜 효율성이 지적되기도 한다(윤홍식 외, 2019; 이현주 외, 2018). 이처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과정상 추구하는 가치가 상이하며 급여형태로서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다. 이에 급여형태는 정책결정자들의 가치 판단과 추구하는 정책목적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다.

한편, 실제 정책 설계에서는 급여형태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양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1974/2007)은 현물·현금급여를 바우처(증서) 형태를 비롯하여 6가지 급여형태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급여가 정책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으로 정의하고, 전이가능성에 따라 급여형태를 기회, 서비스, 재화, 바우처, 현금, 권력 순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중 기회와 권력은 직접적인 지불방식의 다른 급여형태와는 상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방식은 서비스, 재화, 바우처, 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는 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대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종 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의미한다. 대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둘째, 재화는 수급자의 필요에 맞게 물질적인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로 전이가능성이 낮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등 전이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제한적이다(Gilbert & Terrell, 1974/2007, 윤희식 외, 2019: 367~369에서 재인용). 셋째, 바우처 제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Trebilcock & Daniels, 2004/2009). 다만, 바우처는 정부에 의해 구조화된 교환 가치가 부여된 증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바우처는 재화에 비해 일정 수준에서 수급자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되지만, 식품 바우처와 같이 일정 영역에서 소비행위를 통제한다. 재화에 비해 교환 가능성이 높아 전이가능성도 더 높다. 넷째, 현금은 수급자가 지급된 현금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통화를 지급하는 급여형태이다. 따라서 지급된 정책 목적 외에 수급자가 자의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금은 직접적인 통화를 지급하는 방식 외에도 세제 지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Gilbert & Terrell, 1974/2007, 윤희식 외, 2019: 367~368에서 재인용).

## 2) 현금급여 제도 설계

여기에서는 육아정책 관련 현금급여 제도 설계 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급여 대상, 급여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급여 대상과 관련하여 표적화(targeting) 쟁점이 있다.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표적화의 정확성이 낮다. 현물급여는 분명한 표적화를 통해 대상 집단에 필요(need)에 따라 명확하게 지급된다. 현물급여는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보다 잘 선별해낼 수 있으며,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 욕구를 가진 집단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물급여의 특징을 자가표적화(self-targeting)라고 표현하기도 한다(Currie & Gahvari, 2007: 9, 이현주 외, 2018: 28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물급여의 표적화를 보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이해로 볼 수 있다. 현물급여도 의료서비스와 같이 보편적인 서비스 지원이 있을 수 있고, 현금급여 제도는 인구학적 기준에 근거한 보편주의적 수당 이외에도, 저소득 대상에게 지급되는 추가적 수당이나 환급형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표적화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는 별도 논의로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금급여의 지원 수준을 정하는 문제가 있다. 현금급여 지급 수준을 정할 때 대표적인 기준은 최저생계 보장이다. 물론 최저 생계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상이하며, 사회적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간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며 최저 생계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존재한다(윤홍식 외, 2019: 388~399). 또한 급여수준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최저생계비 보장 논의에서 더 나아가 ‘적정’ 수준의 급여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급여 설계에서 핵심 기준으로 ‘적절성(adequacy)’이 포함되면서 인간의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수준 보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Van Lancker et al., 2020, 고제이, 하솔잎, 박노옥, 외, 2022: 57에서 재인용). 유럽연합은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적절성을 갖춘 소득보장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참조예산(RBs)을 제안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Storms et al., 2014; 고제이, 하솔잎, 박노옥, 외, 2022: 57~58에서 재인용). 또한 영국은 최저소득 기준을 기초생계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일반 국민들의 수용성을 적용하고 있다(Davis et al., 2021, 고제이, 하솔잎, 박노옥, 외, 2022: 61에서 재인용).

한편, 현금급여 대상 선정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 고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인구학적 특성(데모그란트)에만 근거하여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액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현금급여 대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은 급여 수준과도 관련되어 있다. 현금급여는 소득 및 자산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정액급여

와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소득비례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액급여는 연령이나 거주여부 등에 따라 규모가 큰 인구집단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 반면 소득비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공적 연금과 같은 소득비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윤홍식 외, 2019: 389~390).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는 급여 지급방식 자체뿐만 아니라 지급기준과 연동하여 구분되기도 한다. 최영(2017)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편주의형, 사회부조형, 고용 연계형으로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를 구분한 바 있다. 보편주의형은 모든 아동가구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사회부조형은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유형이다. 고용 연계형은 노동시장에 참여 여부에 따른 부모의 고용상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3) 보편주의의 다차원성 논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는 급여 대상을 선정하는 원리로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나 표적화를 적용하지 않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할당 원리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시민에 대한 급여 지원은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포괄하는 정책 원리로 보는 견해들이 다수이다(윤홍식 외, 2019: 332~334).

한편, 보편주의는 선별주의, 잔여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선별주의와 잔여주의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잔여주의는 가족이나 시장이 최대한의 기능을 하고도 해소되지 못한 사회문제를 사회복지를 통해 보완해주는 것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 수급자가 된다. 선별주의는 특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는 의미이다(이상은, 2021). 즉, 잔여주의는 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적 개입 가치가 보다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선별주의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보다 강조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의는 급여 대상 선정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급여 대상 선정은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와도 관련된다. 이에 보편주의는 단순히 대상 선정 기준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할

당의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Anttonen et al.(2012)은 보편주의 개념을 대상 선정 차원에서 포괄성과 급여 할당의 원리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보편적 포괄(universal inclusion)은 수급 대상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편적 할당(universal allocation)은 급여 할당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보편적 할당을 정액급여, 긍정적 차별, 소득비례급여로 구분하였다. 정액급여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당제도에서 대다수에게 정액급여와 보편주의가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 할당으로서 정액급여와 보편주의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은(2021)은 긍정적 차별을 욕구에 따른 급여로 표현하였다. 긍정적 차별은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비례급여는 사회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 상실을 동일한 비율로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배제되는 계층적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다(이상은, 2021: 166~169).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다수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보편적 정액급여가 보편주의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편주의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정액급여와 욕구에 따른 급여가 모두 보편적 할당 방식이며 하나의 제도 설계 과정에서 동시에 도입될 수 있는 보편주의 방식이다. 급여의 표적화를 보편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Skocpol(1991), Korpi and Palme(1998)가 주장한 보편주의 내 표적화의 개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 제도가 아니지만, 보편주의 제도 내에 추가적인 욕구를 가진 집단에게 추가적 급여를 제공하는 긍정적 차별 방식을 통해 보편주의 제도 내에서도 표적화 방식을 가져올 수 있다(이상은, 2021: 168).

#### 나. 현금급여 개편 관련 정책연구 검토

여기에서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중심으로 현금급여 개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아동수당 도입 전에 수행된 연구는 보편적 아동수

당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관련 주제가 대다수였다(이경희, 민인식, 2018; 이상은, 정찬미, 2016; 정찬미, 2017). 아동수당 도입 후 수행된 개편 방안 연구에서는 크게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만 17세~18세),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한부모 가구, 다자녀가구, 실직가구 등 취약성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가급여 지급이 핵심적인 제도 개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김미곤 외(2019)의 연구는 아동수당 제도 개선 방안을 출산·양육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와 함께 제시되는 통합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도입 이후 아동수당 개편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아동수당 개편 방안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개편방안
조성은 외(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제도의 조기 정착과 합리적 제도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개선 방향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li> <li>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추가급여 도입: 산재된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아동수당의 부가급여 형태로 통합</li> <li>정책 패키지(세제혜택, 양육 지원 등) 형태의 가족지원 정책 조항 필요</li> </ul>
김미곤 외(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양육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한 아동수당 지원범위 및 수준 개선 방향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 지급연령 만18세 미만까지 확대</li> <li>저소득/취약계층 아동양육가구 소득지원 강화</li> <li>국가 첫 아이 축하금 또는 선물꾸러미 지급</li> </ul>
이영숙 외(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선진사례와 한국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한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와 아동수당 제도 개선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8세 미만 전체로 확대</li> <li>아동수당 지급액 연령 구간대별 인상</li> </ul>
이영숙 외(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자녀가구 대비 아동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아동수당 제도 운영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 제도 개선방안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 지급연령의 단계적 확대</li> <li>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추가지원</li> <li>실직가구 대상 아동수별 차등 지원</li> <li>지급액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현금 지원</li> </ul>
고제이 외(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제도의 성과 진단·문제점 진단을 통해 변화된 정책여건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방향 모색 및 효율적 재정관리 대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연령 확대: 12세, 15세, 18세 미만</li> <li>다자녀 추가지원</li> <li>아동수당 지급 사후관리 효율화: 부정청구 요건 사전고지, 수급권자 아동 출입국사실 신고의무 신설</li> <li>제재부가금제도의 신설/공공재정환수법 준용</li> </ul>

구분	연구목적	개편방안
이소영 외(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의 적절한 목표 설정과 현금성 지원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수당 개선 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연령 만 17세까지 확대</li> <li>지급액을 최소 월 20만원으로 증액: 국제적 급여 수준과 물가상승률 고려</li> </ul>

자료: 1) 조성은 외(2018). 아동수당 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미곤 외(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이영숙 외(2020). 아동수당 발전방향별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이영숙 외(2021).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고제이, 하솔잎, 나원희 외(2022).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이소영 외(2023).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정양육수당의 개편 방안 연구 중 초기 연구들에서는 양육수당 지급연령을 만 3세 미만으로 제한, 양육수당 급여액 상향 조정, 소득기준 완화, 아동수당 제도 도입 필요가 핵심적인 개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개편방안으로 미이용 및 가정 내 양육을 전제로 한 현금지원 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국제비교 관점에서 양육수당 지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연령 제한이 제시되었다. 또한 보편적 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이 함께 제안되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지급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급연령이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9 까지 확대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양육수당 개편 방안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개편방안
유해미 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육수당 지원 정적 대상 범위 및 급여액 수준 모색과 정책 효과 및 수요 규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육수당 급여액 월 30만원선 상향 조정: 여성 노동권 침해 고려</li> <li>아동 연령별로 일률적 상향 조정</li> <li>지원 대상 영아로 한정(현행 유지): 가정내 보육 수요 고려</li> <li>소득기준 단계적 완화</li> <li>양육수당제도를 아동수당제도로 전환 및 단계적 확대</li> </ul>

구분	연구목적	개편방안
고은혜, 이일주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육수당에 대한 부모 인식 파악 및 효과적 양육수당 정책 개선방안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연령을 만 3세 미만으로 한정 ※ 만 3-5세 양육수당보다 공보육의 질적개선</li> <li>만 3세 미만 양육수당 급여액 상향조정</li> <li>기관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 필요</li> </ul>
송다영, 박은정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양육수당 확대 과정 및 독일 양육수당 도입 및 폐지 과정 분석을 아동양육정책과의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한국 양육수당 제도 개편 의제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육수당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급여액 인상 및 육아휴직제도 지원수준 및 적용 확대 동반</li> </ul>
양미선 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특성과 어린이집유치원 및 양육 서비스 이용 현황을 검토</li> <li>가정양육수당 정책의 적절성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양육수당 폐지</li> <li>아동수당 만 12세까지 확대</li> <li>취약 아동에 대한 특별수당 제도 도입</li> </ul>

자료: 1) 유해미 외(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 고은혜, 이일주(2015).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 실천유아교육, 20(1), 1-23.  
 3) 송다영, 박은정(2019).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4, 93-135.  
 4) 양미선 외(2022).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영아수당은 2021년, 부모급여는 2022년에 도입되어 아직까지 제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도입 시기에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양재진 외(2021)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모급여 제도와는 제도 설계 자체가 다르다. 다만,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의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가구에 대한 높은 지급수준의 정책급여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3>과 같다.

<표 II-1-3> 부모급여(영아수당 포함) 도입 방안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개편방안
유해미 외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 영아수당을 중심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수당 만 2세까지 지급</li> <li>영아수당 지급액: 50만원 선</li> <li>현금 지원방식 적합</li> </ul>

구분	연구목적	개편방안
양재진 외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민 부모급여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및 해외 사례 토대로 한국형 제도 설계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 전국민 부모급여 제도 제안: 한국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스웨덴 부모보험제도 벤치마킹</li> <li>육아휴직급여의 기본급여로 월 100만원</li> </ul>
박은정 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급여 제도 성격 규명,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검토, 부모급여의 제도적 쟁점 도출을 통한 제도 설계 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급여 법적 근거 조항 또는 근거법 마련</li> <li>정책목표에 따른 지급단위(아동단위) 및 지급방식 결정</li> <li>가정양육 질 제고를 위한 부모 대상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li> <li>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유관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li> </ul>

자료: 1) 유해미 외(2021).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양재진 외(2021). 초저출산 시대, 전국민 부모급여 제도의 설계. 육아정책연구, 15(3), 3-27.  
 3) 박은정 외(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다.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영향 평가 연구

여기에서는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할당급여를 중심으로 현금급여의 효과성 및 영향 평가 연구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지자체 수준의 출산지원금이나 공공 부조 형식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중심으로 현금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현금급여의 효과성 및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주제는 크게 아동 및 아동가구의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및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동가구의 소비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구분되었다.

먼저,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등 현금이전이 아동가구의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아동수당 등 아동가구 대상 현금이전은 아동가구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쳐 아동 및 아동가구의 빈곤율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강지영, 2020; 정은희 외, 2018; Paradowski et al., 2020).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의 빈곤 및 불평등 영향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4>와 같다.

〈표 II-1-4〉 현금급여의 빈곤 및 불평등 영향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주요 분석	주요 결과
정은희 외(2018)	• 아동수당이 불평등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	• (당시 소득 하위 90% 지급) 지니계수 측정 아동수당 불평등 감소 효과 • (당시 소득 하위 90% 지급) 빈곤율 감소 효과: 0~18세 아동가구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및 아동 빈곤율 감소 효과
강지영(2020)	• 아동수당이 가구 소득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	• 아동수당은 가구소득 증가 및 빈곤 완화 • 특히, 총소득 및 가처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 상대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큼
Paradowski et al.(2020)	• 폴란드 아동수당이 불평등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	• 2016년에 도입된 아동수당(Family 500+) 지급이 불평등 및 빈곤 감소에 영향
Förster & Verbist(2012)	• 아동가구 대상 현금 이전이 아동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	• 현금이전은 아동 빈곤을 3분의 1로 감소시킴 • 단, 보육 서비스 비용에 대한 현금 지원은 아동수당 인상보다 빈곤 감소에 효과적

자료: 1) 정은희 외(2018).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강지영(2020). 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1), 63-87.  
 3) Paradowski et al. (2020). Inequality, poverty and child benefit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LIS Working Paper Series No. 799.  
 4) Förster, M., & Verbist, G. (2012). Money or kindergarten? Distributive effects of cash versus in-kind family transfers for young childr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35. Paris: OECD.

다음으로, 아동가구 대상 현금지원이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보다 해외 연구에서 현금지원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미곤 외(2019)의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해 가정 내 돌봄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이 기혼여성의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남재현(2021)의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영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감소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폴란드의 아동수당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아동수당이 계층 및 집단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Asakawa and Sasaki(2020)의 연구에서는 고소득 가구에서 아동수당과 유자녀 여성의 고용 및 노동시간이 부적 관계를 보였다. 폴란드 연구 결과에서는 2016년 도입한 아동수당 Family 500+ 제도가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교육수준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gda et al., 2020). 한편,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은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지급액이 증가할수록 지연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만 2세 이상인 경우에는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이 아니라 민간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금은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현금급여의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5>와 같다.

<표 II-1-5> 현금급여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 영향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주요 분석	주요 결과
김미곤 외 (2019)	• 양육수당이 기혼여성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 양육수당은 기혼여성의 고용률에 부적 영향
남재현 (2021)	• 아동수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아동수당은 기혼여성 노동시장참여 및 근로소득 감소에 영향 • 특히 영아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감소 효과 큼
Magda et al. (2020)	• 폴란드 아동수당(Family 500+)이 유자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 아동수당이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부적 영향: 교육수준 및 지역에 따라 차이
Asakawa & Sasaki(2020).	• 일본 아동수당이 모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아동수당의 큰 폭의 감소는 일본 고소득 가구 모의 고용 증가 및 노동시간 증가에 영향
Österbacka & Räsänen(2022).	• 핀란드 가정양육수당이 여성 노동시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	• 핀란드 가정양육수당 지급액이 높을수록 모의 가정 내 돌봄 기간 증가: 100유로 증가할 때마나 평균 2~3개월 기간 연장 • 현금지원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만 2세 이상에서는 노동시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 • 민간 데이케어 지원금은 모의 노동시장 복귀에 영향 없음

자료: 1) 김미곤 외(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남재현(2021). 아동수당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70, 133-166.  
 3) Magda et al. (2020). The effect of child benefit on female labor supply. IZA Journal of Labor Policy, 10(1), 10-17.  
 4) Asakawa, S., & Sasaki, M. (2020). Can childcare benefits increase maternal employment? Evidence from childcare benefits policy in Japan. IZA Discussion Paper, 13589.  
 5) Österbacka, E., & Räsänen, T. (2022). Back to work or stay at home? Family policies and maternal employment in Finland.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5(3), 1071-1101.

현금지원이 아동가구의 소비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다. 이래혁과 남재현(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아동가구의 기호품 소비 및 보건 소비는 감소시키고, 교육비의 소비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다만, 이러한 아동수당의 효과는 아동수 및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강지영 외(2020)의 연구에서도 아동수당은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래혁과 남재현(2020) 분석결과와는 달리 특히 저소득층에서 엔젤지수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식비 및 문화 활동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수당이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한국에서 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현금급여가 아동가구의 소비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6>와 같다.

<표 II-1-6> 현금급여의 아동가구 소비 및 지출 영향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주요 분석	주요 결과
이래혁, 남재현 (2020)	• 아동수당이 아동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수당의 수급 시 아동가구의 기호품(주류, 담배) 소비 및 보건 소비 감소 &amp; 교육 항목 소비 증가</li> <li>• 해당 효과는 아동수 및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 한 자녀 가구에서만 유효, 저소득층은 보건 관련 소비 감소 효과만 존재</li> </ul>
강지영 외 (2020)	• 아동수당이 아동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수당은 지출빈곤 및 엔젤지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 없음</li> <li>• 아동수당은 가구의 엔젤지수(교육비 지출 비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특히 저소득층</li> </ul>
Milovanska-Farrington(2021)	• 폴란드 아동수당(Family 500+)이 아동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도입 후 식비 및 문화 활동비 지출 증가 공과금 및 의료비 지출 빈곤 가능성 감소</li> </ul>

자료: 1) 이래혁, 남재현(2020).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3), 27-56.  
 2) 강지영 외(2020). 아동수당 도입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변화시켰는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7, 5-31.  
 3) Milovanska-Farrington, S. (2022). The effect of child benefits on financial difficulties and spending habits: evidence from Poland's Family 500+ program. International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19(4), 719-739.

마지막으로 아동가구 대상 현금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아동수당 단일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연구들에서는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정책 전반이나 다른 제도의 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다른 제도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연구 모두 동일하였다. 현금급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7>와 같다.

<표 II-1-7> 현금급여의 출산율 영향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주요 분석	주요 결과
김사현, 홍경준 (2014)	• 거시수준에서 가족정책이 출산율 및 여성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영향	•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시간 지원 정도가 큰 국가에서만 현금지원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최영, 김슬기 (2017)	• 아동수당 제도(OECD 19개국 시계열자료 분석)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현금지원은 일정 부분 합계출산율에 긍정적 영향 • 아동수당 제도 내 출산장려기제 도입한 국가에서 뚜렷함
김미곤 외 (2019)	• 양육수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2010년-2017년 양육수당 지원 확대 → 합계출산율 0.0742만큼 증가
Laroque & Salanié(2003)	• 프랑스 현금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프랑스 현금지원은 첫째아 출산에 정적 영향 •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감소: 셋째아 출산에는 미치는 영향 없음
Björklund(2006)	• 스웨덴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출산율 제고 및 출산 간격 단축에 기여
Parent & Wang (2007)	• 캐나다 퀘벡주 가족수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 출산율은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변화 없음 • 가족수당은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나 전체 출산자녀수에는 영향 없음
Goldstein et al. (2017)	• 미국·독일 아동수당 및 보육비 보조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아동수당에 비해 보육비 보조금이 출산율 제고에 비용 효율성 높음 • 아동수당 수준 및 보육시간은 유의미한 영향 없음

- 자료: 1) 김사현, 홍경준(2014). 출산율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1(2), 213-238.  
 2) 최영, 김슬기(2017).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0), 59-86.  
 3) 김미곤 외(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Laroque, G., & Salanié, B. (2004). Fertility and financial incentives in France. CESifo Economic Studies, 50(3), 423-450.  
 5) Björklund, A. (2006).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Lessons from Swede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9, 3-24.  
 6) Parent, D., & Wang, L. (2007).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in Canada: quantum vs tempo effect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que, 40(2), 371-400.  
 7) Goldstein et al. (2017). Evaluating how child allowances and daycare subsidies affect fertility. CFS Working Paper Series, No. 568.

## 2. 현금급여 관련 제도 검토

### 가. 현금성 지원 및 비용 지원 종합적 검토

현금, 서비스, 시간 지원 제도는 육아정책을 형성하는 세 축으로 각 제도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발전한다. 개별 제도들에 대한 논의일지라도 유관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제도 간에 정합성이나 영향력을 고려해야 정책 및 정책 변화의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가 인구학적 기준인 아동 연령에 따라 지급되며 보편적인 정액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지만, 이외에 유관 육아정책의 전반적인 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급여는 아동가구의 경제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가 주요 목적이므로 돌봄 비용이나 휴가휴직 등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따른 급여 지원 등 양육에 따른 비용 지원이나 소득 지원 제도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II-2-1]은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성 지원과 비용 지원 제도를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보편적 현금급여는 0~7세인 아동기 초기까지만 집중되어 있다. 가구특성을 반영하고 소득수준을 적용한 선별적 현금급여인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인 전체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다만, 모두 현금 지급방식은 아니며,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지급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전제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가구에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나, 제도 내에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액을 상향하여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수당 제도들과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통해 아동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현금급여와 유사하게 공적 이전 소득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다(김미곤 외, 2019: 84).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연동되어 지급연령이 조정된다. 현재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이 만 7세까지만이며, 이에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부터 적용된다. 다만, 아동수당과는 달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지급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선별적인 세제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 돌봄 비용 지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외하고 보육료, 유아학비, 시간제보육, 초등돌봄 비용 지원 모두 소득수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간지원에 따른 급여 제도에서는 육아 휴직급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미만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출산 직후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현금성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 지원 및 비용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제도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개편 쟁점을 도출하고자 각 제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먼저,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의 도입 및 전개 과정,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유관 제도로 바우처 제도, 세제 지원, 돌봄 비용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현황을 살펴보고, 시간 지원에 따른 급여 지원의 내용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림 II-2-1] 연령별 아동가구 대상 현금성 지원 및 비용 지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17세	
현금급여 /수당	보편	아동수당	●	●	●	●	●	●	●							
		부모급여	◐	◐												
		가정양육수당 <sup>3)</sup>			◐	◐	◐	◐	◐							
	선별	장애아동수당	●	●	●	●	●	●	●	●	●	●	●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	●	●	●	●	●	●	●	●	●	●	●	●
세제지원	자녀세액공제									▲	▲	▲	▲	▲	▲ <sup>6)</sup>	
	자녀장려금	▲	▲	▲	▲	▲	▲	▲	▲	▲	▲	▲	▲	▲	▲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														
시간지원에 따른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														
	배우자 출산휴가 <sup>4)</sup> (10일)	●														
	육아휴직급여(12개월)	●	●	●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sup>5)</sup>	●	●	●	●	●	●	●	●	●	●	●	●			
돌봄 비용 지원	보육료	○	○	○	○	○	○									
	유아학비	○	○	○	○	○	○									
	아이돌봄서비스	□	□	□	□	□	□	□	□	□	□	□	□	□		
	시간제보육(6개월~)	□	□	□												
	초등돌봄 (초등돌봄교실/방과후/늘봄학교)							□	□	□	□	□	□	□		

주: 1) 지급형태: ● - 현금 지급, ◐ -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지급 혼합 또는 선택, ○ - 바우처, ▲ - 세제 지원, □ - 서비스 비용 지원

2) 색깔표시 칸: 소득수준 및 취약가구 대상 차등지급

3) 가정양육수당은 보편적 현금급여 지원이나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 대상 차등 지급

4)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휴가로 변경 예정임

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기간 포함 최대 36개월까지 사용 가능

6) 자녀세액공제는 20세 이하까지 지급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수당 제도

### 1) 아동수당

#### 가) 제도적 배경

아동수당은 2018년 「아동수당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지원되고 있다. 아동수당의 필요성은 여러 해에 걸쳐 제기되어 왔으나(최성은 외, 2009: 26~29), 막대한 재정에 대한 우려와 재정투자 효과 등에 대한 논란으로 추진이 지연되다가 0~5세아 보편적 보육·교육비 보편적 지원보다도 늦게 도입되었다. 「아동수당법」 제정 이유에 의하면,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소극적여서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아동수당법 법률 제15539호).<sup>3)</sup>

제도 도입 시에는 지원대상이 6세 미만의 아동이고 소득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연령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다. 우선 소득기준의 경우는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로 정하였으나(아동수당법 제4조), 2019년 4월부터는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급대상 연령 기준은 2019년부터 7세 미만, 2022년 4월부터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지원수준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아동수당법 연혁).<sup>4)</sup>

3)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정 이유(2018. 3. 27. 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2902&ancYd=20180327&ancNo=15539&efYd=201809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4. 2. 26. 인출).

4)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법률 제16249호, 2019. 1. 15. 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6776&ancYd=20190115&ancNo=16249&efYd=2019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7515&ancYd=20211214&ancNo=18579&efYd=2022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4. 2. 26. 인출).

〈표 II-2-1〉 아동수당제도 주요 연혁: 지원대상 및 급여수준 변화(2018-2023)

구분	2018. 3 (아동수당법 제정)	2019. 1 (일부 개정)	2021.12 (일부 개정)	2021.12 (일부 개정)	2023.6 (일부 개정)
소득 기준	- 있음(2인 이상 전체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함)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타 가구 특성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 가구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아동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연령 기준	- 6세 미만	- 7세 미만	- 8세 미만	- 8세 미만	- 8세 미만
급여 수준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2세미만: 50만원 추가	- 2세미만: 50만원 이상 추가

자료: 아동수당법 제4조 [시행 2022. 4. 1,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제4조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출처: 2018-2021년 1월 내용은 박은정 외(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연구. p.35. 〈II-1-1〉 자료임.

이처럼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또한 급여수준은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고 제도 도입 시와 동일하며, 적용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 연령 기준은 점차 상향 조정되는 추세이나 학령기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 나) 현행 정책 개요

### (1) 지급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동안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4a: 3).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지닌 아동이며, 수급아동은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아동수당법

제2조).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고,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4a: 5).

급여액은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으로, 지원대상 가구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4a: 6).

## (2) 지급방식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24c: 6).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해야 한다.

## 다) 현황

아동수당 지원대상수는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만 6세 미만에게 지원하던 2018년에는 2,380천명이었으나, 지원 대상 연령이 상향된 2019년과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가, 2023년 이후 감소하여 2024년에는 2,338천명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24b: 54).

소요 예산은 제도 도입 시에는 7,096억원이었다가 2019년에 2조 1,62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원대상 아동 규모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4%p가 감소한 2조 1,115억원으로 나타난다.

아동수당의 국고보조율은 기준 보조율의 경우 서울 지역은 50%, 이외 지역은 70%이고, 차등보조율은 사회복지비 지수 및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10%가 적용되어 약 72~75% 선을 보인다(보건복지부, 2023a: 90).

〈표 II-2-2〉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예산 추이(2018~2024)

단위: 만명,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대상 (만명)	238	247	263.5	247.2	273.2	249.9	233.8
	0~5세	0~5세 /0~6세 (9월~)	0~6세	0~6세	0~7세	0~7세	0~7세
총 예산(억원)	7,096	2조 1,627	2조 2,834	2조 2,195	2조 4,039	2조 2,564	2조 1,115
전년 대비 증감(%)	-	204.8	5.6	- 2.8	8.3	-6.1	-6.4
국고보조율(%)	73.5	72.89	72.89	75.1	73.6	75.6	-

자료: 1) 보건복지부(2023a).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90.

2) 보건복지부(2024b).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54.

출처: 2018~2022년 내용은 박은정 외(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연구. p.36. 〈표 II-1-2〉 자료임.

## 2) 부모급여

### 가) 제도적 배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는 만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2022. 8. 19.). 보육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높은 급여 수준을 가진 보편적 수당 제도가 사회적으로 큰 저항 없이 도입된 데에는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사회적 과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박은정 외, 2022: 17).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모급여 이전에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은 2021년 12월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을 신설하였다.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조항에 아동 연령이 2세 미만일 경우 매월 50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동법 동조항은 부모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 6월 13일 ‘매월 50만원 이상’으로 개정되었다(아동수당법 제4조). 동시에 영아수당 도입 시 마련한 아동수당법 부칙 제6조의 특례 조항을 부모급여 지급에 맞추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30만원 이상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아동수당법 부칙 제6조).

## 나) 현행 정책 개요

### (1) 지급대상 및 지급액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아동에게 24개월 간 지급되는 정액급여이다. 부모급여는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이에 해당한다. 2023년에는 만 0세에게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만 0세에게 월 100만원, 만 1세에게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3c: 5~6).

### (2) 지급방식

부모급여의 지급방식은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현금과 바우처 지급으로 구분된다. 먼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상품권 형태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금액이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되고, 차액이 있을 경우 현금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3c: 6~7).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4만원은 보육료 바우처, 월 4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만 1세는 월 47만 5천원은 보육료 바우처, 월 2만 5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되며,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sup>5)</sup>

## 다) 현황

2023년 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3년에 323천명이었으며, 2024년에 472천명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 국비 예산은 1조 6,215억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지원 대상 수의 증가와 더불어 부모급여 지급액도 전년도에 비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684> (2024. 2. 20. 인출).

해 증가하여 국비 예산도 2조 8,88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4b: 61).

부모급여의 국고 보조율은 기준 보조율에 차등보조율 증감이 적용된다. 기준 보조율은 서울이 35%, 지방은 65%이며, 차등보조율은 사회복지비지수와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율 10%p 인상 또는 인하<sup>6)</sup>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23c: 111).

〈표 II-2-3〉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예산: 2023-2024년

단위: 천명,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 대상(천명)		323	472
총 예산	국비	1조 6,215	2조 8,887
	지방비	7,336	-7)

자료: 보건복지부(2024b).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61.

대한민국정부(2023a).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1권. p.282.

### 3) 가정양육수당

#### 가) 제도적 배경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에 의거하여 2009년 7월부터 지원되며,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양육수당 신설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유에 의하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다수 가정에서 출산 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165호). 이때 가정양육수당 도입으로 보육의 개념이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보육의 범위가 서비스에 국한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보육 시설 중심의 서비스 중심이 아닌 가정에서의 양육지원까지 포함되고, 보육정책의 대상도 시설 이용 아동만이 아닌 전체 영유아로 확대되었다. 이는 곧 가정양육수당이 서비스 비용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도로 정착하였음을 말해준다.

6) 차등보조율에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적용: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지자체  
차등보조율에 국고보조율 10%p 인하 적용: 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 재정자주도 85 이상인 지자체

7) 정부 자료 발표 후 보완·업데이트 예정임.

〈표 II-2-4〉 가정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보육의 정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

가정양육수당 도입 이전(~2009. 4. 20)	가정양육수당 도입 이후(2009. 4. 21~)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b>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b> 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자료: 영유아보육법 연혁.<sup>8)</sup>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면, 지원대상은 제도 도입 시에 차상위계층 만 2세 미만 영아에 한정하였다가 2011년에 36개월 이하 아동, 2013년 무상보육의 도입에 따라 3~5세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박은정 외, 2022: 37-38). 이후 2022년 영아수당과 2023년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0~1세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급여수준은 2009년에는 10만원으로 동일한 수준 였으나, 2011년에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0세아는 20만원, 1세아는 15만원, 2세아는 1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가구특성에 따라서도 차등 지원되어 농어촌아동과 장애아동의 경우는 지원대상 연령을 만 5세 이하로 확대 적용하였다. 지원대상 아동 연령이 0~5세로 확대되는 2013년부터 이들 가구의 양육수당 지원액은 보편적 지원수준보다 소폭 상향되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4년에는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24c: 358).

〈표 II-2-5〉 가정양육수당 주요 연혁: 지원대상 및 급여수준 변화(2009-2024)

구분	지원 대상			지원액
	중복금지 기준	소득기준	월령기준	
2009년 7월 ~2010년	보육료 지원대상과 중복금지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생계비 120%)	만 0~1세(24개월 미만)	월 10만원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과 중복금지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생계비 120%)	만 0~2세	월 20만원
			12개월 미만	월 15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0만원
			24~36개월 미만	월 10만원

8)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연혁(법률 제9511호, 시행 2009. 4. 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92029&ancYd=20090320&ancNo=09511&efYd=2009042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4. 2. 26. 인출).

구분	지원 대상			지원액	
	중복금지 기준	소득기준	월령기준		
2012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대상과 중복금지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생계비 120%)	만 0~2세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농어업외 소득 4천만원 미만)	만 0~5세	최대 84개월 미만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45%
		장애아동 (보편적 지원)	만 0~5세	36개월 미만 36~만5세(취학전)	월 20만원 월 10만원
2013년 3월 ~2022년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중복금지	보편적 지원	만 0~5세	12개월 미만 12~24개월미만 24~만5세(취학전)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보편적 지원)	만 0~5세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7.7만원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48~취학전	월 10만원				
장애아동 (보편적 지원)	만 0~5세	0~35개월 36~취학전	월 20만원 월 10만원		
2023년 ~2024년		보편적 지원	만 2~5세	24~85개월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보편적 지원)	만 2~5세	24~35개월	월15.6만원
				36~47개월	월12.9만원
48~85개월	월10만원				
장애아동 <sup>3)</sup> (보편적 지원)	만 2~5세	24~35개월 36~85개월	월20만원 월10만원		

주: 200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액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1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0~11개월 월20만원, 12~23개월 월15만원, 24~35개월은 월10만원임(보건복지부, 2023b: 365).  
 자료: 보건복지부(2024c).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58.  
 출처: 2022년까지 내용은 박은정 외(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p.38 <표 II-1-3> 자료임; 권미경 외(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63 <표 III-2-1> 재인용.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어 이후로 지원 기준은 서비스 비용지원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보육료 지원이 0~5세로 확대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도 그에 맞추어 3~5세로 확대되었다. 또한 보편적 비용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이 우려되는 장애아와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적 권리에 부합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형평성 제고에 대한 접

근은 비용지원에 한정되어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의 측면에서 돌봄 시간 지원을 포괄하려는 노력은 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보편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가 앞서 다른 바와 같이 2018년에서야 도입된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해 양육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현행 정책 개요

### (1) 지급대상 및 지급액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부터 85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4c: 358). 재외국민 출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정을 중단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 등 추가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 2024c: 360).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을 지원하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2024년 기준으로 양육수당은 일괄 100,000원이고, 농어촌 양육수당은 24~35개월 156,000원, 36~47개월 129,000원, 48개월~85개월 아동은 100,000원이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200,000원, 36~85개월 아동은 100,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24c: 358).

한편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고,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5항 및 제6항).

### (2) 지급방식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며(보건복지부, 2024c: 361), 앞서 다른 아동수당과는 달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

### 다) 현황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수는 제도가 도입된 2009년에는 110천명이었다가, 지원 대상이 만 5세까지로 확대된 2013년에는 1,193천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부모급여(영아수당) 도입으로 2023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189천명이었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8천명이 감소한 131천명으로 나타난다 (보건복지부, 2024b: 61).

소요 예산은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여 1,759억원이고, 2024년에는 1,0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5%p 감소하였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지역이 35%, 이외 지역이 65%이고 10% 범위에서 가감되어 2022년 66.44%에서 2023년 68.76%(보건복지부, 2023a: 28), 2024년에는 68.7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 II-2-6〉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예산 추이(2009/2010/2013/2016/2018/2020~2023)

단위: 천명(월 기준), 억원

구분	2009 (신규)	2010	2013	2016	2018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 대상	110	114	1,193	933	745	642	595	427	189	131
	0~1세		0~5세					2~5세		
	차상위계층		전(全) 계층					전(全) 계층		
총 예산	324	657	8,810	12,192	10,891	8,428	7,608	5,082	1,759	1,081

주: 1) 지원대상 아동수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수급아동을 합한 수치임.  
 2) 2009~2022년 내용은 박은정 외(2022) 자료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23a).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28.  
 2) 보건복지부(2024b).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61.  
 3) 박은정 외(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연구. p.39. 〈표 II-1-4〉.

### 다. 세제 지원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의 취지에서 자녀 관련 조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녀에 대한 세제 지원은 「소득세법」에 의거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자녀장려세제가 있다. 소득세법상 제도로는 기본공제로 만 20세 이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와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아동가구에 대한 개별 제도로 자녀세액공제가 실시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세제상 지원을 위해 현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는 모두 소득세가 비과세이다(박연서, 조형태, 2023; 정유석, 2020).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자녀 관련 세제 지원인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녀세액공제

### 가) 정책 개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 8세 이상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이상 자녀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정유석, 2020). 현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수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35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3명 이상인 경우는 연 35만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다. 즉, 자녀가 3명인 경우 65만원, 4명인 경우는 95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첫째아 연 30만원, 둘째아 연 50만원, 셋째아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sup>9)</sup>

2024년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9)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2024. 2. 26 인출).

〈표 II-2-7〉 자녀세액공제 기준 및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세액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자녀수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 65만원, 4명: 95만원, 5명 125만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출생순위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2024. 6. 28 인출)를 재구성하여 작성.

### 나) 현황

통계청 국세통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통해 자녀세액공제 인원과 공제 금액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녀세액공제 신고 인원은 2021년은 약 274만명에서 2022년은 약 273만명으로 약 9천명 감소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2021년 6,376억 75백만원에서 2022년 6,394억 17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국세청, 2023).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확대로 인해 인원 감소에서 불구하고 전체 공제 금액은 증가하였다.

〈표 II-2-8〉 자녀세액공제 신고 인원 및 공제 금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인원	2,740,678	2,731,642
금액	637,675	639,417

자료: 국세청(2023).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 (총괄).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2024. 2. 26 인출)에서 추출하여 작성.

## 2) 자녀장려금

### 가) 정책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에 따르면,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다(정유석, 2020: 166). 자녀장려

세제 2024년부터 대상 및 지급액이 크게 확대되었다. 소득 기준은 연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23b: 14).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 총소득, 자산규모, 부양자녀수 등 자녀장려세제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금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국적자와 혼인한 상태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등 소득활동을 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금액 산정은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상이한 총급여액 기준이 적용되며 적용 기준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산정된다. 먼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천100만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2천500만원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자녀장려금 산정 공식에 따라 100만원 미만에서 최소 50만원이 지급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표 II-2-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산정

구분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 자격	소득기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자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기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국적자와 혼인상태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 금 산정	총급여액 기준	2천100만원 미만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2천500만원 미만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4천900분의 50]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4천500분의 50]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29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 나) 현황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자녀세액공제에 비해 상당히 적다. 또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79,302가구에서 2022년 514,573가구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 총액도 2018년 7,543억 61백만원에서 2021년 4,966억2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 다소 증가하여 4,998억32백만원이 지급되었다(국세청, 2023).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다자녀일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존에 ‘4천원 미만’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저소득 가구의 자녀세액공제 대상 비중도 작고, 고소득자의 자녀세액공제 비중은 높았다(정유석, 2020). 2024년부터 총급여액 기준인 ‘7천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2-10〉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2018~2022년)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구수	879,302	742,577	704,543	577,802	514,573
금액	754,361	645,727	605,951	496,602	499,832

자료: 국세청(2023). 국세통계연보. 14-3-13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현황 I (산정구간).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2024. 2. 26 인출)에서 추출하여 작성.

## 라. 유관 지원 제도

### 1) 첫만남이용권

#### 가) 정책 개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 1. 5.).

첫만남이용권은 ‘20년 12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과제 발표 후 ’21년 12월 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1년 12월 14일

공포되었다(보건복지부, 2024d: 3). 근거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이다(보건복지부, 2024d: 3).

지급대상은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24d: 4). 지원 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는 300만원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4d: 4).

지급방식은 바우처 형태이며,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4d: 5). 단, 수급아동이나 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 예외사항이 있다(보건복지부, 2024d: 5).

## 나) 현황

전체 지원대상은 '22년 장래인구추계 중저위 기준 275만명에서 '23년 장래인구추계 중위 233천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23a: 25). 전체 지원대상 중 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첫만남이용권을 제공받은 대상자는 약 30만 3천 명이었으며 사용 가능 바우처 6072억 중 약 5433억원이 실제 사용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도자료, 2023. 4. 11.).

첫만남 이용권 지원 예산은 '22년 3,729억원에서(보건복지부, 2023a: 25) '23년 3,194억원, '24년에는 3,804억원(△610억원, 19.1%)이 배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24b: 10, 54).

## 2) 돌봄 비용 지원

### 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1)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은 0-5세 아동(보건복지부, 2024c: 316)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24b: 330). 주민등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24c: 316). 단, 난민 및 아프칸 특별기여자는 예외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24c: 316).

보육료 지원은 결재권자(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며,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보건복지부, 2024c: 336).

연령별 지원단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2-11〉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24.1.1~)	540,000	540,000	810,000
		1세반('24.1.1~)	475,000	475,000	712,500
		2세반('24.1.1~)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24.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24.3.1~)	280,000	280,000	420,000

자료: 보건복지부(2024c).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p.337.

〈표 II-2-12〉에서 제시된 2022년말 기준 보육예산(국비 기준)을 살펴보면, '23년 보육예산은 6,678,017백만원으로 '21년 대비 14.8% 증가하였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에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시간제 보육지원, 표준보육비용 조사(3년주기사업)가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23년 기준 3,025,145백만원으로 '21년 대비 4.8% 감소하는 것으로 책정되었다. '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24년 예산은 2조 6,731억원으로 3,520억원(△11.6%)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24b: 56).

〈표 II-2-12〉 2023년 보육예산(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예산 (B)	증 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5,893,110	5,818,712	6,678,017	859,305	14.8%
□ 영유아보육료지원	3,223,853	3,199,193	3,045,558	△153,635	△4.8%
◦영유아보육료 지원	3,202,771	3,178,111	3,025,145	△152,966	△4.8
◦시간제 보육지원	20,882	20,882	20,413	△469	△2.2
◦표준보육비용 조사	200	200	순감	순감	3년 주기사업

구 분	'22예산		'23예산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 어린이집 기능보강	64,762	64,762	52,643	△12,119	△18.7%
□ 어린이집 관리	34,500	34,447	31,482	△2,965	△8.6%
□ 어린이집 지원	1,688,700	1,688,700	1,751,026	62,326	3.7%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08,163	482,907	175,854	△307,053	△63.6%
□ 영아수당 지원	373,132	348,703	1,621,454	1,272,751	365.0%

자료: 보건복지부(2023d). 2022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p.303. 표 내용을 일부 편집함.

(2) 유아학비 지원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생애 출발선에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24a: 1).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된다(교육부, 2024a: 1).

〈표 II-2-13〉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금액(2024년 3. 1. 기준)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5세	2018.1.1.~2018.12.31.	100,000	280,000
4세	2019.1.1.~2019.12.31.		
3세	2020.1.1.~2021.2.28.		

출처: 교육부(2024a).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2.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보장과 사립 유치원 재원시에는 추가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24a: 1).

〈표 II-2-14〉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2024년 3. 1. 기준)

지원대상	지원액(원/월)	비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li> <li>•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li> </ul>

출처: 교육부(2024a).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2.

2024년에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과 맞물려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과 학부모 경감을 위해 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지원이 진행되었다(교육부, 2024: 1). 대상 연령은 '25년에는 5세, '26년에는 4·5세, '26년에는 3·4·5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교육부, 2024: 1).

〈표 II-2-15〉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2024년 3. 1. 기준)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5세	2018.1.1.~2018.12.31.	50,000	50,000

출처: 교육부(2024a).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2.

지급신청은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혹은 친권자·후견인)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교육부, 2024a: 3). 지원금은 학부모가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된다(교육부, 2024a:3).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다(교육부, 2024a: 8).

지원기간은 3세 이상 유아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3년간 지원되며, 3년 초과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이 중단된다(교육부, 2024a: 4).<sup>10)</sup>

교육부는 2024년 만3~5세에 해당하는 82만 3435명에게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3조 2106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다.<sup>11)</sup> 이는 2023년에 비해 259,406백만원 줄어든 것으로 7.5% 감소하였다.

〈표 II-2-16〉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2결산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	3,829,046	3,470,037	3,210,631	△259,406	△7.5

자료: 교육부(2024b). 교육부 2024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p.345.

10)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교육부, 2024a: 4).

11) 베이비뉴스(2023년 8월 29일). 교육부 내년도 예산 편성...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조 2106억 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539> (2024. 9. 12. 인출).

(3) 이용 현황

2022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은 1,095,450명(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며(보건복지부, 2023d: 4), 연령별로는 영아(0~2세)는 651,700명, 유아(3~6세 이상)는 443,750명이다(표 II-2-17 참조).

〈표 II-2-17〉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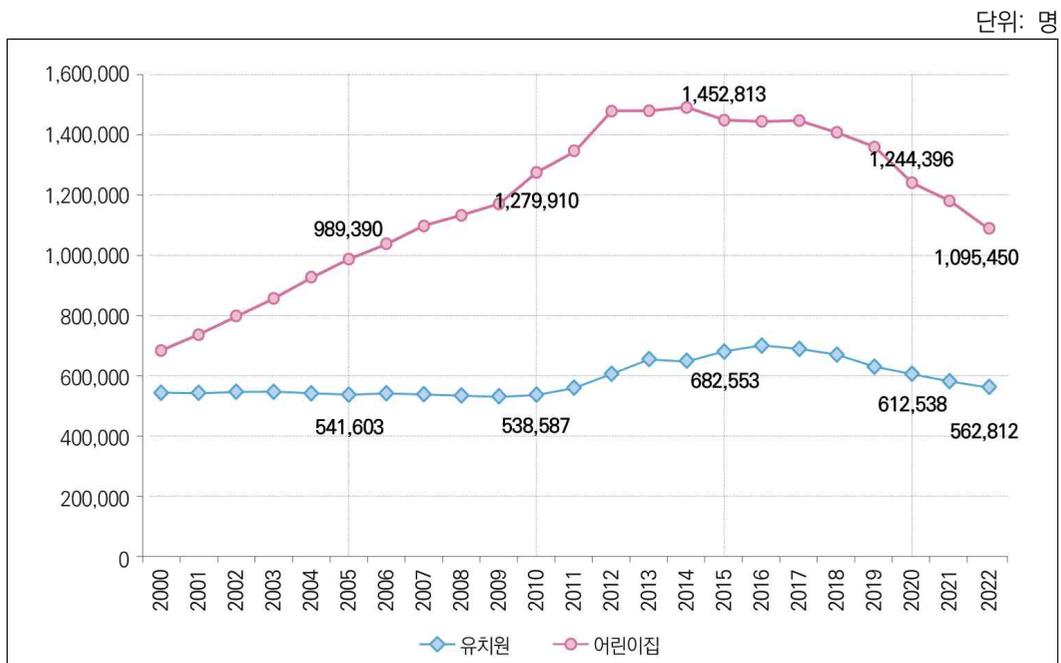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계
어린이집	126,606	239,157	285,937	165,335	135,413	138,322	4,680	1,095,450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2023d). 2022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p.103. 표 내용을 일부 편집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은 2000년 686,000명에서 2022년 1,095,45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II-2-1〕 유치원 원아수 및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 추이(2000-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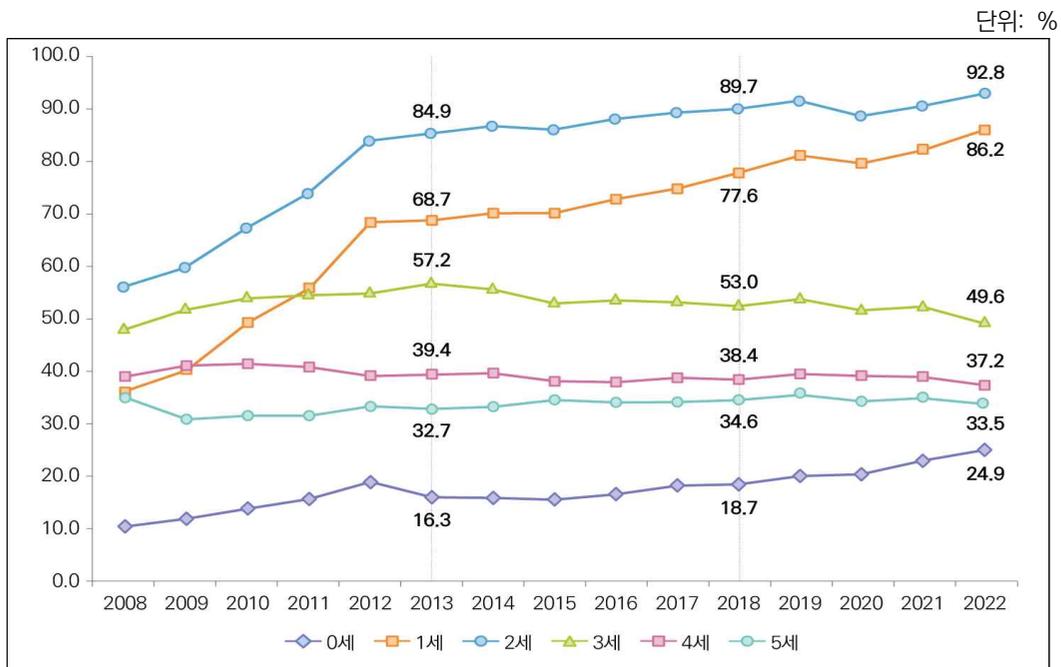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연보.  
 2) 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 영유아 주요 통계.  
 3) 보건복지부(2022). 보육통계(2022년 12월 말 기준).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2023. 06. 15. 인출).  
 5)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kicce.re.kr> (2023. 06. 15. 인출).  
 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2023. 06. 15. 인출).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p.25.

[그림 II-2-2]를 통해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를 보면, 2013년 기준 5세, 3세, 1세의 이용률이 50% 이상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후 3세의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5세와 1세의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5세는 92.8%, 1세는 86.2%이다.

0세의 이용률은 2008년에 10.6%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24.9%이다.

[그림 II-2-2]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2008-2022)<sup>12)</sup>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p.31.

##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1) 정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 향상과 양육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a: 13).

12)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보육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자 수/생활연령별 주민등록인구\*100으로 산출. (어린이집 이용자 수는 해당연령 이용자만 포함, 0세는 생활연령 기준 0세와 1세 포함)(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p.31.)

근거법은 「아이돌봄 지원법」으로 2012년 제정 이후 2023년 4월 11일 일부 개정되었다[2023.10.12. 시행, 법률 제19338호](여성가족부, 2024a: 13).

지원대상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sup>13)</sup>, 아이돌봄서비스 유형과 대상은 다음<표 II-2-18>와 같다.

<표 II-2-18>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대상

구 분	대 상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아동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 ~ 12세 아동

자료: 여성가족부(2024a).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p.15-16.

신청은 아동의 부모 및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가 할 수 있으며,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4a: 27).

이용 시간은 영아종일제서비스(1회 3시간 이상)를 제외하고 기본이 1회 2시간 이상이며, 시간당 기본요금은 영아종일제 기본이 11,630원,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3,950원, 기관연계서비스 18,600원이다(여성가족부, 2024a: 16).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에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가정에서 신청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 2024: 17). '가~다'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이며,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4: 17, 19). '라'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4a: 17, 19).

1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front/biz/guide> (2024. 5. 27. 인출).

〈표 II-2-19〉를 통해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은 ‘가형’ 일반가정은 85%, 특별가정은 90%이다. ‘나~다’ 형은 일반가정이나 특별가정 모두 정부지원 비율이 각각 60%, 15%로 동일하며, ‘라’ 형은 일반과 특별가정 모두 본인부담 비율이 100%이다. 정부지원 시간은 ‘가~다’ 형은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이고,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4a: 64).

〈표 II-2-19〉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일반	9,886원 (85%)	1,744원 (15%)
		특별	10,467원 (90%)	1,163원 (10%)
나형	120% 이하	일반	6,978원 (60%)	4,652원 (40%)
		특별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일반	2,326원 (15%)	9,304원 (85%)
		특별	2,326원 (15%)	9,304원 (85%)
라형	150% 초과	일반	-	11,630원 (100%)
		특별	-	11,630원 (100%)

주: 특별은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임.  
 자료: 여성가족부(2024a).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64. 표를 박은정 외(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p.57 〈표 II-3-9〉 틀을 활용하여 2024년 수치로 변경함.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하여 동일 아동이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a: 65). 기본형과 종합형은 돌봄 범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종합형은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되는 형태이다(여성가족부, 2024a: 66).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시간 초과 시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4a: 67).

〈표 II-2-20〉을 보면, 기본형과 종합형 모두 출생시기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다시 나누어져 있으며, 정부지원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B유형보다 A유형이 대상 아동 연령대 기준이 낮으며, 기본형과 종합형 모두 A유형의 정부 지원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기본형은 일반가정과 특별가정의 정부지원 비율이 다르나 종합형은 동일하다.

〈표 II-2-20〉 시간제서비스의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유형	기준 중위 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일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특별	10,467원 (90%)	1,163원 (10%)	9,304원 (80%)	2,326원 (20%)	9,495원	4,225원	8,440원	5,280원
나형	120% 이하	일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특별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 이하	일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특별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일반	-	11,630원	-	11,630원	-	15,110원	-	15,110원
		특별	-	11,630원	-	11,630원	-	15,110원	-	15,110원

주: 특별은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임.  
 자료: 여성가족부(2024a).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67-68. 표를 박은정 외(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p.58 〈표 II-3-10〉 틀을 활용하여 2024년 수치로 변경함.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권자는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로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가 적용된다(여성가족부, 2024a: 69). 이용금액은 시간당 13,950원이며, 1회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4a: 69).

〈표 II-2-21〉를 보면, ‘가~나’형은 A,B 유형간 정부지원 비율이 차이가 있지만 ‘다~라’형은 비율이 동일하다. A형(‘가’, ‘나’), B형(‘가’)은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할 수 있는데, 정부지원시간 차감을 적용받아 〈표 II-3-11〉 비율대로 받거나,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을 받지 않고, A, B 유형 모두 50%로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4a: 70).

〈표 II-2-21〉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유형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일반	11,858원 (85%)	2,092원 (15%)	10,463원 (75%)	3,487원 (25%)
		특별	12,555원 (90%)	1,395원 (10%)	11,160원 (80%)	2,790원 (20%)
나형	120% 이하	일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특별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다형	150% 이하	일반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특별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라형	150% 초과	일반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특별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주: 특별은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임.  
 자료: 여성가족부(2024a).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71. 표를 박은정 외(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p.59 〈표 II-3-11〉 틀을 활용하여 2024년 수치로 변경함.

2024년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200%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수준별 정부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50%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만 운영되었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라형의 기준중위소득을 150% 초과에서 200%이하로 적용하여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0~5세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은 다형 30%, 라형 15%로, 6~12세 정부지원 비율은 나형 40%, 다형 20%, 라형 10%로 확대될 예정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2) 현황

‘24년도 책정된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467,866백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354,613백만원에 비해 31.9% 증액하였다(여성가족부, 2024b: 20).

〈표 II-2-22〉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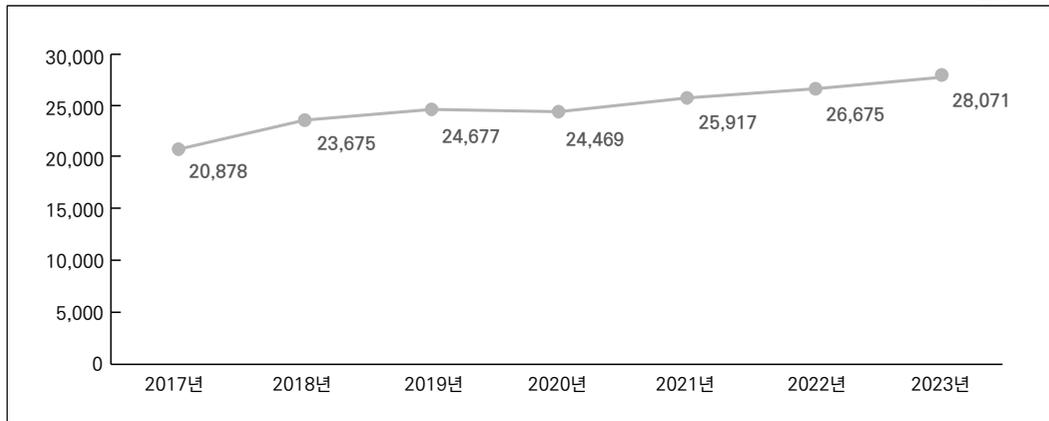
구 분	'22결산	'23본예산 (A)	'24예산 (B)	증 감	
	본예산			(B-A)	%
아이돌봄 지원	279,524	354,613	467,866	113,253	31.9

자료: 여성가족부(2024b).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0.

아이돌보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20,878명에서 2023년 28,071명으로 증가하였다(그림 II-2-3 참조).

[그림 II-2-3] 아이돌보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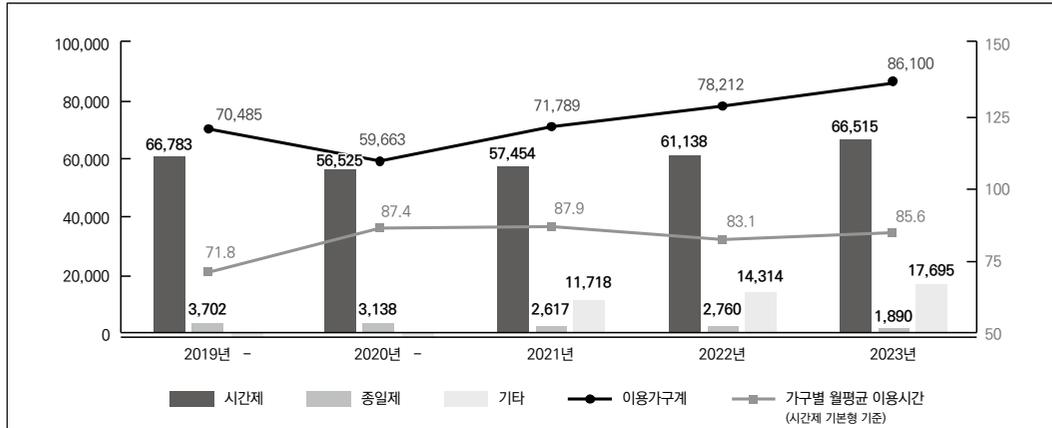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front/biz/stts>(2024. 5. 27 인출), 아이돌보미 현황 표를 그래프로 변경함.

아이돌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0,485명에서 2020년 59,663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86,100명이었다. 그 중 시간제 서비스 이용자는 5-6만으로 종일제나 기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월평균 이용 시간도 2019년 71.8시간 이후 평균 85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그림 II-2-4 참조).

[그림 II-2-4] 아이돌봄 이용자 현황



주: 기타-일시연계, 기관연계, 코로나19대응 의료·방역인력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front/biz/stts>(2024. 5. 27. 인출).

## 다) 시간제 보육 지원

### (1) 정책 개요

시간제보육 지원은 양육자가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외, 2024: 3).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이다(보건복지부 외, 2024: 3).

〈표 II-2-23〉를 보면, 시간제보육 지원대상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이다. 이용대상은 연령에 따라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구분된다.

〈표 II-2-23〉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필수항목	독립반	통합반
이용대상	6개월~3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6개월~2세반* 영아 (내/외국인)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주: 2세반 출생일 기준: '21.1.1~'21.12.31. 까지  
 출처: 보건복지부 외(2024).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 안내. p.3 이용 및 지원대상 표를 인용함.

시간제보육은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월 6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단가는 시간당 5천원이다(보건복지부 외, 2024: 38). 시간당 이용단가 5천원 중 정부가 3천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2천원인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5천원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외, 2024: 38).

시간제보육은 독립반은 이용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통합반은 1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이용 30일 전부터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신청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외, 2024: 40).

(2) 현황

시간제 보육지원 예산은 '23년 20,413백만원에서 '24년 25,005백만원으로 약 22.5%가 증가하였다.

〈표 II-2-24〉 시간제보육지원 예산(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3예산		'24예산 (B)	증 감 (B-A)	
	본예산	추경(A)			%
·시간제 보육지원	20,413	20,413	25,005	4,592	22.5

자료: 보건복지부(2024e). 2023년도 보육통계. p.306.

〈표 II-2-25〉를 보면, 시간제 보육은 2015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된 이후 제공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827개소, 1000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건수는 2022년 기준 350,370명으로 2022년 대비 77%나 증가하였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도자료, 2023. 5. 30: 2).

〈표 II-2-25〉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공기관* (개소/반)	347/382	382/437	373/443	402/490	578/681	740/857	796/946	827/1000
이용건수 (건)	199,658	288,827	334,961	372,403	136,059	198,374	350,370	-

주: 자료는 보육정책(DW시스템)  
출처: 1) 제공기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at4.do>), 알림마당-보육통계(2024. 5. 29. 인출).  
2) 이용건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8. 30.),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p.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도자료(2022 5. 20.). 필요한 시간에 아이 맡기는 시간제보육반 89개 확대 운영. 보도자료 p.2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2023년 10월 기준) 오전 11-12시가 253,561명, 그 다음은 10시-11시로 236,340명으로 주로 오전 중에 이용시간이 집중되어 있고 1회 이용 시 평균 4.00시간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육진흥원, 2024: 65).

## 라) 초등 돌봄

### (1) 개요

전 정부는 온종일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더해 다함께돌봄센터(2017년~)와 학교돌봄터(2021년~)를 도입하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 전일제 돌봄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과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초등 전일제학교라는 명칭이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켜 이후 '늘봄학교'로 정책명을 변경하였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3; 유해미 외, 2023: 168).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로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방과후 프로그램(교과 연계, 특기적성)과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위한 에듀케어 집중 지원을 포함하며, 돌봄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아침과 저녁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교육부, 2023; 유해미 외, 2023: 168~169).

## (2) 현황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초등 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교실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는 2017년 245,303명에서 2019년 290,358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56,213명으로 감소했다. 2018년 개소한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에 424개 센터로 늘어났으며, 참여 아동 수도 2018년 345명에서 2020년에는 7,88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에 4,136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4,008개로 줄었고, 참여 아동 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7년 250개에서 2020년 304개로 다소 증가를 보였고, 참여 아동 수도 소폭 증가했다.

〈표 II-2-26〉 초등 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2017-2020)

단위: 학급,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등돌봄교실	교실 수	11,980	12,398	13,710	14,278
	학생 수	245,303	261,287	290,358	256,213
다함께돌봄센터	센터 수	-	17	173	424
	아동 수	-	345	3,091	7,886
지역아동센터	센터 수	4,136	4,138	4,081	4,008
	(초등) 아동 수	85,004	87,501	87,775	83,691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센터 수	250	260	280	304
	(초등) 아동 수	5,410	5,530	5,705	6,440

자료: 이희현 외(2021b).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98; 유해미 외(2023). 아동양육 지원정책 체계화 및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173에서 재인용.

[그림 II-2-5]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2021-2022)



자료: 교육부(2023).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p.3; 유해미 외(2023). 아동양육 지원 정책 체계화 및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173에서 재인용.

### 3) 시간지원에 따른 급여

#### 가) 육아휴직제도

##### (1) 개요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는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을 완화해주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기업 입장에서 자녀양육으로 인해 숙련된 근로자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지원 정책이다.<sup>14)</sup>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휴직 시작일 이전에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육아휴직

14)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2024. 3. 3. 인출).

신청 거부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0년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자일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다(고용노동부, 2023: 149~150).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자녀당 부모 각각 1년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1년 이상 부여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2회 가능하고,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의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다. 그러나 육아휴직 이용 중에 지급액 전부가 지급되지 않고, 지급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을 계속 근로하면 일시불로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었다.<sup>15)</sup>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 2024-390호)를 통해 사후지급금을 폐지할 것을 공고한 상태이다.<sup>16)</sup>

2024년 1월 1일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돌봄을 위해 양쪽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한액도 부모가 모두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용노동부, 2024).

육아휴직은 동거친족으로 구성된 가족 사업장을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용노동부, 2023: 152).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였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판결을 받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무복귀에 대한 사항이나 근속기간의 인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용노동부, 2023: 159~162).

15)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2024. 3. 3. 인출).

16)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41000314](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41000314) (2024. 10. 30. 인출).

〈표 II-2-27〉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 근로자 각 1년씩 사용 가능</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사용 2회</li> </ul>
신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원</li> <li>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법에 의한 수급자격 절차 참고</li> </ul>

자료: 고용노동부(2023).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145.

## (2) 현황

고용보험 DB 통계자료를 통해 2015년 이후 성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와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추이를 살펴보았다.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2020년까지 다소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다소 답보 상태였으나, 2022년에 전년도에 비해 만 명 이상 급증하였다. 2023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육아휴직 사용자 자체의 변동이라기보다 출생아 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2015년에 4,872명에 불과하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 37,884명으로 8배가량 증가하였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2022년에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2023년에 사용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사용자 수의 급증은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으로 급여의 상한액이 크게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 및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감소한 해에도 육아휴직 지원 금액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28 참조).

〈표 II-2-28〉 성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지원금 추이: 고용보험 DB(2015년~2023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 휴직자 수	계	87,339	89,795	90,122	99,199	105,165	112,040	110,555	131,084	126,008
	여성근로자	82,467	82,179	78,080	81,537	82,868	84,617	81,516	93,200	90,672
	남성근로자	4,872	7,616	12,042	17,662	22,297	27,423	29,039	37,884	35,336
육아 휴직 지원 금액	계	619,663	625,243	680,430	839,083	1,058,853	1,212,143	1,297,514	1,657,231	1,796,995
	여성근로자	592,238	585,186	625,270	733,354	885,073	977,216	1,024,231	1,271,631	1,404,497
	남성근로자	27,425	40,057	55,160	105,729	173,780	234,927	273,283	385,600	392,498

주: 1) 육아휴직자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자료  
 자료: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24. 6. 6. 인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공무원, 교사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육아휴직통계에 서도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보험 DB에 비해 공공 부문의 육아휴직 사용자를 포함한 육아휴직통계의 상승폭이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수의 증가폭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한다.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을 보면 부의 비중이 2015년에는 2.7%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27.1%로 약 4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의 증가는 부가 5 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미미하였다(표 II-2-29 참조).

〈표 II-2-29〉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및 비중: 육아휴직통계(2015년~2022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sup>p</sup>
계	136,560	140,403	142,038	153,741	163,256	171,959	175,110	199,976
부	8,220	11,965	18,160	25,062	32,051	38,813	42,197	54,240
비중	2.7	6.0	8.5	12.8	16.3	19.6	24.0	27.1
모	128,340	128,438	123,878	128,679	131,205	133,146	132,913	145,736
비중	97.3	94.0	91.5	87.2	83.7	80.4	75.9	72.9

주: 2021년 수치는 잠정치(p)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12. 19.).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30을 토대로 재구성

## 나)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태아의 안정적인 성장발달을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용노동부, 2021: 9).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1953년 8월 9일 부터 유급보호휴가 60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되었으며, 2001년 11월 1일부터는 무급으로 30일을 더한 90일로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였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68조의8에 근거하여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을 135만원으로 지정하였다(고용노동부, 2021: 10). 이후 2017년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0년도부터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용노동부, 2021: 10).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2-30>과 같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지원,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 재직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사회적 역할 강화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용노동부, 2021: 27~28).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고용노동부, 2021: 51),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를 조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용노동부, 2023b: 53).

<표 II-2-30> 출산휴가 제도 개요

구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단, 다태아 일 경우 120일 부여하며, 이때 출산후에 60일 보장해야 함	- 10일(유급) 부여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분할사용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	-1회
소득보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단, 최초 60일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대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 최종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200만원)	- 대기업 : 10일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지원상한액 401,9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요건

구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분보장	-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봄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1) 고용노동부(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9.  
 2) 고용노동부(2023a).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51.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2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4) 고용노동부(2023b).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p.56.

####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1년 동안 지원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간을 더해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초과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 222~223).

급여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축된 시간 중 처음 5시간분에 대해서는 100% 급여가 지급되며,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80%가 지급되어 왔다. 최초 5시간에 대한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며, 나머지 시간에 대한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동일하게 50만 원이다(고용노동부, 2023: 224~225).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주당 최초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 대한 지원 규정도 마련되었다.<sup>17)</sup>

17)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483240573](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483240573) (2024. 9. 2. 인출).

### 3. 소결: 현금급여 제도 개편 쟁점

지금까지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성 지원 및 비용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세제지원 제도인 자녀 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을 검토하였다. 또한 유관 제도로 첫만남 이용권,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 비용 지원 등 제도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시간지원에 따른 급여로 육아 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제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핵심 논의 대상인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가. 아동수당 관련 쟁점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이후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 이후 지급연령 및 지급액 상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2018년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이후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현재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은 학령기 아동(만12세)도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에 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매우 낮다.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의 지급 연령을 살펴보면, 주로 18세 전후까지 지급한다. 또한 한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연령의 확대가 핵심적인 개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로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는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고제이 외, 2022; 김미곤 외, 2019; 이영숙 외, 2020; 이영숙 외, 2021). 요컨대 아동수당의 제도적 목적을 실현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지급연령 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확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소요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동수당 도입 이후 지급수준 상향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지급액 조정 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액 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정책화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급액 상향 방안으로 자녀 연령 구간대별 인상과 지급액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이영숙 외 2020; 이영숙 외 2021), 국제적 급여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소 월 2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이소영 외, 2023).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거나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다(고제이 외, 2022: 31). 단지 아동수당을 도입하였다는 형식주의(tokenism)적 제도 운영에서 탈피하고 지원의 충분성 및 적절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개편의 주요 쟁점은 차등 지원 방식의 도입이다. 앞서 보편주의 다차원성 및 제도 설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정액급여일지라도 보편주의 내에서 표적화(targeting)하고 ‘긍정적 차별’로 욕구가 큰 집단에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설계가 추가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다수 국가들도 가구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이나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방식을 아동수당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고제이 외, 2022; 김미곤 외, 2019; 이영숙 외, 2021; 조성은 외, 2018). 현재 한국 아동수당 제도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낮은 수준에서 보편적 일괄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에서 소득수준 기준은 실익에 비해 큰 행정비용이 지적되면서 2019년에 폐지되었다. 향후 차등 지원 방식은 소득 및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집단의 지원 욕구 차이를 고려한 부가급여 방식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가구유형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부가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아동수당 예산은 보편적 아동수당이 실시된 2019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아동수 감소로 2022년 이후에는 총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표 II-2-2 참조).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아동수 감소로 인해 아동수당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가정양육수당 개편 관련 쟁점

가정양육수당은 한국에서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수당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이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다.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다는 제도적 특성이나,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채 가정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되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정양육수당은 지급연령 축소 또는 폐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외에 급여액 조정과 취약 아동에 대한 특별 지원 등도 제도 개편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다.

먼저,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은 도입 당시부터 만 3세 미만 영아로 한정되어 논의되었으나, 2013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가정양육의 형평성을 논리로 가정양육을 하는 취학전(만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확대되었다.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 확대 이후에 실시된 연구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급연령을 영아로 한정하는 축소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아동수당 도입 이후에는 양육수당의 단계적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은혜, 이일주, 2015; 송다영, 박은정, 2019; 양미선 외, 2022; 유해미 외, 2011). 이러한 주장들의 배경에는 0, 1세 양육비를 상회하는 높은 급여수준의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으며 만 3세부터 공통적인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유초 연계 교육이 강조되는 정책적 맥락이 있다. 이에 84개월 미만까지 보편적인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체 육아정책의 제도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양육수당을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정양육수당 급여액 조정 관련 논의는 도입 초기와 아동수당 도입 이후에 논점이 상이하다. 가정양육수당 도입 초기에는 차상위 계층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었고 이후 농어촌 아동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도입과 함께 월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양육수당 급여액 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8년 양육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도입 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의 급여액 상향에 대한

주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된 이후에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의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주장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박은정 외, 2022; 송다영, 박은정, 2019; 양미선 외, 2022).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논의는 가정양육수당 도입부터 시작되었다. 사실상 가정양육수당은 도입 당시 차상위 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여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부터는 보육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우려되는 농어촌아동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도입되었다. 가정양육수당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취약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의 유지 또는 특별수당 제도의 도입은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편적인 가정양육수당이 폐지되더라도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장애 및 질환 등으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박은정 외, 2022; 양미선 외, 2022). 따라서 가정양육수당 개편 논의는 취약 아동의 양육 지원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 다. 부모급여 개편 관련 쟁점

부모급여는 2023년 도입되어 아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도입 당시부터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있다. 부모급여의 제도적 성격과 육아휴직급여와의 관련성은 다른 제도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므로 통합적 개편 쟁점에서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도입 이후 논의되고 있는 부모급여의 지급형태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 변화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3-1]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 변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아동수당		월10			아동수당		월10			아동수당		월10			아동수당		월10						
기관 미이용		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영아수당		가정 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부모급여		가정 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부모급여		가정 양육수당		
		월 20	월 15	월 10			월 30 (현금)	월 10	월 70 (현금)	월 35 (현금)			월 10	월 100 (현금)	월 50 (현금)	월 10							
보육		보육료 (바우처)			기관 이용		전액 (바우처)		보육료 (바우처)		기관 이용		전액 (바우처)		보육료 (바우처)		기관 이용		전액 (바우처)		보육료 (바우처)		
기관 이용		월 50	월 28-36		기관 이용		월 28-월 36	월 28-월 36		기관 이용		월 51.4 (바우처) + 월 18.6 (현금)	전액 (바우처)		월 28-월 36		기관 이용		월 54 (바우처) + 월 46 (현금)	월 47.5 (바우처) + 월 2.5 (현금)		월 28-월 36	

- 주: 1) 2021년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 2)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4개월 이상(만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3) 2024년 이후는 보육료에 따라 바우처와 현금 지급액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p. 4; 박은정(2022). 부모급여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육아정책포럼(74호), p.23을 수정함.

현재 부모급여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가 혼합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기관 이용 없이 가정양육을 할 경우 100%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과 바우처라는 두 종류의 지급형태가 병행 지급되는 방식이 행정상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와 수급자에게 주는 혼선이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효과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가 부모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변경신청 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나 연계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도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이소영 외, 2024).

### 라. 통합적 개편 쟁점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는 개별 제도별로 개편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현금급여나 유관 제도와의 조정을 통한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별 제도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형성되며, 다른 제도들과의 정합성이나 연관성이 제도의 성격 및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송다영, 박은정, 2019). 특히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통합적 개편 논의에는 아동수당 제도가 그 중심에 있다. 유관제도로 지자체 출산지원금이나 보육

료 지원 등이 현금급여 개편 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아동수당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고 향후 고려해야 할 통합적 개편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의 확대를 가정양육수당의 축소 및 폐지 방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양육수당 제도에 아동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례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가정양육수당 개편 주장이 부각되었다. 이에 가정양육수당의 축소 및 폐지 방안은 아동수당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와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가정양육수당의 개편에서 취약 아동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도 아동수당에 추가 지원 방식과 비교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인 부모급여의 방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부모급여의 성격을 아동수당의 목적과 유사한 영아 대상 현금급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부모급여 도입 당시부터 논의되어왔던 것으로 앞으로 부모급여 개편 논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셋째, 아동가구 대상 세제지원과 아동수당 간에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 연령 이후에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함께 자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수당의 부가급여 방식으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자녀장려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III

## 해외 사례 분석

- 01 OECD 국가 정책 현황
- 02 주요국 심층 사례 분석
- 03 소결



## III. 해외 사례 분석

### 1. OECD 국가 정책 현황

#### 가. OECD 국가 동향

이하에서는 현금급여 부문 재정 지출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관 정책 등에 대한 OECD 국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가족급여 부문의 공공 지출 비율을 지원 부문과 아동 연령별로 다룬 후에 현금급여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금급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육서비스와 모(母)의 취업률에 관한 국가별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금급여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1) 가족급여 부문의 공공 지출 규모

가족급여 부문의 공공 지출은 가족이나 아동에게 고유하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이 해당된다. OECD에서는 아동 관련 현금(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가정 대상 소득 지원),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지원,<sup>18)</sup> 조세제도를 통한 재정적 지원<sup>19)</sup>으로 구분하고 국가별로 그 비중을 보고하고 있다(OECD, 2023a: 1).

이상의 공공 지출은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GDP의 2.29%이나,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3.5% 수준으로 높은 반면, 스페인, 튀르키예, 미국에서는 1.5%에 불과하여 국가별 차이를 보인다(OECD, 2023a: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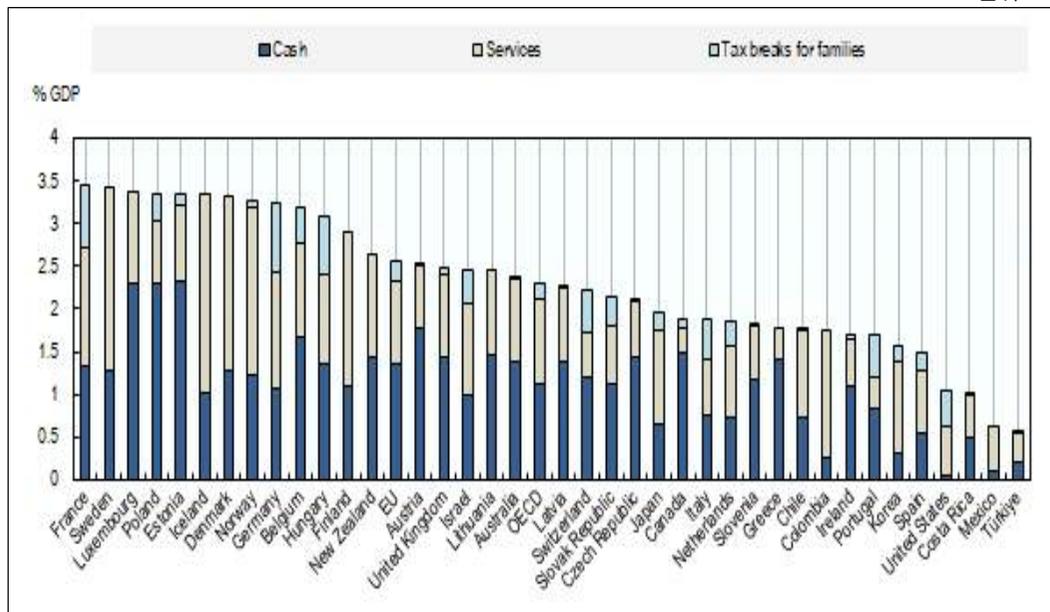
18) 직접 재정지원 ② 보육 및 유아교육 부문의 보조금, 부모를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 지원, 청소년 지원 및 복지 시설, 센터 기반 시설 및 가사 지원을 포함한 가족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

19) 세금 면제 혜택(예: 아동수당의 표준 소득 과세 불포함), 자녀양육관련 세금 공제 제도(child tax allowances: 총 소득에서 공제되나, 과세 소득에는 미반영),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s: 납세 의무에서 공제되는 금액)를 들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액이 납세 의무를 초과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환급되며 해당 지원은 현금급여의 일환으로 자녀 세액 공제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많은 OECD 국가(벨기에,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위스)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이 과세 단위에 반영되어 있으며, 가족규모가 클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낮아진다(OECD, 2023a: 1).

세부적으로 현금, 서비스, 세제지원 부문의 재정 투자 수준은 [그림 III-1-1]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서비스와 세제지원에 비해 현금지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덴마크, 핀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공공 지출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프랑스, 독일, 헝가리에서는 세제지원 부문의 공공 지출이 GDP 대비 0.5% 이상을 차지한다(OECD, 2023a: 1).

[그림 III-1-1] OECD 국가의 가족급여 관련 공공 지출 비율(2019년)

단위: %



주: 그림 내 공공 지출은 전적으로 가족을 위한(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돌봄 지원) 재정이며, 단, 해당 재정은 지방정부와 매칭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도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스위스 등과 같은 연방정부 국가에서는 데이터 차이가 클 수 있음.

원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자료: OECD. (2023a). Family Database-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p.1 [PF1.1.A.: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한편 이들 가족급여 관련 공공 지출은 아동 연령에 따라 그 비중이 매우 상이하므로 0~5세, 6~11세, 12~17세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OECD, 202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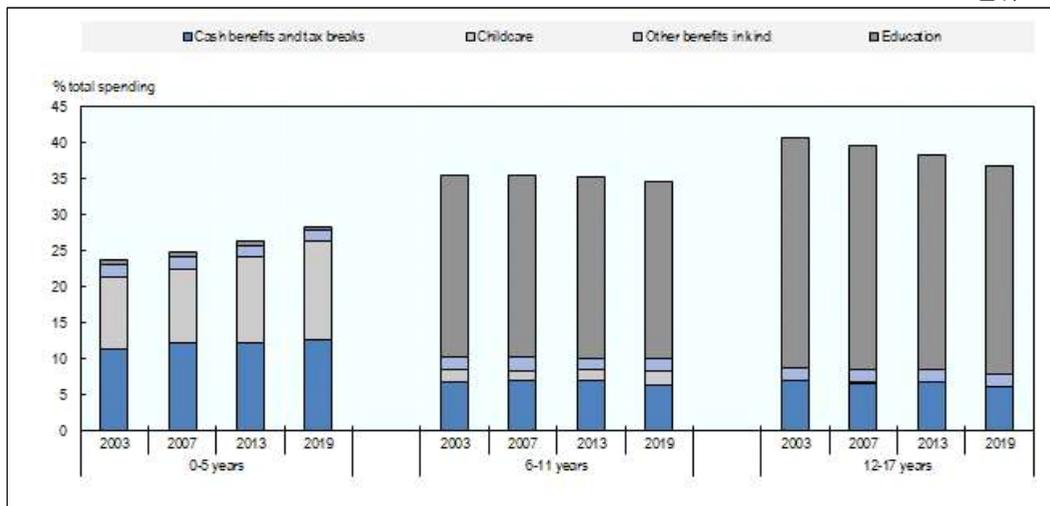
OECD 국가의 공공 지출 예산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져서 이하 [그림 III-1-2]에서와 같이 영유아기(만 0~5세)는 28%였으나, 아동기(만 6~11세)는 35%, 청소년기(만 12~17세)는 37%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한다(OECD, 2022: 1).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단

지 영유아를 위한 공공 지출이 소폭 증가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 지출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난 10년간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ECEC) 부문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아 대상의 공공 지출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영유아는 현금급여 및 세제지원과 보육서비스 부문의 재정 투자 비중이 높고, 이후 연령대에는 교육 부문의 투자가 주를 이룬다. 2019년 기준으로 영유아 대상 현금급여는 12.6%, 보육서비스는 13.7%로 나타나며, 6세 이후로는 교육 부문의 투자가 24.7~2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현금급여의 비중은 6.1~6.4% 수준에 그친다.

[그림 III-1-2]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대별 가족 관련 공공 지출 추이(2003/2007/2013/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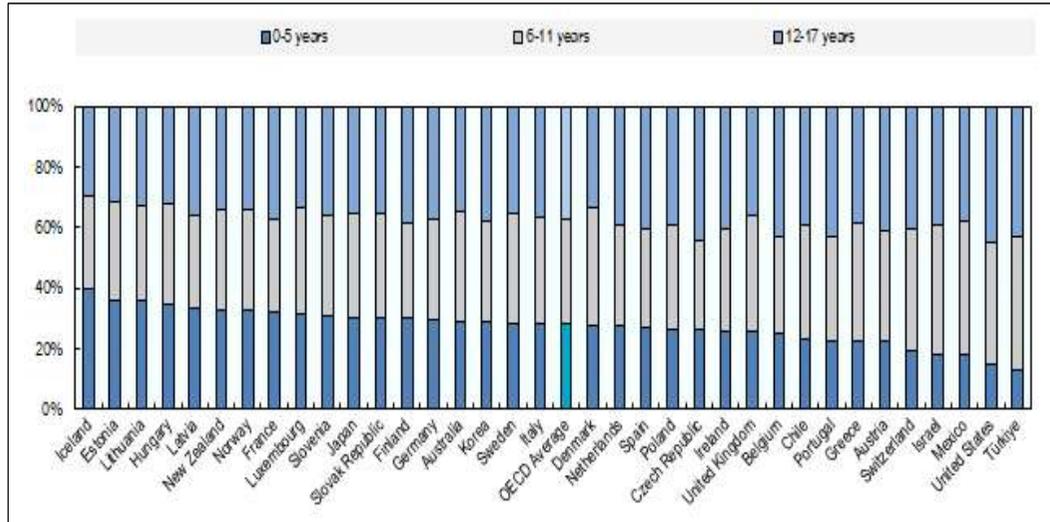


원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자료: OECD. (2022). Family Database-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p.1 [PF1.6.A. 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2003-2019)].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그림 III-1-3]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대별 공공 지출 비중(2019년)

단위: %



주: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의 데이터는 미포함. 0~17세 대상 가족급여 관련 공공 지출 비중임.  
 원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자료: OECD. (2022). Family Database-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p.2 [PF1.6.B.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age group (2019)].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시기별로는 현금지원 및 세제지원의 투자 비율은 0~5세아의 경우 소폭 증가하지만, 6~11세와 12~17세아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영유아 보육서비스 부문의 투자는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진다.

<표 III-1-1> OECD 주요국의 아동 연령대별 공공 지출 비율 추이(2003/2007/2013/2019년)

단위: %

연령	시기 (연도)	현금급여 및 세제지원	보육	기타 현금급여	교육
0-5세	2003	11.4	9.9	1.9	0.6
	2007	12.2	10.2	1.8	0.7
	2013	12.3	11.9	1.5	0.7
	2019	12.6	13.7	1.6	0.5
6-11세	2003	6.9	1.6	1.8	25.1
	2007	7.0	1.5	1.8	25.3
	2013	7.0	1.5	1.5	25.2
	2019	6.4	1.9	1.7	24.7
12-17세	2003	7.0	0.0	1.8	32.0

연령	시기 (연도)	현금급여 및 세제지원	보육	기타 현물급여	교육
	2007	6.7	0.1	1.7	31.1
	2013	6.7	0.1	1.6	30.0
	2019	6.1	0.1	1.7	29.0

주: 0~17세아 대상 가족급여 관련 부문별 OECD 평균 공공 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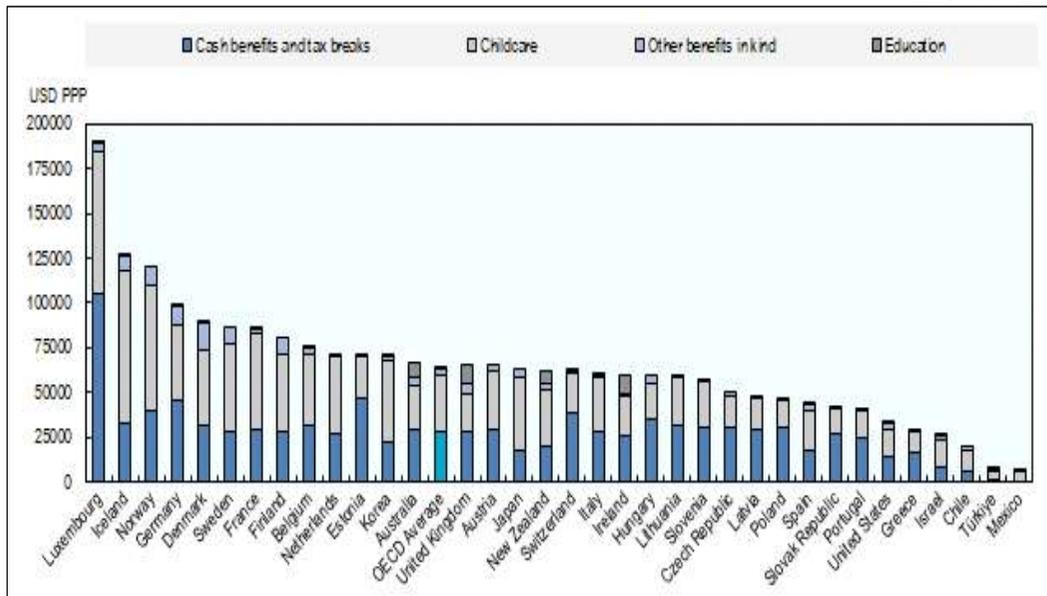
원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자료: OECD. (2022). Family Database-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p.1 [PF1.6.A. 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2003-2019)].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한편 0~5세의 공공 지출 비율은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므로 그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와 프랑스에서는 보육서비스 부문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와 미국에서는 현금급여와 세제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III-1-4] OECD 국가의 0~5세아 대상 지원 부문별 공공 지출 투자 규모(2019년)

단위: US 달러



주: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의 데이터는 미포함.

원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자료: OECD. (2022). Family Database-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p.3 [PF1.6.C. 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are important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 (0-5 years) (2019)].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한국은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금급여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재정 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OECD 평균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지출이 많고, 현금급여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2019년 기준이므로 0~1세아를 대상으로 2002년과 2023년에 각각 도입된 영아수당과 부모급여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들 예산을 포함하여 영유아기의 현금급여 투자 수준을 새롭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6~11세와 12~17세는 모든 OECD 국가에서 교육 부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특히 0~5세아의 현금과 서비스 부문의 재정 투자의 국가별 차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1-2〉 OECD 주요국의 0~5세 공공 지출 투자 규모(2019년)

단위: US 달러

구분	현금급여 및 세제지원	보육	기타 현물급여	교육
노르웨이	40,280	69,370	11,190	0
스웨덴	28,410	49,200	8,870	0
덴마크	31,400	42,650	14,190	170
프랑스	29,180	54,280	1,510	60
핀란드	28,430	42,440	10,300	0
독일	45,830	41,330	10,990	30
벨기에	22,510	45,530	2,280	40
일본	17,320	41,640	4,600	0
이탈리아	27,940	30,580	1,530	710
스페인	18,080	21,610	3,640	10
미국	13,970	15,860	2,970	680
영국	28,610	20,180	6,490	10,730
한국	22,510	45,530	2,280	40
OECD 평균	28,330	30,800	3,660	1,160

주: OECD 평균에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의 데이터는 미포함.

원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자료: OECD. (2022). Family Database-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p.3 [PF1.6.C. 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are important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 (0-5 years) (2019)].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을 재구성

## 2) 가족 관련 현금급여 현황

가족 관련 현금급여는 주로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OECD, 2019: 1). OECD 국가(35개국) 중에서 34개 국가에서 최소 한 가지 유형의 현금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고, 대부분(30개국) 국가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 한 가지 유형의 현금지원제도가 국가의 2/3 정도에서는 2~3가지의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노르웨이에서는 6가지의 가족보조금 제도가 있는데, 제도별로 지급 요건이 다르지만 상호배타적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OECD, 2019: 1).

또한 현금급여의 지원대상은 보편적이거나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액은 대개 아동 연령이나 가족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가족·아동의 특성이나 부모의 고용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OECD 국가에서 제공되는 부모의 고용시장 참여 상황에 따른 현금지원 제도에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세액 공제 또는 아동 돌봄 관련 보조금이 포함된다.

이하에서 가구 특성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OECD 국가의 현금급여 지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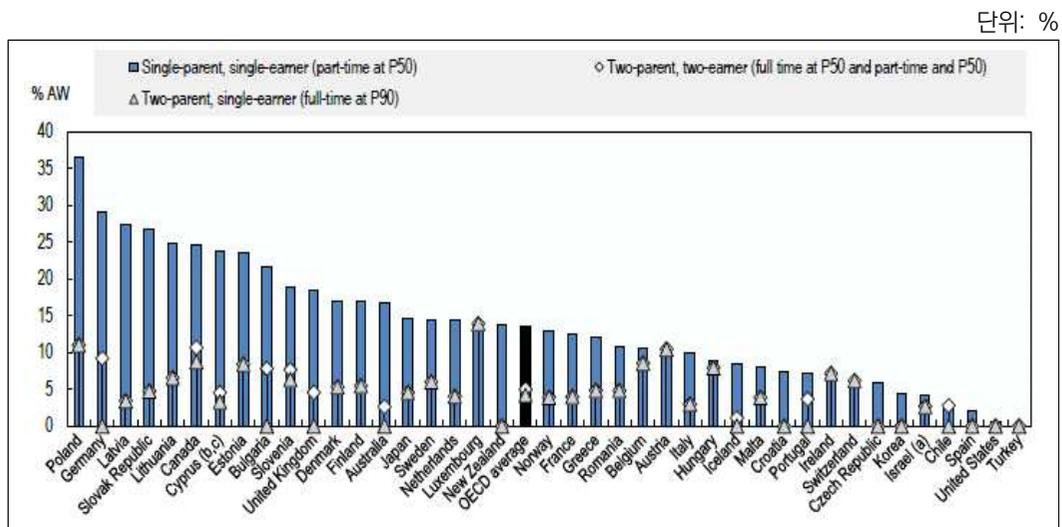
### 가) 가족 유형 및 가구소득에 따른 지원액 수준

OECD 국가의 절반 정도는 주요한 가족 관련 현금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 소득 이하(체코 및 포르투갈의 경우 자산까지 포함) 가구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가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된다(OECD, 2019: 1). OECD 국가 중에서 21개국에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로 해당 급여액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시간제 근로를 하는 평균 소득자로서 2명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전일제 근로 기준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최소 25%, 폴란드에서는 약 36%, 그리고 OECD 평균은 14%에 약간 못 미치는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9: 1).

이처럼 OECD 국가의 가족 관련 현금급여 수준은 대체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 지원액이 낮고, 특히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고소득자인 경우는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OECD, 2019: 2). 또한 맞벌이 가구 여부와 부모의 근로시간에 따

라 급여액이 달리 책정된다.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면서 한 쪽 부모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나머지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부모 모두 평균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 시), 풀타임 근로자 기준 평균 임금의 5% 정도를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홑벌이 가구는 전일제 근로 부모의 임금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90% 이내)에 급여액이 낮아진다(풀타임 근무자의 평균 임금의 4%를 조금 초과하는 정도).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유형의 양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풀타임 근무자의 평균 임금의 14%가 지급된다. 오스트리아는 10%, 폴란드는 11%로, 양 국가 또한 비교적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다(OECD, 2019: 2).

[그림 Ⅲ-1-5] OECD 국가의 가족 유형 및 가구소득에 따른 현금급여 수준(2018년)  
: 전일제근로 가구의 평균 임금 대비 현금급여 비율



주: 해당 수치는 만 9~12세아가 2명이 있는 가족 기준이며, Full time at P50이란, 풀타임 근무자 기준 평균 임금을 받으며, 주40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Part time at P50은 풀타임 근무자 기준 평균 임금을 받으며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며, full time at P90은 풀타임 근무자 기준 소득 90 백분위수에 속하면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임.

원자료: OECD estimates based on the OECD Tax-Benefit Models, <http://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htm>

자료: OECD. (2019). Family Database-PF1.3: Family cash benefit. p.2 [PF1.3.A. Value of family benefits by family type and earning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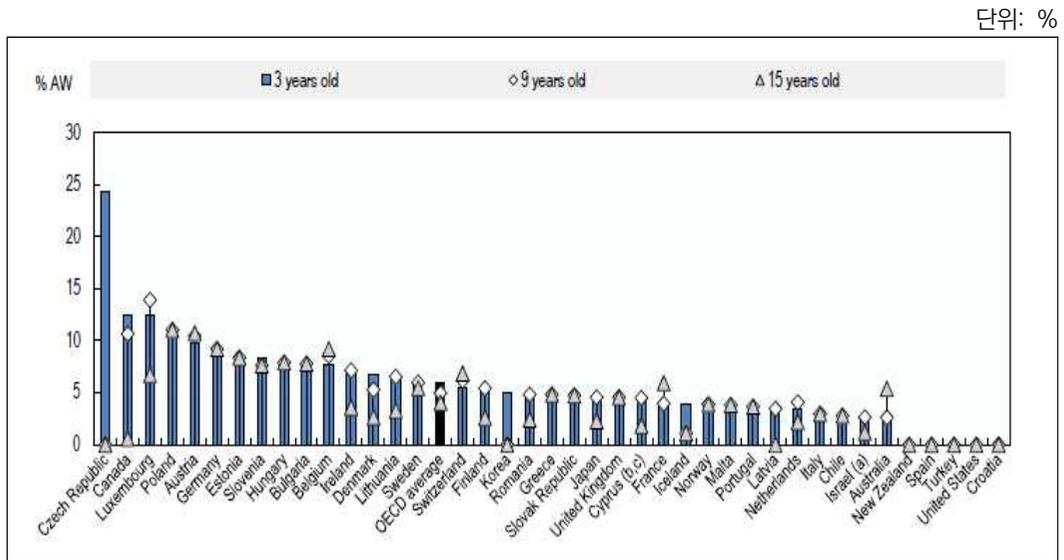
이처럼 가족 관련 현금지원은 가구소득과 무관할 수도 있고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OECD, 2019: 4), 후자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고, 아동 관련 현금급여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나) 자녀연령 및 자녀수에 따른 지원액 수준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현금급여 수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아동 연령에 상관없이 관대한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III-1-6 참고).

[그림 III-1-6] OECD 국가의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현금지원 수준(2018년)  
: 전일제근로 가구의 평균 임금 대비 현금급여 비율



주: 해당 수치는 2자녀를 둔 풀타임(주당 40시간) 맞벌이 가구, 파트타임(주당 20시간) 한부모 가구 기준으로 산출됨.  
원자료: OECD estimates based on the OECD Tax-Benefit Models, <http://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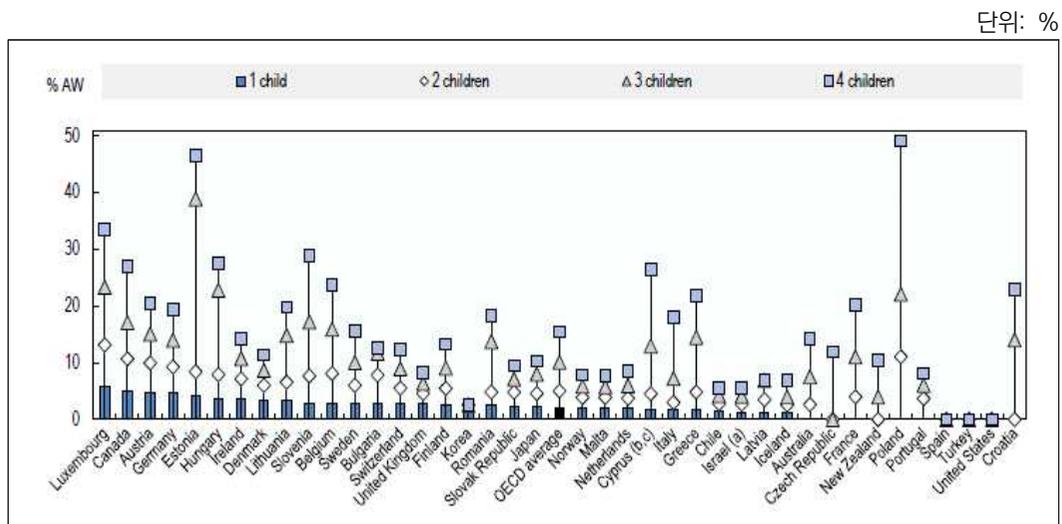
자료: OECD. (2019). Family Database-PF1.3: Family cash benefit. p.3 [PF1.3.B. Value of family benefits by age of youngest child].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최근 들어 OECD 국가의 현금급여액은 전반적으로 가족 규모와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OECD, 2019: 3). 이하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급여액<sup>20)</sup>은 자녀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두 배 이상 높아지며(자녀가 한 명일 때 전일제근로 가구 평균 소득의 2%에서 자녀 두 명시 5%로 증가), 셋째 자녀의 경우는 또 다시 두 배의 수당을 받게 된다. 자녀가 네 명인 가정의 경우, 평균적

20) 한 부모는 전일근무로, 다른 부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되, 양쪽 모두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가정이 받는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막내 자녀를 만 6세로 가정할 때 자녀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기준임 (OECD, 2019: 3).

으로 전일제근로 가구 평균 소득의 15%에 달하는 현금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금급여액이 높은 국가로는 에스토니아(폴타임 소득 기준으로 1자녀의 경우는 4%, 4자녀의 경우는 47%)와 폴란드(1자녀의 경우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4자녀의 경우 전일제 근무 평균 소득의 49%)가 있다(OECD, 2019: 3).

[그림 III-1-7] OECD 국가의 자녀수에 따른 현금지원 수준(2018년)  
: 전일제 근무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현금급여 비율



주: 위 예측치는 맞벌이인 두 부모에 막내 자녀가 6세인 경우, 한쪽 부모가 전일근무(주40시간), 한쪽 부모는 파트타임(주20시간)으로 일하면서 둘다 평균 임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되었음. 두 자녀는 3살 터울로, 위 명시된 나이는 막내의 나이임. 폴타임 평균 임금(AW)은 세전 임금임.

원자료: OECD estimates based on the OECD Tax-Benefit Models, <http://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htm>

자료: OECD. (2019). Family Database-PF1.3: Family cash benefit. p.4 [PF1.3.C. Value of family benefits by number of children].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 3)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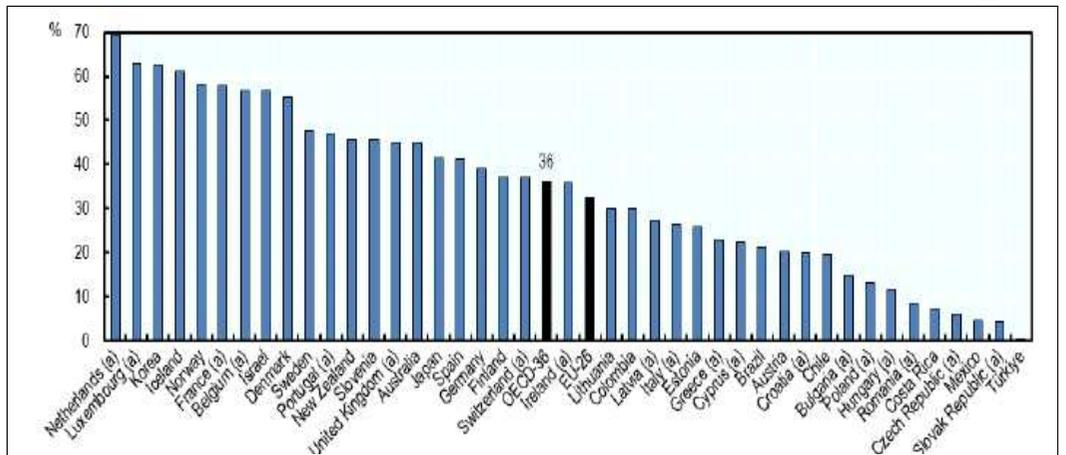
OECD 국가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만 0~2세와 만 3~5세를 구분하여 보고되며,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만 3세에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에 진입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또한 0~2세아는 전체 서비스 이용률 이외에도 가구소득과 모(母)의 학력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추가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들 데이터의 정책적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아동 연령별 서비스 이용률: 만 0~2세/만 3~5세

아동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0~2세에 비해 3~5세아에서 높게 나타나며, 0~2세아의 이용률은 국가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그림 III-1-8, 그림 III-1-9 참고).

만 0~2세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sup>21)</sup> OECD 국가 평균이 36%로 나타나지만, 튀르키예의 경우 1% 미만을 보이는 반면 아이슬란드,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는 60%에 달하고,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의 서비스 이용률도 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OECD, 2023b: 2).

[그림 III-1-8] OECD 국가의 만 0~2세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2020년 또는 최신 년도 데이터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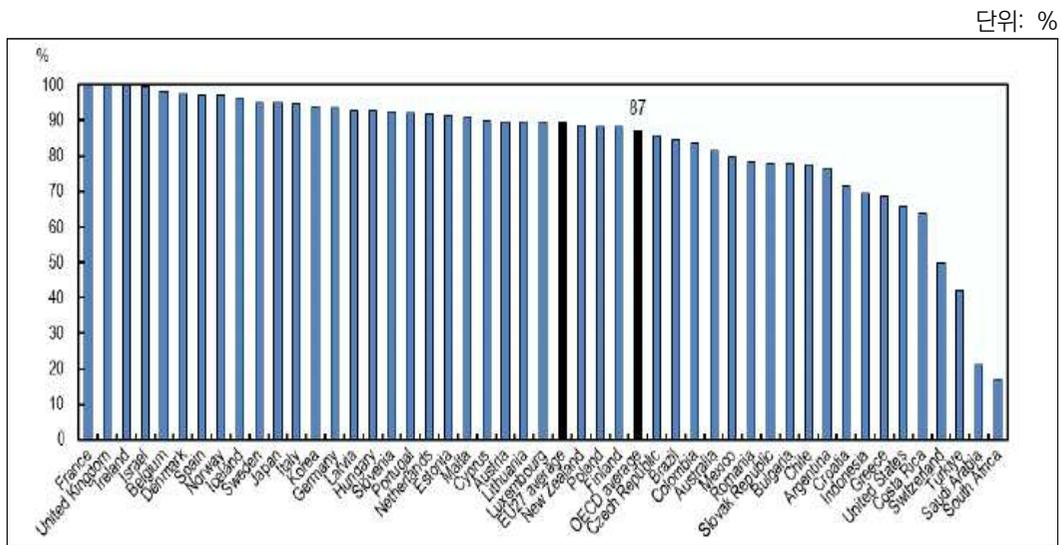


주: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영국 자료는 2018년, 일본은 2019년 자료임.  
 자료: OECD. (2023b). Family Database-PF3.2: Enrol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p.2 [PF3.2.A.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to 2-year-old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21) 만 0~2세 보육·교육서비스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충분하고 의도적인 교육적 시설을 갖추어야 함.  
 ② 기관화되어 있어야 함(주로 센터 기반이거나 기관화된 공동체 기반 혹은 가정 기반 서비스, 다만 비공식적 가정 보육은 제외).  
 ③ 하루 최소 2시간의 교육 활동이 있어야 하며, 연간 100일 이상의 활동을 지속해야 함.  
 ④ 정부부처에서 인정하는 커리큘럼 등을 적용해야 함.  
 ⑤ 훈련을 이수했거나 공인된 교사(교육자를 위한 교육학적 자격을 갖춘)가 있어야 함.

반면에 만 3~5세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sup>22)</sup>은 앞서 0~2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 OECD 평균이 87%에 달한다(OECD, 2023b: 4). 그러나 국가별로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보육·교육서비스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에서는 98%에 달하는 반면 스위스, 튀르키예의 만 3~5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50% 이하를 보인다(OECD, 2023b: 5).

[그림 III-1-9] OECD 국가의 만 3~5세아의 보육·교육서비스 등록률  
(2020년 또는 최신 년도 데이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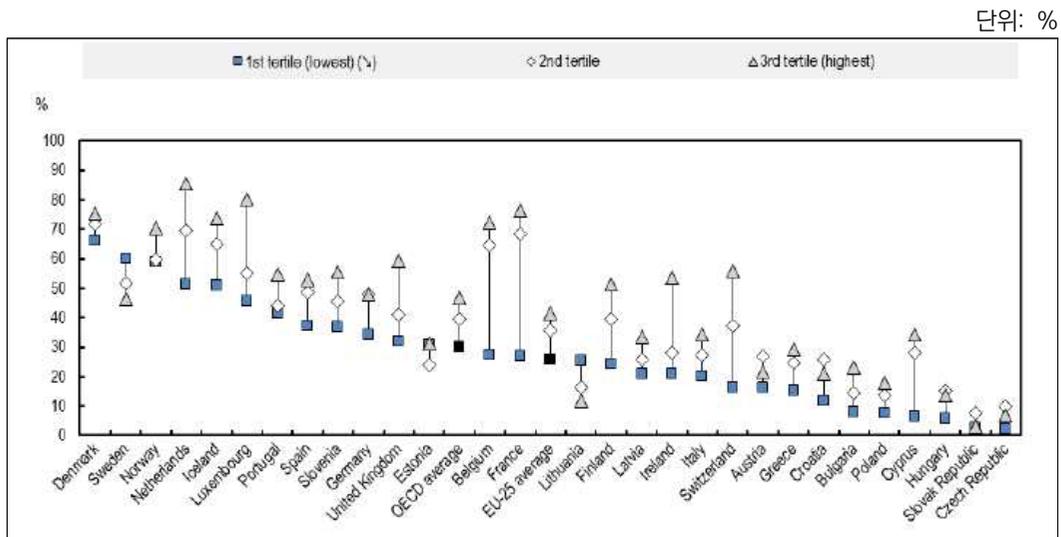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는 만 3, 4, 5세아의 보육·교육서비스 등록률은 90% 이상을 보인다. 여타 국가들에서는 만 3세아의 서비스 등록률이 낮은 수준에 그친다. 이를테면 2018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률은 영국에서는 만 3세아가 40%이나 만 5세아는 90%이고, 스위스에서는 만 3세아는 2%에 그치나 만 5세아는 98%로 두드러진 격차를 보인다(OECD, 2023b: 5).

### 나) 가구소득/모(母)의 학력에 따른 0~2세아의 서비스 이용률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 0~2세아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가정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OECD, 2023b: 3). [그림 III-1-10]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OECD 국가들의 만 0~2세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III-1-10] OECD 국가의 가구소득에 따른 만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2020년 또는 최신 년도 데이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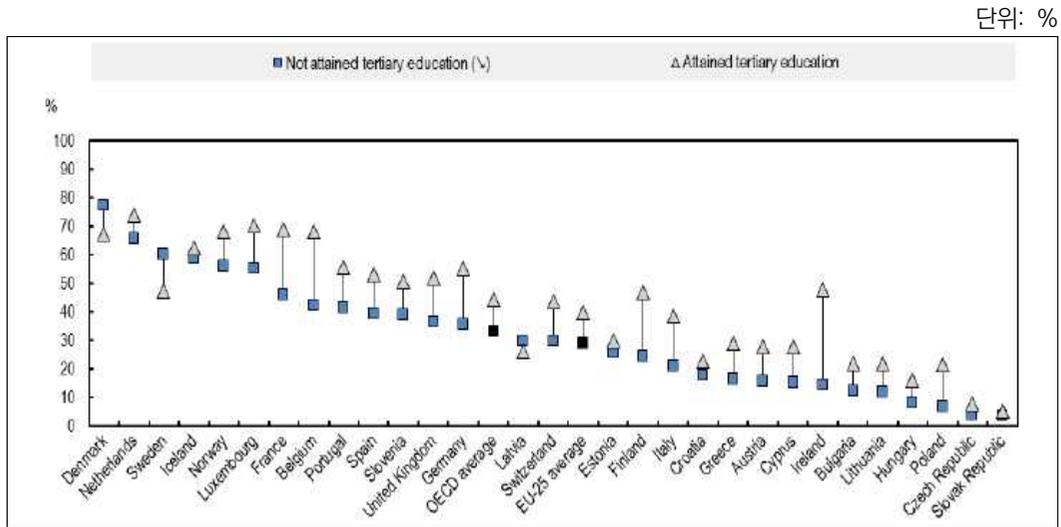
주: 아이슬란드, 영국 자료는 2018년, 독일, 이탈리아는 2019년 자료임. 등가치 가처분소득 평균치는 만 12세 혹은 그 이하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세후)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가족 규모와 가구 생활수준을 반영함. 자료: OECD. (2023b). Family Database-PF3.2: Enrol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p.3 [PF3.2.B.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income, 0-to 2-year-old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유사하게 일부 OECD 국가들에서는 모(母)의 최종학력이 대졸인 경우에서 보



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OECD, 2023b: 4).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은 모의 자녀가 이하 학력을 지닌 모의 자녀들보다 약 30% 정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1-11] OECD 국가의 모(母)의 학력에 따른 만 0~2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2020년 또는 가장 최신 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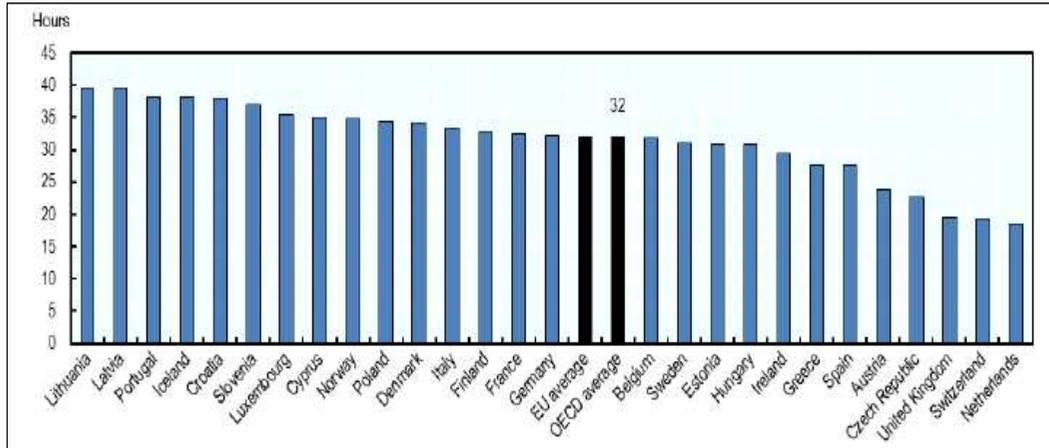
주: 아이슬란드, 영국 자료는 2018년, 독일, 이탈리아는 2019년 자료임. 모의 학력은 대학 졸업(ISCED 2011 level 5-8에서 가장 고학력으로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음. 가족 내 모가 부재하는 경우, 집안 내 여성 가장의 학력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마저도 없다면 부(또는 남성 가장)의 학력을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OECD. (2023b). Family Database-PF3.2: Enrol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p.4 [PF3.2.C. Participation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mother's education, 0- to 2-year-old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 다) 0~2세아의 서비스 이용시간

0~2세아 보육·교육서비스 평균 이용시간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도표 PF3.2.D).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주당 25~35시간으로 나타나고, OECD 평균은 주당 30시간이 조금 못 미쳤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의 경우는 주당 40시간에 가까웠으나,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에서는 주당 20시간 이하에 그쳤다(OECD, 2023b: 3).

[그림 III-1-12] OECD 국가의 모(母)의 학력에 따른 만 0~2세 보육·교육서비스 평균 주중 이용시간 (2020년 또는 최신 년도 기준)

단위: 시간(주당)



주: 아이슬란드, 영국 자료는 2018년, 독일, 이탈리아는 2019년 자료임.  
 자료: OECD. (2023b). Family Database-PF3.2: Enrol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p.4 [PF3.2.D. Average usual weekly hou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 4) 모(母)의 취업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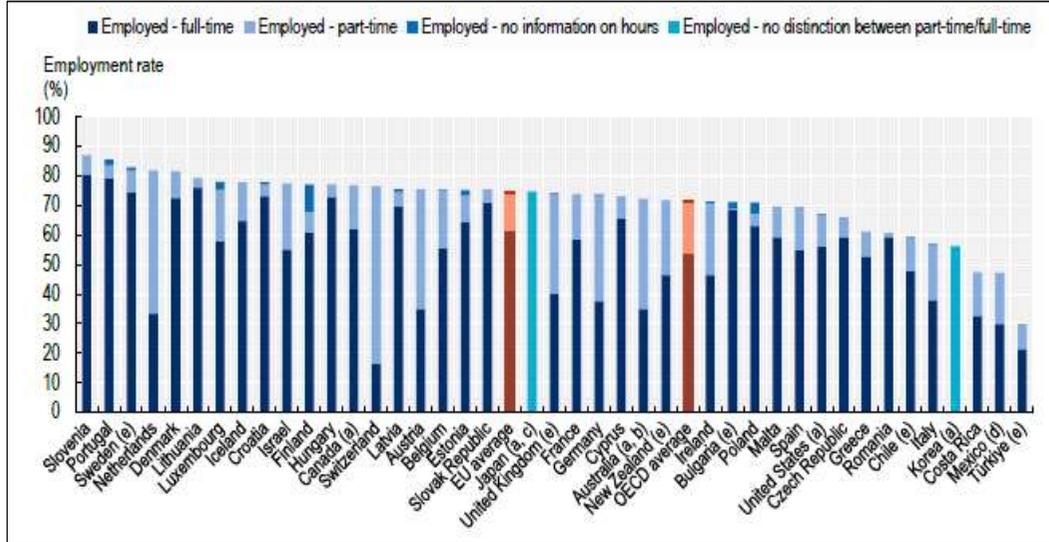
OECD 국가에서 모의 취업률은 2021년 기준으로 평균 71%로 나타나며,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OECD, 2023c: 2). 슬로베니아와 포르투갈의 경우는 85%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여타 16개의 OECD 국가들에서는 약 75% 이상이 유급노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칠레,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멕시코, 튀르키예)에서 모의 취업률은 6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OECD, 2023c: 2)(그림 III-1-13 참고).

시기별로는 모의 취업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OECD, 2023c: 3).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였던 2008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한편 OECD 국가의 모의 취업률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2023c: 6). 원칙적으로 법정 출산휴가 혹은 유급 육아휴직(법적이건 계약상이건)의 경우는 근로 중인 것으로 인정한다.



[그림 III-1-13] OECD 국가의 모의 취업률(2021년 또는 최신 년도 데이터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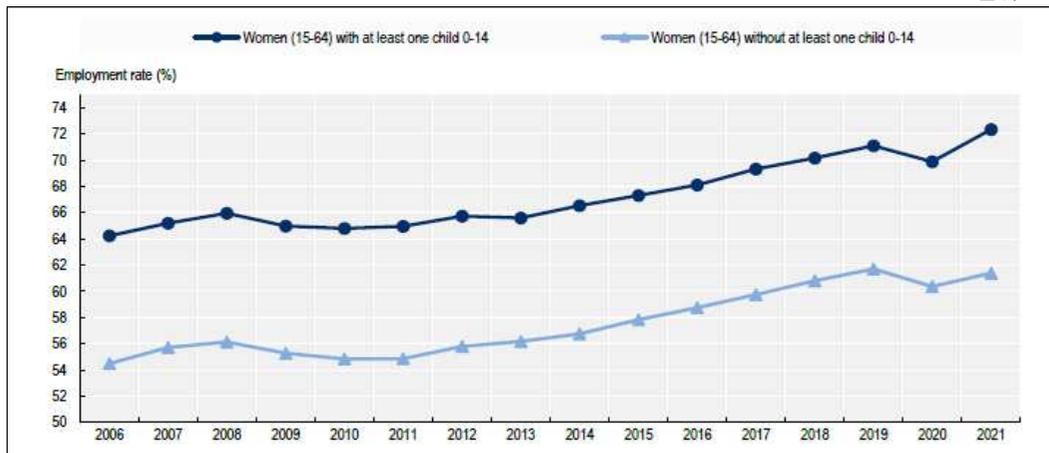


주: 해당 수치는 최소 1인의 자녀(만 0-14세)가 있는 15-64세 여성들의 파트타임/전일취업률(%)이며, 파트타임 취업률은 본업의 주중 근무시간이 평균 30시간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풀타임은 주 30시간 혹은 그 이상을 의미하나, 국가 별로 정확한 정의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산업 기준 상 평균 근로 시간의 90% 혹은 그 이상 근무할 경우 풀타임으로 인정함.

자료: OECD. (2023c). Family Database-LMF1.2: Maternal employment rates. p.2 [LMF1.2.A. Maternal employment rates, 2021 or latest available year].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그림 III-1-14] OECD 국가의 모의 취업률 추이(2006-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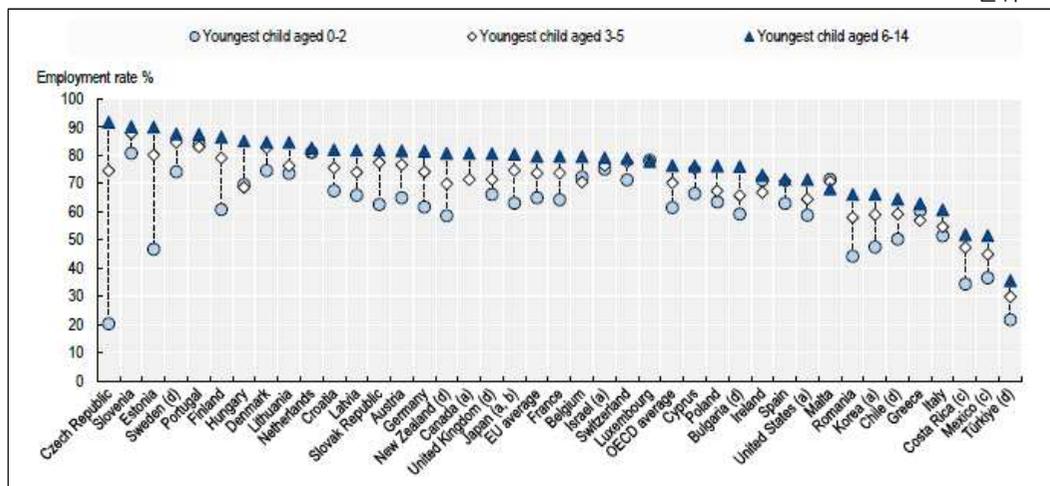
주: 해당 데이터의 생산을 위해 설문에 참여한 25개 국가는 호주, 벨기에, 코스타리카,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미국의 경우, 만 0-17세를 아동으로 인정)

자료: OECD. (2023c). Family Database-LMF1.2: Maternal employment rates. p.3 [LMF1.2.B. Trends in maternal employment rates, 2006 to 2021].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OECD 국가에서 모의 취업률은 대체로 막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OECD, 2023c: 3).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모의 취업률은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만 3~5세이거나 특히 만 6~14세 대비 0~2세아에서 낮은 편이나, 그 편차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부 OECD 국가들에서는(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아 자녀와 이외 연령대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이를테면 체코에서는 2021년 기준 만 0~2세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이 20%이나 만 3~5세 및 만 6~14세아는 각각 75%와 82%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OECD, 2023c: 4).

[그림 III-1-15] OECD 국가의 자녀 연령에 따른 모의 취업률(2021년 또는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

단위: %



주: 막내 자녀가 만 0~14세아를 둔 여성(만 15~64세) 모의 취업률 기준임.

자료: OECD. (2023c). Family Database-LMF1.2: Maternal employment rates. p.4 [LMF1.2.C.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 나. OECD 주요국의 현금급여 제도 현황

본 연구에서 OECD 주요국은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이 OECD 평균 이상인 국가로 선정하였다(그림 III-1-1 참조). 단, 소규모 인구 국가는 제외<sup>23)</sup>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 대상 공공 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가족정책의

23) 인구규모가 500만명 미만인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제외함.

들이 갖추어진 국가의 사례를 통해 가족 관련 현금급여의 특성과 제도 설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함이다. 분석 대상인 주요국에 포함된 국가는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헝가리, 핀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이스라엘, 호주이다.

## 1) 아동수당

### 가) 지급대상 및 요건

#### (1) 지급대상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 거주하며, 개인이든 기관이든 아동의 법적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영국과 폴란드의 경우 공식적 보호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지인 혹은 친척 등 실질적인 아동의 돌봄자도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돌봄 방식을 바라보는 방식도 국가별로 상이한데, 예를 들어 호주는 생물학적 부모라도 자녀와 함께 직접 최소 35% 시간을 보내야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직접적인 돌봄 방식을 강조하는 한편, 영국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동수당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아동수당의 수급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부모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sup>24)</sup>, 스웨덴과 같은 국가가 있는 반면, 덴마크, 독일 등은 납세의 조건까지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아동수당은 미혼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지만 폴란드는 혼인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하며,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은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아동이 직접 아동수당을 수급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2017년부터 정부가 직접 아동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해당 부모도 아동수당에서 같은 금액(NIS 57)을 자동 입금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어 특징적이다.

아동수당의 부모 간 분배 수급 방식은 기존 국내 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당을 부모 둘 중 한 명(주로 모)에게만 지급하는 것과 대조

24) 벨기에의 최근 정책 개혁으로 인해 플란데런과 왈로니 모두 자녀의 태어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 내용이 상이함. 본 연구에서는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서술함.

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 각각에게 절반씩 지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스웨덴 사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분배 방식은 아동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성평등 가치를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표 III-1-3〉 주요국의 아동(가족)수당 지급대상

국가	지급대상 부모	기타 세부 내용	
		부모 간 분배 수급	아동 직접 수급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거주</li> <li>• 과세의무가 있는 18세 미만 미혼자녀의 부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함께 살고 있거나 따로 살지만 공동양육권 행사시 수당 절반씩 각각 자동 수령. 단독양육권 행사시 해당 부모가 전액 수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정부기관 지급청(Udbetaling Danmark)에서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시</li> </ul>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란드 거주</li> <li>• 1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li> <li>• 아동돌봄의 책임이 있는 부모 외 어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따로 거주시 부모 중 한 명에게 전액 지급.</li> <li>• 상호 미합의 시 정부의 판단 하에 주 양육 책임 부모에게 전액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이상이면서 특정 조건 만족시</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거주</li> <li>• 세금 납부자 부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양육비 책임 부모</li> <li>• 동일하게 양육비를 책임지는 경우는 부모 간 합의를 통해 수급권자 결정</li> <li>• 수급권자 미결정 시 지방법인 수급 우선권자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혹은 주양육자가 없거나 거취불명시</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시민권자, 거주자, 영주권자 등 사회보험대상자</li> <li>• 16세 미만 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16세 이상 자녀의 부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각각에게 절반씩 자동지급</li> </ul>	-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험대상자</li> <li>•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노르웨이에 거주자</li> <li>•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모두 수급 가능하지만 주로 어머니에게 자동 지급. 단, 한부모를 포함하여 자녀의 공동 거주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으면 부모 각각 절반씩 수급 가능</li> </ul>	-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li> <li>• 6개월 이상 프랑스 상시 거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상호 합의하에 결정</li> <li>• 별거 또는 이혼 시 자녀와 공동 거주 및 공동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 분할 선택 가능</li> </ul>	-

국가	지급대상 부모	기타 세부 내용	
		부모 간 분배 수급	아동 직접 수급
벨기에 (플란데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벨기에 거주 중인 모든 아동의 부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가 협상을 통해 수당 입금 계좌 선택. 이혼 후에도 공동양육권 이행시 같은 방식 적용</li> <li>부모가 미합의 시 연령이 어린 부모에게 결정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혼 또는 법적으로 독립하여 보호자와 분리 거주</li> <li>16세 이상으로 보호자 분리 거주</li> <li>아동수당 대상이 자녀가 있는 경우</li> </ul>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세 미만 자녀를 둔 오스트리아 거주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조건 충족시 가능</li> </ul>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 유무와 상관없이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실제 후견인, 법적 보호자, 법적 조건을 충족한 비공식 관계의 부모, 한부모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혹은 모에게 지급, 이혼 후 두 부모가 번갈아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절반씩 수급 가능</li> </ul>	-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영국 거주자</li> <li>아동수당 지급액만큼 양육비 지출하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지인 혹은 친척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 중 한 명에게 지급</li> <li>이혼한 부모는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명 중 한 명만 수급 가능</li> <li>이혼가족은 부모 각각 한 명씩 돌보는 경우 한 명분에 해당하는 아동수당 각각 수급 가능</li> </ul>	-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 동반 호주 거주자</li> <li>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전체 시간의 35% 이상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부모 (수당 종류에 따라 추가 기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의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 책임 비율에 따라 급여 수준 조정</li> </ul>	-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물학적 부모, 입양부모, 자녀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혹은 파트너, 법적 보호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에게 지급되나 이혼 후 공동양육권을 이행 중인 부모의 경우 부모 각각에게 절반씩 지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에 만성질환 및 중증장애가 있고 교육지원 종료 시 (연장지급 성격)</li> <li>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보호자 보호가 종료된 경우: 의무교육 이후 공공교육에서 학업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인 자</li> <li>정부 허용에 따라 부모와 분리 거주하며 교육지원 제공된 경우</li> </ul>

국가	지급대상 부모	기타 세부 내용	
		부모 간 분배 수급	아동 직접 수급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둔 이스라엘 거주 부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 계좌나 부모 공동 계좌로 지급</li> <li>이혼 부모의 경우 모에게 지급되나 아버지가 주양육자인 경우 아버지에게 지급</li> <li>다자녀를 분담하여 양육하는 경우 양육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개별적으로 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보험원은 아동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해 매월 NIS 57 입금. 해당 자녀의 부모도 아동수당에서 같은 금액, 즉 NIS 57가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선택할 수 있음.</li> </ul>

자료: 1) 유럽연합. [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policies-and-activities/moving-working-europe/eu-social-security-coordination/your-rights-country-country\\_en](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policies-and-activities/moving-working-europe/eu-social-security-coordination/your-rights-country-country_en) (2024. 7. 1. 인출), 2) 국가별 아동수당 안내 홈페이지: 노르웨이 노동복지청 홈페이지 <https://www.nav.no/barnetrygd> (2024. 7. 1. 인출); 영국 정부 정보 포털. <https://www.gov.uk/child-benefit> (2024. 7. 1. 인출); 헝가리 국고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allamkincstar.gov.hu/csaladok-tamogatasa/Csalad\\_gyermek/csaladi-potlek](https://www.allamkincstar.gov.hu/csaladok-tamogatasa/Csalad_gyermek/csaladi-potlek) (2024. 7. 1. 인출); 호주 서비스청 홈페이지.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residence-rules-for-family-tax-benefit?context=22151> (2024. 7. 1. 인출); 프랑스 가족수당기금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es-allocations-familiales-af> (2024. 6. 28. 인출); 벨기에 플란데런 아동수당기관 홈페이지, [https://www.kidslife.be/en/key-moments/co-parenting?\\_gl=1\\*1joae2p\\*\\_up\\*MQ..\\*\\_ga\\*MjA4Nzk2NjQ3Mi4xNzlwOTI3NDg1\\*\\_ga\\_KQKZ95D672\\*MTcyMDkyNzQ4NS4xLjEuMTcyMDkyNzQ5MS4wLjAuMA](https://www.kidslife.be/en/key-moments/co-parenting?_gl=1*1joae2p*_up*MQ..*_ga*MjA4Nzk2NjQ3Mi4xNzlwOTI3NDg1*_ga_KQKZ95D672*MTcyMDkyNzQ4NS4xLjEuMTcyMDkyNzQ5MS4wLjAuMA) (2024. 7. 14. 인출); 이스라엘 비영리단체 Nefesh B'Nefesh. <https://www.nbn.org.il/life-in-israel/government-services/rights-and-benefits/monthly-child-benefits-from-bituach-leumi> (2024. 7. 1. 인출), 3) 독일 Familienkasse(2024a). Merkblatt Kindergeld.

### (2) 아동수당 지급 연령 요건

아동수당 지급 기본 연령은 16세 미만에서 21세 미만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중등교육이 마무리 되는 만 19세 이전에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일부 국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세 미만(스웨덴, 영국, 호주), 23세 미만(헝가리), 24세 미만(폴란드), 25세 미만(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까지 연장 지급한다. 연장 지급 조건으로는 지속되는 중등교육 수학, 장애, 직업훈련 등이 있으며,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연령 제한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연장 지급 연령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군복무(영국도 해당), 임신, 자녀양육 등의 조건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급 요건의 폭이 넓은 특징을 보인다.

〈표 III-1-4〉 주요국의 아동(가족)수당 지급 연령

국가(연령순)	기본 지급연령	연장 지급연령 및 기준
스웨덴	16세 미만	• 20세 미만: 중등교육기관 혹은 특수학교에서 수학 등
영국		• 20세 미만: 승인된 교육 및 훈련 이수 • 20주: 정부 지원 커리어 서비스 참여, 군복무 수행
호주		• 20세 미만: 풀타임 중등교육 및 적절한 학습량 요건 충족하거나, 요건 면제시
핀란드	17세 미만	• 없음
헝가리		• 20세 미만: 중등교육 혹은 직업 훈련 이수 • 23세 미만: 특수교육 이수 • 제한없음: 정기적 소득이 없는 중증 장애
노르웨이		• 없음
덴마크	18세 미만	• 없음
이스라엘		• 없음
독일		• 21세 미만: 구직 • 25세 미만: 진학, 직업교육, 사회봉사 등 • 제한없음: 25세 이전 발생한 장애로 경제활동 불가
폴란드	19세 미만	• 소득조건 없는가족 800 플러스(Rodzina 800 plus)는 연장기준 없음. • 소득조사가 동반되는 가족수당 (Zasiłek rodzinny)의 경우 - 21세 미만: 학업 - 24세 미만: 학업, 중등증 혹은 중증 장애
벨기에 (플란데런)		• 25세 미만: 고등학교 및 훈련기관에서 최소 주 17시간 수업 수강, 특수교육 재학, 최소 27크레딧의 대학 수업 수강, 해외 대학에 재학, 종교기관에서 훈련 수강 등 <sup>25)</sup>
오스트리아		• 24세 미만: 직업훈련, 직업훈련에 대한 대학교육 • 25세 미만: 임신부,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여성, 군 징집자, 장애인, 수학기간이 긴 학업 수료 중인 자, 자발적 사회봉사 수행 • 제한없음: 21세 이전 또는 이후 직업 훈련(어느 경우든 25세 이전) 중에 발생한 장애로 소득활동 영구적 불가
프랑스	20세 미만	없음
벨기에(왈로니)	21세 미만	• 25세 미만: 학생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고용이 연계된 인턴십 중이거나, 지역 내 고용센터에 젊은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

자료: 1) 유럽연합 [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policies-and-activities/moving-working-europe/eu-social-security-coordination/your-rights-country-country\\_en](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policies-and-activities/moving-working-europe/eu-social-security-coordination/your-rights-country-country_en) (2024. 7. 1. 인출).

2) 국가별 아동수당 안내 홈페이지: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 (2024. 7. 1. 인출); 폴란드 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gov.pl/web/rodzina/co-robimy-wsparcie-dla-rodzin-z-dziecmi> (2024. 7. 1. 인출); 영국 정부 정보 포털. <https://www.gov.uk/child-benefit> (2024. 7. 1. 인출).

3) 독일: Familienkasse(2024a). Merkblatt Kindergeld.

25)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벨기에 사례분석 파트를 참고

(3) 거주 및 국적 관련 지급요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가 모두는 해당국가의 거주 요건을 아동수당 지급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해당국의 시민권자라도 일정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반대로 시민권이 없더라도 해당국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제도의 특성상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거처도 지급요건의 고려 요소이다. 호주 등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거주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노르웨이,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등은 부모가 해당국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당국,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혹은 스위스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핀란드의 경우 자녀가 해당국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I-1-5〉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요건: 거주 및 국적 세부요건

국가	내용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거주 또는 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 거주 중</li> <li>• 지난 10년 이내에 덴마크 영역(예: 덴마크, 페로 제도, 그린란드)에서 거주하거나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난민의 경우 영주권 소유한 부모에게만 지급.</li> </ul>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회원국 시민권자가 핀란드에서 일하는 경우 자녀가 핀란드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동수당 지급 가능</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거주 외국인 중에서 EU 회원국 혹은 EEU, 스위스 국적 거주민</li> <li>• 통상 거주지 설정 4개월 이후</li> <li>• 제3국에 속하는 외국인은 독일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이 있을 경우</li> <li>•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알제리·보스니아·튀르키예·튀니지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독일에서 취업 중인 경우, 난민이나 망명인</li> <li>• 국경 통근자</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거주하거나 근로 중인 경우</li> <li>• EU 혹은 EEA 회원국, 스위스 또는 영국 내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에 적용 가능하므로 관련 정보 참고하여 지급 결정</li> </ul>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노르웨이 혹은 EEA 회원국 거주</li> <li>•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가족과 함께 노르웨이 거주</li> <li>• EEA 회원국의 시민권자이면서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경우</li> <li>• 자녀와 함께 EEA 회원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부모가 노르웨이에서 일하거나 사회보장 혜택 및 연금 수령하는 경우</li> </ul>

국가	내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 국적자 또는 유럽연합 소속 국적자로 자녀가 프랑스 영구 거주가 예상될 경우</li> <li>유럽 경제지역(EEA), 스위스, 알제리 출신</li> <li>난민 또는 무국적자, 이외 특수 거주 허가 소지자</li> </ul>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벨기에 지역에 거주하면서 벨기에 시민권자이거나 정부에서 발급된 거주증이 있는 경우</li> </ul>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가 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혹은 영국에 거주하는 경우</li> </ul>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회원국, EEU 회원국, 스위스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 규정이 적용되는 외국인</li> <li>거주 사유에 따라 6개월 혹은 9개월 이상 임시 체류 허가 받은 근로자(학업이나 단기 근로 목적으로 입국한 제3국 시민 등 제외)</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주권 소유 외국인, UK와 사회보장협정 맺은 국가 거주</li> <li>영주권 미소유자는 EEA 혹은 스위스 국적자 또는 영국에서 일하거나 구직 중, 학업 중이면서 가구 생계유지에 공공부조가 필요없는 경우</li> </ul>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EU 회원국, EEA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 출국할 경우, 외교 또는 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지원금 대상인 경우 지급 정지</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와 아동 모두 호주 거주</li> <li>신청자와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 뉴질랜드 시민권 소유</li> <li>신청자의 경우 임시 체류 비자까지 인정</li> </ul>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스라엘 거주 및 취업 허가증 소유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임금근로자/자영업자로 이스라엘에서 근로자로 자녀 중 한 명이 이스라엘 거주</li> <li>부모 없이 단독으로 이스라엘로 이민 온 아동</li> </ul>

자료: 1) 유럽연합 [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policies-and-activities/moving-working-europe/eu-social-security-coordination/your-rights-country-country\\_en](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policies-and-activities/moving-working-europe/eu-social-security-coordination/your-rights-country-country_en) (2024. 7. 1. 인출).  
 2) 국가별 아동수당 안내 홈페이지: 벨기에 플란데런 Groeipakket. <https://www.groeipakket.be/en/compensations-groeipakket/moving-to-flanders> (2024. 7. 1. 인출), 벨기에 왈로니 AVIQ. <https://aviq.kid.aviq.be/Pages/regulations/decret-relatif-gestion-et-au-paiement-des-prestions-familiales-4.aspx> (2024. 7. 1. 인출);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 (2024. 7. 1. 인출); 폴란드 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gov.pl/web/rodzina/odpowiedzi-na-najczesciej-zadawane-pytania2> (2024. 7. 1. 인출); 영국 정부 정보 포털. <https://www.gov.uk/child-benefit> (2024. 7. 1. 인출); 이스라엘 국가보험 홈페이지. <https://www.btl.gov.il/English%20Homepage/Benefits/Children/Pages/Conditions.aspx> (2024. 7. 1. 인출).  
 3) 독일: Familienkasse(2024a). Merkblatt Kindergeld.

## 나) 아동수당 지급액 및 추가·차등지급 기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주로 부모의 소득수준, 가족 유형, 자녀 수, 자녀 연령 혹은 출생순서, 자녀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추가 현금지급과 조합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수당에 소득수준 적용 여부에 따라 아동수당 차등지급 국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1) 소득수준 적용 아동수당 차등 지급 국가

아래 <표 III-1-6>에서는 이 중에서도 부모의 소득수준이 적용되는 국가들의 세부 차등 및 추가 지급 요건을 정리하였다. 소득수준을 가늠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노동시장 기여세(임금의 8%)를 제외한 개인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호주의 경우 과세 소득, 해외 소득, 비과세 해외소득, 총순투자손실, 연금, (고용주가 부여하는) 부가혜택, 일부 비과세 연금 또는 혜택까지도 포함한 연 조정소득을 사용한다.

프랑스, 호주의 경우 세 개의 소득 구간이 존재하는 반면, 덴마크와 영국의 경우 소득 한계 구간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정률적으로 아동수당 급여를 삭감하고, 초과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령액이 결과적으로 0원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덴마크와 영국의 차이점은 덴마크는 애초에 차감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영국은 각 과세 년도 말에 수혜자가 고소득 아동수당료(HICBC)를 지불하거나 아동수당 수급을 아예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덴마크는 자녀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반면, 영국은 출생순서가 이른, 즉 연령이 높은 자녀에게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 개의 소득구간을 두고 있는 프랑스와 호주는 소득수준을 각각 자녀 수 및 연령에 따라 다시 한 번 차등을 두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 모두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금액도 높다.

한부모 가족, 장애 아동 가족, 다태아 가족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식 역시 국가별로 상이하다. 덴마크의 경우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파트 A와 B로 구분하여 A는 일반 양부모 가족에게, B는 한부모, 조부모, 외벌이 가족에게 지급한다. 즉 FTB B는 한부모 가정 및 단일 소득 가정 추가 지원 체계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별도의 추가지원을 마련하는 대신 가족 소득 균등화 산식을 이용하며 애초에 한부모에게 유리한 구조를 마련했다.

〈표 III-1-6〉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과 지급방식: 소득수준 적용 차등 지급 국가

국가명	지급기준					세부내용																							
	출생순서	연령	자녀수	한부모	기타지원																								
덴마크		①				① 2024년 연령별 아동수당 지급액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0 - 2세</td> <td>DKK 5,124/분기</td> </tr> <tr> <td>3 - 6세</td> <td>DKK 4,056/분기</td> </tr> <tr> <td>7 - 14세</td> <td>DKK 3,192/분기</td> </tr> <tr> <td>15 - 17세</td> <td>DKK 1,064/분기</td> </tr> </table> - 단, 연 소득 DKK 882,700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지급. 파트너의 아동수당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0 - 2세	DKK 5,124/분기	3 - 6세	DKK 4,056/분기	7 - 14세	DKK 3,192/분기	15 - 17세	DKK 1,064/분기															
0 - 2세	DKK 5,124/분기																												
3 - 6세	DKK 4,056/분기																												
7 - 14세	DKK 3,192/분기																												
15 - 17세	DKK 1,064/분기																												
프랑스		①	②			①+② 세 개의 연소득 소득구간에 따라 자녀수 및 자녀 연령 고려하여 차등 지급. 이 때 소득구간 기준은 자녀수에 따라 달리 적용됨. * 2자녀: EUR 74,966 미만(Ⅰ)/ 74,966~99,922(Ⅱ)/ 99,922이상(Ⅲ) * 3 자녀: EUR 81,212미만(Ⅰ)/81,212~106,168(Ⅱ)/106,168이상(Ⅲ) * 4자녀이상: EUR 87,458미만(Ⅰ)/87,459~112,414(Ⅱ)/112,414이상(Ⅲ)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자녀수 및 연령</th> <th colspan="3">소득구간</th> </tr> <tr> <th>Ⅰ</th> <th>Ⅱ</th> <th>Ⅲ</th> </tr> </thead> <tbody> <tr> <td>2자녀</td> <td>EUR 148.52/월</td> <td>EUR 74.26/월</td> <td>EUR 37.13/월</td> </tr> <tr> <td>3자녀</td> <td>EUR 338.81/월</td> <td>EUR 169.40/월</td> <td>EUR 84.71/월</td> </tr> <tr> <td>4자녀 이상</td> <td>EUR 529.10/월</td> <td>EUR 264.55/월</td> <td>EUR 132.27/월</td> </tr> <tr> <td>만 14세 이상 (추가)</td> <td>EUR 74.26/월</td> <td>EUR 37.13/월</td> <td>EUR 18.57/월</td> </tr> </tbody> </table>	자녀수 및 연령	소득구간			Ⅰ	Ⅱ	Ⅲ	2자녀	EUR 148.52/월	EUR 74.26/월	EUR 37.13/월	3자녀	EUR 338.81/월	EUR 169.40/월	EUR 84.71/월	4자녀 이상	EUR 529.10/월	EUR 264.55/월	EUR 132.27/월	만 14세 이상 (추가)	EUR 74.26/월	EUR 37.13/월	EUR 18.57/월
자녀수 및 연령	소득구간																												
	Ⅰ	Ⅱ	Ⅲ																										
2자녀	EUR 148.52/월	EUR 74.26/월	EUR 37.13/월																										
3자녀	EUR 338.81/월	EUR 169.40/월	EUR 84.71/월																										
4자녀 이상	EUR 529.10/월	EUR 264.55/월	EUR 132.27/월																										
만 14세 이상 (추가)	EUR 74.26/월	EUR 37.13/월	EUR 18.57/월																										
호주	① (B)	② (A)	③ (A, B)	④ (B)	⑤ (B)	② FTB A: 2024년 연령과 연조정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격주 지급)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연령</th> <th>AUD 62,634 이하</th> <th>AUD 62,634 - 111,398</th> <th>AUD 111,398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0 - 12세</td> <td>AUD 213.36</td> <td>AUD 1당 수당 20 cents 씩 삭감되어 최소 AUD 68.46지급 (자녀수 고려 ②+③)</td> <td>AUD 1당 수당 30 cents 씩 삭감되어 최소 AUD 0 지급</td> </tr> <tr> <td>13 - 19세</td> <td>AUD 277.48</td> <td></td> <td></td> </tr> </tbody> </table> ③ FTB A: 2024년 자녀수에 따른 연조정소득제한: 명시된 소득 이상의 부모에게는 기본금액 AUD 68.46 지급	연령	AUD 62,634 이하	AUD 62,634 - 111,398	AUD 111,398 초과	0 - 12세	AUD 213.36	AUD 1당 수당 20 cents 씩 삭감되어 최소 AUD 68.46지급 (자녀수 고려 ②+③)	AUD 1당 수당 30 cents 씩 삭감되어 최소 AUD 0 지급	13 - 19세	AUD 277.48													
연령	AUD 62,634 이하	AUD 62,634 - 111,398	AUD 111,398 초과																										
0 - 12세	AUD 213.36	AUD 1당 수당 20 cents 씩 삭감되어 최소 AUD 68.46지급 (자녀수 고려 ②+③)	AUD 1당 수당 30 cents 씩 삭감되어 최소 AUD 0 지급																										
13 - 19세	AUD 277.48																												

국가명	지급기준					세부내용				
	출생순서	연령	자녀수	한부모	기타지원	연령	1명	2명	3명 이상	
						0 - 12세	AUD 81,523	AUD 100,412	자동차감 X, 주로 기본급여 이상 지급	
						13 - 19세	AUD 89,882	AUD 108,770		
	①+④ FTB B: 2024년 가장 어린자녀연령, 가구소득,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요건 FTB B 의 최대수당액은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이 0 - 4세인 경우 AUD 181.44, 5-18세인 경우 AUD 126.56. 이는 가구유형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됨(격주 지급)									
						양부모 <sup>26)</sup>	가장 어린자녀가 13세 이하면서 주소득자의 연소득이 AUD 112,578 이상인 경우 주소득자의 연소득에 따라 지급액 산정. 연 AUD 6,497 미만이면 전액 지급되지만, AUD 6,497 - AUD 32,303(5세 미만 자녀) 혹은 AUD 6,497 - 25,149 (5-13세 자녀)의 경우 AUD 1 초과당 20cents 씩 차감			
						한부모	연조정소득 AUD 112,578 이하인 경우 격주 AUD 181.44 (0-4세) 혹은 AUD 126.56(5-18세) 지급			
					양조부모	18세 미만의 손주를 돌보면서 둘의 소득합이 AUD 112,578 이하인 경우 수당의 일부 지급				
					한조부모	연소득 AUD 112,578 이하인 경우 전액 지급				
						⑤ FTB B대상자는 연보조금 수급 가능. 2024년 가족당 최대AUD 430.70(연말 지급) 가능				
영국	①					① 2024년 출생순서에 따른 아동수당 차등지급액				
						출생순서	지급액			
						첫째 혹은 외동 자녀	GBP 25.60/주			
						둘째 자녀부터	GBP 16.95/주			
- 부부 중 한 명의 세전 소득이 GBP 60,000 을 초과할 경우, 각 과세 연도 말에 고소득아동수당료(HICBC, 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를 지불하거나, 아동수당 수급 거부 청구 양식 제출 가능 - 부부 두 명 모두 소득한계를 초과할 경우, 더 높은 소득을 가진 부모가 해당료 납부										

자료: 1) 국가별 아동수당 안내 홈페이지: 덴마크 정부 포털. <https://www.borger.dk/familie-og-boern/Familieydelse-oversigt/Boerne-ungeydelse> (2024. 7. 7. 인출);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qui> (2024. 5. 31. 인출); 호주 서비스청 홈페이지.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who-can-get-family-tax-benefit?context=22151> (2024. 7. 7. 인출); 영국 정부 정보 포털. <https://www.gov.uk/child-benefit> (2024. 7. 7. 인출).

26) 양부모 가구의 경우 육아휴직 중에는 FTB part B 지급 중지됨.

(2) 소득수준 미적용 아동수당 차등 지급 국가

아래 <표 III-1-7>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본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들의 기타 요건을 다루고 있다. 먼저 기본아동수당에서 출생순서를 고려하는 국가로는 둘째 자녀부터 더 낮은 수당을 지급하는 영국과 첫째 자녀 이후로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핀란드와 이스라엘이 있다. 핀란드에서는 지급액이 출생순서에 따라 증감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은 둘째부터 넷째 자녀까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그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는 첫째 자녀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셋째 및 넷째의 경우 기본지급액의 약 50%를 추가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녀가 두 명 이하인 가구보다 더 높은 지원을 받고 있다. 자녀 연령을 고려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있다.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급액이 증액되는 오스트리아와 달리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각각 0-5세와 0-2세가 그 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수당을 받는다. 자녀 수를 고려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수당이 증가하고 추가로 다자녀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아래 국가들은 소득조사 없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신, 아동(혹은 가족)수당 하에 추가 조건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한부모, 장애아 부모, 저소득층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 가족수당 내 사회수당 혹은 사회보조금 명목으로 저소득가구 지원 수당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스라엘의 경우 국민보험원에서 지급되는 일부 지원금 수혜시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독일, 벨기에, 폴란드의 경우 자녀 수와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한 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추가수당은 소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지급되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다자녀수당의 경우 세전소득 임계치를 고려하여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III-1-7〉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과 지급방식: 소득수준 미적용 차등 지급 국가

국가명	지급기준					세부내용																																					
	출생순서	연령	자녀수	한부모	기타지원																																						
독일					①	-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당 월 EUR 250 지급(2024년 기준) ① 아동수당보조금 아동 1인당 월EUR 292 지급(소득 및 자산 등에 따라 감액 지급) -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본인/부부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있으나, 자녀 포함한 전체 가구 구성원의 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높은 주거비용 또는 다자녀 가구 등은 중간소득층에 감액 아동수당 지급) - 소득하한선: 한부모 EUR 600/월, 부부 EUR 900/월																																					
벨기에		① (알로니)			②	<b>[플란데런 지역]</b> - 2024년 기본지급액 아동당 월 EUR 176.66 ② 사회수당(Sociale toeslag)을 통해 세전 연가구소득과 자녀수를 고려해 저소득가구 추가지원 <b>[알로니 지역]</b> ① 2024년 자녀연령에 따른 차등지급 (18세 미만에게 EUR 188.95, 18세 이상에게 EUR 201.14 지급) ② 사회보조금(Supplément social)을 통해 일정 임금 수준 이하의 저소득가구 지원(한부모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수당 있음)																																					
노르웨이		①		②		①+② 2024년 자녀연령 및 한부모 여부에 따른 차등지급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령</th> <th>아동수당</th> <th>확대아동수당 (한부모)</th> </tr> </thead> <tbody> <tr> <td>0 - 5세</td> <td>NOK 1,766/월</td> <td rowspan="2">NOK 2,516</td> </tr> <tr> <td>6 - 17세</td> <td>NOK 1,510/월</td> </tr> </tbody> </table>	연령	아동수당	확대아동수당 (한부모)	0 - 5세	NOK 1,766/월	NOK 2,516	6 - 17세	NOK 1,510/월																													
연령	아동수당	확대아동수당 (한부모)																																									
0 - 5세	NOK 1,766/월	NOK 2,516																																									
6 - 17세	NOK 1,510/월																																										
오스트리아		①	②		③	①+② 2024년 자녀연령 및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급액(다자녀수당 포함)(월별, 단위: EU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령</th> <th>1명</th> <th>2명</th> <th>3명</th> <th>4명</th> <th>5명</th> <th>6명</th> <th>7명 ↑</th> </tr> </thead> <tbody> <tr> <td>0 - 2세</td> <td>132.3</td> <td rowspan="4">+ 8.2</td> <td>+ 20.2</td> <td>+ 30.7</td> <td>+ 37.2</td> <td>+ 41.5</td> <td>+ 60.3</td> </tr> <tr> <td>3 - 9세</td> <td>141.5</td> <td>+ 23.3</td> <td>+ 23.3</td> <td>+ 23.3</td> <td>+ 23.3</td> <td>+ 23.3</td> </tr> <tr> <td>10 - 18세</td> <td>164.2</td> <td>(다자녀)</td> <td>(다자녀)</td> <td>(다자녀)</td> <td>(다자녀)</td> <td>(다자녀)</td> </tr> <tr> <td>19세 이후</td> <td>191.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단, 다자녀수당의 경우 전해 세전소득 EUR 55,000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급 ③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매월 아동당 EUR 180.9 추가 지급	연령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	0 - 2세	132.3	+ 8.2	+ 20.2	+ 30.7	+ 37.2	+ 41.5	+ 60.3	3 - 9세	141.5	+ 23.3	+ 23.3	+ 23.3	+ 23.3	+ 23.3	10 - 18세	164.2	(다자녀)	(다자녀)	(다자녀)	(다자녀)	(다자녀)	19세 이후	191.6					
연령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																																				
0 - 2세	132.3	+ 8.2	+ 20.2	+ 30.7	+ 37.2	+ 41.5	+ 60.3																																				
3 - 9세	141.5		+ 23.3	+ 23.3	+ 23.3	+ 23.3	+ 23.3																																				
10 - 18세	164.2		(다자녀)	(다자녀)	(다자녀)	(다자녀)	(다자녀)																																				
19세 이후	191.6																																										



국가명	지급기준					세부내용																					
	출생순서	연령	자녀수	한부모	기타지원																						
폴란드		①	②	③	④	- 가족 800 플러스(Rodzina 800 plus) 는 소득요건이 없이 아동당 기본지급액 월 PLN 800이 지급 - 단, 가족수당(Zasiłek rodzinny)의 경우, 가족구성원당 월소득 PLN 674 혹은 PLN 764이하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일 때 지급 ① 2024년 연령에 따른 가족 800 플러스(Rodzina 800 plus) 및 가족수당(Zasiłek rodzinny) 조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령</th> <th>가족 800 플러스</th> <th>가족수당</th> </tr> </thead> <tbody> <tr> <td>0 - 4세</td> <td rowspan="2">PLN 800/월</td> <td>PLN 95/월</td> </tr> <tr> <td>5 - 17세</td> <td>PLN 124/월</td> </tr> <tr> <td>18 - 23세</td> <td>-</td> <td>PLN 135/월</td> </tr> </tbody> </table> ② 셋째 자녀부터 매월 PLN 95 추가 지급 ③ 한부모의 경우 아동당 월 PLN 193 추가 지급(상한선 PLN 386) ④ 장애아동의 경우 월 PLN 80 추가 지급(상한선 PLN 160)	연령	가족 800 플러스	가족수당	0 - 4세	PLN 800/월	PLN 95/월	5 - 17세	PLN 124/월	18 - 23세	-	PLN 135/월										
연령	가족 800 플러스	가족수당																									
0 - 4세	PLN 800/월	PLN 95/월																									
5 - 17세		PLN 124/월																									
18 - 23세	-	PLN 135/월																									
헝가리			①	②	③	①+② 2024년 자녀수와 가족유형에 따른 차등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자녀수</th> <th>양부모</th> <th>한부모</th> </tr> </thead> <tbody> <tr> <td>1명</td> <td>HUF 12,200/월</td> <td>HUF 13,700/월</td> </tr> <tr> <td>2명</td> <td>HUF 13,300/월</td> <td>HUF 14,800/월</td> </tr> <tr> <td>3명 이상</td> <td>HUF 16,000/월</td> <td>HUF 17,000/월</td> </tr> </tbody> </table> ③ 만성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HUF 23,300(한부모의 경우 HUF 25,900) 지급	자녀수	양부모	한부모	1명	HUF 12,200/월	HUF 13,700/월	2명	HUF 13,300/월	HUF 14,800/월	3명 이상	HUF 16,000/월	HUF 17,000/월									
자녀수	양부모	한부모																									
1명	HUF 12,200/월	HUF 13,700/월																									
2명	HUF 13,300/월	HUF 14,800/월																									
3명 이상	HUF 16,000/월	HUF 17,000/월																									
스웨덴			①			기본지급액 아동당 월 SEK 1,250 ① 2024년 기준 자녀수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자녀수</th> <th>일반 아동수당</th> <th>다자녀추가수당</th> </tr> </thead> <tbody> <tr> <td>1</td> <td>SEK 1,250</td> <td>-</td> </tr> <tr> <td>2</td> <td>SEK 2,500</td> <td>SEK 150</td> </tr> <tr> <td>3</td> <td>SEK 3,750</td> <td>SEK 730</td> </tr> <tr> <td>4</td> <td>SEK 5,000</td> <td>SEK 1,740</td> </tr> <tr> <td>5</td> <td>SEK 6,250</td> <td>SEK 2,990</td> </tr> <tr> <td>6</td> <td>SEK 7,500</td> <td>SEK 4,240</td> </tr> </tbody> </table>	자녀수	일반 아동수당	다자녀추가수당	1	SEK 1,250	-	2	SEK 2,500	SEK 150	3	SEK 3,750	SEK 730	4	SEK 5,000	SEK 1,740	5	SEK 6,250	SEK 2,990	6	SEK 7,500	SEK 4,240
자녀수	일반 아동수당	다자녀추가수당																									
1	SEK 1,250	-																									
2	SEK 2,500	SEK 150																									
3	SEK 3,750	SEK 730																									
4	SEK 5,000	SEK 1,740																									
5	SEK 6,250	SEK 2,990																									
6	SEK 7,500	SEK 4,240																									

국가명	지급기준					세부내용					
	출생순서	연령	자녀수	한부모	기타지원						
핀란드	①	②		③		①+② 2024년 기준 출생순서에 따른 차등지급과 연령에 따른 추가지급의 조합					
						연령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
						0 - 2세	EUR 94.88 + EUR 26	EUR 104.84 + EUR 26	EUR 133.79 + EUR 26	EUR 173.24 + EUR 26	EUR 192.69 + EUR 26
						3 - 16세	EUR 94.88	EUR 104.84	EUR 133.79	EUR 173.24	EUR 192.69
						③ 한부모의 경우 월 EUR 73.30 추가 지급					
이스라엘	①	②		③		2024년 자녀 수와 출생순서에 따른 차등 및 추가지급					
						자녀수/출생순서	차등지급	추가지급			
						1	NIS 169/월				
						2	NIS 214/월				
						3	NIS 214/월	NIS 111/월			
						4	NIS 214/월	NIS 111/월			
5 이상	NIS 169/월										
						국민보험원에서 지급하는 소득지원급여, (이혼 가족)자녀양육비, 소득보충연금, 소득보충유족연금 수급자 대상 추가 아동수당 지급					

자료: 1) 유럽연합 [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policies-and-activities/moving-working-europe/eu-social-security-coordination/your-rights-country-country\\_en](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policies-and-activities/moving-working-europe/eu-social-security-coordination/your-rights-country-country_en)  
 2) 국가별 아동수당 안내 홈페이지: 벨기에 플란데런 Groeipakket. <https://www.groeipakket.be> (2024. 7. 1.인출), 벨기에 왈로니 AVIQ. <https://aviqid.aviq.be> (2024. 7. 1. 인출); 노르웨이 노동복지청 홈페이지. <https://www.nav.no/barnetrygd> (2024. 7. 1. 인출);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실 홈페이지. <https://www.bundeskanzleramt.gv.at/agenda/familie/familienbeihilfe/basisinformation-zur-familienbeihilfe/familienbeihilfenbetaeage.html> (2024. 7. 1. 인출); 폴란드 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gov.pl/web/rodzina/co-robimy-wsparcie-dla-rodzin-z-dziecmi> (2024. 7. 1. 인출); 헝가리 국고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allamkincstar.gov.hu/csaladok-tamogatasa/Csalad\\_gyermek/csaladi-potlek](https://www.allamkincstar.gov.hu/csaladok-tamogatasa/Csalad_gyermek/csaladi-potlek) (2024. 7. 1. 인출);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 (2024. 7. 1. 인출); 핀란드 사회보장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lapsilisa> (2024. 7. 1. 인출); 이스라엘 국가보험 홈페이지. <https://www.bt.gov.il/English%20Homepage/Benefits/Children/Pages/Rates%20of%20child%20allowance.aspx> (2024. 7. 1. 인출); 독일: Familienkasse(2024b), Merkblatt Kinderzuschlag.

## 다) 지급액 조정 방식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왈로니, 오스트리아, 호주 등은 매년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아동수당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아동수당 지급액은 경기변동이 적용된 특정한 조정비율, 생활비지수 혹은 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동된다. 이 밖에도 벨기에 플란데런 지역은 매년 2%씩 정률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다. 별도의 연동제 없이 비정기적으로 지급액을 조정하는 국가로는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있다.

〈표 III-1-8〉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방식

국가명	세부내용
덴마크	• 인플레이션 및 임금변화 등의 경기변동이 적용된 조정비율(satsreguleringsprocenten)에 따라 매년 조정
핀란드	• 매년 생활비지수(Elinkustannusindeksi)에 따라 조정
독일	• 관련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조정
스웨덴	• 아동당 소비지출액 반영 • 국회 결정(관련법)에 따라 결정 비정기적으로 조정
노르웨이	• 정부 예산을 고려해 결정
프랑스	• 연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벨기에	• 플란데런: 2020년 이후 기존의 연동제와 관계없이 2%씩 매년 증가 • 왈로니: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대비 아동 수 변화, 1인당 GDP의 실질 성장 등의 다양한 지표에 따라 매년 재산정
오스트리아	•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매년 조정
폴란드	• 3년마다 가족소득지원 임계치를 고려하여 정부가 조정
영국	• 정부 결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결정(2019년 기준)
호주	•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
헝가리	• 국가예산법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

자료: 1) 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2024. 6. 30. 인출).  
2) 국가별 관련 정보 홈페이지: 노르웨이 법률 정보 포털.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2-03-08-4/KAPITTEL\\_4#KAPITTEL\\_4](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2-03-08-4/KAPITTEL_4#KAPITTEL_4) (2024. 7. 1. 인출); 호주 사회서비스부 정책 가이드. <https://guides.dss.gov.au/family-assistance-guide/3/1/1/60> (2024. 7. 1. 인출); 벨기에 플란데런 Groeipakket. <https://www.groeipakket.be>; 벨기에 왈로니 AVIQ. <https://aviqid.aviq.be> (2024. 7. 1. 인출).

## 2) 양육수당

### 가) 지급대상 및 요건

양육수당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헝가리 5개국에서만 실시하고 있

다. 가정양육을 전제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부분 자녀연령 만 2~3세 미만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3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가정양육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핀란드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1~2학년)에 부모가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면서 자녀를 돌볼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양육수당이 있다. 프랑스는 6세 미만 자녀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양육 방식을 선택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모가 보육사를 고용하거나 가정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연소득, 자녀연령, 한부모 가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헝가리의 양육수당(GYES)은 기본적으로 3세 미만까지이나, 쌍둥이의 경우 의무교육 1년까지 지급하고, 만성질병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10세까지 연장 지급한다. 또한 헝가리의 다자녀 양육수당(GYET)에 해당하는 양육지원금은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 및 보호자의 막내 자녀가 3~8세인 경우 최대 주당 30시간 이하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한다.

한편,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양육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기간은 한정하여 덴마크, 핀란드는 최대 1년 이내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노르웨이는 최대 7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표 III-1-9〉 주요국의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요건

국가	제도명	지급대상 및 기간	지급요건
덴마크	자녀양육수당 (Tilskud til pasning af egne børn)	-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직접 1-3세 자녀를 돌보는 부모 - 지급기간: 최소 8주~최대 1년	- 무근로소득자, 자녀와 함께 거주 - 덴마크 시민권자, EU, EEA(유럽경제 지역), 스위스 국적자 - 이외에 비시민권자의 경우: 수급 전 8년 중 7년 거주, 덴마크어 구사자(자녀 양육 가능 수준) - 지자체별로 수급자격 및 연령기준 차이 있음
핀란드	가정내양육수당 (Lasten kotihoidon tuki)	- 6개월~3세 자녀 가정양육 또는 민간돌봄 이용하는 양육자 - 지급기간: 최소 8주~최대 1년	- 부모, 부모의 파트너, 법적 보호자 - 지자체 ECEC 기관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유연양육수당	- 3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 부모, 부모의 파트너, 법적 보호자

국가	제도명	지급대상 및 기간	지급요건
	(Joustava hoitoraha)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고용되었거나, 자영업 연금 및 농부 연금 제도에 가입된 자영업자</li> <li>- 주 평균 30시간 이하 근무하거나 일반 풀타임 근무의 80%이하의 시간을 근무</li> </ul>
	부분양육수당 (Osittainen hoitoraha)	- 자녀가 초등 1-2학년 입학한 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부모의 파트너, 법적 보호자</li> <li>-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고용되었거나, 자영업 연금 및 농부 연금 제도에 가입된 자영업자</li> <li>- 주 30시간 이하 근무하면서 아동을 돌보는 자</li> <li>- 가구 소득이 월 SEK 53,830 이상인 경우, 상한선<sup>27)</sup> 적용</li> </ul>
노르웨이	양육수당 (kontantstøt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입양아동의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에 한하여 육아휴직이 끝난 후 최대 1년 지급 가능)</li> <li>- 2024년 8월 1일 이후 대상 아동의 경우 최대 7개월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 아동이 모두 노르웨이에 거주 (단, 향후 적어도 12개월을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지급 가능)</li> <li>- 부모는 아동과 영구적으로 함께 거주 (즉, 시설 아동 제외)</li> <li>- 2017년 이후 수당은 부모가 모두 (한 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를 지칭) 적어도 지난 5년 간 국민보험에 가입</li> </ul>
프랑스	양육선택보조금 (Complément de libre choix de mode de garde (CMG))	- 6세 미만의 아동의 보육비용 지원	- 자격기준 아동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과 같음
헝가리	양육수당 (Gyermekgondozást segítő ellátás, G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 부모의 배우자, 입양부모, 보호자</li> <li>- 양육비 수급자격이 있는 부모의 경우 수급이 끝난 2세부터 지급</li> <li>- 육아휴직 및 양육비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아동 출생 직후 지급</li> <li>- 쌍둥이의 경우 의무교육 1년까지 지급</li> <li>- 만성질병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10세까지 연장</li> <li>- 가정양육하고 부모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조부모 수급 가능(단, 아동이 최소 1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보험 가입과 관계 없음</li> <li>- 양육비 지원 없이 출생 후 바로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아동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소득활동 불가</li> <li>- 조부모의 경우, 아동이 3세가 되기 전까지 소득활동 불가. 3세 이상은 주 30시간 이하 근무 가능</li> </ul>

국가	제도명	지급대상 및 기간	지급요건
	양육지원금 (Gyermeknevelési támogatás, GY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명 이상(독립한 자녀, 성인 자녀 제외)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부모, 부모의 배우자, 입양부모 및 보호자 대상</li> <li>- 막내자녀가 3세~8세 인 경우 막내자녀 대상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지원을 받는 자의 경우 주 최대 30시간의 소득활동 가능(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제한 없음)</li> <li>- 돌봄서비스 이용과 무관하게 지급</li> </ul>

주: 양육수당 미 실시 국가 - 폴란드, 스웨덴,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호주, 영국, 이스라엘  
 자료: 1) 덴마크: MISSOC database,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은 코펜하겐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https://www.kk.dk/borger/pasning-og-skole/pasning-0-6-aar/private-tilbud-om-pasning/tilskud-til-pasning-af-eget-barn#:~:text=Du%20kan%20f%C3%A5%207.431%20kroner,Tilskuddet%20er%20bagudbetalt>) (2024. 7. 15. 인출).  
 2) 핀란드: 사회보장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child-care-allowances> (2024. 7. 15. 인출).  
 3) 노르웨이: MISSOC database, 노르웨이 노동·복지청 홈페이지 <https://www.nav.no/kontantstotte> (2024. 7. 15. 인출).  
 4) 프랑스: MISSOC database (2024. 7. 15. 인출).  
 5) 헝가리: 유럽연합. [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policies-and-activities/moving-working-europe/eu-social-security-coordination/your-rights-country-country/hungary\\_en](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policies-and-activities/moving-working-europe/eu-social-security-coordination/your-rights-country-country/hungary_en); 비영리단체 TASZ. <https://tasz.hu/tudastar/csaladtamogatasi-ellatasok/#section-65b3cd479b21f> (2024. 7. 15. 인출).

### 나) 양육수당 지급액

가정 내 양육만을 조건으로 단일 정액급여로 양육수당을 실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돌봄 서비스 비용이나 이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이다. 덴마크는 지자체별로 돌봄기관 비용의 85% 이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한다. 코펜하겐의 경우 월 7,431DKK(약 146만 9천원)이다. 노르웨이는 돌봄 시간 이용에 따라 지급하며, 주당 32시간 이내로 돌봄기관 이용이 가능하다. 7,500NOK(약 93만7천원)에서 1,500NOK(약 18만7천원)까지 지급된다. 프랑스는 부모가 선택하는 돌봄 서비스 형태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지급액 결정에 소득수준, 자녀연령, 한부모 여부가 모두 반영된다. 3세 미만을 기준으로 양 부모의 경우 최소 200.22유로에서 967.81유로까지 지급되며, 한부모는 최소 260.29유로에서 1258.15유로까지 지급된다.

#### 27)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부담 상한선>

자녀	가구 월 소득
첫째	월 소득 3% 혹은 SEK 1,645
둘째	월 소득의 2% 혹은 SEK 1,097
셋째	월 소득의 1% 혹은 SEK 548
넷째부터	개인부담 비용 없음

핀란드는 양육수당 종류에 따라 지급액 차등에 반영되는 요건이 다르다. 가정내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월 377.68유로가 지급되며 3세 이하 아동수에 따라 월 113.07유로 추가 지급되고 3세 초과 학령기 이전 아동은 월 72.66유로이다. 유연 양육수당의 경우 부모의 근로시간 기준(주당 22.5시간)에 따라 월 269.24유로 또는 월 179.49유로가 지급된다. 부분양육수당은 월 108.15유로가 지급된다.

〈표 III-1-10〉 주요국의 양육수당 지급액

국가	제도명	지급액														
덴마크	자녀양육수당 (Tilskud til pasning af egne børn)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돌봄기관 비용의 85% 이하 지급 원칙 - 코펜하겐의 경우: 각 아동 당 세전 월 7,431DKK														
핀란드	가정내 양육수당 (Lasten kotihoidon tuki)	- 기본금액 월 377.68유로 - 형제자매가 3세 이하인 경우, 추가된 아동 수에 따라 월 113.07유로 추가 지급 - 형제자매가 3세 초과이나 학령기 이전의 아동의 경우, 추가된 아동 수에 따라 월 72.66유로 추가 지급 - 아동 당 최대 월 202.12유로														
	유연양육수당 (Joustava hoitoraha)	- 주 22.5시간 이하 근무하거나 일반 전일제 근무의 60%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월 269.24유로 - 주 22.5-30 시간 근무하거나 일반 전일제 근무의 60-80% 근무하는 경우: 월 179.49유로														
	부분양육수당 (Osittainen hoitoraha)	- 기본금액 월 108.15유로														
노르웨이	양육수당 (kontantstøtte)	- 돌봄기관 이용 시간에 따라 상이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시간</th> <th>양육수당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0</td> <td>급여 100%, NOK 7,500</td> </tr> <tr> <td>최대 8시간</td> <td>급여 80%, NOK 6,000</td> </tr> <tr> <td>9-16시간</td> <td>급여 60%, NOK 4,500</td> </tr> <tr> <td>17-24시간</td> <td>급여 40%, NOK 3,000</td> </tr> <tr> <td>25-32시간</td> <td>급여 20%, NOK 1,500</td> </tr> <tr> <td>33시간 이상</td> <td>급여 0%, NOK 0</td> </tr> </tbody> </table>	시간	양육수당 지급액	0	급여 100%, NOK 7,500	최대 8시간	급여 80%, NOK 6,000	9-16시간	급여 60%, NOK 4,500	17-24시간	급여 40%, NOK 3,000	25-32시간	급여 20%, NOK 1,500	33시간 이상	급여 0%, NOK 0
시간	양육수당 지급액															
0	급여 100%, NOK 7,500															
최대 8시간	급여 80%, NOK 6,000															
9-16시간	급여 60%, NOK 4,500															
17-24시간	급여 40%, NOK 3,000															
25-32시간	급여 20%, NOK 1,500															
33시간 이상	급여 0%, NOK 0															
프랑스	양육선택 보조금 (Complément de libre choix de mode de garde, CMG))	-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구성, 자녀의 연령, 돌봄기관 내 서비스 비용에 따라 급여액 상이 - 아동 수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3개 구간별 차등 지급 (단위: 유로)														

국가	제도명	지급액								
		구분	연소득 기준							
			I		II		III			
		3세 미만	3~6세	3세 미만	3~6세	3세 미만	3~6세			
		보육사를 부모가 직접 고용	부모	529.28	264.64	333.75	166.90	200.22	100.11	
			한부모	688.07	344.03	433.87	216.97	260.29	130.14	
		가정 어린이집/보육사 고용 기관	부모	800.92	400.46	667.44	333.73	533.96	266.98	
			한부모	1,041.20	520.60	867.67	433.85	694.15	347.07	
		소규모 어린이집/가정에서 보육사 고용	부모	967.81	483.91	834.28	417.15	700.80	350.40	
			한부모	1,258.15	629.08	1,084.56	542.29	911.04	455.52	
		주: 한부모가정의 경우 각 상한선 40% 인상 - 위금액은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급액이며, 3~6세 아동의 경우 보조금 50% 삭감								
		헝가리	양육수당 (Gyermekgondozást segítő ellátás, GYES)	- 매월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사회급여 지급기준(szociális vetítési alap) (2024년 기준 세전 HUF 28,500)과 동일하며, 쌍둥이를 제외하고 아동의 수와 무관 - 쌍둥이의 경우 아동의 수에 비례하여 배수 적용 - 해당 월의 일부 기간에만 자격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 지급						
			양육지원금 (Gyermeknevelési támogatás, GYET)	- 매월 지급하는 양육지원비는 사회급여 지급기준 적용(2024년 기준 세전 HUF 28,500) - 해당 월의 일부 기간에만 자격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 지급						

주: 양육수당 미 실시 국가 - 폴란드, 스웨덴,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호주, 영국, 이스라엘  
 자료: 1) 덴마크: 코펜하겐 정부 홈페이지. <https://www.kk.dk/borger/pasning-og-skole/pasning-0-6-aar/private-tilbud-om-pasning/tilskud-til-pasning-af-egget-barn#:~:text=Du%20kan%20f%C3%A5%207.43%20kroner,Tilskuddet%20er%20bagudbetalt> (2024. 7. 15. 인출).  
 2) 노르웨이: MISSOC database, 노동복지청 홈페이지. <https://www.nav.no/kontaktstotte#hvor-lenge> (2024. 7. 15. 인출).  
 3) 프랑스: 가족수당기금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e-complement-de-libre-choix-du-mode-de-garde-cmg> (2024. 7. 15. 인출); 프랑스 aide 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mg-caf/>를 바탕으로 재구성(2024. 6. 5. 인출).  
 4) 헝가리: MISSOC database;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13&langId=en&intPagelD=4574>; 비영리단체 TASZ. <https://tasz.hu/tudastar/csaladtamogatasi-ellatasok/#section-65b3cd479b21f> (2024. 7. 15. 인출).

## 2) 자녀 세제지원

아동가구에게 자녀 세제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이다. 자녀 세제지원 제도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 보수주의 대륙 유럽국가들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국가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어떠한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소득공제는 소득 중 일부를 면세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개 소득수준

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독일, 폴란드, 헝가리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이스라엘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자녀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에는 두 방식의 세제지원 제도를 모두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세제지원 방식과 지급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I-1-11>과 같다.

<표 III-1-11> 주요국의 자녀 세제지원 방식 및 지급대상

국가	제도명	세제지원 방식		지급대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독일	자녀세액공제 (Kinderfreibetrag)	○		-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동일(18세 미만까지/25세까 지연장 가능)
	돌봄·양육·교육공 제액(Freibetrag für BEA)	○		- 아동수당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 -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동일(18세 미만까지/25세까 지연장 가능)
프랑스	가족계수제도 (Quotient Familial)	○		- 부부와 자녀 모두를 가구원 수로 고려하여 가구소 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
	자녀보육비공제		○	- 6세 미만의 아동이 있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 - 보모(childminder)의 임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학교 비용 세액감면 (Scolarisation des enfants)		○	- 이차 및 고등 교육을 받는 아동이 있는 경우 (중고 등학교 및 대학교)
오스트 리아	자녀세액공제 (Kinderabsetzbe trag)		○	- 조세 및 가족수당 대상자 - 역소득세(Negative tax)
	한부모가정 세액공제 (Alleinerziehera bsetzbetrag)		○	- 일인소득자가구, 한부모가정 모두 포함 -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있는 일인소득자 및 한부모 가정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벨기에	자녀소득공제	○		-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의 대상이 되는 일부 소득을 면제 - 자녀 수에 따라 면제액이 상이
	보육료 세금감면 (déduire de l'impôt à payer pour la garde de vos enfants)		○	-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장애아동의 경우 21세) - 납부한 보육시설 비용의 45%를 세액공제 - 기본 보육료 (음식, 학교, 옷에 드는 비용 및 사교 육 비 등 제외) -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소득공제 (2024년 세금연 기준 690유로)를 대신 선택할 수 있음
폴란드	가족감세/ 자녀감세 (Ulga prorodzinna)	○		-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감면 -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

국가	제도명	세제지원 방식		지급대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혹은 Ulga na dziecko)			
	4+가족감세 (Ulga dla rodzin 4+)	O		- 자녀가 4명 이상 아동 가구 - 일반적으로 아동의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자여야 하나, 간호수당 및 사회연금을 받고 있는 성인 및 재학 중인 2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해당
	기타	O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과 함께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감세를 중복 적용 가능. 이는 한부모가정의 세금감면제도 (PLN 1,500)를 대체.
헝가리	가족세및기여금수당 (Családi adó- és járulékkedvezmény) 혹은 가족감세(Családi kedvezmény)	O		- 함께 거주하는 부모 및 부모의 법적 대리인 대상 - 통합과세표준을 감액 - 소득세감면 정책에 해당하기에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세금 책임이나 사회보장기여금 등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음
이스라엘	미성년 자녀의 일하는 부모 크레딧 ( מדרך הטרבות במס להורים עם ילדים קטנים)		O	- 세액공제 크레딧 부여 제도 - 아동의 연령, 부모의 양육분담 및 거주관계에 따라 상이 -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도 상이

주: 아동가구 세제 미지원 국가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 자료: 1) 독일: Familien portal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steuerentlastungen/was-sind-freibetraege-fuer-kinder--125198> (2024. 7. 1. 인출).  
 2) 프랑스: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quotient-familial#; 프랑스세무청 홈페이지.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deductions-liees-la-famille#:~:text=Le%20montant%20de%20la%20r%C3%A9duction,une%20formation%20d'enseignement%20sup%C3%A9rieur](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quotient-familial#;프랑스세무청 홈페이지.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deductions-liees-la-famille#:~:text=Le%20montant%20de%20la%20r%C3%A9duction,une%20formation%20d'enseignement%20sup%C3%A9rieur) (2024. 7. 15. 인출).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USP. <https://www.usp.gv.at/themen/steuern-finanzen/einkommensteuer-ueberblick/weitere-informationen-est/steuerabsetzbetraege.html>. (2024. 7. 1. 인출);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실 홈페이지. <https://www.bundeskanzleramt.gv.at/en/agenda/family/family-benefits/family-allowance-and-tax-credit-for-children.html> (2024. 7. 1. 인출); 오스트리아 재무부 홈페이지. <https://www.bmf.gv.at/themen/steuern/arbeitnehmerinnenveranlagung/steuertarif-steuerabsetzbetraege/alleinverdiener-alleinerzieher-absetzbetrag.html> (2024. 7. 15. 인출).  
 4) 벨기에: 재무부 홈페이지 <https://finance.belgium.be/> (2024. 7. 15. 인출). 1) Children | FPS Finance (belgium.be) 2) Terms & Conditions | FPS Finance (belgium.be) 3) Tax rates | FOD Financiën (belgium.be) 4) Jonger dan 3 jaar | FOD Financiën (belgium.be) (2024. 7. 15. 인출).  
 5) 폴란드: Ch ł ó Ń -Domińczak, A. (2022), Poland: New tax benefit solutions improve incomes of families, ESPN Flash Report 2022/53,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ESPN),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폴란드 정부 세금 포털. <https://www.podatki.gov.pl/>. Ulga dla rodzin 4+ (podatki.gov.pl) (2024. 7. 15. 인출); 폴란드 세금 관련 정보 사이트. <https://www.pit.pl/>. Ulga prorodzinna - ulga na dzieci - PITy roczne 2023/2024 - PIT.pl - PIT.pl (2024. 7. 15. 인출).  
 6) 헝가리: 헝가리 정보 포털 사이트. <https://hazavaro.gov.hu/ugyleiras/csaladi-ado-es-jarulekkedvezmeny> (2024. 7. 15. 인출); 헝가리 정부 홈페이지. <https://nav.gov.hu/ado/szja/szja-kedvezmenyek-2023/csaladi-kedvezmeny> (2024. 7. 15. 인출).  
 7)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부 홈페이지. [www.gov.il](http://www.gov.il). Tax Benefits Guide for Parents with Young Children Israel Tax Authority (2024. 7. 15. 인출).

## 2. 주요국 심층 사례 분석

가족정책 유형 및 특성은 기존 복지국가 유형 분류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던 국가들의 가족정책 확장으로 인해 복지국가 유형론에 의한 분류는 국가의 가족정책적 특성에 대한 설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제도도 국가별 제도 설계나 정책 조합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보인다(윤승희, 2015; 정재훈, 박은정, 2012; Leitner, 2003). 이에 전체적인 가족정책의 특성을 정책 조합 및 정책 형성 맥락에서 이해하고, 각 국가의 제도 설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 중에서 프랑스, 스웨덴, 독일, 벨기에의 현금급여 제도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GDP 대비 공공 가족복지지출 비율이 OECD 평균 및 EU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들 중에서 지출 구조 특성이 가장 명확한 4개국을 선정하였다. 프랑스는 GDP 대비 공공 가족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현금과 서비스 지출 비율이 각각 1.34%, 1.38%로 모두 높은 편에 속한다. 스웨덴은 두 번째로 가족복지지출이 높은 국가이면서 서비스 지출 비율이 2.13%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다. 독일은 가족 세제 지원의 비율이 0.82%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 지원 비율이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한 국가이다. 벨기에는 GDP 대비 공공 가족복지지출 비율이 OECD 평균 및 EU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 중에 현금 지출 비율이 1.66%로 가장 높다(표 III-1-3 참조).

### 가. 독일

#### 1) 독일 가족정책 특징<sup>28)</sup>

독일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서독 가족정책에서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의미라기보다는 가족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이나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족의 복지가 보장되지 못할 때 가족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가톨릭 교리를 바탕으로 한 보충성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28) 박은정(2019a), Bertram & Deuflhard(2013), Gerlach(2010)을 중심으로 정리함.

적용한 것이다(Bertram & Bujard, 2012: 4; Salles, 2020: 131). 또한 서독 사회 정책은 생계부양자로서 남성과 돌봄 및 무급 가사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을 기반으로 한 성역할 분업을 전제로 하여 구축되어 왔다. 이에 독일은 대륙 보수주의 가족정책 모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되어 왔었다(Esping-Andersen, 1999; Pfau-Effinger, 2005). 이러한 가족의 책임과 성역할 분업에 기초한 독일 가족정책은 돌봄서비스나 시간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을 통한 가정 내 돌봄 강화의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는 여성의 가정 내 돌봄 역할을 전제로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일가정양립을 저해하게 되었다(박은정, 2019a; Gerlach, 2010; Lepperhoff, 2014).

과거 나치 정권 시대에 가족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적극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반감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기에 적극적인 가족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박은정, 2019a; Lepperhoff, 2014). 독일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개혁은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이 가져온 사회적 위기 담론에 의해 추동되었다. 수십년간 지속된 저출산은 사회 핵심인력의 부족과 인구감소 위기로 이어져 사회유지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여성의 학력수준의 높아지고 성평등한 사회문화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부상하였다. 또한 교육적 성취가 사회적 출신에 따라 양극화되어, 모든 아동이 사회적 출신과 상관없이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Gerlach, 2010; Kaufmann, 1995; Lepperhoff, 2014).

이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 가족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 성평등한 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스웨덴 모델이 주목을 받았으며, 독일의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여성은 더 일하고, 남성은 더 돌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독일 가족정책 개혁은 기존의 현금 중심 가족정책에서 보육서비스(특히, 3세 미만)와 돌봄 시간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박은정, 2019a;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06).

독일의 시간정책은 이전 육아휴직제도와는 달리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시도하였다.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육아수당(Erziehungsgeld)이 1986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경력 단절 없이 일자

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였다. 육아수당은 2001년까지 월 600마르크의 정액급여로 지급되었고, 유급 휴직 2년, 무급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였다. 원래 육아수당의 도입 목적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서 선택의 자유를 지원하는 데에 있었으나, 제도의 목적과는 다르게 작용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보다는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고학력자나 고소득층에서 육아수당 제도의 사용률이 낮아, 계층화된 제도로 평가되었다(박은정 외, 2022; Bertram & Deuflhard, 2013; Gerlach, 2010).

2000년에 육아수당 제도의 문제점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법 개혁이 추진되었다. 2001년부터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육아휴직 명칭이 변경되었다. 휴가(Urlaub)나 휴직이라는 용어 대신 부모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었다(Bertram & Deuflhard, 2013; Gerlach, 2010). 2006년에는 근거법인 「연방 부모수당 및 부모시간 법(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이 제정되었고,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Huebener et al., 2016).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부모수당은 기본적으로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양쪽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2개월이 추가되어 14개월까지 연장된다. 소득대체율은 기본적으로 65%가 적용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 자녀출산 전에 소득수준이 낮아서 산출된 부모수당 지급액이 300유로 미만이거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하한액인 월 300유로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800유로이다. 이후 2015년에는 부모의 유연한 일가정 양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와 파트너십보너스(Partnerschaftsbonus)가 도입되었다(박은정, 2019a; 박은정 외, 2022).

또한 2000년대 이후 독일 가족정책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만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이다. 독일은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률이 상당히 낮았으며, 특히, 구서독 지역은 구동독 지역보다 보육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가족정책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만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었다(박은정, 2019a). 2005년 주간돌봄확장법(Tagesbetreuungsbaugesetz, TAG), 2008년 아동지원법(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이 개정되었으며,

2013년 8월 이후에는 1세 아동부터 보육서비스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법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1: 65, 박은정 외, 2022: 102에서 재인용).

최근까지도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이 시행되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면제 및 완화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주정부는 보육 관련 10개 분야에서 핵심 실천 분야를 선택하여 보육서비스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2019년~2022년 사이에 약 55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였다(BMFSFJ, 2021). 2023년에는 이 법에서 발전된 ‘어린이집 질 제고법(KiTa-Qualitätsgesetz)’이 발효되었으며, 연방 정부는 2년 동안 40억 유로를 투입하여 보육 및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29)</sup>

독일은 2000년대 들어서 시간 지원 및 돌봄 서비스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독일은 아동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면 여전히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아동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 비율이 높은 국가이다.<sup>30)</sup> 독일 가족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개혁하였으나, 여전히 현금 부문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13년에 도입되었다가 2015년에 폐지된 연방 양육수당은 독일 가족정책 개혁의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정책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송다영, 박은정, 2019).

여기에서는 독일 현금급여 제도 중 보편적 수당 제도인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제도를 검토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수당에 대체되는 자녀세액공제의 핵심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도입 후 폐지되었던 독일 연방 양육수당의 도입 및 폐지 과정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29)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zweites-gesetz-zur-weiterentwicklung-der-qualitaet-und-zur-teilhabe-in-der-kindertagesbetreuung-kita-qualitaetsgesetz-201142> (2024. 5. 2. 인출).

30)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5. 3. 인출).

## 2) 독일 아동수당 제도

### 가) 아동수당 도입 및 개편 과정<sup>31)</sup>

독일 아동수당(Kindergeld)은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6조(Artikel 6 Absatz 1)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Rainer et al., 2012). 독일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동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족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현금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1950년에 동독(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에서 넷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독일 보편적 아동수당의 현대적 모델은 구서독(Bundesrepublik Deutschland)에서 1954년부터 실시한 아동수당이다(Böhmer et al., 2008). 처음 아동수당은 가족보상기금(Familienausgleichskassen)에서 지급되었으며, 고용주와 자영업자로부터 각 출되는 사회보험급여 방식이었다. 독일 연방 정부에서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은 1964년부터였다. 아동수당 초기에는 셋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향후 자녀수에 따른 아동수당 차등 지급 방식의 기초가 되었다(Böhmer et al., 2008).

독일 아동수당의 현재의 틀을 갖춘 1996년 개혁 이전의 시기는 자녀세액공제(Kinderfreibeträge)와의 제도설계 방식에 따라 제도 전개과정을 구분할 수 있다. 첫 시기는 1954년부터 1974년까지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일명 “이중 체계(Duales System)”가 적용되었던 시기이다. 자녀세액공제는 구서독 지역에 194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아동수당과 함께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제도였다. 아동수당은 1961년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지급되었으며, 둘째 자녀 아동수당 지급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Rainer et al., 2012).

두 번째는 자녀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아동수당이 확대된 시기로 1975년부터 1982년까지이다. 1974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수립된 사회민주당(SPD)과 자유민주당(FDP)의 대연정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비판하였다. 즉, 자녀세액공제는 고소득 가구가 보다 많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공평한 제도라는 비판 속에 폐지되었다. 반면, 아동수당은 첫째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첫째 자녀부터 수당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

31) Rainer et al.(2012), Familienkasse(2024a), Bach(2024), BMFSFJ(2024)를 중심으로 정리함.

(Rainer et. al., 2012).

세 번째 시기는 이중 체계의 재도입과 안정화 시기로 1983년부터 1995년까지이다. 1982년에 정권을 다시 잡은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정부는 집권 이듬해에 자녀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한다. 아동수당에는 둘째 자녀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이 도입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보조금(Kindergeldzuschlag)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1986년에는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육아수당(Erziehungsgeld)이 도입되었다(Rainer et. al., 2012).

네 번째 시기는 현재의 제도 틀이 자리 잡은 1996년 이후로 이중체계에서 선택 모델(Optionsmodell)로 전환된 시기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아동의 최저생계비 비용에 세금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의 결과로 1996년에 조세법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다. 아동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급액이 상향되고 자녀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으며,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둘 중 유리한 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16세에서 18세로 확대되었으며, 18세 이상이나 학업 또는 직업 훈련(Ausbildung)을 하는 경우 27세까지 추가 지급되었다(Gerlach, 2010; Reiner et. al., 2012). 현재는 학업 또는 직업 훈련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5세까지 유예하여 지급하고 있다(Familienkasse, 2024a).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공정성(Gerechtigkeit)과 가족부담완화(Familienleistungsausgleich, FLA)<sup>32)</sup>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독일의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있어서 아동가구와 비아동가구 간에 실질적인 소득 격차가 있으며 아동가구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반영한 제도이다(Lemmer, 2015).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을 수급하나 고소득 가구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세금혜택을 받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수는 아동수당 수급자 수의 약 25% 정도이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부의 연간 과세 소득이 80,100유로 이상일 때 유리하다. 독일의 자녀세액공제 제도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공평한 제도라

32) 가족부담완화는 돌봄, 양육, 교육(Betreuung, Erziehung und Ausbildung, BEA)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독일 정책을 의미하며,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가족부담완화의 대표적인 제도이다(Gerlach, 2010).

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과세 제도에서 자녀의 돌봄, 양육, 교육 비용 지출을 과세 능력 감소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자녀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500유로를 더 혜택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ach, 2024). 한편, 자녀세액공제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 간에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것이며, 부모의 경우 가용소득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과세 능력이 적다고 평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누진적 소득 세율에서 납세자 간에 자녀유무에 따라 수평적 평등, 수평적 재분배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세금 혜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Bach, 2024).

코로나 19 시기에는 추가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있었다. 2020년에 일시적으로 코로나 세제지원법을 발효함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 아동에게 아동수당보너스(Kinderbonus) 300유로씩 추가 지급하였다. 2021년에는 아동수당보너스 아동당 150유로, 2022년에는 아동당 100유로를 지급하였다. 2022년에는 7월부터 빈곤 아동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긴급보조금(Sofortzuschlag)을 월 20유로씩 지급하였다(BMFSFJ, 2024).

독일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변화를 거듭해왔으나, 현재 선택모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 도입과 함께 아동수당의 제도적 틀에 변화가 있다. 2025년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BMFSFJ, 2024).

## 나) 지급기준 및 지급수준 책정 방식<sup>33)</sup>

### (1) 지급기준

독일 아동수당의 근거법은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독일 거주자인 경우에 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부여된다. 실제 소득세 납부 여부나 정도와는 상관없이 독일 거주자이면서 세금번호를 보유한 경우에 기본으로 아동수당의 수급 자격을 갖는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특정 국적<sup>34)</sup>인 경우 거주지 설정 이후 4개월부터 아

33) Familienkasse(2024a). Merkblatt Kindergeld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동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다. 가족기금(Familienkasse)은 수급자격 판정의 권한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사무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독일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보유한 제3국 출신 외국인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유형의 거주 허가를 가진 외국인 역시 가족기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알제리, 보스니아, 튀르키예, 튀니지 등과 같은 국가의 국적자가 독일에서 취업을 한 경우,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 EFTA, 스위스 국경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수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독일 내에서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공무, 선교, 개발협력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성격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아동수당 수급권에서 소득세법이 연방아동수당법 보다 우선한다. 자녀를 주로 돌보고 양육비를 주로 부담하는 부모가 수급권을 우선으로 가지며, 동일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수급권이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부모에게 지급되나, 부모가 없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아동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부모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수급권자를 결정한다.

아동수당에서 '아동'의 범위는 친자 및 입양 자녀, 배우자의 자녀, 생활동반자의 자녀, 양육 중인 손자녀, 법적 피후견인(Pflegekind), 피후견인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모든 아동은 18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교육 중, 구직 중,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중인 경우에는 지급연령이 연장될 수 있다. 구직자는 만 21세까지, 직업교육 및 기타 활동 중인 경우는 만 25세까지이다. 25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연령 제한이 없이 계속 수급이 가능하다. 출산, 질병, 학업, 직업교육 등으로 일시 중단 시에도 지급이 유지되며, 졸업 후 대학 진학 또는 직업교육 준비 기간 등 과도기에는 최대 4개월 동안 수급가능하다.

## (2) 지급액 및 지급액 조정 방식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아동에게 월 250유로의 동일한 아동수당 지급액이 지급된다. 기존의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이 폐지되었다(Familienkasse, 2024a: 9).

34) EU 국가나 유럽경제공동체, 스위스 국적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영국은 EU 탈퇴로 인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독일 거주지 신고나 경제활동 승인을 받은 경우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Familienkasse, 2024a: 7).

아동수당은 가족기금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매월 수급권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Familienkasse, 2024a: 38).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자녀세액공제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제도는 가족부담완화(Familienleistungsausgleich, FLA) 원리에 의해 시행되며,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이 적용된다. 각 지역의 세무서(Finanzamt)는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을 비교하여 수급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절차(Günstigerprüfung)를 수행하며, 별도 신청없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처리된다(Lemmer, 2015).

독일의 아동수당을 관할하는 가족기금은 연방 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 산하이며, 정부 논의와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BKGG) 개정을 거쳐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이 이루어진다.

2020년 이후 독일 아동수당 지급액과 세액공제액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1〉 독일 아동수당 지급액(2020년 이후)

단위: 유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첫째, 둘째아	184	219	219	250	250
셋째아	190	225	225	250	250
넷째아 부터	215	250	250	250	250

자료: 독일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s://www.kindergeld.org/> (2024. 5. 10. 인출); Familienkasse(2024a). Merkbblatt Kindergeld. p.9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표 III-2-2〉 독일 세액공제액(2020년 이후)

단위: 유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녀세액공제 (Kinderfreibetrag)	5,172	5,460	5,620	6,024	6,384
돌봄양육·교육공제액 (Freibetrag für BEA)	2,640	2,928	2,928	2,928	2,928
총 세액공제액	7,812	8,388	8,548	8,952	9,312

자료: 독일 Sozialpolitik-aktuell.de.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nanzierung-datensammlung.html> \_Einkommensteuer und Familienleistungsausgleich, Eckwerte 2005-2024.pdf. (2024. 5. 10. 인출)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아동수당은 부모수당의 수급에 상관없이 지급되나, 공공부조 수급액에는 영향을 미친다. 2023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실시되었던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가 시민수당(Bürgergeld) 제도로 전환되었다.<sup>35)</sup> 공공부모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수당이 도입되었지만, 아동수당 지급액이 소득에 포함되는 기존의 방식은 여전히 유지된다.

아동수당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할 경우 저소득층에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시민수당 제도 체계 하에서도 아동수당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및 학교 소풍이나 여행, 개인 학용품, 통학 비용, 학습지원, 급식비, 사회 문화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 및 참여 패키지(Bildung und Teilhabepaket)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교육 및 참여 패키지는 여전히 저소득층이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36)</sup>

한편,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시민수당 산정 시 아동의 필요급여액에는 기본생계비, 추가 생계비, 주거 및 난방비가 포함된다. 아동수당,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금, 본인 소득 등으로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고 초과된 아동수당액은 부모의 기타 소득으로 간주된다.<sup>37)</sup>

#### 다)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

아동수당보조금은 소득이 낮은 가족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이다. 1982년 정권을 잡은 기독교 연합당 정부에서 도입된 아동수당보조금(Kindergeldzuschlag)은 아동빈곤과 저소득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다(Rainer et al., 2012, 박은정, 2019b에서 재인용). 하르츠 개혁 당시 아동빈곤에 대응하고 아동가구가 표준생계비 기준에 미달하여 공공부조 대상자가 되는

35) 시민수당은 기존보다 시민 친화적, 비관료적, 목적지향적인 공공부조이며, 수급자가 더 나은 자격을 취득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시민수당은 월 563유로이며, 시민수당을 받는 첫 해에는 거주비용 실비와 적정 난방비를 지급한다. 520~1,000유로 소득자는 이전에 비해 소득액이 증가하고 소득세 공제는 30%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생계와 주거 보장 수준이 상향되었다 (독일 연방 정부 홈페이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ntlastung-fuer-deutschland/buergergeld-2125010> (2024. 5. 16. 인출).

36) 독일 시민수당 홈페이지. <https://www.buergergeld.org/kindergeld/> (2024. 5. 16. 인출).

37) 독일 시민수당 홈페이지. <https://www.buergergeld.org/kindergeld/> (2024. 5. 16. 인출).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 제도가 도입되었다(Becker & Hauser, 2008).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양육자나 부부의 표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나, 자녀를 포함한 전체 가족의 표준생계비에는 미달하는 경우에 아동수당보조금 대상이 된다.<sup>38)</sup> 또한 주거비용이 높거나 자녀수가 많은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간 소득계층도 감액된 아동수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보조금에 적용되는 소득하한액은 한 부모는 600유로, 부모는 900유로이다. 아동수당, 주거수당, 아동수당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액이다(Familienkasse, 2024b). 2024년 기준 아동수당보조금은 아동 1명당 월 292유로이다(Familienkasse, 2024b: 3).

### 3) 독일 양육수당 도입 및 폐지 과정

독일 연방정부에서 2013년 도입했던 연방 양육수당(Betreuungsgeld)은 도입 2년 만에 폐지되었고, 독일의 일부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만 남아있다. 여기에서는 독일 연방 양육수당의 도입 및 폐지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가) 양육수당의 도입 과정<sup>39)</sup>

독일 연방 양육수당은 2013년 도입되기 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 가족정책이 일가족 양립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한 상황에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수당 제도 도입은 역행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 돌봄을 받도록 전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가정에 머물도록 한다는 비판 속에 일명 “아궁이 수당(Herdprämie)”이라고 불리웠다(송다영, 박은정, 2019: 114).

연방 차원의 양육수당 도입 시에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선택의 자유 보장을 정책 논리로 내세운 기독교 연합당의 추진으로 2013년 8월부터 연방 양육수당이 도입되었다. 양육수당의 도입 이면에는 법적인 보육시설 청구권

38) 독일 사회법 2권(SGB II)에 따른 2024년 기준 월 표준생계비(Regelbedarf)는 한부모는 563유로, 부모는 1012유로, 6세 미만 아동은 357유로, 6세~14세 미만 아동은 390유로, 14~18세 미만 아동은 471유로, 18세~25세 미만은 451유로이다(Familienkasse, 2024b: 7).

39) 박은정(2019a&2019b), 송다영, 박은정(2019)를 중심으로 정리함.

보장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다(송다영, 박은정, 2019: 115). 2013년 8월부터 만 1세 이상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됨에 따라 부모는 국고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상응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할 권리도 보장받게 되었다(Alt et al., 2015). 독일이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후 만 3세 미만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나갔으나, 당시 영아 대상 보육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에는 막대한 재원과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연합당은 국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가정양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육수당 도입을 주장하였다(박은정, 2019a).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등 타 정당들은 한정되어 있는 정부 예산을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이 아니라 공공 보육 인프라의 확대에 보다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반대하는 이유로 양육수당의 여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성별화 효과와 취약계층 아동의 조기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계층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기독교 연합당 내부에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여러 집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양육수당 도입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연방 대통령은 양육수당 제도의 위헌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인하여 2013년 8월부터 도입되었다(박은정, 2019b).

양육수당은 도입 1년 전인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적용되었으며, 기본부모수당을 지급 가능 시기가 지난 생후 15개월부터 36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었다. 부모가 공공 보육시설이나 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돌보거나 민간 돌봄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양육수당 지급액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월 100유로, 2014년 8월부터는 월 150유로가 지급되었다. 양육수당의 소득 상한선은 부부의 과세소득은 연 50만 유로, 한부모는 연 25만 유로였다(BMFSFJ, 2013, 송다영, 박은정, 2019: 117에서 재인용).

## 나) 양육수당 폐지 과정<sup>40)</sup>

연방 양육수당의 폐지는 이미 양육수당 도입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함부르크(Hamburg)의 상원에서는 이미 2013년 2월에 연방 양육수당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양육수당 위헌 소송의 주된 이유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연방 차원의 양육수당 제도 수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또한 시민당은 개혁 후 일가족 양립이라는 독일 가족정책의 방향성에 반한다는 점에서 양육수당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는 양육수당 도입의 반대 이유이기도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2013년에 제기되었던 양육수당 위헌소송은 2년여 만인 2015년 7월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고, 독일 연방 양육수당은 도입 2년 만에 일몰하게 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정부가 이행할 제도를 연방이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양육수당은 연방정부의 입법 권한이 불충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부모수당 및 부모시간법」에 규정되어 있던 양육수당 조항이 삭제되고, 양육수당이 2015년 8월부터 폐지되었다.

## 4) 최근 현황 및 쟁점

### 가) 현황

독일 아동수당의 수급자수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는 다소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5년까지는 증감이 크지 않은 답보 상태였다. 독일의 합계출산율 증가가 뚜렷했던 2016년 이후부터는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주민의 증가로 수급자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1,024만4천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아동수당의 지출액은 아동수당 지급액이 유지되고 수급자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2010~2014년은 답보 상태였다가, 아동수당 지급액이 다소 상승한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에서 2020년에 지출액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2020년에 코로나 19 위기로 아동수당 보너스를 모든 아동에게 300유로씩 지급하였기 때문

40) 「송다영·박은정(2019).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4, 93~135」을 중심으로 정리함.

이다. 2022년 기준 독일 정부의 아동수당 지출액은 469억2,000만 유로이다.<sup>41)</sup> 독일 통계청 자료에는 2022년까지 제시되어 있으나, 독일 연방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250유로로 인상하여 정부의 아동수당 지출액은 약 540억 유로로 크게 증가하였다.<sup>42)</sup>

〈표 III-2-3〉 독일 아동수당 수급자수 및 지출액(2006년~2022년)

단위: 천명, 백만유로

	수급자수	지출액
2006	9,206	29,787
2007	9,106	29,262
2008	8,951	28,886
2009	8,866	31,743
2010	8,820	33,534
2011	8,761	33,213
2012	8,802	33,373
2013	8,762	33,314
2014	8,826	33,472
2015	8,828	34,339
2016	8,919	35,208
2017	9,029	35,898
2018	9,299	36,928
2019	9,507	38,777
2020	9,730	45,660
2021	9,954	47,626
2022	10,244	47,920

자료: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Soziales/Elterngeld/Tabellen/empfaenger-ausgaben.html> (2024. 5. 10. 인출).

자녀세액공제<sup>43)</sup>는 2022년 28억5000만 유로, 2023년 기준으로 24억2500만 유로 세수 감면 효과가 있었다(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023: 59).

41)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Soziales/Elterngeld/Tabellen/empfaenger-ausgaben.html> (2024. 5. 10. 인출).

42) 독일 Sozialpolitik-aktuell.de.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Familienpolitik/Datensammlung/PDF-Dateien/abbVII99.pdf](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Familienpolitik/Datensammlung/PDF-Dateien/abbVII99.pdf) (2024. 5. 13. 인출).

43) 돌봄, 양육, 교육(Betreuung, Erziehung und Ausbildung, BEA) 비용 공제를 포함

## 나) 최근 쟁점: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도입<sup>44)</sup>

독일은 아동의 높은 빈곤율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아동 빈곤 위험을 줄이고 아동과 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을 2025년부터 도입한다. 아동기본보장은 앞으로 독일 아동정책, 가족정책의 핵심 제도가 될 전망이다. 아동기본보장은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더 나은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45)</sup> 독일 정부는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에서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수에 비해 실제 수급가구 수가 더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 낙인에 대한 두려움,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아동기본보장은 새로 도입된 시민수당과 같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관료적, 시민 친화적 제도를 추구한다(BMFSFJ, 2024). 독일은 아동기본보장 제도 도입에 앞서 2023년 아동수당에서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월 250유로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전체적인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첫째아, 둘째아의 경우는 1996년 아동수당 개혁 이후에 이번 아동수당 증액이 가장 큰 증가이다(BMFSFJ, 2024).

아동기본보장은 아동수당, 사회법 II, 사회법 XIII에 따른 아동의 표준생계비, 아동수당보조금, 교육 및 참여 패키지와 같은 기존 아동 대상 현금급여를 통합한 제도이다.<sup>46)</sup> 아동기본보장은 아동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보장급여(Kindergarantiebetrug)와 아동추가급여(Kinderzusatzbetrag)로 구성된다. 아동보장급여는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아동수당이 아동보장급여로 대체될 것이다. 아동추가급여는 아동수당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sup>47)</sup>

44) BMFSFJ(2024)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die-neue-kindergrundsicherung-eine-leistung-fuer-alle-kinder-228230> (2024. 5. 13. 인출))를 중심으로 정리함.

45)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die-neue-kindergrundsicherung-eine-leistung-fuer-alle-kinder-228230> (2024. 5. 13. 인출).

46)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kindergrundsicherung/fragen-und-antworten-zur-kindergrundsicherung-230378> (2024. 5. 13. 인출).

47)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die-neue-kindergrundsicherung-eine-leistung-fuer-alle-kinder-228230> (2024. 5. 13. 인출).

한편, 2023년 이후 모든 아동에 대한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아동수당 외 지원 제도에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먼저,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보조금이 증가하였고, 교육 및 참여 패키지 지원도 확대되었다. 아동추가급여를 받는 아동은 교육 및 참여 패키지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고 학교출발 패키지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해당 제도들은 절차를 단순화하고 비관료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제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48)</sup> 또한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통계 구축을 자동화하는 시도를 통해 저소득 및 잠재적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한부모 가구 위한 세금 공제액은 2024년에 전년 대비 252유로 인상되어 4,260유로가 되었다(BMFSFJ, 2024).

아동기본보장의 전달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가족기금(Familienkasse)이 새로운 가족서비스원(Familien-service)으로 변경되고, 가족서비스원을 통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될 것이다.<sup>49)</sup>

요컨대 독일의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지원 제도는 아동수당 기반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최저생계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기본보장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적극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진일보를 앞두고 있다. 독일은 현금 중심의 보수적 가족정책에서, 시간지원과 보육서비스 인프라 확대 정책을 통해 일가족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스웨덴식 모델을 차용한 가족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현금 지원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현금 지원과 일가족 양립 정책의 양 축 모두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도입을 앞둔 아동기본보장 제도는 모든 아동이 태어나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까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지원 요구도가 높은 가구의 아동에게 추가 지원함으로써 아동 빈곤을 방지하고

4. 5. 13. 인출).

48)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kindergrundsicherung/fragen-und-antworten-zur-kindergrundsicherung-230378> (2024. 5. 13. 인출).

49)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kindergrundsicherung/fragen-und-antworten-zur-kindergrundsicherung-230378> (2024. 5. 13. 인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독일 현금급여 제도의 핵심 제도가 될 것이다.

## 나. 프랑스

### 1) 프랑스 가족정책 특징<sup>50)</sup>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80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8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sup>51)</sup> 프랑스는 2019년 기준 GDP 대비 가족복지지출 규모가 3.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이다. 이 중 현금(cash)이 1.34%, 세제지원이 0.73%로 현금성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다.<sup>52)</sup> 예산 규모가 큰 만큼 프랑스는 가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을 가진 국가이며,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출산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Thévenon, 2016).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와 출산 수준 하락을 경험한 프랑스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였다(신윤정, 2013; 이문숙, 2016).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랑스의 현재 수당제도의 틀이 세워졌다. 다자녀 가구의 소득세 산정에서 적용되는 가족공제제도(Quotient familial)가 도입되었으며,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족수당, 주거수당, 출산급여가 실시되고, 남성 생계부양자의 가족지원의 성격으로 홀별이 수당이 지급되었다(유은경, 2016: 226~227).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랑스에도 베이비붐이 일면서 인구문제가 프랑스 가족정책의 핵심 과제는 아니었으나, 다자녀를 지원하는 프랑스의 가족주의적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현재까지도 다자녀를 지원하는 수당제도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신윤정, 2013).

1970대에는 수당제도를 정비하는 시기였다. 자녀양육수당(Allocation de Frais de Garde)이 도입되었고, 여러 가족 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가가족수당기금(CNAF)이 1972년에 설립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0; 이문숙, 2016). 이 시기에는 프랑스 가족정책의 출산장려 성격이 상당히 약화되고, 사회적 재분배

50) 신윤정(2013), 노대명 외(2018), Thévenon(2016), Allocations Familiales(2024)를 중심으로 정리함.

51)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_ PF2.1 Fertility rates, (2024. 4. 29. 인출).

52) OECD(2023a). Family Database-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나 취약 가족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강조되었다. 특히 유자녀가구와 무자녀가구 간 수평적 재분배에다가 소득 수준에 따른 수직적 재분배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도 내에 소득기준을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신윤정, 2013: 90~91).

1980년대에 프랑스 가족정책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일가족 양립 정책, 고용 촉진 정책의 성격을 띠었다(신윤정, 2013). 이 시기에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프랑스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에 속하고, 가족정책에서 현금 지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이나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부문도 다른 보수주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독일이 최근에서야 보육서비스 지출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프랑스는 독일보다 앞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 보육서비스 부문에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Thévenon, 2016). 현재는 보육비용 지원 수단으로 '양육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육아휴직 부문에서는 북유럽 국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85년에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부모휴가와 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급하고, 1994년에는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였다(Thévenon, 2016). 부모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제도는 2004년 수당 개혁에서 영유아보육수당 체계에 포함되었다. 이 개혁으로 부모휴가 수당이 '활동 자유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제도로 실시되다가, 2015년에는 '자녀교육분담수당(PreParE)'으로 전환되었다(신윤정, 2017). 자녀교육분담수당은 출생자녀는 만 3세까지, 입양 자녀는 만 20세까지 지급되며, 자녀수에 따라 막내 자녀 상한 연령과 지급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만 1세까지 부모 모두 6개월씩 사용이 가능하며,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만 3세까지 부모 모두 24개월씩 사용이 가능하다(Allocations Familiales, 2024: 10).<sup>53)</sup> 지급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최소 월 167.22유로에서 최대 449.92유로가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4: 10). 이처럼 프랑스의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기간이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상당히 길고, 지급액 수준은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가족정책은 2000년대 이후 수당 제도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정부는 기존에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던 수당 제도를 2004년

53) 한부모인 경우 한 자녀는 자녀가 만 1세까지, 두 자녀는 만 3세까지 사용 가능

개혁을 통해 ‘영유아보육수당(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이라는 통합된 제도로 단순화하였다. 영유아보육수당에는 출산입양 지원금, 자녀교육분담수당, 양육선택 보조금, 기초수당이 포함된다(노대명 외, 2018). 한편, 프랑스에는 아동수당은 없으나, 만 20세 미만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있으며, 만 3세~21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중 낮은 가구소득을 가진 다자녀 가구에게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을 지급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4).

수당제도와 함께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2011년부터는 팩스(PACS) 제도를 통한 파트너들도 혼인 부부와 동일하게 세제와 공공 지출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Thévenon, 2016). 프랑스의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비율은 2019년 기준 0.73%로 OECD 국가에서 독일과 함께 매우 높은 지출 비율을 보인다.<sup>54)</sup>

이처럼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보수주의 대륙국가와 같이 수당 제도와 세제지원 방식이 혼합된 현금지원 부문이 발달되어 있으나, 독일과는 달리 일찍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졌다. 다만, 독일이 2000년대 중반부터 육아휴직제도에 해당하는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을 도입하고 지원 수준을 강화한 반면, 프랑스의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자녀교육분담수당은 여전히 지급수준이 낮고 휴직 기간은 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프랑스 현금급여 제도 중 아동수당을 대체하는 성격인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을 중심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중간 소득 계층 이하에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제도와 2004년 이후 실시된 영유아보육수당(PAJE)제도에 포함된 수당 제도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 2) 프랑스 아동 관련 수당제도 도입 및 개편 과정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프랑스 가족 관련 수당 제도는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한 가족공제제도(Quotient familial)와 다양한 수당 제도로 두 축을 형성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성격이 남아 있어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주거수

54) OECD(2023a). Family Database-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당, 홀벌이 수당, 출산급여 등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홀벌이 수당은 1956년 전업 주부수당으로 제도명을 변경하고 대상을 농업종사자,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다(유은경, 2016: 226~227).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 부상하고 여성의 사회적 권리 투쟁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 가족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떠올랐다(유은경, 2016: 227~228). 197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녀양육수당(Allocation de Frais de Garde)이 도입되었고, 국가가족수당기금(CNAF)이 설립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0; 이문숙, 2016). 이외에도 1970년대에는 한부모 수당, 장애인수당, 특수교육수당, 입학준비수당 등 저소득이나 취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당들이 도입되었다(유은경, 2016: 228). 1977년에는 당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홀벌이 수당, 자녀양육수당 등 가족 관련 수당 제도를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제도로 통합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1).

1980년대에는 소득수준을 적용한 선별주의적 정책 기조가 강화되었다. 1988년에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도입되어 저소득층 지원이 실시되었고, 소득 기준을 적용한 가족수당 개선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선별주의적 정책 기조에 대항하여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가족단체연합(UNAF) 등 가족운동 측과 정책 결정자들 간 대립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산전후수당과 가족보조금을 영유아수당(Allocation pour jeune enfant)이 대체하였으며,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게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모 양육수당(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APE)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Allocation de garde d'un enfant à domicile)이 도입되었다(박해남, 2022; 유은경, 2016).

1990년대 초반에는 가족수당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확대하고,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성격의 자유선택수당(Allocation de libre choix)이 도입되었다. 1994년에는 가족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부모양육수당의 수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자녀부터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박해남, 2022: 138~139). 1990년대에는 부모양육수당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저소득 미숙련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성을 가정 내에 머물도록 하여 성별 노동 분리를 강화한다는 점이 지적되

었다. 이 시기에는 프랑스의 고실업 현상과 복지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가족정책이 고용정책 측면에서 접근되었으며, 부모의 선택의 자유와 선별주의적 성격이 강조되었다(유은경, 2016). 프랑스 수당제도 개혁 과정에서 양육가구와 비양육가구 간 수평적 재분배와 소득수준에 따른 수직적 재분배 간에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 당시 집권한 조스팽(Jospin) 정권은 1997년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지급되어 있던 가족수당에 소득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가족수당의 제도적 목적인 수평적 재분배에 위반된다는 비판 속에 1998년에 철회되었다. 수직적 재분배 적용은 가족공제제도(Quotient familial) 적용의 소득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우회되었다(노대명 외, 2018).

2004년에는 수급조건을 강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고려하여 수당 제도 개혁이 실시되었다(유은경, 2016). 2004년 개혁을 통해 ‘영유아보육수당(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체계 하에 수당 제도들이 개편되었다.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입양지원금(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과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AB)이 있으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수당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직업활동 자유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과 보육 비용 지원에 해당하는 ‘양육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제도가 도입되었다. 직업활동 자유선택 보조금은 2015년에 부부 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분담하는 것이 강조된 ‘자녀교육분담수당(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으로 제도명이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모성휴가나 부성휴가 이후 6개월간 지급되었으나, 자녀교육분담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첫째 자녀의 경우 만 1세까지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증가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2~323).

프랑스에서는 가족수당 제도에서 고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이슈는 2000년대 이후 경제 불황과 프랑스 가족수당 공단의 재정 악화 문제로 더 불거지게 되었다. 가족수당의 수평적 재분배 논리에 대한 강조로 보편적 특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2015년 「사회보장재정법」 개정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강조되면서 가족수당 제도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가족수당의 소득구간별 연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가구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가족수당 월 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3).

### 3) 현행 지급기준 및 지급액 책정 방식

여기에서는 차등 지급되나 모든 아동가구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중심으로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액 책정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소득이 낮은 다자녀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보조금 제도를 살펴보았으며,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보편적 수당제도는 아니지만 프랑스 현금급여 제도 개혁을 통해 ‘영유아보육수당(PAJE)’ 체계 하에 있는 4가지 현금급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추가하였다.

#### 가)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sup>55)</sup>

##### (1) 지급기준

가족수당은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에게 지급된다. 프랑스에 6개월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며,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유럽연합 소속 국적자로 자녀가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경우 지급된다. 유럽연합 외 외국인인 경우는 프랑스 상거주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유럽 경제지역(EEA), 스위스, 알제리 출신 또는 난민 또는 무국적자이거나 특정 거주 허가가 있어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 연령, 주거 기준, 거주 허가 기준 등을 자격기준을 충족한 모든 가족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지만, 소득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구 연소득에 따라 소득구간이 3개 구간으로 구분되면, 각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연소득 기준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즉, 프랑스 가족수당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구간별 연소득 기준이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녀수별 소득구간 연소득 기준은 다음 <표 III-2-4>과 같다.

<표 III-2-4> 프랑스 가족수당의 소득구간 연소득 기준

단위: 유로(€)

자녀 수	소득구간 연소득 기준		
	I	II	III
2 자녀	74,966 미만	74,966~99,922	99,922 이상
3 자녀	81,212 미만	81,212~106,168	106,168 이상
4자녀 이상	87,458 미만	87,458~112,414	112,414 이상

자료: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qui>를 참조하여 재구성 (2024. 5. 31. 인출)

55)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qui> (2024. 5. 31. 인출)를 중심으로 정리함.

(2) 지급액 및 지급액 조정 방식

가족수당의 월 지급액은 자녀수별로 구분된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2 자녀 가구인 경우 연소득이 가장 낮은 I 등급은 148.52유로, II 등급은 74.26유로를 지급하며, 가구소득이 높은 III 등급은 37.13유로를 지급한다. 3자녀 가구는 I 등급 338.81유로, II 등급은 169.40유로, III 등급은 84.71유로가 지급되며, 4자녀 이상 인 경우에는 I 등급 529.10유로, II 등급 264.55유로, III 등급은 132.27유로가 지급된다. 둘째 자녀부터 자녀연령이 만 14세가 되면,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sup>56)</sup>

〈표 III-2-5〉 프랑스의 가족수당 월 지급액

단위: 유로(€)

자녀 수	월 지급액		
	I	II	III
2 자녀	148.52	74.26	37.13
3 자녀	338.81	169.40	84.71
4자녀 이상	529.10	264.55	132.27
만 14세 이상 자녀 추가 지원	74.26	37.13	18.57

자료: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qui>를 참조하여 재구성 (2024. 5. 31. 인출).

프랑스의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사회보장 기준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구는 전국 가족수당기금(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이다. 전국가족수당기금은 프랑스 전역에 분산된 가족수당기금(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된다.<sup>57)</sup> 가족수당을 포함한 가족 급여는 프랑스의 월별 가족수당기준(Base Mensuel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BMAF)에 근거하여 일정 비율로 지급된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월별 가족수당기준은 445.93유로이며, 담배를 제외한 연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 1일 인상된다.<sup>58)</sup> 프랑스 가족급여 산정에 대한 규정은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5권(Livre V)에 규정되어 있다.

56)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qui>를 참조하여 재구성 (2024. 5. 31. 인출).

57) 프랑스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lannuaire.service-public.fr/gouvernement/b1e14803-6c0f-4e1d-9d38-c0a2dc6096a6> (2024. 6. 3. 인출).

58) CLEISS 홈페이지.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 (2024. 6. 3. 인출).

현금급여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사회적 부채를 줄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부채 상환 기여금(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으로 수당 금액의 0.5%를 차감한다.<sup>59)</sup>

나)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sup>60)</sup>

가족보조금은 만 3세 이상 만 21세 미만 연령의 부양 자녀가 최소 3명 이상일 경우에 지급되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 지원금이다.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 6개월 이상 상시 거주하고 유효한 거주 허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sup>61)</sup>

가족보조금 연소득 기준은 외별이 부부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로 구분하여 적용되며,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4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연소득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각 집단은 연소득 기준에 따라 월 289.98유로 또는 월 193.31유로의 가족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프랑스 가족보조금의 연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다음 <표 III-2-6>과 같다.

<표 III-2-6> 프랑스의 가족보조금 연소득 기준

단위: 유로(€)

자녀 수	월 289.98		월 193.31	
	외별이 부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외별이 부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3 자녀	20,971 미만	25,653 미만	20,971~41,933	25,653~51,296
4 자녀	24,466 미만	29,148 미만	24,466~48,922	29,148~58,285
이외 추가 자녀 1명 당	3,495유로 추가		3,495~6,989유로 추가	

주: 2024년 기준 맞벌이 부부 인정 기준: 2022년 연소득 최소 5,594유로 이상  
 자료: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omplement-familial/>를 참조하여 재구성 (2024. 5. 31. 인출).

59) 단, 예외적으로 장애아동교육수당(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AEEH)에는 사회부채상환기여금 적용이 제외된다(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2024. 6. 6. 인출).  
 60)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omplement-familial/> (2024. 5. 31. 인출)를 중심으로 작성함.  
 61) 노숙자인 경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CCAS나 승인된 협회에 등록되어있어야 지급된다.

다)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AB)<sup>62)</sup>

프랑스의 기초수당은 만 3세 미만 출산자녀나 20세 미만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다테아 출산의 경우 출산자녀마다 수당이 지급된다. 이외에는 가구당 자녀 1명만 기초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출생 자녀는 만 3세 생일 전월까지이며, 입양자녀는 입양가정에 온 다음 달부터 아동이 만 20세 되기 이전에 최대 36개월, 최소 12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 기초수당 연소득 상한선이 증가하며, 외벌이와 한부모/맞벌이 부부에게 적용되는 연소득 상한선에 차이가 있다.

기초수당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193.31유로 또는 월 96.65유로가 지급되며, 이에 따라 연소득 상한선 기준도 크게 둘로 구분되어 있다. 기초수당의 지급액에 따른 연소득 상한선을 제시하면 다음 <표 III-2-11>와 같다.

<표 III-2-7> 프랑스 기초수당 지급액별 연소득 상한선(2024년 기준)

단위: 유로(€)

자녀 수	월 193.31 유로		월 96.65 유로	
	외벌이 부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1 자녀	29,120	38,483	34,791	45,979
2 자녀	34,944	44,307	41,749	52,937
3 자녀	41,933	51,296	50,099	61,287
이외 추가 자녀 1명 당	6.98유로 추가		8.350유로 추가	

자료: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allocation-base-caf/>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4. 6. 5. 인출).

4) 최근 쟁점 및 이슈

프랑스는 현금지원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최근에는 프랑스 사회보장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위기로 2020년~2022년에 대규모 재정 지출이 발생하면서 구조적인 지출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프랑스 공공지출의 수준과 효율성이 재평가되고 사회보장 부문에서 낮은 재분배 효율성이 지적되었다. 가족 지원에서도 재분배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표적화 논의가 진행되었다(Teodoru & Vermeulen, 2023).<sup>63)</sup>

62)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omplement-familial/> (2024. 5. 31. 인출)를 중심으로 작성함.

이를 반영하여 가족급여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각 분야의 지급액을 정부와 의회가 매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재정법(LFSS)을 개정하였다. 2022년 개정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재정법(LFSS 2023)은 프랑스 공공 지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보장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사회보장재정법에는 영유아 돌봄 지원 개선이 핵심적인 조치로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모든 아동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빈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가족부양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을 인상하였고, 보육비 보조금이 실제 양육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sup>64)</sup>

한부모 가구의 경우 보육비 보조금을 자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한부모 가족부양수당은 2022년 11월부터 50% 상향되어, 자녀당 월 122,93유로에서 184.41유로를 지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부모가 직접 보육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줄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과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sup>65)</sup> 또한 한부모의 직장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부모에 대한 보육비 보조금인 양육선택 보조금의 지급액이 2024년 30% 인상되었다.<sup>66)</sup>

## 다. 벨기에

### 1) 벨기에 가족정책의 특징

벨기에는 주변국인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조합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이자(Esping-Andersen 1990; Rizzi & Decoster, 2021) 가족주의(familialism) 국가로 알려져 있다(Leitner, 2005; Marx & Verbist, 2008). 즉, 전형적인 가톨릭의 영향 아래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을 토대로 복지국가를 형성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Klüsener & Kreyenfeld, 2013; Marx & Verbist, 2008). 하지만

63) Teodoru, I. R., & Vermeulen, M. R. (2023). Spending Efficiency and Reforms: France. (Selected Issues Paper No. 14, pp. 2-2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64) alcimed 홈페이지. <https://www.alcimed.com/en/insights/lfss-french-social-security-financing-act/> (2024. 6. 7. 인출).

65) 프랑스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965?lang=en> (2024. 6. 7. 인출).

66)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m-g-caf/> (2024. 6. 5. 인출).

벨기에의 가족정책은 가족수당 도입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돌봄 서비스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주변국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독특한 가족정책을 형성하게 되었다. 벨기에의 가족정책은 가족주의, 탈가족주의, 부분 가족주의('optional familialism') 세 가지 형태를 띠면서 다양하게 발전해왔다(Knijin & Kremer 1997<sup>67</sup>); Leitner, 2005). 벨기에의 현재 가족정책은 관대한 현금제도와 돌봄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부분 가족주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Daly & Ferragina, 2018; Marx & Verbist, 2008; Rizzi & Decoster, 2021).

벨기에의 2019년 기준 GDP 대비 가족정책 공공지출은 3.2%로 이는 EU 및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과반이 현금급여에 사용된다(그림 III-1-1 참조). 이는 관대한 가족수당(Daly & Ferragina, 2017)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 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며(여성의 경우 첫 달 82%, 이후 75%로 감소, 남성의 경우 처음 12일은 100%, 그 뒤부터는 82%), 여성은 총 15주, 남성은 총 20일이다<sup>68</sup>). 또한, 비록 남성 출산휴가(paternity leave)의 제도 도입이 1961년으로 주변국에 비해 빨랐으나, 휴직 사용 중 고용보호는 2011년 이후 보장되었다는 점,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이 여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Daly & Ferragina, 2017; Rizzi & Decoster, 2021). 벨기에의 육아휴직은 아동이 만 12세가 되기 전 총 4개월 사용할 수 있는데, 주요 특징은 파트타임으로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Fusulier & Mortelmans, 2021). 반일제도 가능하지만, 1/5일제, 1/10일제도 가능해 일을 지속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특히 2002년 이후 도입된 타임 크레딧<sup>69</sup> 제도에서 드러나는데, 반드시 육아일 필요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파트타임 휴직이 가능하다. 벨기에의 육아휴직은 정액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육아휴직 사용의 한계를 둘 수 있다(Rizzi & Decoster, 2021).

67) Knijn and Kremer(1997)은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들을 지원하지만 동시에 돌봄시설을 통해 적어도 일부 돌봄을 맡길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형태의 체제를 부분 가족주의로 지칭하고 있다.

68) 벨기에 사회보장 웹사이트(<https://www.socialsecurity.be/citizen/fr/conges-credit-temps-et-interruption-de-carriere>)와 유럽연합의 벨기에 출산휴가 정보(<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02&langId=en&intPageId=4415>)를 참고하였다. (2024. 6. 5. 인출).

69) ONEM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https://www.onem.be/page/breakwork-travailleurs-1> (2024. 6. 5. 인출).

서비스 및 현물급여 지출도 높은 수준인데, 이는 높은 아동 돌봄서비스 포괄성과 관련이 있다. 벨기에는 1950년대부터 미취학 연령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동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Klüsener & Kreyenfeld, 2013; Morel, 2007). 실제로 3세 미만 아동의 돌봄서비스 등록률은 2021년 기준 53.9%로 스웨덴의 47.6%보다 높고, 3-5세 아동의 경우 2019년 기준 98.3%로 거의 모든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sup>70)</sup>. 높은 공식 돌봄 서비스의 포괄성은 벨기에 가족정책의 탈가족주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Neyer, 2013, Rizzi & Decoster, 2021에서 재인용). 그러나 돌봄시설의 수가 부족하여 대기가 길다는 문제가 있다(Marx & Verbist, 2008). 또한, 법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자격은 2.5세 이후 주어지는데, 이에 따라 아동이 유급휴직 및 보장된 공적 돌봄서비스에 공적으로 포괄되어 있지 않은 시기를 일컫는 양육격차(Childcare Gap;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2019)는 벨기에의 경우 2.2년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짧으나 격차가 없는 독일이나 스웨덴에 비해서는 길다(Rizzi & Decoster, 2021).

본 장에서는 벨기에의 현금급여 제도 중 가족수당 및 출생보조금제도를 도입 및 개편과정, 현행 지급기준 및 지급액, 최근 쟁점 및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벨기에 가족수당 제도(Groeipakket, les allocations familiales)<sup>71)72)</sup>

### 가) 가족수당 도입 및 개편 과정

벨기에의 가족수당제도는 1930년 처음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법적 제도화 이전 가족수당은 고용주에 의해 공공 및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 고용주들

70) OECD family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71) 벨기에의 제도는 2011년 제6차 국가개혁 이전까지 가족수당이었으며, 왈로니(Wallonie; 영문표기에 따라 왈로니아로도 불림)에서는 여전히 가족수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플란데런(Vlaanderen; 영문표기에 따라 플란더스로도 불림)은 동일한 제도를 일반적으로 아동수당(Kinderbijslag)으로 지칭하고 있다. 현재 플란데런의 아동수당은 성장패키지(Groeipakket) 내 하나의 제도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가족수당으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72) 제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Béland & Lecours(2018), Goldschmidt(1936), Richardson(1924), Rizzi et al.(2021), Susswein(1948), Waggaman(1926, 1943, 1946), 그리고 ILO에서 발간한 Legislative Series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 현재 정책은 플란데런과 왈로니의 정책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플란데런 아동수당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roeipakket.be/>. 왈로니 가족수당 공식 홈페이지: <https://aviqkid.aviq.be/>. (2024. 6. 5. 인출).

의 반대가 있었으나, 1920년대 후반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가족수당의 보편화 및 공공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었고, 1924년 11월을 시작으로 다년간의 논의 끝에 1930년 8월 4일 법으로 제정되었다.

가족수당법의 제정은 유럽 최초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는 전국 수당의 하한선을 정하여 기본 지급액을 설정하였다. 산업, 상업, 농업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기금은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고 신규 기금도 신설하였다. 또한, 각 평등기금을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가족수당 평등기금이 신규 개설되었다. 그러나 고용주의 가입 회피율이 높아지면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1936년 왕령에 의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존 기금이 포괄하지 않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기금인 주요기금 외 보조기금과 특별기금을 신설하였다. 1937년부터는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등 최대한 모든 국민이 가입되도록 정책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낮은 지급액 수준과 복잡한 행정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주 및 노동자 집단 대표들에 의해 사회보장계획이 작성되었다.

사회보장계획은 첫 전국노동대회에서 승인되면서 1944년 12월 입법 명령에 의해 법제화되었고, 194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법령은 국민사회보장국을 신설하였는데,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가족수당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sup>73)</sup> 즉, 가족수당이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잡은 것이다. 시행 당시 기여금은 노동자는 임금의 8%, 고용주는 15.5%이었으며, 기여금 중 6%가 국민가족수당기금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법조인, 군인, 공무원의 경우 지급액이 일반 지급액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별개의 기준에 따라 기금이 설계되었다. 노동자가 사망 시 과부와 고아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였다. 대상 아동의 최대 연령은 만 18세였으며, 일할 수 없는 신체·정신적 조건을 가진 경우 국가가 존재하는 한 수당이 보장되었다. 법적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외 가정 내 아동(형제·자매, 손자·손녀, 기타 아동 등)에게도 적용되었으며, 노동자가 실업 시에도 고용주로부터 기여금이 추가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후 1976년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가족급여제도가 설계되었고, 1984-1985년에 걸쳐 확대되었다.<sup>74)</sup> 1948년부터는 벨기에에서

73) ILO(1946). ILO Legislative Series 1944 참고. <https://webapps.ilo.org/public/libdoc/ilo/P/09607/> (2024. 6. 5. 인출).

74) ILO(1986). ILO Legislative Series 1985 참고. <https://webapps.ilo.org/public/libdoc/ilo/P/09607/>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수당 또한 보장되기 시작했다.<sup>75)</sup> 가족수당기금에서 남은 금액은 출생보조금의 전신인 모성수당에도 사용되었지만, 간호사 방문, 의료 상담, 출산전후 클리닉 등 다양한 서비스에도 사용되었다. 즉, 수당의 보장 범위가 이 시기부터 매우 광범위했으며, 수당의 종류 및 구조 또한 현 제도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기여금 및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증가하였으나, 주목할 만한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모든 자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보장된가족급여법(Guaranteed Family Benefit Act)의 제정이다. 이는 1971년 7월 20일에 제정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sup>76)</sup> 해당 제도는 가족급여를 가족수당, 연령에 따른 보조수당, 출생보조금 세 가지로 정의하고, 고용계약을 통한 기여금을 토대로 하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단, 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자산조사를 토대로 그 대상자가 결정되었다. 이 법은 비록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지만, 기존 제도와 병행하여 전국민을 가족수당제도 하에 포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정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둘째, 2011년 제6차 국가개혁을 기반으로 가족수당의 책임이 연방정부에서 언어지역정부로 이관된 것이다. 이는 벨기에 사회보장제도 역사상 최초로 제도가 지역화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는 가족수당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플란데런의 독립을 원하는 우파정당의 힘이 커지면서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Béland와 Lecours(2018)는 다른 제도가 아닌 가족수당제도가 개혁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과 제외되더라도 기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그리고 고용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이후 2014년 4월 4일 기존의 제도를 수정한 모든 가족수당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Algemene Kinderbijslagwet*) 이 제정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벨기에의 각 언어지역정부<sup>77)</sup>에서 각자만의

(2024. 6. 5. 인출).

75) ILO(1950). ILO Legislative Series 1948 version 1 참고. <https://webapps.ilo.org/public/libdoc/ilo/P/09607/> (2024. 6. 5. 인출).

76) ILO(1973). ILO Legislative Series 1971 참고. <https://webapps.ilo.org/public/libdoc/ilo/P/09607/> (2024. 6. 5. 인출).

77)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란데런 지역,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로니 지역, 두 언어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가족수당제도를 법령 하에 설계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현 가족수당 및 출생 보조금의 설계는 언어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본 보고서는 국가 면적 및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란데런과 왈로니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또한, 2019년 이후 지방정부에서 제정된 법령은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고용주의 기금에 대한 가입 및 기여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제도와는 달리 아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나) 현행 지급기준 및 지급액 책정 방식<sup>78)79)</sup>

### (1) 지급기준

현재 벨기에 가족수당은 벨기에 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유일한 지급 조건은 벨기에 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가족수당이 각 언어정부의 소관이 되면서, 이 거주 자격은 각 언어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때의 거주지는 시청에 신고한 법적 거주지를 지칭한다. 따라서 벨기에인이더라도 일반적으로 벨기에 외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경우 가족수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도는 크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차등지급되는 사회수당/보조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가족수당의 경우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제도이며, 사회수당/보조금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므로 자산조사를 기초로 한다. 모든 지역에서 가족수당은 현금급여이며 조세의 대상이 아니다.

플란데런은 성장패키지(Groeipakket) 제도 하에 가족수당 및 출생보조금을 운영한다. 보통의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6개월째 되는 달에 출생보조금을 신청하며 동시에 성장패키지기금을 선정하게 된다. 플란데런의 경우 공공기관 한 개를 포함한 다섯 개의 기금이 있으며, 이 기금이 출생보조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수당의 지급을 담당한다. 기본 가족수당(basisbedrag)의 경우 성장패키지를 통해 신청을

---

자치도시인 브뤼셀 지역, 독일어를 사용하는 오스트벨긴(Ostbelgien; 혹은 동벨기에)

78) 플란데런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https://www.groeipakket.be/> (2024. 6. 5. 인출).

79) 왈로니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https://aviqkid.aviq.be/> (2024. 6. 5. 인출).

하지 않더라도 성장패키지 지급기관에서 수급자격을 판정받을 경우 공공기금인 FONS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은 매월 8일에 지급한다. 아동이 태어난 달부터 18번째 생일이 있는 달까지 매달 수당을 지급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21번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연장 가능하다. 수당은 추가 조건<sup>80)</sup>에 부합하는 경우 최대 25세까지 받을 수 있다.

왈로니의 가족수당은 직역하면 ‘양질의 삶을 위한 기관’(agence pour une vie de qualité)인 Aviq에 의해 운영된다. 플란데런과 마찬가지로 기본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de base)이 있고 출생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이 있다. 왈로니 내 다양한 기금<sup>81)</sup> 중 하나를 선정하면 기금이 수당의 지급 및 자격조건 감독을 담당한다. 가족수당 대상 아동의 최대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21세이며, 추가 조건<sup>82)</sup>에 부합할 경우 최대 만 25세까지 연장 가능하다. 만 18세까지는 왈로니에 법적으로 거주를 등록한 모든 아동이 조건없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만 18세부터 만 21세까지의 아동의 경우 일정 시간<sup>83)</sup> 이상의 혹은 일정 금액<sup>84)</sup> 이상을 버는 직업이 있거나 고용과 관련된 사회급여<sup>85)</sup>를 받는 경우 수당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9년 개혁 이후, 가족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각 정부에 따라 달라져 신규 제도가 적용되는 날짜(플란데런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왈로니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의 경우 신규 제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해당 날짜 전에 태어난 기존 수당 대상자 아동의 경우 이전 제도의 구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두 제도 간의 가장 큰 구조적 차이는 기존 제도의 경우 수당의 지급액 수준

80)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의 자격이 유지되는 아동은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 및 훈련기관에서 파트타임 및 적어도 주 17시간의 수업을 받거나 특수교육을 받거나 벨기에 외 해당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사 기관에서 수학/훈련 중인 경우 아동수당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둘째, 벨기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에서 적어도 27크레딧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해외 정부에서 인정한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기관에서 훈련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 혹은 왕립군사관학교 및 공학 공부 준비를 위해 과학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1년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학생계약을 하는 경우, 노동계약이나 8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이 있어도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81) <https://www.aviq.be/fr/allocations-familiales/caisses-et-affiliation/caisses-dallocation> (2024. 6. 5. 인출).

82) 학생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고용이 연계된 인턴십 중이거나, 지역 내 고용센터에 젊은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

83) 분기당 240시간. 단, 학생직업 (법적으로 학생만 할 수 있는 단기아르바이트), 사회보장기여금을 내지 않는 개인 사업, 직업훈련 과정 제외.

84) 2018년 2월 8일 법령 기준의 상한선.

85) 예를 들어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이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는 것과 달리 신규 제도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다. 급여 수준 또한 상이하며, 이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고아수당(Orphelin/wezenbijslag)의 지급액 수준도 마찬가지이다.

## (2) 지급액 및 지급액 조정 방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액의 수준은 아동의 출생일이 플란데런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전후인지, 왈로니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상이하다. 아래 표는 해당 날짜 전후에 출생한 아동이 2024년 현재 기준 받는 월지급액을 나타낸다. 플란데런은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달 176.66유로를, 왈로니는 2020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달 188.95유로(만 18세 미만) 혹은 201.14유로(만 18세 이상)를 지급한다. 플란데런에서 2018년 이전 출생한 아동의 경우, 가구 내 가장 어린 아동에게는 월 101.69유로를 지급하고, 그 다음으로 어린 아동에게는 월 188.16유로를, 기타 자녀에게는 각 월 259.49유로를 지급한다. 왈로니에서 2019년 이전 출생한 아동의 경우, 가구 내 첫째에게는 월 116.79유로를, 둘째에게는 월 216.09유로를, 셋째 이후부터는 각 월 322.64유로를 지급한다.

플란데런의 경우, 정책이 2019년 이후 바뀐에 따라 2018년 이전 출생한 아동에 한하여 과도기적 추가수당으로 연령수당(maandelijkse leeftijdsbijslag)이 있는데<sup>86)</sup>,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수당이다. 6-11세의 경우 월 32.63유로, 12-17세의 경우 월 49.86유로, 18세 이상인 경우 월 63.40유로를 지급한다.<sup>87)</sup> 사회수당 및 돌봄수당을 받지 않는 첫째 자녀의 경우 월 지급되는 연령수당이 반으로 삭감된다.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연 1회 학교보너스(Schoolbonus)라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는데, 만 0세에서 4세 아동의 경우, 월 22.08유로, 만 5세에서 11세 아동의 경우 월 38.64유로, 만 12세에서 17세 아동의 경우 월 55.20유로, 그리고 만 18세에서 25세 아동의 경우 월 66.24유로를 지급한다.

왈로니의 경우, 2019년 이전 출생한 아동에 한하여, 만 6세부터 24세까지의 아

86) 또 다른 과도기적 추가수당으로, 1966년 7월 1일 전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한부모가정 추가수당을 받지 않는 첫째 자녀는 55.02유로를, 기타 아동은 63.40유로를 받는다.

87) 1966년 7월 1일 전 출생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첫째 아동의 월 연령수당은 55.02유로이며, 기타 아동의 연령수당은 63.40유로이다.

동에게 연령보조금(Supplément d'âge)을 매달 기본가족수당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추가보조금을 포함한 월 연령보조금은 만 6-11세 아동의 경우 월 40.57유로, 12-17세 아동의 경우 월 61.99유로, 18-24세 아동의 경우 월 78.82유로이다. 또한, 모든 가족수당 대상 자녀의 경우, 개학 전인 매년 7월에 연간보조금(Supplément annuel)을 추가로 지급한다. 연간보조금은 플란데런의 학교보너스와 같은 기능을 한다. 2019년 이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추가보조금을 더한 연간보조금은 0-5세 아동의 경우 월 35.71유로, 6-11세 아동의 경우 월 75.79유로, 12-17세 아동의 경우 월 106.10유로, 18-24세 아동의 경우 월 142.83유로이다. 2020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만 18세 이후 추가보조금으로 기본 가족수당이 증가하며, 모든 아동에게 연간 연령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지급한다. 0-4세 아동의 경우 월 24.38유로이며, 5-10세 아동의 경우 월 36.57유로, 11-16세 아동의 경우 월 60.95유로, 17-24세 아동의 경우 월 97.52유로를 지급한다.

플란데런의 경우, 부모 중 하나 혹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고아수당(Wezentoeslag)은 기본 가족수당에 더하여 지급하며, 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월 141.33유로를,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월 176.65유로를 지급한다. 고아수당은 가족수당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기간이 가족수당과 동일하다. 2018년 이전 출생하고 부모가 2018년에 사망한 아동의 경우 기존제도에 따라 고아수당이 가족수당을 대체하여 증가한 고아수당(Verhoogde Wezenbijslag)을 받게 되며, 총 월 390.58유로를 지급한다. 한 부모가 사망한 가정의 중 생존하여 있는 부 혹은 모가 재가하는 경우 고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 고아수당은 기본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아래 설명할 사회수당과 병합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왈로니의 경우, 2020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 한하여, 양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가 모두 사망 시 고아수당(Allocation d'orphelin)을 지급한다. 이때 부모는 입양부모도 해당한다. 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월 426.65유로이며 이에 추가적으로 연간보조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양 부모 중 한 명 사망 시, 고아보조금(Supplément orphelin)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월 94.48유로, 만 1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월 100.57유로를 지급한다. 2019년 이전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모 중 한 명 사망 시에도 고아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아동이 임시보호가정에 보내지는 경우 가족수당은 보호가정

어머니에게 지급하며, 동성부부의 경우 더 나이가 많은 부 혹은 모에게 지급한다. 아동이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 지급액의 2/3는 시설에 지급하며, 나머지 1/3는 청 소년지원국(la Direction de l'aide à la jeunesse)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거나 아동 명의 계좌에 지급한다.

〈표 III-2-8〉 플란데런과 왈로니의 월 가족수당 지급액(2024년 기준)

단위: 유로(€)

구분	플란데런		구분	왈로니	
	2018년 이전 출생	2019년 이후 출생		2019년 이전 출생	2020년 이후 출생
막내*	101.69	176.66	첫째	116.79	만 18세 미만: 188.95 만 18세 이상: 201.14
두번째로 가장 어린 자녀*	188.16		둘째	216.09	
기타 자녀*	259.49		셋째 이후	322.64	
고아수당	390.58 (가족수당 대체)	한부모 사망: 141.33 양부모 사망: 176.65 (가족수당에 추가 지급)	고아수당	448.64 (가족수당 대체)	생존부모없음: 426.65(가족수당 대체) 한부모생존: (18세미만) 94.48; (18세 이상) 100.57 (가족수당에 추가)

주: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플란데런의 성장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groeipakket.be/>)와 왈로니 정책 홈페이지(<https://aviqid.aviq.be/>)를 참조하여 재구성함(2024. 6. 5. 인출).

각 아동은 가구소득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위의 기본 수당에 더해 보조수당<sup>88)</sup>을 받을 수 있다. 플란데런의 경우, 성장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를 사회수당(sociale toeslag)이라 칭하며,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기본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지급액이 결정된다. 2019년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연 가구소득이 세전 36,325.76유로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둘째 자녀까지는 각 월 70.50유로를 지급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각 월 103.62유로를 지급한다. 연 가구 소득수준이 세전 36,325.76유로에서 42,380.06유로 사이인 경우, 둘째 자녀까지

88) 이에 더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주어지는 수당 및 보조금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플란데런: 돌봄수당(Zorgtoeslag) 지원수당(Ondersteuningstoeslag); 왈로니: 장애보조금(Supplément invalide).

는 각 월 35.70유로를 지급한다. 세 자녀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이 더 넓은데, 36,325.76유로에서 68,329.61유로 사이 소득수준의 가구의 아동에게는 셋째 자녀부터 각 아동 당 월 81.54유로를 지급한다. 2018년 이전 출생 아동의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가구 내 아동의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지급한다. 단, 기존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는 가구소득 36,325.76에서 42,380.06유로 사이 가구의 첫째, 둘째 아동의 경우, 신규 제도에 맞춰 각 아동 당 월 35.70유로를 지급한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수당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양 부모가 공평하게 양육을 분배하는 경우, 각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이 사회수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 기존 사회수당의 절반을 지급한다. 한 부모가 양육을 전담 혹은 더 많이 감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며, 사회수당 기준에 부합할 시 전액을 지급한다. 아동이 임시보호가정에 지내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시보호가정의 가구원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결정하며,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 직전 가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표 III-2-9〉 플란데런의 월 사회수당 지급액(2024년 기준)

단위: 유로(€)

구분		2018년 이전 출생	2019년 이후 출생
세전 연 가구소득	자녀 수		
36,325.76 이하	1~2명	막내: 67.07 <sup>89)</sup>	각 아동 당 70.50
36,325.76 이하	3이상	두번째로 어린 자녀: 47.38 나머지 자녀: 20.93 <sup>90)</sup>	각 아동 당 103.62
36,325.76 초과 ~ 42,380.06 이하	1~2명	각 아동 당 35.70	각 아동 당 35.70
36,325.76 초과 ~ 68,329.61 이하	3이상	적어도 한 명의 아동이 2019년 이후 출생한 경우 성장패키지에 해당	각 아동 당 81.54

자료: 플란데런의 성장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groepakket.be/> (2024. 6. 5. 인출)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89) 101.69유로의 아동수당을 받고 장기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보조수당이 67.07유로가 아닌 126.66유로를 지급한다. 이는 아래 소득 기준에도 동일하게 해당한다.

90) 259.49유로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의 경우, 보조수당이 29.93유로가 아닌 41.18유로를 지급한다. 이는 아래 소득 기준에도 동일하게 해당한다.

고정된 지급액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데, 이 기준은 왈로니의 경우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대비 아동 수 변화, 1인당 GDP의 실질 성장 등의 다양한 지표에 따라 산정되며, 플란데런의 경우 2020년 이후 기존의 연동(indexation)기준과 관계없이 고정된 상승률(현재 2%<sup>91)</sup>)에 따라 급여 수준이 매년 증가한다. 또한, 제도 개혁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는 사회보조금을 특정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주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3) 벨기에 출생보조금 (Startbedrag; Prime d'adoption - Naissance) 제도<sup>92)93)</sup>

출생보조금은 아동이 출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동 출생 시 일시금으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출생보조금은 보편주의적 정책이다. 벨기에의 현재 출생보조금은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2011년 제육차국가개혁 이후 언어지역정부로 책임이 이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총 네 가지 제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전신이 되는 제도인 모성수당제도는 동일하며, 2019년 이전 개편과정 또한 동일하다.

벨기에 출생보조금의 역사는 1926년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한 아동보너스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Jamin et. al., 2005, Rizzi & Decoster, 2021에서 재인용). 1930년 이후 사업장 혹은 산업단지 중심의 기금이 조성되면서 출생보조금은 잉여자금이 있는 다수의 기금에서 지급한 바 있다(Susswein, 1948). 이후 이는 1942년 가족수당제도가 법제화되면서 함께 의무가입기금에 포함되었다. 즉, 이후 개편과정은 가족수당과 동일하며, 출생보조금제도 자체는 제육차국가개혁 이전까지는 보조금의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 외에 두드러지는 변화가 없었다.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로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동도 출생보조금을 적용받게 된 것이 있다(Cantillon & Verbist, 199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수당은 임신 6개월 이후 출생보조금을 지정한 기금에 신청하면서 시작한다. 이때 등록된 아동은 출생과 함께 출생보조금을 받고, 동

91) 아래에서 설명할 학교수당의 경우 현재 연 상승률이 5.30%이다.

92) 플란데런의 정책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https://www.groeipakket.be/tegemoetkomingen/startbedrag> (2024. 6. 5. 인출).

93) 왈로니의 정책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https://aviqid.avig.be/Pages/themesAR/sections/montants-enfants-apres-2020-allocation-de-naissance.aspx> (2024. 6. 5. 인출).

일한 기금에서 매달 위에서 설명한 가족수당 및 기타 보조금을 받는다. 부모는 기금에 출산예정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보조금은 플란데런과 왈로니 모두 최대 아동 출생 5년 내로 신청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입양 가정에도 적용되며, 입양확정 문서를 통해 신청한다. 출생보조금은 아동이 태어나기 전 최대 두 달 전부터 지급 가능하다. 출생보조금은 특별한 산정기준이 없으며, 2024년 현재 기준 플란데런과 왈로니의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그 상승률의 산출방식은 가족수당과 동일하다.

〈표 III-2-10〉 플란데런과 왈로니의 출생/입양보조금 지급액(2024년 기준)

단위: 유로

구분	출생/입양보조금 지급액
플란데런	1214.49
왈로니	1340.90

자료: 플란데런의 성장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groeipakket.be/>)와 왈로니 정책 홈페이지(<https://aviqid.aviq.be/>)를 참조하여 재구성함(2024. 6. 5. 인출).

#### 4) 최근 쟁점 및 이슈

본 보고서는 가족수당에 대한 최근 쟁점을 현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플란데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24년 3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관점이 정당별로 나뉘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가족수당 제도에 있어 가장 중심으로 다뤄지는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수당의 소득수준 상한선과 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제도의 설계는 가구 소득수준이 설정된 상한선에서 1유로라도 높으면 사회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구조이며, 기본 가족수당은 높고 사회수당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소득수준이 상당부분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가구의 실질소득이 하락하여 가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Coumans, 2024. 4. 29.<sup>94</sup>). 이는 가족수당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아동빈곤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아동빈곤율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Vinck & Van Lancker, 2024).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94) Coumans(2024. 4. 29). Kinderbijslag mag niet afhangen van het inkomen. De Standaard. [https://www.standaard.be/cnt/dmf20240428\\_95979975](https://www.standaard.be/cnt/dmf20240428_95979975) (2024. 6. 5. 인출).

사회수당의 현재 제도는 재분배기능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Vinck and Van Lancker(2024)은 대안적 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Vanschoubroek, 2024. 5. 28<sup>95</sup>). 두 저자는 기본가족수당과 사회수당의 구분을 없애고 가족수당이 온전히 가구의 소득수준, 아동의 연령, 가구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캐나다의 제도에서 영감을 받을 모형을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이 대안 모형에 따르면, 어린 아동일수록 수당이 높으며, 소득수준 상한선이 넘더라도 가구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당 지급액이 낮아져 가구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단, 캐나다의 모형에서 고소득층의 아동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반면, 대안모형에서는 이들에게도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대안모형은 기존 제도에 비해 아동빈곤율을 35%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좌파정당인 Vooruit 또한 이와 같이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회수당을 강조하는 가족수당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sup>96</sup> 다른 한편으로, 우파정당인 N-VA(Nieuw-Vlaamse Alliantie)는 본회의에서 상한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이 ‘임금/실업/승진의 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sup>97</sup> 이에 더해, 이들은 노동하는 부모와 노동하지 않는 부모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Hilde Crevits 장관은 기존 제도의 상한선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나, 소득 상한선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가족수당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경우에 제도가 복잡해지면 기존 자동화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딜레마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둘째, 가족수당 및 보조금의 연간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괴리이다. 플란데런의 성장패키지가 왈로니와 브뤼셀의 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수당 지급액의 연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이 되어있는지 여부이다. 벨기에의 사회보장제도 하의 급여액 및 노동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조정된다. 왈로니와 브뤼셀에서는 가족수당 제도 또한 이에 맞게 설계한 반면, 플란데런은 자동 물가연동

95) Coumans(2024. 4. 29). Kinderbijslag mag niet afhangen van het inkomen. De Standaard. [https://www.standaard.be/cnt/dmf20240428\\_95979975](https://www.standaard.be/cnt/dmf20240428_95979975) (2024. 6. 5. 인출).

96) dvv(2023. 5. 7). CD&V-voorzitter Sammy Mahdi: ‘We stappen niet in volgende Vlaamse regering zonder indexering kinderbijslag’. De Standaard. [https://www.standaard.be/cnt/dmf20230507\\_93986310](https://www.standaard.be/cnt/dmf20230507_93986310) (2024. 6. 5. 인출).

97) 2024년 4월 30일 본회의 보고자료를 참고. Report of the plenary session Tuesday, (30 April 2024) 14p.m. | FlemishParliament(vlaamsparlament.be)

을 제도 설계에 추가하지 않았고, 연간 상승률을 제도 도입 시에는 1%로, 2022년부터는 2%로 설정하였다. 이는 특히 최근 물가가 높아지면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부담을 더하였다. 2024년 4월 30일 열린 본 회의에서는 좌파노동정당인 PvdA(Partij van de Arbeid)가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가족수당지급액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정당이 동의하나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파정당의 경우 상승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나 물가상승과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좌파정당인 PvdA 그리고 특히 중도정당인 cd&v(Christen-Democratisch & Vlaams)<sup>98)</sup>의 경우 물가상승률과의 연동을 중요한 개혁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가족수당예산에 남은 예산이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플란데런의 정부는 2023년 약 3억 3천만유로의 성장패키지 예산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sup>99)</sup> 이는 2024년 4월 30일 본 회의에서도 주요하게 문제제기 된 바 있다. PvdA는 가족협회(Gezinsbond)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초로 과거 가족수당 제도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채운 반면, 현 제도는 40%를 채우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아동을 우선시 하는 제도의 원칙에 반한다고 발언하였다. Vooruit은 남은 예산이 저소득층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으며, cd&v는 자동 물가상승률과의 연동을 통해 예산이 아동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라. 스웨덴

### 1) 스웨덴 가족정책 특징<sup>100)</sup>

스웨덴 가족정책의 근본적인 특징은 정부가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98) dvv(2023. 5. 7). CD&V-voorzitter Sammy Mahdi: 'We stappen niet in volgende Vlaamse regering zonder indexering kinderbijslag'. De Standaard. [https://www.standaard.be/cnt/dmf20230507\\_93986310](https://www.standaard.be/cnt/dmf20230507_93986310) (2024. 6. 5. 인출).

99) Struys(2023. 10. 27). PVDA: 'Besparing groeipakket kostte gezin tot 1.500 euro'. De Standaard. [https://www.standaard.be/cnt/dmf20230926\\_97312542](https://www.standaard.be/cnt/dmf20230926_97312542) (2024. 6. 5. 인출).

100) 스웨덴은 종종 가족정책 발달의 선구자로서 여겨지며, 그 시초를 찾기 위해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스웨덴 정책 역사에서 가족정책이라는 개념은 자녀 및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일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비판적 관점이 등장하면서 1948년에 처음 등장했다. 그 전까지는 모성 정책과 인구 정책이라는 개념 아래 빈곤과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여성, 아동, 그리고 가족을 위한 각종 정책이 도입 및 논의되었다. 또한 가족 정책이라는 개념이 스웨덴 정치적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더 늦은 1965년으로 사민당 정부가 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다(Ohlander, 2012).

가족 구조, 소득, 역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족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돌봄 책임의 일부를 일찍이 사회화 시켜온 데 있다. 1930년대부터 스웨덴 정부는 가족에 대한 정치적 규제를 높은 빈곤율과 출산율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스웨덴 사회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Lundqvist, 2013: 113). 당시 초기에 도입된 가족 정책은 모성급여, 모성지원금, 다자녀 가족 및 한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 저금리주택대출 등 빈민구제 성격의 현금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Lundqvist, 2013: 118-125).

그러나 이후 공공서비스 확충만이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질 높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사회민주주의당(이후 사민당)이 4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면서 스웨덴은 점차 의료, 교육, 돌봄 영역에서 현금 보다는 현물 위주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Blomqvist, 2004). 특히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사민당 정부는 1940-50년대를 거치면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지급되던 일부 현금지원 정책들, 즉 모성급여 및 모성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부모보험의 전신인 보편적 모성보험을 도입하였으며(Socialdepartementet, 1954), 아동수당에서도 자산조사 조건을 삭제하고 16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Kunglig Majestät, 1947).

더 나아가 1960년대부터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제기되면서 가족정책의 초점이 계급문제에서 성불평등 문제로 전환됐다(Roman, 2008). 정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족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대부분 여성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문제화하기 시작하며, 정책 기조로서 부부간의 경제적 독립, 자율성 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풀타임 공공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1970년대부터 공공보육서비스 기관을 두 배로 늘리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Nyberg, 2004).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가족 정책 단위는 가족에서 개인으로 전환됐으며, 그 결과 기존의 부부합산과세를 개별과세방식으로 대체하고 세계 최초로 성 중립적 부모휴가를 도입했다(Lundqvist, 2011).

현재는 폐지되어 사라졌지만 1991-1994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며 돌봄 방식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권 보장 및 현금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했던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양육수당이 도입됐다. 이는 직후 재집권한 사민당에 의해 6개월만에 폐지되어 2006년 다시 정권을 잡은 우파 정권에 의해 2008년 부활했지만,

2014년 재집권한 사민당에 의해 다시 한 번 폐지됐다. 스웨덴 가족정책에서 양육수당 제도의 도입은 안정적으로 성평등 가치를 우선해 온 스웨덴 모델과 상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Ellingsæter, 2014).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족정책인 부모휴가, 아동수당, 공공보육서비스는 이처럼 모두 20세기 중후반에 도입되어 이후 반세기 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 오늘날 스웨덴의 가족정책 모델은 개인주의 모델(Sainsbury, 1996) 혹은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 모델(Gornick & Meyers, 2009)로 정의되며, 여전히 사회민주주의 기반의 보편 복지주의를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스웨덴이 1990년대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보편주의 모델 혹은 사회서비스 강국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스웨덴 내 여러 학자들은 스웨덴 모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Lundqvist, 2013). 예를 들어, 1990년 이후 변화한 스웨덴 복지정책의 보편성을 정책대상의 포괄성, 자원조달방식, 전달방식, 급여의 적절성 등 네 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블롬크비스와 팔메(Blomqvist & Palme, 2020)는 가족정책의 경우 전달방식 외 세 가지 영역에서 오히려 보편성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동수당은 이러한 스웨덴 가족정책 중 대표적인 보편적 현금지원 정책으로 스웨덴 복지국가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스웨덴 아동수당 도입 및 개편 과정

스웨덴 아동수당(Barnbidrag)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16세 이하의 아이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자녀를 둔 가족의 생활수준을 높여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 하에 193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도화된 아동수당은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가족 지원에 목적이 있었다. 스웨덴 시민권을 가진 아동 중 이들의 생물학적 부모 혹은 입양부모 모두 사망했거나, 아버지가 없는 경우, 아버지는 있지만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Kunglig Majestät, 1937), 이러한 수급자 기준 제한으로 1938년부터 1940년 중반까지 수급 대상인 아동 수는 매년 약 5만명에 그쳤다(Socialdepartementet, 1946: 38).

아동수당의 수준은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아래 표 III-2-11 참고). 예를 들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부모(주로 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지역그룹 1, 2, 3 에 따라 각각 연간 600크로나, 800 크로나, 1000 크로나를 초과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부모 모두의 연간 합 소득이 지역 그룹에 따라 각각 900 크로나, 1,125 크로나, 1,350 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되는 연간 소득의 70% 수준을 기존의 아동수당에서 삭감하였다. 만약 지역그룹 1 에서 자녀 1명을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000 크로나였다면, 기준 소득에 초과되는 100크로나의 70%에 해당하는 70 크로나만큼 기본 아동수당 240크로나에서 삭감 후 170크로나를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1937년 당시 최소 250일 근무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431 크로나였던 점을 감안하면 (Socialstyrelsen, 1937), 부모 소득의 합이 1인 평균임금의 약 63%(지역1), 79%(지역2), 94%(지역3) 이하인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표 III-2-11〉 스웨덴 아동수당 연간 지급액(1938년)

단위: 크로나

자녀 수	지역 1	지역2	지역 3
1명	240크로나	300크로나	360크로나
2명	420크로나	525크로나	630크로나
3명	600크로나	750크로나	900크로나
그 외 한 명 추가당	120크로나	150크로나	180크로나

자료: Kunglig Majestät(1937). Kungl. Maj:ts proposition nr 276 till riksdagen med förslag till lag om barnbidrag, m. m.; given Stockholms slott den 19 mars 1937. p.3을 참고하여 작성함.

스웨덴 복지모델을 대표하는 보편적 현금지원 가족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은 1948년에 도입되었다. 스웨덴 시민이거나 스웨덴에 살고 있는 모든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매월 아동수당을 받았고, 이는 연 260 크로나에 해당한다(Kunglig Majestät, 1947). 당시 법률안에 따르면 260 크로나는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녀로 인해 추가되는 가족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졌다. 아동수당은 당시 성별분업 현실을 잘 반영하듯 기본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었다(Ohlander, 2012). 흥미롭게도 1900-1960년 대 사이의 사회민주주의 가족 정책의 변화를 연구한 올란델(Ohlander, 2012)에 따르면, 당시 여성이 돈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도시 외 지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었으며 정부가 여성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소득에 대

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정책과 전혀 다른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스웨덴 정부는 꾸준히 아동수당 급여를 향상시켜 오다가, 1982년 기존 제도에 세 자녀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자녀추가수당(Flerbarnstillägg)을 도입했다. 당시 스웨덴 정부가 고기와 치즈 산업에 대한 식량 보조금을 삭감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부모의 전일제 임금노동이 어려운 다자녀 가족의 경제상황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이다(Försäkringskassan, 2023a).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다자녀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 중 가처분중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두 자녀의 경우 12%인 반면, 네 자녀의 경우 44%, 일곱 자녀의 경우 84%에 달한다(Försäkringskassan, 2023a).

이 밖에 주목할만한 정책 개편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변화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수당은 처음 도입 당시 어머니에게 전액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아버지도 별도 신청을 거쳐 수령인이 될 수 있었다(Regeringen, 1976). 1990년대 돌봄개혁을 거치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 양육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경우 아동수당을 절반씩 나눠서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였다. 이어서 2000년과 2005년 각각에 Riksförsäkringsverket(RFV)과 사회보험청은 제도가 사회적 현실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동수당 분할의 필요성을 제의했다(Försäkringskassan, 2005; Riksförsäkringsverket, 2000). 2005년 스웨덴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안했고, 2006년 아동이 부모 각각의 집에 번갈아 거주하면서 부모 간 아동수당 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정부는 아동수당 분할 수령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2011년 정부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령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어머니에게 있어 오히려 부부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Social departementet, 2011). 조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을 애초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는 거주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분할된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다(Inspektionen för Socialförsäkringen [ISF], 2016). 즉 현재 아동수당은 해당 부모가 직접 사회보험청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히 수령인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모 각각에게 절반씩 지급된다. 당시 법률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제안의 목적은 부모가 아동수당의 지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할된 아동수당은 성평등 관점에서 긍정적이며, 또한 아동수당 규정을 성중립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부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부모가 협력하여 아동의 경제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Socialdepartementet, 2013)

실제로 정책 개편 전 93%의 아동수당이 어머니에게 지급되었던 것에 반해, 2014년 3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의 부모들 중 아동수당을 절반씩 동등하게 수령하는 비율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56%에 달했다(ISF, 2016). 그러나 사회보험감독위원회 보고서는 여전히 절반 가까이 어머니가 전액을 수령하고 있는 점, 행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 따로 살고 있는 부모 간에 양육 비용과 자녀의 거주 기간 등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 등을 정책 개편의 한계로 평가했다(ISF, 2016).

### 3) 현행 지급기준 및 지급액 책정 방식

스웨덴 사회보장규정(Socialförsäkringsbalk)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일반 아동수당(Barnbidrag), 연장 아동수당(Förlängt barnbidrag), 다자녀추가수당(Flerbarnstilläg)의 세 가지 형식으로 부여된다.<sup>101)</sup> 일반 아동수당은 2024년 기준으로 월 1250 크로나(약 16만원) 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태어난 달부터 16세가 되는 달이 속한 분기 내내 지급된다. 예를 들어 3분기에 속하는 7월에 태어났다면 3분기 말인 9월까지 받을 수 있다. 연장 아동수당은 일반 아동수당 수령 가능 나이 이후에 제공되는 수당으로, 금액도 월 1,250 크로나로 동일하다. 다만 이는 자녀가 16세 이후에도 (한국의 고등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상급반으로 진학하지 않고 남아있거나, 스웨덴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사미족 학교나, 지적 장애 및 신체적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학교를 다니는 경우, 스웨덴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학교 이면서 초중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부를 마치거나 그만 둘 때까지 지급된다.

일반 아동수당 혹은 연장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족은 추가로 다자녀추가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두 번째 자녀에게 150 크로나, 세 번째

101) 스웨덴 국회홈페이지.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socialforsakringsbalk-2010110\\_sfs-2010-110/](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socialforsakringsbalk-2010110_sfs-2010-110/) (2024. 6. 7. 인출).

자녀에게는 580 크로나가 지급되는 등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 수준도 올라간다 (아래 표 III-2-12 참조). 예를 들어 자녀 세 명인 경우 아동수당 총 3,750 크로나와 두 번째 및 세 번째 자녀를 위해 지급되는 다자녀수당 730 크로나를 합쳐 매달 총 4,480 크로나(약 59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표 III-2-12〉 스웨덴 아동수당 지급액(2024년)

단위: 크로나

자녀수	일반 아동수당	다자녀추가수당	합계
1	1,250크로나	-	1,250크로나
2	2,500크로나	150크로나	2,650크로나
3	3,750크로나	730크로나	4,480크로나
4	5,000크로나	1,740크로나	6,740크로나
5	6,250크로나	2,990크로나	9,240크로나
6	7,500크로나	4,240크로나	11,740크로나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 (2024. 7. 1. 인출).

아동수당은 스웨덴소비자원(Konsumentverket)에서 추정한 아동 한 명당 평균 소비지출액을 참고하여 결정된다(Försäkringskassan, 2023a).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0세의 경우 3,610-3,950 크로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나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16세의 경우 5,520-6,320 크로나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본다. 해당 소비지출액은 음식, 의류, 놀이(취미), 통신비(8세부터 적용), 위생 및 건강관리비, 아동보험료, 기타 필요한 아동용 장비(10세까지 적용)가 포함된다.<sup>102)</sup>

#### 4) 최근 현황 및 쟁점

##### 가) 현황

스웨덴에서 아동수당은 치아관리지원(Tandvård)<sup>103)</sup> 다음으로 수령인이 가장 많은 현금지원정책으로, 2022년 기준으로 0-16세 해당하는 아동 수는 총 약 200만

102) 스웨덴 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publikationer.konsumentverket.se/privatekonomi/beraknad-e-hushallskostnader> (2024. 6. 7. 인출).

103) 스웨덴에서 치과치료는 0- 23세까지 무료다. 그러나 24세부터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정부에 치아관리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치아관리수당은 일반수당, 특별수당, 고비용보호수당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나이와 비용에 따라 지원수준이 상이하다(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tandvard/tandvardsstod> 2024. 6. 7. 인출).

명이며, 이는 2021년과 비교하며 약 0.2% 감소했다(Försäkringskassan, 2023b). 아래 <표 III-2-13>는 사회보험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수당 종류별 수급자 수와 수급자의 성비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스웨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163만 명의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급자 중 여전히 어머니 비율이 높아 여성이 65%, 남성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sup>104)</sup> 정부의 아동수당 지출액은 최근 3년간 큰 변동 없이 약 333억 크로나(약 4,3조 원) 정도로 사회보험청 연간 지출비용의 약 13.5%를 차지한다(Försäkringskassan, 2023b).

<표 III-2-13> 스웨덴 아동수당 수급자수 및 수급자 성비(2011년-2023년)

단위: 명, %

연도	아동수당 수급자			수급자 성비(%)	
	일반아동수당	연장 아동수당	다자녀추가수당	여성	남성
2023	1,603,842	10,954	1,089,848	64.9	35.1
2022	1,577,936	10,767	1,066,168	66.3	33.7
2021	1,550,895	10,933	1,042,947	67.6	32.4
2020	1,502,433	10,768	1,004,085	69.4	30.6
2019	1,447,524	10,455	960,948	71.5	28.5
2018	1,387,554	10,351	890,493	73.6	26.4
2017	1,323,549	10,192	844,422	76.1	23.9
2016	1,250,696	10,131	791,143	79.1	20.9
2015	1,175,030	10,411	738,924	82.9	17.1
2014	1,092,351	10,798	693,703	87.7	12.3
2013	1,027,070	11,508	652,957	92.1	7.9
2012	1,011,074	12,227	640,814	92.6	7.4
2011	999,341	13,198	642,723	93.1	6.9

자료: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bab-mottagare-belopp> (2024. 6. 7. 인출).

## 나) 최근 쟁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웨덴의 아동수당 제도는 1948년 보편주의를 채택한 이

104)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statistik-och-analys/statistikdatabas#!/bf/bab-mottagare-belopp> (2024. 6. 7. 인출).

후로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그 원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현금지원 제도의 낮은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자산조사 도입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도우파의 보수당(Moderaterna) 의원 Ann-Sofie Lifvenhage와 Lotta Finstorp는 2023년과 2020년에 각각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모든 가족들의 일정한 경제적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지만,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보호자들에게 지급되어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을 낮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게 자산조사를 통한 아동수당 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sup>105)</sup> 이들의 제안은 일부 예시에 불과하며 이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크고 작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스웨덴에서 각종 현금급여 및 수당과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해외 거주자가 지속해서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주거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 사회보험청이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접수한 사례는 10억 크로나 이상(약 1,300 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앞서 언급한 수당 대상자는 해외로 이주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해외 장기거주 시 직접 국세청과 사회보험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 이는 수당 지급 시스템의 오래된 약점이지만 해당 위반 사례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들이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수당을 돌려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TT Nyhetsbyrån, 2024. 3. 18).

당분간 아동수당 자체에 대한 정책 개혁 계획은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가장 큰 새로운 변화는 현 정부가 도입하고자 논의 중인 정부지원금 상한선 도입이다.<sup>106)</sup>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의 합에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의미이다. 현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텔손(Ulf Kristersson)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동력을 높

105) 스웨덴 국회 홈페이지.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motion/behovsprova-barnbidraget\\_h8021988/](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motion/behovsprova-barnbidraget_h8021988/),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motion/behovsprovat-barnbidrag\\_hb02532/](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motion/behovsprovat-barnbidrag_hb02532/) (2024. 6. 7. 인출).

106)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당개혁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에 대한 감세, 실업으로 경제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구직활동참여 조건 강화 등도 포함한다.

이기 위해 보조금 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구조 개혁입니다." 라며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sup>107)</sup> 발표 당시 언급된 사례를 보면, 현재 정책 구조 안에서 소득이 없는 한 자녀 가족의 부모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의 합은 부모 중 한 명이 전일제로 일하며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가장 낮은 월급 수준인 약 20,220 크로나 (약 260만원)와 그 수준이 동일하다. 또 다른 예로, 스톡홀름에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 여섯 명을 둔 무직 부모의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은 11,740 크로나, 주거수당 5,900 크로나, 생계급여 20,490 크로나로 총 38,130 크로나(약 5백만원)에 달한다.<sup>108)</sup> 즉 이들 부모에게 경제활동을 장려하기에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높아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노동 동기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를 맡아 진행해 오던 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당상한선에 대한 연구도 추가 의뢰한 상황이며, 관련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및 자녀 육아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가 지속되고 있어 정당 간 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스웨덴 중앙은행은 2년 만에 0세에서 19세 사이의 자녀 양육비용이 아동수당을 감안하고도 23% 상승하여 2021년에 비해 약 300,000 크로나 (약 4천 만원) 더 올랐다고 발표했다(Folkesson, 2023. 4. 13). 아래 <표 III-2-14>은 스웨덴 중앙은행이 2024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육비용이다. 여기에는 음식, 옷, 취미활동, 용돈, 집 안에서 필요한 장치 및 기구, 보육서비스료, 육아휴직이나 자녀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분 등이 감안되었다.<sup>109)</sup>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일반 아동수당은 연간 육아 비용의 최소 9% (0세 경우)에서 최대 18%(4세 경우) 정도를 대체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아동수당 금액을 생활비지수나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매년 조정하는 핀란드나 덴마크 등 이웃 국가와 스웨덴은 예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107) 스웨덴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6/regeringen-ger-utredare-i-uppdrag-att-ta-fram-bidragstak> (2024. 6. 7. 인출).

108) 스웨덴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6/regeringen-bjuder-in-till-presstraff-om-bidragssystemet> (2024. 6. 7. 인출).

109) 스웨덴 중앙은행 홈페이지. <https://www.swedbank.se/privat/livet/familj/ekonomens-tips-till-blivande-foraldrar.html> (2024. 6. 7. 인출)

와 관련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해석을 내릴지는 위에 언급한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III-2-14〉 자녀 나이에 따른 연간 양육 비용

단위: 천 크로나

나이	예상비용	나이	예상비용	나이	예상비용	나이	예상비용
0	155	5	85	10	100	15	109
1	91	6	88	11	91	16	116
2	92	7	91	12	93	17	119
3	86	8	92	13	93	18	124
4	82	9	92	14	100	합	1,899

주: 100,000 크로나는 약 1,307 만원(2024. 6. 9. 기준)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 홈페이지. <https://www.swedbank.se/privat/livet/familj/ekonomens-tips-till-blivande-foraldrar.html> (2024. 6. 7. 인출).

### 3. 소결

III장에서는 OECD 국가 동향, 주요국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 현황, 4개국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국 현금급여 제도의 특성을 도출하고, 한국의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종합

##### 1) OECD 주요국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수당(가족수당) 제도의 특성 중 지급연령, 차등지급 기준, 지급수준, 지급액 조정방식을 종합하면 다음 〈표 III-3-1〉과 같다. 복지국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보수주의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들의 아동수당(가족수당)의 기본 지급 연령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업, 직업교육, 장애 등으로 인한 연장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보수주의 국가들의 지급 연장 연령이 높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는 만 25세 미만까지 연장 지급한다.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스웨덴이 20세 미만까지 연장 지급하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연



장 지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 헝가리는 연장 지급 연령이 23~24세로 높고, 지급수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OECD Family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전일제 근로자 기준 평균 임금에서 가족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폴란드는 양부모 가구 중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1% 수준으로 제시된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헝가리도 7.9%로 높은 편이다. 보수주의 국가들에서도 아동수당(가족수당)의 지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오스트리아가 10.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독일이 9.2%, 벨기에에는 8.6%였다. 프랑스는 4.0%였으나, 다양한 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체 가족 대상 현금급여의 수준은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에서는 노르웨이가 3.9%로 가장 낮고 세 국가는 5.3%~6.0% 수준이었다. 자유주의 국가인 호주가 2.6%로 가장 낮고, 영국은 4.6%이다.

독일과 벨기에 플란데런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아동수당(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벨기에 플란데런의 경우도 아동수당 제도 내에서 차등지급을 하지는 않으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별도 현금지원 제도로 독일은 아동수당보조금, 벨기에 플란데런 지역은 연간 가구소득 및 자녀수를 고려한 사회수당 추가 지급을 하고 있다. 차등지급 기준은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특징이 구분되지 않고 국가별로 적용 기준이 상당히 상이하였다.

아동수당(가족수당) 지급액 자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국가는 4개국이나, 독일과 벨기에 플란데런과 유사하게 저소득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추가 수당이나 세제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이다(표 III-1-7 & 표 III-1-8 참조). 한편, 독일과 벨기에 플란데런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출생순위 및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대다수의 국가가 다자녀의 경우 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다수인 8개 국가가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한부모 대상 아동수당(가족수당) 지급 수준이 높은 국가는 5개국(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호주)이다.

지급액 조정방식을 살펴보면, 매년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왈로니, 오스트리아, 호주 등 총 6개 국가이다. 나머지 국가들도 정부나 국회가 예산, 최저생계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매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지급액을 정기적으

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당 소비지출액을 반영하며, 독일은 아동 최저생계비 산출을 반영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헝가리 등은 정부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다. 폴란드는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는 않으나, 정부가 3년마다 가족소득지원 임계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3-1〉 주요국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제도 특성 종합

단위: 세, %

구분	지급 연령 (미만)	연장 연령 (미만)	차등지급 기준					지급 수준 (%)	지급액 조정방식
			소득	출생 순위	자녀 수	연령	한 부모		
스웨덴	16	20			○			6.0	아동당 소비지출액 반영, 국회 결정(관련법)에 따라 비정기적 조정
핀란드	17	-		○		○	○	5.5	매년 생활비지수 반영
덴마크	18	-	○			○		5.3	매년 경기변동 반영 조정비율 적용
노르웨이	18	-				○	○	3.9	정부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
독일	18	25						9.2	관련법에 따라 비정기적 조정
프랑스	20	-	○		○	○		4.0	매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
벨기에 (플란데런)	19	25						8.6	매년 2%씩 증가
벨기에 (왈로니)	21	25				○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아동수, GDP 실질 성장 등 다양한 지표 반영
오스트리아	19	25			○	○		10.5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폴란드	18	24			○	○	○	11.0	3년마다 가족소득지원 임계치 반영, 정부가 조정
헝가리	17	23			○		○	7.9	매년 국가예산법에 따라 조정
영국	16	20	○	○				4.6	정부가 주기적으로 결정
호주	16	20	○	○	○	○	○	2.6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이스라엘	18	-		○	○			2.7	-

주: 1) 지급수준은 양부모 맞벌이 가구의 전일제 근로자 기준 평균 임금에서 가족수당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시됨.  
 2)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OECD 평균은 양부모(외벌이)는 4.2%, 양부모(맞벌이)는 5.0%임.  
 자료: 본 연구의 III장 1, 2절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음.



이 외에 양육수당 제도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헝가리 5개국만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정양육을 전제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만 2~3세까지만 지급한다. 또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가정양육수당은 대다수 국가가 지급 기간에 한정을 두어 최대 7개월~1년 이내로 짧게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등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세제지원을 통한 아동가구 지원을 거의 실시하지 않으며, 주로 보수주의 국가와 동유럽(폴란드, 헝가리) 국가에서 실시한다. 이는 세제지원 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혜택을 받는 액수가 높아지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민주의 국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지금까지 살펴본 OECD 주요국들은 가정양육수당, 세제지원 등에서 실시 여부의 차이를 보였으나, 기본적으로 아동수당(가족수당) 제도는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아동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장 제도로써 아동수당 제도가 기초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 국가가 아동수당 지급액의 조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수당을 핵심적인 현금지원 제도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 2) 4개국 사례분석

앞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4개국의 가족정책 전개 과정에서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 특성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4개국의 아동가구 대상 특징을 제시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독일은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대륙 보수주의 국가였다. 보충성의 원칙이 강조되고 보육서비스는 발달하지 않고 현금성 지원이 강조되는 가족화 경향의 가족정책적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2002년 지속가능한 가족정책과 스웨덴 모델을 차용한 가족정책 개혁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 특히 영아 보육서비스 강화 조치가 도입되고, 성평등한 돌봄과 여성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 휴직제도를 개혁하여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현금급여 제도가 약화되지는 않았다. 독일 가족정책 개혁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아동수당 지급액과 아동수당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아동수당 제도와 선택

모델로 실시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 도입이 확정되었고 2025년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는 아동수당 제도에서 아동의 최저생계와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소득보장 차원으로 진일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의 시작은 전후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있었으나 1990년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아동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급액이 상향되었고, 이후 아동수당과 아동의 최저생계비 개념이 함께 발전하면서 아동기본보장 제도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가족 관련 현금급여 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족정책 발달과정에서 1980년대부터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독일과 차이가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은 일찍이 현금급여와 보육서비스 지원이 함께 발달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 수준은 높지 않다. 이처럼 프랑스 가족정책은 그 정책 방향성이 상당히 모호한 상태에서 여러 현금급여 지원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30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수당제도의 전통이 유지된 상태에서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도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혼합된 상태도 발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가족 관련 현금급여 제도는 소득기준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각 등급별로 가구유형(한부모, 맞벌이/외벌이 등), 자녀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 현금급여 제도에서는 자녀수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장려 기제를 도입했던 초기 모델의 전통과 가구의 양육비 부담에 따른 재분배의 원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프랑스는 현금급여가 발달된 상태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로 지급되고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자체가 매우 저조한 국가이다(박은정 외, 2022). 독일이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성평등한 돌봄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비해, 프랑스는 성별화된 돌봄에 대해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벨기에는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합주의 보수주의 국가로 구분되는 국가이며, 현금급여 지출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

급여액이 크게 증가하고, 기본적으로 만 18세까지 지급되며 학업 및 직업훈련을 할 경우에 25세까지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벨기에는 0~5세 공공 지출 투자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국가이며(표 III-1-2 참조) 돌봄서비스 이용률로 높은 편이다. 프랑스처럼 다양한 현금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가족수당의 지급액의 충분성을 일정수준에서 확보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사민주의 복지체계를 대표하는 국가이며, 가족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제도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발달시켜온 국가이다. 스웨덴은 사회보험 방식의 부모보험을 도입하여 보편적인 부모급여(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은 현금급여가 발달된 국가는 아니나, 보편적인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다자녀추가수당이 지급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에는 아동수당 외에도 각종 수당이 가족에게 지급되다보니, 오히려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 외에 추가적인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가 도입되거나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동수당이 아동당 평균 소비지출액을 참고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의해 소비지출액이 증가하고, 아동수당이 대체하는 양육비용의 비율이 감소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액의 상승폭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시사점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가족정책의 맥락 및 정책조합과 주요국의 제도 특성을 종합하였을 때 현금급여의 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 중심의 현금급여 체계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아동가구에 대해 공통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핵심 제도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가정양육수당이나 세제지원 등은 정책 방향성이나 복지체제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복지와 소득보장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보편주의 내 표적화 전략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다수 국가들이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수당(데모그란트)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가구 대상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가구 내 양육비 부담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유형, 자녀수, 가구소득 등을 반영한 추가 또는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동가구 내 양육비 부담 차이를 현행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현금급여 내 표적화 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현금급여 지급 ‘아동’의 연령 확대가 요구된다. OECD 국가 대다수가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의 기본 지급연령을 16세~20세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하기 전일 경우에는 24~25세까지 연장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즉,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을 미성년 연령까지 지급하거나 ‘아동’을 경제적 의존성이 있는 대상으로 보고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며, 현금급여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다. 현금급여를 아동 빈곤 및 복지 측면이나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지원한다면 지급대상인 아동 연령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전체적인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급액 조정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OECD의 대다수 국가에서 아동수당(가족수당)의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매년 물가변동을 반영한 지급액 조정방식이다. 이외에 국가들도 국가 예산, 아동 최저 생계비, 양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아동수당(가족수당)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4개국 사례 분석에서 독일은 최저생계비, 프랑스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벨기에의 왈로니 지역도 소비자물가지수, 스웨덴은 아동당 소비지출액을 반영하여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의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 자체의 역사가 길지 않고, 이제 구축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금급여의 정치성에 좌우되지 않고 현금급여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 부담 완화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지급액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급액 조정방식 도입과 함께 지급액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국가에서 양부모 맞벌이의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의 5%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그림 III-1-5 참조).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근로자 연간 평균임금은 53,408달러이며 5%를 적용하여 월별 지급액을 산출해 보면, 222.5달러 정도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연간 평균임금은 48,922달러이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91.6%이다.<sup>110)</sup> 5%를 적용하면 월 203.8달러<sup>111)</sup>로 약 27만원이다. 그러나 한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PPP) 순위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모의 취업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 관련 현금급여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가족정책 현황에 의하면, 가족 관련 현금급여는 영유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보육서비스 대비 비중은 국가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현금지원에 비해 보육서비스 부문의 재정 투자 비중이 높은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는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모의 취업률의 차이가 미미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보육서비스 부문의 재정 투자에 주력하여 현금급여 부문에 비해 그 비중이 높다. 특히 0~2세아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서 육아휴직 이후 원활한 직장복귀가 가능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영유아기 보육서비스와 현금급여 대한 재정 투자에서 그 비중을 결정하는 데에 여성의 노동권 보장이 주된 변수임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은 보육서비스 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이고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도 높은 수준이지만 모의 취업률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예외적인 사례이다. 모의 취업률과 현금급여 간 관계성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과의 삼자관계에 대한 다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110) OECD Data Explorer. [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earnings/gross-earnings-decile-ratios\\_data-00302-en?parent=http%3A%2F%2Finstance.metastore.ingenta.com%2Fcontent%2Fcollection%2Ffiles-data-en](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earnings/gross-earnings-decile-ratios_data-00302-en?parent=http%3A%2F%2Finstance.metastore.ingenta.com%2Fcontent%2Fcollection%2Ffiles-data-en) (2024. 9. 18. 인출).

111) 203.8=271,013원(2024. 9. 19. 기준 환율)

# IV

## 현금급여 제도 개편 수요 및 의견

- 01 현금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
- 02 육아가구의 수요 및 경험 분석
- 03 소결: 주요 요인 도출



## IV. 현금급여 제도 개편 수요 및 의견

### 1. 현금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

#### 가. 응답자 특성

##### 1) 델파이 1차 조사 응답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20.9%, 여성이 79.1%이며, 연령대는 50대가 58.1%로 가장 많고, 40대가 34.9%, 30대 이하가 4.7%, 60대 이상이 2.3% 순이었다. 응답한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은 대학교가 53.5%로 가장 많았고, 연구기관이 37.2%, 기타가 9.3%였으며, 전공분야는 사회복지학·사회학이 62.8%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가족학과 경제학·행정학이 각각 18.7%였다. 해당분야 종사 경력은 10~20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다.

〈표 IV-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차 조사

단위: %,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43)	전체	100.0 (43)
성별		연령대	
남성	20.9 (9)	30대 이하	4.7 (2)
여성	79.1 (34)	40대	34.9 (15)
소속기관		50대	58.1 (25)
대학교	53.5 (23)	60대 이상	2.3 (1)
연구기관	37.2 (16)	전공분야	
기타	9.3 (4)	아동학·가족학	18.6 (8)
해당 분야 종사 경력		사회복지학·사회학	62.8 (27)
10년 미만	16.3 (7)	경제학·행정학	18.6 (8)
10년~20년 미만	44.2 (19)		
20년 이상	39.5 (17)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 2) 델파이 2차 조사 응답자

1차 조사 응답자 43명 중 40명이 2차 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1명씩 응답자가 줄어서 아동학·가족학과 경제학·행정학이 각각 17.5%, 사회복지학·사회학에서 65.0%가 응답하였다.

〈표 IV-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차 조사

단위: %,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40)	전체	100.0 (40)
성별		연령대	
남성	20.0 (8)	30대 이하	5.0 (2)
여성	80.0 (32)	40대	35.0 (14)
소속기관		50대	57.5 (23)
대학교	55.0 (22)	60대 이상	2.5 (1)
연구기관	35.0 (14)	전문분야	
기타	10.0 (4)	아동학가족학	17.5 (7)
해당 분야 종사 경력		사회복지학·사회학	65.0 (26)
10년 미만	40.0 (16)	경제학·행정학	17.5 (7)
10년~20년 미만	37.5 (15)		
20년 이상	22.5 (9)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 나. 제도 고유 목적에 관한 인식

전문가들이 각 현금급여 제도의 고유한 목적 및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6가지 항목과 개방형 기타 항목을 포함하여 질문하였다. 전문가가 인식하는 각 제도의 주된 목적은 제도별로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다.

먼저,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이 88.4%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가 62.8%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법」 제1조에 명시된 아동수당의 목적과 일치한다. 다만,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보다는 아동의 관점에서 보편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을 제도의 목적으로 인식한 전문가가 더 많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와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도 20.9%로 5명 중 1명 정도가 응답하였다.

전문가가 인식하는 부모급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을 제고’가 55.8%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아동수당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지급수준이 높고 0, 1세에 지급하는 현금급여 제도로 출산 이후 초기 양육비용 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 32.6%,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이 18.6% 순이었다. 이는 부모급여가 가정양육, 기관 및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 다르고 높은 급여수준으로 비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가정양육수당의 목적으로는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가 41.9%,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이 3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아동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선택권이나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제도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3〉 현금급여 제도의 고유 목적에 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출산을 제고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기타
아동수당	88.4 (38)	62.8 (27)	20.9 (9)	4.7 (2)	20.9 (9)	4.7 (2)	0.0 (0)
부모급여	16.3 (7)	83.7 (36)	55.8 (24)	32.6 (14)	9.3 (4)	18.6 (8)	2.3 (1)
가정양육수당	4.7 (2)	41.9 (18)	16.3 (7)	69.8 (30)	2.3 (1)	34.9 (15)	7.0 (3)

주: 복수응답 문항임.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 다. 제도별 평가

### 1) 목적별 중요도

각 목적별로 제도의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IV-1-4>와 같다.

<표 IV-1-4> 현금급여 제도의 목적별 중요도 평가

단위: 점

구분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출산율 제고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아동수당	6.33	5.12	4.35	3.26	5.33
부모급여	4.26	5.42	4.63	4.26	4.40
가정양육수당	3.51	3.95	3.42	4.53	3.58

주: 1) 응답자 수: 43명

2) 7점 척도 문항임.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가 6.33점으로 전체 응답 중 유일하게 6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에서 2명을 제외한 41명이 아동수당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응답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가 양육지원 정책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이나 지급수준이 낮은 점에서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아동 양육지원 정책은 아동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부모의 결혼이나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경제적 기본권이 제공되어야 함.

전체 아동에 대해 아동기 전체 시기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그 보편적 포괄적 성격 측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음.

아동수당 목적 자체가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아동이라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급여 수준이나, 타 제도와의 관련성은 배제하고)

5점 이상인 항목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부모급여(5.42점)와 아동수당(5.12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목적에서 아동수당도 5.33점이었다. 먼저, 부모급여는 지급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육아휴직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영아기에 소득 보장 차원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부모급여의 경우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에 비해 월 지급액이 가장 높음. 따라서 양육비 부담 완화의 측면에서 국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사료됨.

지급액의 측면에서 부모급여의 양육비 부담이 완화가 클 것으로 보임. 특히, 부모 돌봄 의존도가 높아 노동 시장 참여가 어려운 시기(1세 미만)에 지원을 하고 있어 양육비 부담 완화의 효과가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임.

0~1세 아동기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줄어든 소득에 대한 보상 차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2차적으로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감소한 소득을 보상할 수 있음.

다수의 전문가는 아동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급기간이 긴 제도라는 점에서 아동수당이 양육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편적 아동 수당 제도와 아동수당 금액의 현실화가 근본적으로 아동 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 이때 아동수당 금액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되어야만 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중 연령층이 가장 넓은(0~7세) 보편주의 제도이므로. 앞으로 16 또는 18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됨. 부모급여의 액수는 많지만 0~1세에 집중된 형태임.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현재는 만 8세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점차 아동의 연령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기 전체로 볼 때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함.

아동수당은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5.3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편적 제도로 낙인 효과가 없고 동일한 지급액이라도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상대적으로 한계효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 자체의 목적상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의 지원이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제도가 차등 지원이나 추가 지급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지급수준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른 관점에서는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가 취약계층 아동이 가정양육을 받도록 하여 오히려 질 좋은 돌봄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비해 아동수당은 두 제도에 비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경우 아동을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 있을 경우 더 많은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수록 현금이 가계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용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질 좋은 기관에서 동등한 성장과 발달을 할 기회가 없을 뿐더러 현금이 아이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경우 아동 발달을 더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기여가 보장된 측면이 있음. 덧붙여 다른 두 제도의 경우 오히려 취약계층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출산율 제고’ 목적에서는 부모급여가 4.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수당은 4.35점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도입 목적 자체가 저출산 위기 대응이라는 점과 높은 지급액으로 인해 출산 직후 초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다만, 다른 제도에 비해 출산율 제고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출산율 제고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들도 상당수 있었다.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이 4.53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의 중요도가 다른 목적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응답한 전문가 중에서 현금급여가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 2) 지원 수준 적절성

각 제도 설계 측면에서 현행 기준으로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IV-1-5>와 같다.

〈표 IV-1-5〉 현금급여 제도의 지원 수준 적절성

단위: 점

구분	지급대상 연령	지급대상 적용 범위	지급액	지급방식의 적절성
아동수당	2.58	4.58	2.93	5.79
부모급여	4.12	5.14	4.30	5.05
가정양육수당	4.09	4.93	3.63	5.49

주: 응답자 수: 43명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지원 수준의 적절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으로 2.58점에 불과하였다. 아동수당의 목적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아동기 전체를 포함하도록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수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낮게 나타난 항목은 아동수당의 ‘지급액’으로 평균 2.93점이다. 도입 이후에 지급액이 10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지급액 상향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아동특성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차등 적용하여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동수당의 목적을 생각해볼 때, 모든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10만원의 금액은 다소 낮다고 여겨짐. 또한 도입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 등 상향조정이 되지 않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지급액 상향조정 필요

물가상승에 연동 필요.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액의 적정액을 확정하기 쉽지 않으나(아동양육에 대한 비용의 사회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지급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비용지원이라는 점에서 최소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지급액이 낮고 무엇보다 일률적이어서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소득기준 혹은 출생 순위별 차등 적용해 금액 상향이 필요함.

한편, 전반적으로 적절성이 높게 나타난 측면은 ‘지급방식의 적절성’이었다. 이 중 아동수당이 5.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당은 제도의 목적, 정책 체감도, 운영 효율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금 지급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만,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지급규

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의 ‘지급방식 적절성’도 5.4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용의 용이성이나 체감도 측면이나 부모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가정양육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5점 이상을 응답한 전문가들 중에서 아동수당과는 달리 가정양육수당의 지급방식을 전적으로 찬성하기보다는 현행에 문제는 없으나 보육서비스 이용으로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가 상당수 있었다.

### 3) 중요도-적절성 분석

앞서 살펴본 각 제도의 목적별 중요도와 제도 설계 측면의 적절성을 교차 비교하고자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성과를 동시에 분석하여 강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현금급여 제도의 목적별 중요도와 현행 제도 설계의 적절성을 교차 분석하여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정책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현금급여 제도의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활용하고, 중요도가 높으나 적절성은 낮은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 방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IPA 분석 결과를 나타낸 산점도 그래프의 사분면에서 4사분면에 점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경우에 중요도는 높으나 적절성은 낮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112)</sup>

먼저,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도와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IV-1-1] 산점도를 보면, 아동수당은 4사분면에 집중분포되어 중요도는 가장 높으면서 지급대상 연령의 적절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급여는 중간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가정양육수당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지급대상 연령의 적절성은 넓게 분포되어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는 높으나 지급대상 적용 범위는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

112) 산점도에서 점이 1사분면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경우에는 중요도와 제도 설계의 적절성이 모두 높음을 의미하여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사분면은 중요도에 비해 지원 정도는 과도한 경우이며, 3사분면은 제도 설계의 적절성과 중요도가 모두 낮아 개선 우선순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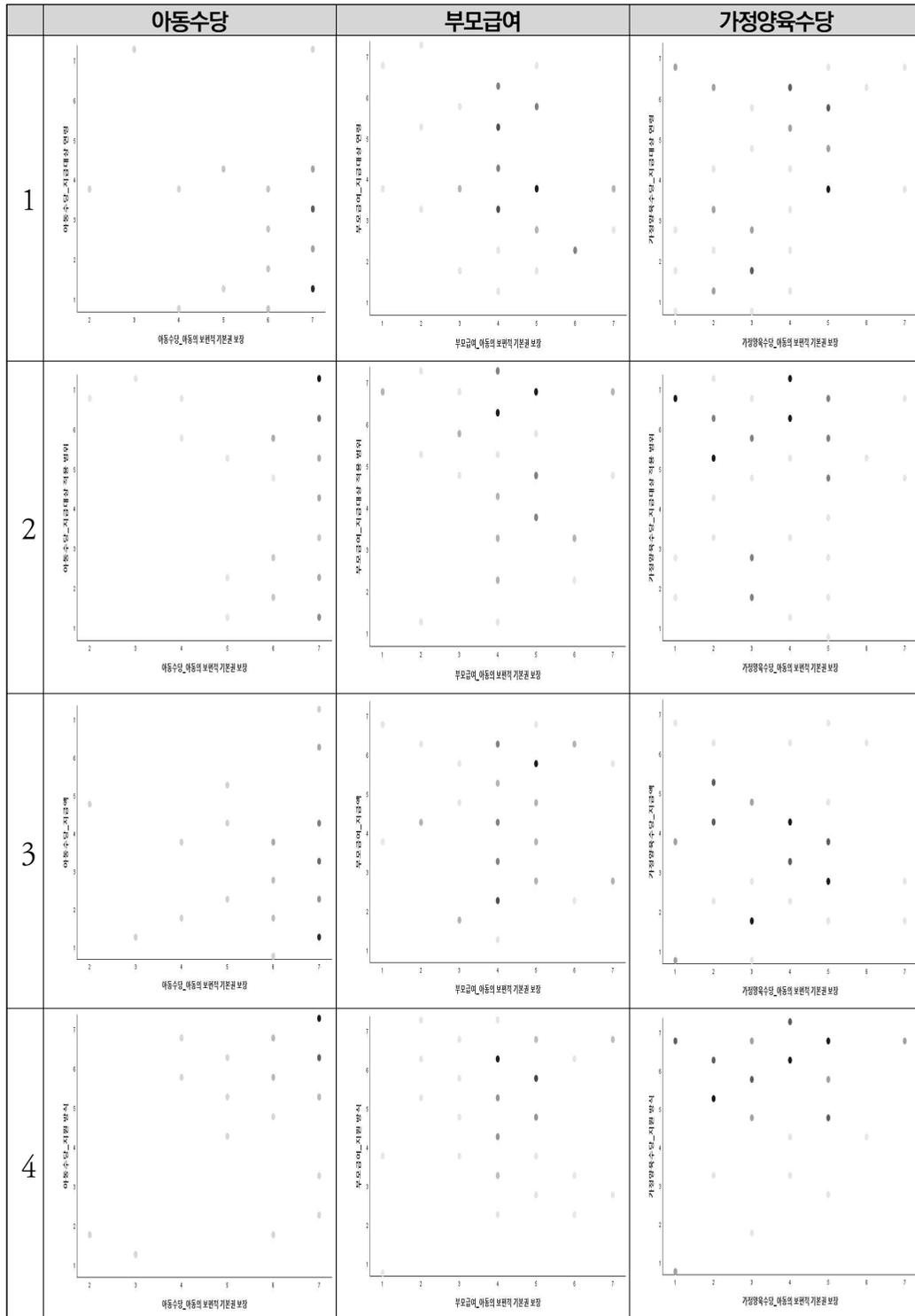
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아동수당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급여의 중요도는 4~5점으로 중간 정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은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한 사람이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은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는 지급액의 적절성에서도 4사분면에 집중 분포되어 나타났다. 즉,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도는 높으나 지급액의 적절성은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중간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지급액의 적절성이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는 중요성과 현금 지급 방식의 적절성이 모두 높은 1사분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는 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중간 상단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지급 방식에서도 지급대상 적용범위와 유사하게 2사분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문가들은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개편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을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모급여는 모든 제도설계 측면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는 중요도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지급대상 적용범위와 지급방식의 적절성에서는 오히려 과잉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제도별 중요도-적절성 분석 산점도: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주: 1) 산점도에서 점의 색상이 진할수록 응답자 수가 많음을 의미함.  
 2) 1: 지급대상 연령, 2: 지급대상 적용 범위, 3: 지급액, 4: 지급방식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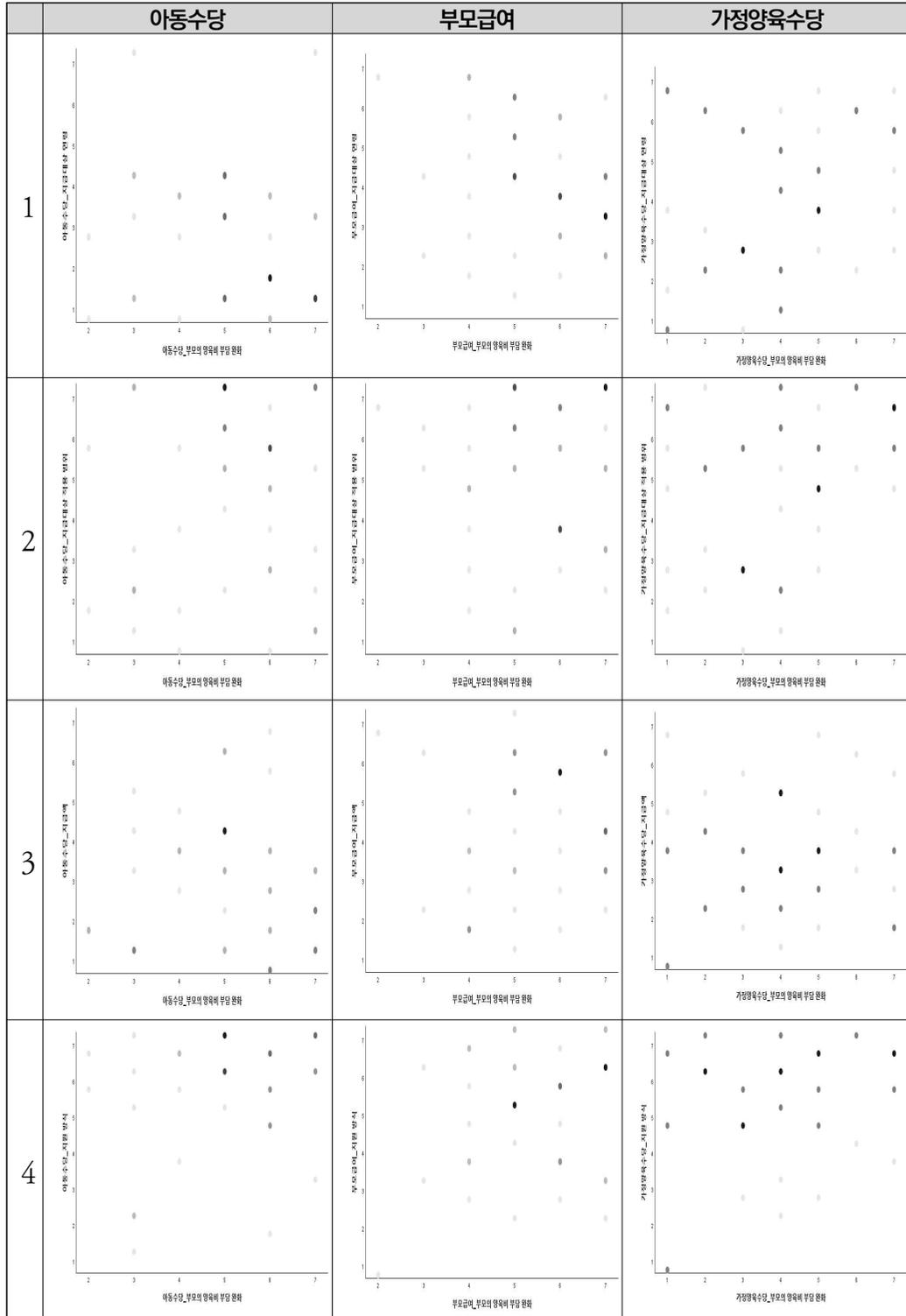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중요도와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IV-1-2] 산점도를 보면, 아동수당은 4사분면에 집중도가 높아 지급대상 연령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급여는 중요도가 높고 지급대상 연령의 적절성은 중간 부분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중요도와 지급대상 연령의 적절성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은 중요도와 함께 높게 나타나, 전문가들이 양육비부담 완화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적용 범위 개편이 크게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부모급여도 중요도가 높고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도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이 역시 특정 경향을 보이지 않고 넓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액 적절성은 4사분면에 집중 분포되어 전문가들이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지급액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급여도 대체로 중요도가 높으나 지급액의 적절성이 다소 높게 분포하고 있어 지급액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지 않았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중요도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지급액의 적절성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요도와 지급방식의 적절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 현행 유지 의견이 다수임을 알 수 있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중요도는 넓게 퍼져 분포하고 지급방식의 적절성은 높게 나타났다. 즉, 모든 제도의 지급 방식 적절성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1-2] 제도별 중요도-적절성 분석 산점도: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주: 1) 산점도에서 점의 색상이 진할수록 응답자 수가 많음을 의미함.  
 2) 1: 지급대상 연령, 2: 지급대상 적용 범위, 3: 지급액, 4: 지급방식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다음으로,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중요도와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IV-1-3] 산점도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의 중요도는 넓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며 지급대상 연령의 적절성은 낮게 나타났다. 부모급여의 중요도도 높지 않으나 아동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으며, 지급대상 연령은 중간 부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중요도가 중하단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연령의 적절성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은 높은 편이며 중요도는 넓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으며,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이 높게 분포되어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출산율 제고 중요도도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은 높은 편이다.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는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지급액의 적절성이 낮게 나타났다. 부모급여도 중요도는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지급액의 적절성도 높은 편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출산율 제고의 중요도와 지급액의 적절성이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다.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는 넓게 분포되어 있고 지급방식의 적절성은 높았다. 부모급여는 중상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지급 방식의 적절성을 높은 편이었다.

요컨대,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모두 중요도가 넓게 분포하는 편이었으며, 뚜렷하게 4사분면에 집중되어 나타난 제도는 없었다.

[그림 IV-1-3] 제도별 중요도-적절성 분석 산점도: 출산을 제고



주: 1) 산점도에서 점의 색상이 진할수록 응답자 수가 많음을 의미함.  
 2) 1: 지급대상 연령, 2: 지급대상 적용 범위, 3: 지급액, 4: 지급방식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다음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도와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IV-1-4] 산점도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의 중요도와 지급대상 연령의 적절성이 모두 낮게 나타난다. 부모급여는 중요도와 적절성이 주로 중간 부문에 분포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으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며, 지급대상 연령의 적절성의 경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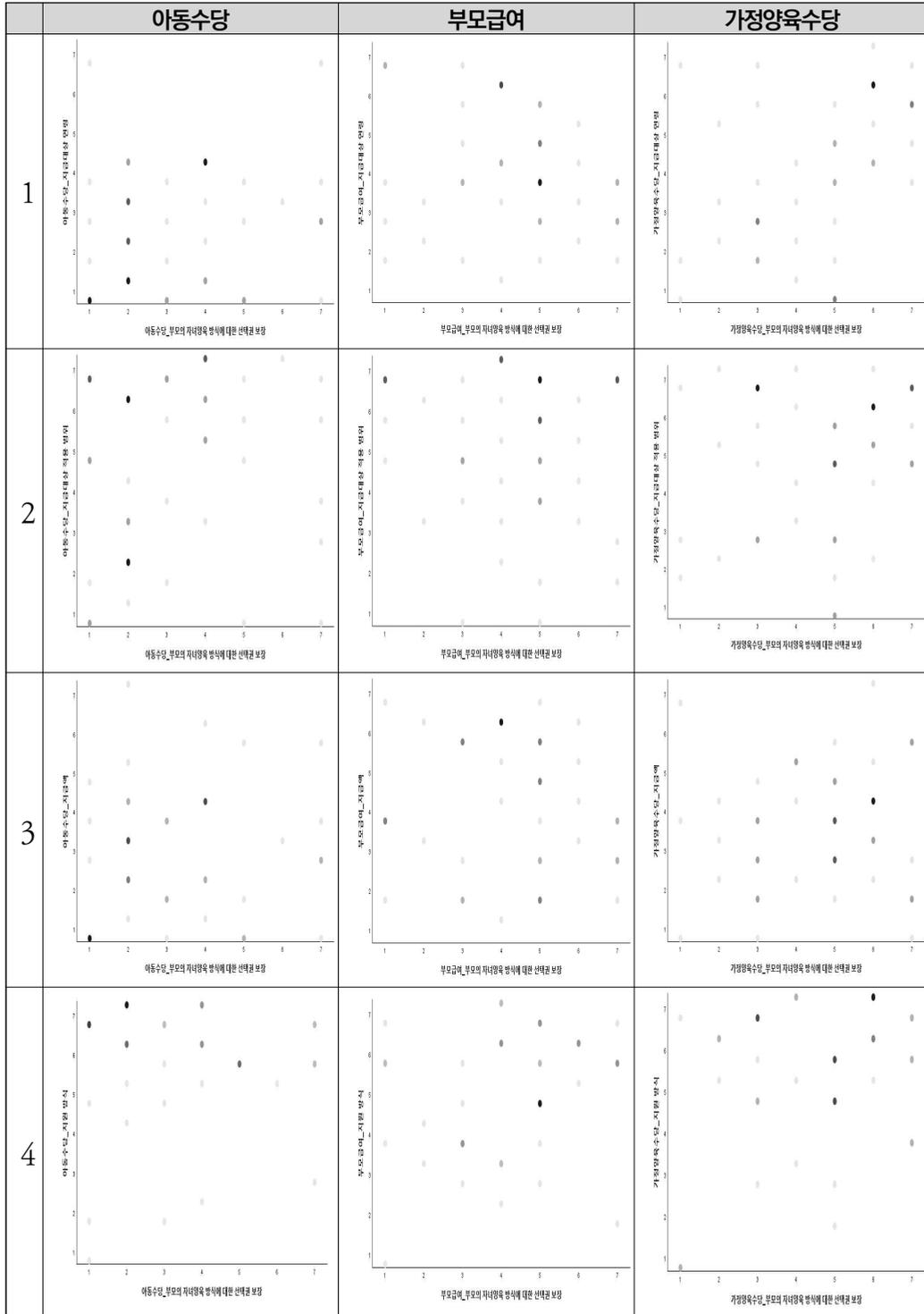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는 낮고 지급대상 적용 범위는 넓게 분포하고 있다. 부모급여는 중요도는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은 높게 분포되어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편이며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은 중간 상단에 분포되어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와 지급액이 모두 낮게 분포되어 있다. 부모급여는 대체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나 지급액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상단에 분포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지급액 적절성은 대체로 낮은 편으로 4사분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는 낮고 지급 방식의 적절성은 높게 분포되어 있다. 부모급여는 중요도는 넓게 분포되어 있고, 지급방식의 적절성은 중간 상단에 분포되어 있다. 가정양육수당의 중요성도 넓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두 제도보다 중요도가 다소 높고 지급방식의 적절성은 중간에서 상단까지 분포되어 있다.

종합하여 보면, 전문가들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중요도를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급액 적절성 부분에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결과는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축소 및 폐지 의견이 다수였던 것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1-4] 제도별 중요도-적절성 분석 산점도: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주: 1) 산점도에서 점의 색상이 진할수록 응답자 수가 많음을 의미함.  
 2) 1: 지급대상 연령, 2: 지급대상 적용 범위, 3: 지급액, 4: 지급방식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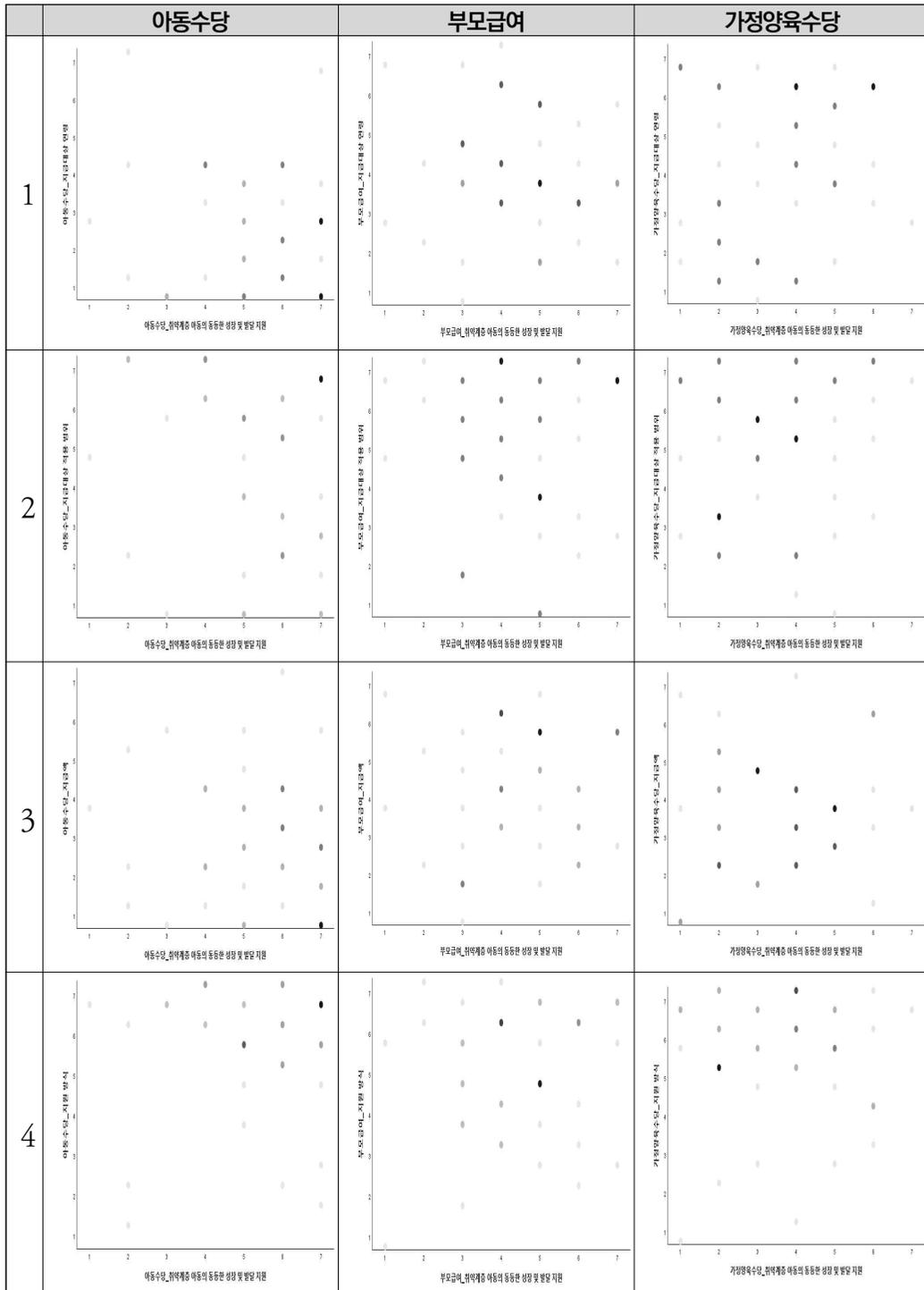
다음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측면에서 중요도와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IV-1-5] 산점도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의 중요도는 높고 지급대상 연령의 적절성은 낮게 나타나, 전문가들이 취약계층 아동 지원 측면에서도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중요도와 지급대상 연령 모두 주로 중간 부분에 분포되어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분포의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넓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는 높은 편이고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은 넓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부모급여의 중요성과 지급대상 적용 범위의 적절성 모두 중간 이상에 분포하여 1, 2사분면에 걸쳐 분포되었다. 가정양육수당은 중요도는 낮고 지급대상 적용 범위는 넓게 분포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는 높은 편이고 지급액의 적절성은 낮아 개편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급여는 중요도와 적절성이 대체로 중간 영역에 분포되어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은 중요도는 낮은 편이며 지급액의 적절성도 낮아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중요도와 지급 방식의 적절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 현재 현금 지급방식 유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부모급여는 중요도와 지급방식 모두 중간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의 중요도는 넓게 퍼져 분포되어 있으며 지급방식의 적절성은 높은 편이다.

[그림 IV-1-5] 제도별 중요도-적절성 분석 산점도: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주: 1) 산점도에서 점의 색상이 진할수록 응답자 수가 많음을 의미함.  
 2) 1: 지급대상 연령, 2: 지급대상 적용 범위, 3: 지급액, 4: 지급방식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IPA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문가들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 아동 지원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액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체로 부모급여는 중간 부분에 집중되어 분포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제외한 다른 제도 목적에서 중요도가 낮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4) 제도 개편 필요성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 정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IV-1-6>과 같다. 아동수당이 6.02점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양육수당이 5.65점, 부모급여가 5.44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현금급여 제도의 개편 필요성

단위: 점			
구분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전체	6.02	5.44	5.65

주: 응답자 수: 43명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각 개편 필요성을 5점 이상 응답한 전문가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아동수당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아동수당 지급액과 연령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현금급여 체계를 통합하여 조정하는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다수 있었다.

부모급여의 개편 필요성 정도를 높게 응답한 전문가들은 정책목적을 분명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육아 또한 다른 제도와의 통합으로 아동수당과 통합하거나 가정양육수당과 통합하는 방안들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한편 제도 설계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낮은 체감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의 개편 필요성 정도를 높게 응답한 이유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와의 통합 및 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관점에서

성별화, 계층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동수당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제기되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현금급여 제도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아동수당 제도 개편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선안을 3순위까지 질문하였다. 1순위는 ‘지급 연령 확대’가 62.8%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월 지급액 상향’이 46.5%로 가장 높았다. 1, 2, 3순위를 모두 합산한 결과에서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확대’가 88.4%였으며, ‘월 지급액 상향’이 81.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녀수별 차등 지급(34.9%),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27.9%), 자녀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23.3%) 순이었다.

〈표 IV-1-7〉 아동수당 제도 개편을 위한 우선 추진 개선안(3순위까지)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지급 연령 확대	62.8	(27)	14.0	(6)	11.6	(5)	88.4	(38)
월 지급액 상향	23.3	(10)	46.5	(20)	11.6	(5)	81.4	(35)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4.7	(2)	11.6	(5)	11.6	(5)	27.9	(12)
자녀수별 차등 지급	2.3	(1)	9.3	(4)	23.3	(10)	34.9	(15)
자녀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2.3	(1)	11.6	(5)	9.3	(4)	23.3	(10)
한부모 가구 여부별 차등 지급	0.0	(0)	2.3	(1)	14.0	(6)	16.3	(7)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적용 등)	0.0	(0)	4.7	(2)	11.6	(5)	16.3	(7)
기타	4.7	(2)	0.0	(0)	7.0	(3)	11.6	(5)

주: 응답자 수: 43명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 라. 정책 영향 요인

중장기적인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적 환경 요인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각 정책환경 부문별로 상위에 등장한 정책 환경 요인을 종합하면 다음 〈표 IV-1-8〉과 같다. 인구학적 변화 부문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 고령화, 다문화 증가, 지방 소멸 순으로 정책 환경 요인이 도출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 부문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경제 및 고용 불안정, 노동시장 변화, 가구 및 가족 구조 변화, 양육비용 증가 순으로 정책 환경

요인이 도출되었다. 유관 양육지원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변화, 제도 간 통폐합 및 조정 필요, 서비스 인프라 부족, 돌봄 지원 서비스 변화, 세제 지원 제도 개선 순으로 정책 환경 요인이 도출되었다. 국가 재정 및 재원의 변화 부문에서는 세수 감소 및 재원 부족, 비효율적 재정 관리 필요, 재원 부족, 국가 채무 증가가 정책 환경 요인으로 응답되었다. 기타는 11명이 응답하였으며, 연금개혁, 지방정부와 중앙 간 사회보장 협의, 아동권리 보장, 교육제도 및 사교육 문제, 청년층의 어려움,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현금성 지원 강화로 인한 부정적 반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다.

〈표 IV-1-8〉 중장기적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 요인

단위: (명)

정책 환경 부문	정책 환경 요인	
	요인	(수)
인구학적 변화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	(33)
	고령화	(4)
	다문화 증가	(4)
	지방 소멸	(2)
사회경제적 요인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14)
	경제 및 고용 불안정	(9)
	노동시장 변화	(6)
	가구 및 가족 구조 변화	(4)
	양육비용 증가	(4)
유관 양육지원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변화	(15)
	제도 간 통폐합 및 조정 필요	(12)
	서비스 인프라 부족	(7)
	돌봄 지원 서비스 변화	(7)
	세제 지원 제도 개선	(4)
국가재정 및 재원의 변화	세수 감소 및 재원 부족	(18)
	비효율적 재정 관리 필요	(13)
	국가 채무 증가	(2)
기타		(13)

주: 1) 복수응답임.

2) 응답자 수: 43명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다음으로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유관 제도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자녀세액공제가 58.1%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 출산지원금(55.8%), 자녀장려금(46.5%), 육아휴직급여(46.5%), 첫만남이용권(44.2%),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4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9〉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하는 유관 제도

단위: %(명)

구분	고려 필요함 응답 비율
자녀세액공제	58.1 (25)
자녀장려금	46.5 (20)
첫만남 이용권	44.2 (19)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41.9 (18)
아이돌봄서비스	23.3 (10)
일시보육(시간제 보육)	11.6 ( 5)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1.6 ( 5)
육아휴직급여	46.5 (20)
출산전후휴가 급여	23.3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5.6 (11)
지자체 출산지원금	55.8 (24)
기타	2.3 ( 1)

주: 1) 응답자 수: 43명

2) 복수응답 결과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 마. 제도별 개편 방안

### 1) 아동수당

아동수당 개편 방안으로는 지급대상 연령, 급여수준 및 조정방식, 차등 지급 필요성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지급연령의 경우 만 0~18세가 75.0%로 지배적이었고, 지급액의 조정방식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와 연동하여 상향하는 방안(42.5%)과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정액급여 일시 상향(25.0%)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1-10〉 아동수당 적정 지급연령

단위: %, (명)

구분	만 0세~만 8세 미만(현행)	만 0세~만 12세	만 0세~만 15세	만 0세~만 18세	계
전체	10.0 (4)	2.5 (1)	12.5 (5)	75.0 (30)	100.0 (40)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세부적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정액급여액을 일시로 상향하는 것을 지지한 전문가는 상향 급여액으로 20만원(n=6)과 30만원(n=4)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자녀 양육비 보정 비율을 적용하여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n=3)는 모두 100%를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아동수당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중위소득 증가율에 연동, 둘째 자녀부터 상향, 세제지원과 통합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되 소득기준과 아동 연령을 반영한 차등 지원이 제기되었다.

〈표 IV-1-11〉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 방식

단위: %, (명)

구분	전체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정액급여액 일시 상향	25.0 (10)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와 연동하여 상향	42.5 (17)
평균 자녀 양육비 보정 비율을 적용하여 상향	7.5 (3)
현재 지급액에 매년 고정 상승률을 적용하여 상향	0.0 (0)
아동 최저생계비 산출 후 연동하여 상향	10.0 (4)
이외에 다른 방안 제안	7.5 (3)
현행 지급수준 유지	7.5 (3)
계	100.0 (40)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이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액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와 연동하여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 무리하게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현재 수준의 급여액에 대한 불만을 동시에 해결하며,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정액급여액 일시 상향의 경우 아동수당을 위주로 현금급여 제도를 통합하고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으로 언급되었다.

아동 최저생계비 산출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방법은 물가인상 반영하여 자동 인상이 기본으로 함이 적절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무리한 인상요구나 현 급여수준 동결에 따른 불만 두 경우에 모두 대응하기 용이함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조정해야 현실적인 수당이 제공될 수 있음

기존 현금급여 제도들을 조정/통합하여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1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현행 10만원 2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추후에 대상 확대가 안정화되고 다른 현금급여가 아동수당으로 모두 흡수 및 통합된다면 아동수당 금액도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급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 개편 시에 차등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로 더 높게 나타났다.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17) 그 적용 방식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액의 차등 지급, 대상별 추가급여 지급, 아동수당 급여액의 차등과 대상별 추가급여 모두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사한 수준의 지지를 보였다.

〈표 IV-1-12〉 아동수당 차등 지급의 필요성 여부 및 차등 지급 방식

단위: %, (명)

구분	차등 지급 방식 적용 필요성 여부		아동수당 차등 방식			
	차등 적용 필요	모든 아동 동일 적용	아동수당 차등 지급	대상별 추가급여 방식 적용	두 방식을 혼용하여 모두 적용	기타
전체	42.5 (17)	57.5 (23)	29.4 (5)	23.5 (4)	29.4 (5)	17.6 (3)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이와 같은 아동수당 차등 지급 방식을 지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액의 차등지원은 주로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의 추가급여의 필요성을 들었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에 따라 차등 지급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보편적 수당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적합하고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순위 자녀수 등의 차등을 고려할 수 있음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소득(최저생계 보장수단)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소득으로서의 급여액은 공통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부모의 소득/자산 상황에 따라 빈곤가정 아동에게는 추가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차등화 되어야 함

아동수당의 정책적 목표 설정이 분명할 필요 있음. 아동양육비 경감이라면 연령별 차등 필요, 빈곤 감소라면 소득수준별, 저출산 대책이라면 출생순위별 차등지급에 필요할 것임

다음으로 아동수당 차등 적용의 기준으로는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이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41.2%, 1, 2순위를 합한 응답률 기준으로 64.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자녀수와 아동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1-13〉 아동수당 차등 적용 기준(2순위까지)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아동연령별 차등 적용	23.5	(4)	29.4	(5)	52.9	(9)
자녀수별 차등 적용 (출생순위별 차등 적용 포함)	29.4	(5)	41.2	(7)	70.6	(12)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41.2	(7)	23.5	(4)	64.7	(11)
기타	5.9	(1)	5.9	(1)	11.8	(2)
(수)	(17)		(17)		(34)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한편, 전문가들은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이 적합한 이유로 연령별로 욕구 수준이 달라서 이를 급여액에 반영해야한다고 진술했다. 다자녀 가구에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이유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우려되므로 소득기준을 적용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 2)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개편 방안으로는 전면 폐지가 42.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폐지하되 특별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25.0%로 나타났다.

〈표 IV-1-14〉 가정양육수당 개편안

단위: %, (명)

구분	가정양육수당 지급연령 축소	가정양육수당 전면 폐지	일반 가정양육수당 은 폐지하고, 특별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급	현행 가정양육수당 유지	현행 가정양육수당 체계를 유지하고 가정양육수당 지급액 상향	계
전체	5.0 (2)	42.5 (17)	25.0 (10)	12.5 (5)	15.0 (6)	100.0 (40)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인 가정양육수당의 폐지 방식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으로 통합이 41.2%(n=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부모급여 통합이 그 뒤를 이었다. 부모급여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로는 유사 중복급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아동수당으로 통합은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가 서비스 비용지원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 IV-1-15〉 가정양육수당 폐지 방식

단위: %, (명)

구분	부모급여로 통합	아동수당으로 통합	기타 제도로 통합	지원 중지	계
전체	29.4 (5)	41.2 (7)	23.5 (4)	5.9 (1)	100.0 (17)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아동수당 개편을 통해 아동 대상 현금급여는 아동수당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부모급여와 통합 등 유사 중복 급여들 개선 필요함. 유사 중복성이 강한 타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 보완 내지 대체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 수당은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하고, 서비스는 보육서비스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함

가정양육수당을 폐지하되, 특별 대상에 한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지원대상은 알리지 등으로 집단보육이 어려운 아동(90%),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집에서 돌보는 경우(90%), 보육 인프라의 공급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80.0%)로 인식하였다.

〈표 IV-1-16〉 가정양육수당 특별지급 대상

단위: %, (명)

구분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관 이용이 어려운 아동(알리지 등 집단 보육이 어려운 아동 등)	장애아를 돌보는 경우(보육시설 접근성이 낮은 경우 포함)	기타	계
전체	80.0 (8)	90.0 (9)	90.0 (9)	10.0 (1)	100.0 (27)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그 밖에도 가정양육수당의 개편안으로 급여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n=6) 해당 급여액으로는 20만원(50%, n=3), 25만원(n=1), 28만원(n=1), 100만원(n=1)이 제기되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급여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이유로는 주로 기관 이용 시 비용지원 수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 3)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바우처와 현금이 통합된 현행 지급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전문가의 비율이 가장 높고(37.5%), 그 다음으로는 보육료를 포함하여 전액 현금 지급(22.5%)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부모급여의 지급방식을 이와 같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표 IV-1-17〉 부모급여 지급방식 개편 방안

단위: %, (명)

구분	전액 바우처 지급	전액 현금 지급(보육료 포함)	전액 현금 지급(보육료 별도 지원)	현행 지급방식 유지(현금+보육료 바우처)	기타	계
전체	15.0 (6)	22.5 (9)	17.5 (7)	37.5 (15)	7.5 (3)	100.0 (40)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현행 지급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보육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지급방식이 적용되고 있어서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고, 전액 바우처 지급의 경우는 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며, 전액 현금으로 지

원하는 경우 서비스 실수요층이나 이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에 전액 바우처 지급의 경우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아동에게 지출되어야 하고, 전액 현금 지급으로의 개편은 가정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현재 보육서비스가 바우처로 지급됨으로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위해 0-1세 부모급여 중 보육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전액 바우처 지급할 경우 부모의 선택권 제한, 전액 현금 지급할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저소득층 등)

현행 지급방식은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시간 이외에 부모 돌봄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함.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부모, 특히 여성이 돌봄을 대부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바. 통합적 개편 방안

### 1) 통합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 방향성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보편적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 시에 일차적인 목적은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62.5%),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25.0%)로 나타났다. 이들 목적에 대해서는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한 비율에서도 72.5%와 67.5%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출산율 제고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 현금급여의 개편 시 우선시해야 하는 목적으로 지목한 비율은 1, 2순위를 합한 비율이 10%대에 그쳐 현금급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18〉 현금급여 통합 개편 시 우선 목적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62.5	(25)	10.0	( 4)	72.5	(29)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25.0	(10)	42.5	(17)	67.5	(27)
출산을 제고	2.5	( 1)	10.0	( 4)	12.5	( 5)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0.0	( 0)	15.0	( 6)	15.0	( 6)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7.5	( 3)	20.0	( 8)	27.5	(11)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2.5	( 1)	2.5	( 1)	5.0	( 2)
(수)	100.0	(40)	100.0	(40)		(40)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이들 목적을 통합적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 시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우선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은 아동수당이 계층 등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현금급여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의 경우 소득재분배를 통한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 강조되었다.

아동으로 태어나면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와 관계없이 권리 기반으로 사회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함

보편적 급여는 아동 누구나 가구의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다만 지급방식을 현금으로 제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가임. 이는 아동 누구나이지만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에 가구 계층, 아동발달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을 포함함(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 목적 포함)

보편적 현금급여는 아동이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

명목상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금급여는 급여 특성 상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됨

현 세대의 소득불평등이 미래세대의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발달 초기에 공정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보조가 필요함

다음으로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개편의 방향성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가 평균 5.85점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축소 및 개편 5.40점, 중장기적으로 부모급여를 육아휴직급여와 연계하여 지급 5.33점,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보다 대상별 아동수당 추가급여 확대 5.08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가구 대한 현금급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서비스 지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였다.

〈표 IV-1-19〉 현금급여 개편 관련 방향성 동의 정도

단위: 점

구분	아동수당 중심으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 개편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축소 및 폐지	중장기적으로 부모급여를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연계 지급	취약가구 아동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보다 대상별 아동수당 추가급여 확대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
전체	5.85	5.40	5.33	5.25	4.08

주: 1) 응답자는 40명임.

2) 7점 척도 문항임.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이들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4점 이하로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인 아동수당 중심으로 아동 대상 현금급여를 개편하는 방안을 위주로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원대상의 확대에 의한 과도한 재정투자와 지원목적과는 달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또한 현금성 급여라고 해도 그 성격이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하면 아동수당 중심의 현금급여 개편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과 오남용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급여액을 모색해야 하며, 현금급여의 목적에 대한 명료화가 요구된다.

한편 5점 이상으로 높은 지지를 보여 현금급여 개편의 방향성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우선 아동수당 중심으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

를 개편하는 산재되어 있는 현금급여의 통합하여 수요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현금급여의 제도 설계를 욕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가정양육수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개편 방안의 경우는 가정양육수당의 실수요자를 파악하여 이들을 반영하고, 부모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중장기적으로 부모급여를 육아휴직급여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려하는 등 계층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되,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추가급여 지원은 세제지원의 한계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2)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유관 제도 개편 방안

아동수당제도를 확대하는 경우 연동하여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제도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지자체 출산지원금(55.0%), 자녀장려금(47.5%), 첫만남이용권(40.0%)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즉,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0%와 20.0%로 나타났다.

〈표 IV-1-20〉 아동수당 확대 시 유관제도의 개편 필요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개편 필요성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자녀장려금	47.5 (19)	52.5 (21)	100.0 (40)
영유아보육료 지원	25.0 (10)	75.0 (30)	100.0 (4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0.0 (8)	80.0 (32)	100.0 (40)
육아휴직급여	12.5 (5)	87.5 (35)	100.0 (40)
근로시간단축제도 급여	7.5 (3)	92.5 (37)	100.0 (40)
첫만남 이용권	40.0 (16)	60.0 (24)	100.0 (40)
지자체 출산지원금	55.0 (22)	45.0 (18)	100.0 (40)
기타1(부모급여)	100.0 (2)	0.0 (0)	100.0 (2)
기타2(가정양육수당)	100.0 (2)	0.0 (0)	100.0 (2)
기타3(자녀세액공제)	100.0 (1)	0.0 (0)	100.0 (1)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이들 제도별로 개편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즉, 자녀 장려금의 경우는 아동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아동수당의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서비스 비용지원 즉,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은 아동수당 지급수준의 상향에 따라 그 지원수준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는 부모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급여액을 조정해야 하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여 이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는 보편적이고 일회성 현금지원이므로 아동수당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18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 제도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공제액의 단계적 축소(27.5%),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함께 아동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고 자녀세액 공제 제도 폐지(20.0%),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후로 공제 대상 연령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폐지(17.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1-21〉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구분	단위: %, (명)	
	전체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후로 공제 대상 연령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폐지	17.5	( 7)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공제액 단계적 축소	27.5	(11)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무관하게 자녀세액공제액 유지	15.0	( 6)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무관하게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12.5	( 5)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함께 아동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제도 폐지	20.0	( 8)
기타	7.5	( 3)
계	100	(40)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이상의 개편 방안을 지목한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되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후로 공제 대상 연령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중복 급여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고,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공제액을 단계적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는 세제지원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보다 축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함께 아동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중복 지원과 더불어 세제지원이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 제도로서 한계를 지닌다는 점

이 강조되었다. 반면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무관하게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이유로는 세제지원이 일하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아동수당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3) 현금급여의 수요자 체감도 제고를 위한 우선 과제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의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현금급여 지급방식의 일원화(47.5%), 제도의 목적 명확화 및 홍보 강화(25.0%), 지급수준 상향(20.0%)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금급여 지급방식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가 강조되었고, 지급수준 상향 조정은 과도한 양육비에 대한 효과성 제고, 제도 실시 목적의 명확화와 홍보에 대해서는 개편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표 IV-1-22〉 현금급여 수요자 체감도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사항

단위: %, (명)

구분	현금급여 지급방식의 일원화	지급수준 상향	제도 실시 목적의 명확화 및 홍보	현금급여 지급 시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활성화	기타	계
전체	47.5 (19)	20.0 (8)	25.0 (10)	5.0 (2)	2.5 (1)	100.0 (40)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같은 금액이라도 여러 경로로 받게 되는 경우 총급여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서 수요자의 체감도가 떨어져서 정책효과가 낮을 것으로 우려됨

현재 각종 수당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광역시, 기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예산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현재와 같이 적은 금액의 지원으로는 아동 양육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움

현금급여에 대한 부모들의 체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도 개선에 대한 반감이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제도 실시 목적의 명확화 및 홍보를 통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현금을 왜 주는지, 서비스를 왜 주는지 왜 통합하는지, 왜 축소하는지 확대하는지에 대해 제도의 목적을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히 바뀌어서 좋다, 좋지 않다 라는 피상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 같음

## 2. 육아가구의 수요 및 경험 분석

### 가. 개요

이 절에서는 육아가구의 수요와 현금급여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부모 집단별 FGI 분석 결과를 양육비 부담 및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양육비 수준은 국가승인통계인 재정패널 15차 조사(2022년 조사 실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 1) 양육비 산출 포함 항목

먼저, 국가승인통계인 재정패널 15차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육비 산출을 하였다. 양육비 산출에 사용된 변수는 아래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양육비 산출 포함 재정패널 조사(15차) 항목

구분		항목
공통	식비	연간 식료품/외식비 지출 총액
		식료품 구입비
		외식비
	문화생활비	서적, 음반, DVD 등 구입 및 대여료
		박물관, 공연, 영화, 스포츠 등
		체육, 음악, 문화 활동비 지출
	의류 및 잡화 구입비	연간 의류잡화 구입 지출 총액
	화장품 및 이·미용비	화장품
		이·미용비
	여행 관련 지출	연간 여행 관련 지출 총액
	연간 교육비	연간 지출 공교육비 총액
		연간 지출 사교육비
보건의료비	연간 보건의료비 지출 총액	
산후 및 육아도우미	육아도우미	
만 10세	교통비	연간 교통비 지출 총액

구분		항목
이상		공공교통비
	통신비	연간 통신비 지출 총액
	통신장비구입비	연간 통신장비 구입 지출 총액

2) FGI(집단 심층면담) 개요

심층면담 그룹은 총 8개로 나누어 각 그룹당 4~5명이 참여하였다. 한자녀 가구 영아 가정, 한자녀 가구 유아 가정, 한자녀 가구 초등생 가정, 한자녀 가구 중등생 가정, 다자녀 가구 영유아 가정, 다자녀 가구 초등생 가정, 저소득 영유아 가정, 저소득 초등생 가정이다.

먼저 한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영아 가정은 참여 부모 연령이 30~40대였으며, 아버지, 어머니 각각 2명씩 참여하였다. 대도시 2명, 중소도시, 읍면 거주자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맞벌이였다 이용기간은 어린이집과 가정보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자녀 유아 가구도 연령은 30~40대로 모두 어머니가 참여하였다. 중소도시 거주자이며, 직업은 미취업 2명, 육아휴직중인 직장인 1명, 1인 자영업자였다. 미취업 2명은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있었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다.

한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가구 부모는 30대 후반, 40대였으며, 초등학생 부모는 정규직이 1명으로 나머지는 미취업이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중등생 부모들은 40대로 중소도시 2명, 대도시 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은 1명이고 미취업이거나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졌다.

<표 IV-2-2> 심층면담 참여자 배경1(한자녀 가구)

그룹	구분	연령	성별	거주 지역	자녀	학력	고용형태	맞벌이	이용기관
한자녀 가구 0~2세 영아	면담1	38	남	중소 도시	0세 여아	대졸	자영업자	0	민간 어린이집
	면담2	31	여	대도시	1세 남아	대학 원졸	정규직(전일제, 상용직) 육아 휴직중	0	가정보육
	면담3	40	여	대도시	1세 여아	대졸	정규직(전일제, 상용직)	0	국공립 어린이집
	면담4	33	남	읍면	0세 남아	대졸	정규직(전일제, 상용직)	0	가정보육
한자녀	면담5	34	여	중소	3세 여아	대졸	미취업	X	영어



그룹	구분	연령	성별	거주 지역	자녀	학력	고용형태	맞벌이	이용기관
가구 3~5세 유아				도시					유치원
	면담6	41	여	중소 도시	5세 남아	전문 대졸	미취업	X	영어 유치원
	면담7	35	여	중소 도시	4세 남아	대졸	정규직(전일제, 상용직)_육아 휴직중	O	민간어린 이집
	면담8	43	여	중소 도시	4세 여아	대졸	1인 자영업자	O	국공립 어린이집
한자녀 가구 초등생	면담9	41	여	중소 도시	9세 남아	대졸	미취업	X	초등학교
	면담10	36	여	중소 도시	6세 여아	대졸	미취업	X	초등학교
	면담11	39	여	중소 도시	12세 남아	대졸	미취업	X	초등학교
	면담12	44	여	읍면	8세 여아	전문 대졸	정규직(전일제, 상용직)	O	초등학교
한자녀 가구 중등생	면담13	49	남	대도시	14세 남아	대졸	정규직(전일제, 상용직)	O	중학교
	면담14	47	여	중소 도시	14세 남아	대학 원졸	미취업	X	중학교
	면담15	40	여	중소 도시	13세 남아	대졸	비정규직(시간 제, 일용직)	O	중학교
	면담16	43	여	대도시	15세 여아	대졸	미취업	X	중학교

다자녀 가구는 영유아 가정, 초등생 가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영유아 가정은 부모들의 연령이 40대로 연령대가 높았으며, 이는 자녀들 중 영유아가 있는 가정으로 첫째 자녀 연령은 아동, 청소년인 경우이다. 아버지, 어머니 2명씩 구성되었으며, 읍면지역 거주자 1명, 중소도시 거주자 3명이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3명이었고,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보육, 가정보육으로 다양하였다.

다자녀 가구 초등생 가정은 부모들의 연령대가 40대 중후반이었고, 모두 어머니만 참여하였다. 대도시 거주자 4명, 읍면 거주자 1명이었으며, 고용형태는 미취업이 3명,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이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제외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보육,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 IV-2-3〉 심층면담 참여자 배경2(다자녀 가구)

그룹	연령	구분	성별	거주 지역	자녀	학력	고용형태	맞 별이	이용기관
다자녀 0~5세 영유아	40	면담17	여	읍면	2세 남아 0세여아 (23.10)	대졸	비정규직(시간 제_상용직)_ 육아휴직중	O	첫째: 어린이집 둘째: 시간제보육
	41	면담18	남	중소 도시	7세 남아 4세여아	대졸	정규직(전일제, 상용직)	O	첫째: 초등학교 둘째: 유치원
	42	면담19	여	중소 도시	10세여아 3세남아 쌍둥이	대졸	비정규직 (시간제_임시 직)	O	첫째: 초등학교 둘째:/셋째: 국공 립어린이집
	46	면담20	남	중소 도시	17세남아 15세남아 7세여아, 2세남아 쌍둥이	전문 대졸	비정규직(시간 제_일용직)	X	첫째: 고등학교 둘째: 중학교 셋째: 유치원 넷째/다섯째: 가 정보육
다자녀 초등생	42	면담21	여	대도시	10세여아 7세여아	대졸	미취업	X	2명 모두 초등학교
	43	면담22	여	대도시	13세 여아 9세남아	전문 대졸	정규직(전일제, 상용직)_육아 휴직중	X	첫째: 중학교 둘째: 초등학교
	45	면담23	여	대도시	13세 여아 10세여아 7세여아	대졸	비정규직(시간 제_임시직)	O	첫째: 중학교 둘째/셋째: 초등 학교
	40	면담24	여	읍면	12세 남아 10세여아	전문 대졸	미취업	X	2명 모두 초등학 교
	44	면담25	여	대도시	15세 남아 9세남아	대졸	미취업	X	첫째: 중학교 둘째: 초등학교

저소득 가구 영유아 가정 부모는 연령이 20~30대였다. 모두 어머니가 참여하였으며, 3가정은 한자녀, 1가정은 두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고용형태는 미취업 3명, 정규직 1명이었으며, 기관은 가정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저소득 가구 초등생 가정은 아버지 1명, 어머니 2명이 참여하였으며, 두자녀 가정들이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미취업이었으며, 중소도시 거주자였다.

〈표 IV-2-4〉 심층면담 참여자 배경3(저소득 가구)

그룹	연령	구분	성별	거주 지역	자녀	학력	고용형태	맞벌이	이용기관
저소득 0~5세 영유아	26	면담 26	여	읍면	0세 남아	고졸이하	미취업	X	가정보육
	35	면담 27	여	읍면	10세 남아 0세남아	전문대졸	미취업	X	첫째: 초등학교 둘째 민간어린이집
	35	면담 28	여	중소도시	0세 남아	대졸	미취업	X	가정보육
	33	면담 29	여	대도시	0세 남아	대졸	정규직(전일제, 상용직)	X	국공립어린이집
저소득 초등생	44	면담 30	남	중소도시	9세 여아 6세 여아	대학원졸	비정규직(시간제, 임시직)	O	2명 모두 초등학교
	42	면담 31	여	중소도시	9세 남아 7세 여아	전문대졸	미취업	X	2명 모두 초등학교
	33	면담 32	여	중소도시	14세 남아 10세 남아	전문대졸	비정규직(시간제, 임시직)	X	첫째: 중학교 둘째: 초등학교
	44	면담 33	남	읍면	10세 여아	대졸	비정규직(시간제, 임시직)	X	초등학교

## 나.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

재정패널 조사 15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0~17세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산출하였다. 양육비는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여 산출하였다. 0세 양육비는 연 1,183만원으로 1세(1,040만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 증가에 따라 대체로 자녀 양육비가 증가 추이를 보였다. 만 16~17세에는 양육비가 평균 연 1,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만 16세에는 연간 1,781만원이며, 만 17세에는 1,712만원이다. 0세의 양육비 부담률은 14.7%이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6세와 초등학교 고학년 진학하는 만 10세, 고등학생인 만 16세에 양육비 부담률의 증가폭이 컸다. 이는 학업과 관련되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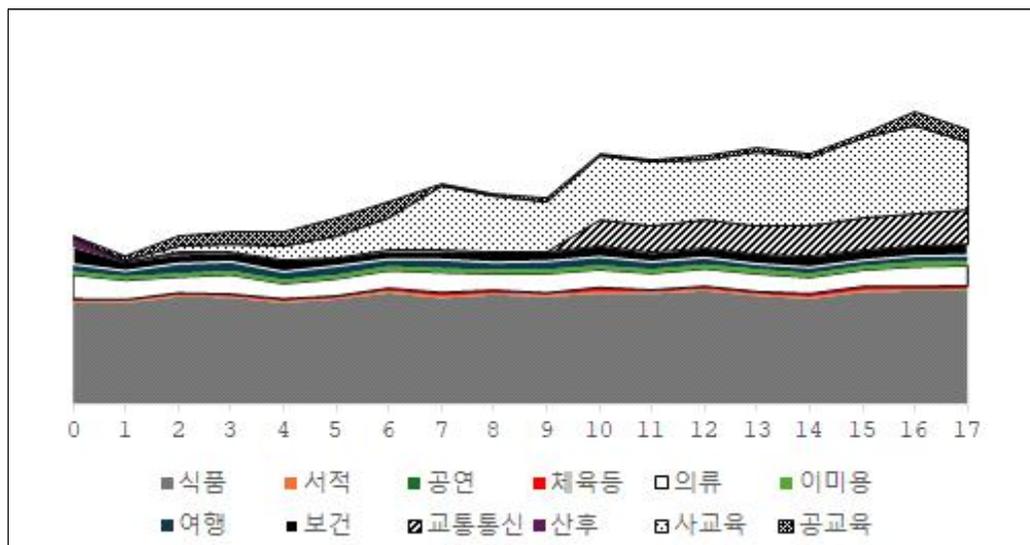
〈표 IV-2-5〉 자녀연령별 1인당 연간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단위: 만원, %

연령	양육비	양육비 부담률
0	1,183	14.7
1	1,040	13.7
2	1,196	16.3
3	1,217	14.2
4	1,209	15.7
5	1,279	14.7
6	1,393	18.1
7	1,483	18.1
8	1,441	19.7
9	1,389	17.1
10	1,608	17.4
11	1,581	22.8
12	1,574	20.4
13	1,625	21.9
14	1,563	22.2
15	1,670	19.6
16	1,781	25.6
17	1,712	23.2

자료: 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그림 IV-2-1] 자녀연령별 1인당 항목별 지출액 비교



자료: 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FGI 참여자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는 대부분 교육비 지출이 월 100만원 이상이며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진술하였다.

초등학교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 그리고 지금 영어 같은 경우가 가장 비싼데 1시간 반 이상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한 30만원 정도 이제 다 해서 그 정도 들어가고요. 30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16만원 매일 가는 거거든요. 그 영어는 월수금 가는 거고 그리고 방과 후 같은 경우는 각각 10만원 정도씩. 방과후는 방과 후만 하면 20만원이요. (면담 9)

영유아 때는 그냥 집에서 학습지 같은 거 해서 한 30만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방과 후나 돌봄은 안 하고 그 시간이 좀 비더라고요. 학교 끝나는 거랑 그래서 그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또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주기가 좀 그래서 그냥 학원으로 다 해가지고 한 70~80만 원 정도 들어요. (면담 12)

평상시에는 한 130만원 정도 들고 방학이 되면 특강을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강을 넣으면 한 60~70만원 정도가 학원비가 더 증가가 돼요. 방학 때는. 그러니까 보통 한 200에서 그 전후로 방학 때는 쓰고 방학 아닐 때는 130에서 140 여기 사이를 쓰는 것 같아요. (면담 15)

중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저희 아이는 국영수 다 대형 학원 다니고 있고 아이가 하나니까 교육비도 저는 조금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아이 한 명당 교육비가 방학이 아닐 때에는 한 140만원 정도 들고 방학일 때는 215만원 이렇게 들고 아이 용돈은 방학이 아닐 때에는 30만원, 방학일 때는 식비 포함해서 60만원 해서 아이가 방학이 아닐 때에는 2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 방학일 때는 250만원 지출을 하고 있는데 (면담 16)

재정패널 조사 0~17세 아동가구의 소득을 10분위로 구분하여 양육비와 양육비 부담률을 살펴보았다. 각 소득분위 기준은 가계동향조사<sup>113)</sup> 전체 가구 대비 모두 높게 산출되었다. 이는 아동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대비 높으며, 데이터의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추론된다. 1분위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연 2,257만원으로 2분위와도 소득수준 격차가 크며, 양육비 부담률이 52.6%로 산출되었다. 양육비는 1분위가 오히려 2분위보다 높았으며, 2분위 이후로는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양육비는 증가하나 양육비 부담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표 IV-2-6〉 소득분위별 1인당 연간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단위: 만원, %

소득분위	양육비	연평균 경상소득	양육비 부담률
1분위	1,187	2,257	52.6
2분위	1,054	4,038	26.1
3분위	1,188	4,947	24.0
4분위	1,269	5,612	22.6
5분위	1,347	6,519	20.7
6분위	1,542	7,132	21.6
7분위	1,518	8,265	18.4
8분위	1,738	9,017	19.3
9분위	1,843	10,652	17.3
10분위	2,335	18,665	12.5

자료: 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FGI 모든 집단에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특히 저소득 집단에서 양육비로 인해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저소득 집단의 경우 사교육비 자체는 비저소득 집단에 비해 높지 않으나,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저소득 집단에서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식비의 증가도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근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그 외에 아기를 위해서 해야 될 설거지나 이유식 만들기 등등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수당이 많이 깎여서 어린이집 보내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넉넉치가 않은 편이에요. (면담 29)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학원 비용...(중략)...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부담은 시간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 교육비 그래서 가장 그게 큰 차이고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면담 30)

애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먹는 거 의식이 진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면담 31)

양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원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아이들 교과 과목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한 과목당 최소 금액이 한 20~30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도 올라가요....(중략)... 일상적인 부부가 벌어오는 소득으로는 아이들 먹는 것도 배에 한 3배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비만큼 식비도 엄청 커요. 거의 식비가 더 부담이 크다고 해도 될 정도네요. 저희는 아들만 둘이라서 먹는 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비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제 수입은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기 때문에 이게 중간 겹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 32)

자녀수별 자녀 1인당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을 산출하였다.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의 전체 양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한 자녀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는 1,601만원이며 1인당 양육비 부담률은 20.8%이고, 두 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양육비가 1,485만원이고 1인당 양육비 부담률은 19.1%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는 1,404만원으로 가장 적고, 1인당 양육비 부담률은 15.1%이다. 물론 다자녀 가구 일수록 가구당 전체 양육비 부담률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아동 일수록 아동 개인에게 투입되는 양육비는 적고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수당 만족도 조사 연구에 따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아동수당에 불만족하는 이유에서 아동수당 지급액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제이 외, 2022: 56~57).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현금지원 수준 상향에 대한 보다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IV-2-7〉 자녀수별 자녀1인당 연간 양육비 및 양육비 부담률

단위: 만원, %

한자녀 가구		두자녀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양육비	양육비 부담률	양육비	양육비 부담률	양육비	양육비 부담률
1,601	20.8	1,485	19.1	1,404	15.1

자료: 15차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모든 아동가구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근로소득이 모두 자녀 교육비로 사용되는 등 교육비 부담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실 놀라운 게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한 그래도 둘 두 돌까지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중략)... 100만 원이 조금 많지 않나 왜냐하면 돌전까지 사실 100만 원까지 들 어갈 일은 사실 없거든요. (면담 22)

저는 아이 초등 돌봄인데 다른 거는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큰 돈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돌봄이는 지금 워킹맘은 이거 없으면 아예 케어가 안 되더라고요. 학원으로 100% 돌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애가 셋이 넘어가는 순간 무슨 3~400이 우스워지니까 그럼 월급으로 넘어가거든요. (면담 23)

2학년 아이랑 중학생 아이 있는데 2학년 아이는 병설 다녔었거든요. 그래 갖고 돈이 안 들 었어요. 영어학원 40만원 딱 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돌봄 이용하고 있고요. ...(중략)... 큰아

이가 중학생이긴 한데 큰아이는 지금 3학년인 아이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큰 아이랑 작은 아이의 나가는 비용을 합치면 저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 중소기업인데 3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아서 아이들 150, 120 하고 나면 세금 따고 제가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면담 23)

## 라. 현금급여 관련 수요

### 1) 양육지원 제도 관련 인식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육아교육보육 정책 성과분석에서 현금 지원 제도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금 지원 제도는 5점 만점에 모두 3점대로 돌봄서비스나 시간 지원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현금성 지원 중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이 3.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모급여가 3.68점이었다(김동훈 외, 2023: 76~77). 현금지원 제도를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지원 금액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모든 제도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제한적이어서’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김동훈 외, 2023: 81). 즉, 현금지원 제도에 불만족하는 부모들은 지급액과 지급연령 상향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8〉 현금 지원 제도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만족도		(수)
	평균	표준편차	
아동수당	3.55	1.00	(1872)
영아수당	3.55	1.01	(1509)
가정양육수당	3.53	1.00	(1166)
첫만남이용권	3.88	.99	(587)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현금지원금	3.48	1.09	(1280)
부모급여	3.68	1.04	(499)

자료: 김동훈 외(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1):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76~77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함.

FGI 참여 부모에게 양육지원 제도별 중요도 및 도움 정도를 조사하였다.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중요도가 4.56점으로 가장 중요한 양육지원으로 파악되었으며, 도움 정도도 4.09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요도가 4.31

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도움 정도는 3.47점으로 다소 낮았다. 부모들이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실제 이용에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돌봄서비스나 돌봄비용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금급여 제도 중에 아동수당의 중요도가 4.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움 정도도 3.66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부모들은 가정양육수당을 양육지원 제도 중 가장 중요도가 낮고 도움 정도도 낮은 제도로 응답하였다.

〈표 IV-2-9〉 양육지원 제도별 중요도 및 도움정도: FGI 참여자 응답

1단위: 만원, %

제도	중요도	도움 정도
1) 아동수당	4.28	3.66
2) 부모급여	4.03	3.56
3) 가정양육수당	3.31	2.81
4) 첫만남이용권	4.00	3.53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4.16	3.50
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4.31	3.47
7) 자녀세액공제	4.22	3.47
8) 자녀장려금	3.97	3.31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4.56	4.09
10) 육아휴직급여	4.22	3.59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4.13	3.69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4.00	3.13

주: 1) n=32명

2) 5점 만점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FGI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임.

FGI 참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를 질문한 결과, 초등 자녀를 둔 부모는 특히 방과후 돌봄이나 돌봄서비스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돌봄공백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다니고 있는데, 학교 지금. 방과 후 돌봄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1시 반 정도에 끝나는데 그 이후 시간을 학원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지만 이제 나라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애도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올해 2학기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돌봄인가 그게 돌봄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사교육비나 그런 것도 좀 경감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면담 18)

저는 아이 초등 돌봄인데 다른 거는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큰 돈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돌봄비는 지금 워킹맘은 이거 없으면 아예 케어가 안 되더라고요. 학원으로 100% 돌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애가 셋이 넘어가는 순간 무슨 3~400이 우스워지니까 그럼 월급으로 넘어가거든요. (면담 23)

다른 집단에 비해 0, 1세 영아를 둔 부모들은 부모급여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실제 부모급여를 수급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적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도움 정도도 높게 인식하였다.

부모 급여가 2년에서 이제 차등으로 좀 더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그래도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중략)... 와이프가 이제 육아휴직 냈고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제 그 급여를 받은 게 많은 도움이 됐고 (면담 1)

부모 급여랑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애기를 낳고 나니까 돈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든다는 걸 알았고 실제 그 직후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느꼈거든요. (면담 2)

저도 아무래도 부모 급여가 가게 사정에는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서 부모 급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면담 26)

저는 부모 급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중인데 받던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 29)

육아휴직제도나 근로시간 단축제는 실제 도움 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실제 면담에서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제도로 많이 언급되었다.

한국이랑 외국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국은 그런 육아휴직 면에서나 아니면 그런 탄력근무제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더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면담 19)

육아휴직 급여가 가장 중요한. 쉬더라도 일을 쉬더라도 좀 이제 육아할 때 육아하는 기간 동안 일을 쉬더라도 좀 다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빨리 일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면담 30)

육아휴직 그게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육아휴직을 하지만 그냥 급해요. ...(중략)... 빨리 나가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사실은 커요. 육아휴직을 써서 애들을 케어하고 키우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면담 31)

## 2) 아동수당

FGI 면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개편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하였다. 이 중 지급연령 확대가 5점 만점에 4.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지급액 상향이 4.38점이었다. 전문가 조사에서 지급연령 확대와 월 지급액 상향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문가와 부모 모두 일치하는 개선안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령별 차등지급, 자녀수별 차등 지급, 한부모 가구 여부별 차등 지급,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가 2.34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은 전체 응답에서는 3점 미만으로 낮았으나, 저소득 2개 집단의 평균은 4.6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수당 개편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저소득의 경우 저소득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큼을 알 수 있다. 앞선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는 지급 연령 확대 및 월 지급액 상향에 이어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이 높게 나타나 일반 부모와 전문가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10〉 아동수당 개편 시 우선순위: FGI 참여자 응답

단위: 만원, %

구분	지급연령 확대	월 지급액 상향	연령별 차등	소득수준 별 차등	자녀수별 차등	한부모 가구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평균	4.59	4.38	3.75	2.63	3.56	3.44	2.34

주: 1) n=32명

2) 5점 만점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FGI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임.

아직 자녀 연령이 어리고 부모급여나 영아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영아 한 자녀 부모의 경우는 지급연령 상향보다는 지급액 상향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다른 연령대 부모보다 대체로 지급액 상향폭도 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부모급여를 경험한 집단이기 때문에 지급액 수준에 대해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보통 10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돌 정도 된 아기도 일주일 안에 다 거의 소비가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일주일도 못 버티죠. ...(중략)...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현실에 좀 맞지 않는 현재 물가에 맞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원까지는 해줘야 나라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되면은 되게 부담을 느끼면서 아이를 키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면담 1)

이유식 먹는 것만 30~40만 원 든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그 그냥 먹는 거 가장 필수적인 거 먹는 거 애기 돌봐주는 것만 하더라도 양육수당이 저는 5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면담 2)

연령은 지금처럼 만 7세로 하되 금액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면담 3)

한편, 이외에 집단에서는 대부분 30~50만원 사이를 많이 언급하였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30~50만 원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이제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담 26)

금액도 10만 원으로는 턱없이 일단 물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저도 한 30만 원 이상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줘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면담 27)

30~50만 원 정도까지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있다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면담 32)

또한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연령 확대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영유아에 현금급여 지원이 집중되면서 현금급여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다. 또한 아동수당 제도명으로 인해 ‘아동’의 범주를 초등학생까지로 인식하기도 하였으나, 아동의 범위를 설명한 후에는 중·고등학생까지 지급되기를 희망하였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어릴 때는 1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도 19살, 만 18세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비용을 늘려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면담 6)

저는 18세까지 늘리는 대신에 돈은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문제집 정도만이라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면담 9)

최대한 연령을 늘릴 수 있다면 초등학교까지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면담 17)

만약에 금액을 상향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중략)... 그래서 가능하다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면담 19)

막내 연령이 초등학생인 다자녀 부모의 경우 고정적으로 꾸준히 지급되는 급여가 자녀양육에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므로 지원금액보다 지속적인 지급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아동수당의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갈수록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고 그걸 좀 고정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준다면은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고정급여가 주면 또 안정감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의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기도 하고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면담 22)

### 3)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액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수당과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영아를 둔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 부모에게서 만족도가 높았다. 어머니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직장을 다니다 휴직을 하고 아기를 출산한 케이스라서 육아휴직 급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어쨌든 제가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을 못하게 되잖아요. 아기를 키우는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힘이 드는데 이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중략)... 저는 부모 급여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중략)... 지금까지 받았던 수당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금액이 지원이 되어서 아기를 이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면담 3)

수당이 없었으면 이거 아기 낳기 전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 제도를 느끼고 이제 돌아간다면 낳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도 지역이고 이제 일을 당장 구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인 거는 이제 아기 낳자마자 이제 시작 그때는 뭔가 시련 같은 느낌

이였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없었으면은 아기를 낳고 나서 좀 많이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사람만 이제 한 사람만 이제 일을 하면 아무래도 가계에 부담이 많이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담 17)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소득이 사실 둘이 별다가 한 명 벌면 사실 많이 줄잖아요. 절반이 주는데 아이 태어나면서 또 돈 들어갈 곳은 또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진짜 부모 급여가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부모 급여가 제가 버는 것만큼 주는 건 아니고 정말 최저의 생활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주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 지원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 28)

그러나 자녀연령으로 인해 부모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들 중에 일부는 영아기 대상 지급수준이 너무 높다고 인식했고, 영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폭넓은 연령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사실 놀라운 게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한 그래도 둘 두 돌까지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중략)... 100만 원이 조금 많지 않나 왜냐하면 돌 전까지 사실 100만 원까지 들어갈 일은 사실 없거든요. (면담 22)

영유아기 때는 사실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특히 0세 1세 만 2세 그때 뭐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뒤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데 좀 나이도 확대하고 금액도 좀 많이 증폭했으면 좋겠어요. (면담 25)

또한 저소득 집단에서 부모급여에 소득수준별 차등을 강조하는 진술이 많았다.

월 금액이나 이런 거 부모 급여 따진다면은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어떠한 소득의 차이나 아니면 어떠한 부모의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가정에 상황에 맞춰서 좀 그런 지급이나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담 30)

부모 급여에 관한 거는 이제 적절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소득 수준의 그 차이에 이제 abc 그룹으로 나눠서 그렇게 그거를 분산해서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점점 빈부 격차가 중간은 없고 위아래만 있다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듯이 그런 수준에 맞춰서 급여 같은 경우도 이제 측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령도 사실은 저는 조금 확대를 좀 한 2년 1~2년 정도는 좀 늦춰졌으면 하거든요. 사실은 유치원 5세 가기 전까지는 조금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다 (면담 31)

아이 지급 연령이나 지급액 정도는 저는 지금 수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아까 전에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너무 빈부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역량도 많이 수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지급 연령이랑 지급액을 떠나서 이거는 소득 수준의 차별을 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면담 32)

#### 4) 가정양육수당

부모 중 다수는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인식하였으며, 정부가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말고 가정 양육을 권장하기 위해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액이 낮아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액이 높다면 가정양육 선택을 고민하겠다는 진술도 있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가정도 있을 거 같아요. 당연히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걸 거고 (면담 4)

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주니 이제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엄마들도 지원을 해주자 그 목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어서 (면담 27)

지급 금액이 커져야 그래서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중략)... 지급이 좀 늘어난다면 가정 보육을 하는 사람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면담 1)

금액이 조금 높다면 그 어린이집을 보내는 걸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면담 10)

대부분 가정양육수당은 영아기와 만 5세에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학 직전 연령에 다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다수였다.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가 없다 보니까 학원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사교육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면담 5)

지금 저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또 그걸 받으려고 하니깐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따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간이 또 놓치면 못 받고 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검색해보고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저도 받고 있는데 (면담 7)

저는 지금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 유치원은 학원에서 운영하는 영어 유치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관이 아니라서 가정 양육수당을 지금 다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졸업하고 올해 2월 말쯤에 동사무소 전화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때 바로 처리를 해가지고 3월부터 또 들어오게 해 주시더라고요. (면담 9)

앞서 조사에서 양육지원 제도 중 가정양육수당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것처럼 면담에서도 가정양육수당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가정양육수당

의 악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은 지급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왜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그리고 근데 또 악용 사례가 있잖아요. 보편은 뭐지 아동 학대 받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어린이집 안 보내고 엄마들이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양육수당은 다 받고 있고 챙기고 있고 또 그런 사례들도 많잖아요. ... (중략)... 양육수당을 폐지해서 안 준대라고 해서 저희가 영어 유치원으로 안 보낼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걸 폐지를 해서 저는 좀 더 나은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거기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면담 5)

약간 가정양육수당이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정 양육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어서 정부에서 이런 걸 지원을 해주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차라리 어린이집 보내는데다가 더 지원을 해주고 애를 맡기고 여자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나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조금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면담 29)

어린이집 보내는 보육료 비용이랑 가정양육수당 받는 비용이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이 가정양육수당은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상황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막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 30)

### 3. 소결: 주요 요인 도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을 종합하여 현금급여 정책 시나리오에 반영되는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3-1〉 현금급여 정책 시나리오의 주요 요인 도출 관련 분석 결과

구분	해외 제도 분석	전문가	정책 수요자
아동수당 지급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주요국 지급연령 16~20세까지 분포: 18세 미만 지급 국가 다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미만까지 지급 응답이 다수(7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우선적 개편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li> <li>연령증가에 따라 양육비용 증가</li> </ul>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국가가 지급액 조정방식 도입 실시</li> <li>OECD 국가 중 매년 물가변동 반영 국가 다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 연동 상향 방식 지지가 가장 높음</li> <li>다음으로 법률 개정</li> </ul>	-

구분	해외 제도 분석	전문가	정책 수요자
		통한 정액급여액 일시 상향	
아동수당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지급수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25~30만원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상향 급여액 20만원, 30만원 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만원~50만원 다수 응답</li> </ul>
아동수당 차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주요국 분석에서 대다수의 국가가 아동수당(가족수당) 제도에 소득수준, 출생순위, 자녀수, 연령, 한부모 여부 등을 적용하여 지급기준이나 지급액에 차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는 아동수당 차등보다 모든 아동 동일 지급이 다소 높음 → 아동수당 지급액 자체에 차등보다는 집단의 육구 차이를 반영한 부가급여 방식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와 부모 면담 결과 다소 상이: 연령별 차등, 자녀수별 차등, 한부모 가구,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순위 및 자녀수를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국가가 가장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차등 적용할 경우 자녀수별 차등 적용이 가장 높은 지지(7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수당 지급액 및 유관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국가는 절반 정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외에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아동연령별 차등 적용 순</li> </ul>	
가정양육수당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ECD 국가 분석에서 가정양육을 전제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본 만 2~3세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기간에만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양육수당 전면 폐지와 특별 대상 양육수당 지급 유지가 다수 의견을 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양육수당의 중요성과 제도 필요성을 양육지원 중에서 가장 낮게 인식</li> </ul>
부모급여 현행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지급방식을 유지하거나 보육료 포함 전액 현금 지급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 경험이 있는 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li> </ul>

먼저, 아동수당 지급연령이다. III장 OECD 주요국 분석 결과를 보면, 기본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16~2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18세 미만인 국가가 가장 많았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만 18세 미만 응답이 75%로 지배적이었으며, FGI에서도 부모는 아동수당의 연령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동수당의 기본적인 목적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양육비용 부담 완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IV장에서 양육비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해 미성년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시나리오에서는 고정 요인으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18세 미만(0~17세)으로 정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방식이다. 2018년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후 지급액 조정이 전혀 없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국가 예산, 최저생계비, 소비지출액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액을 조정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와 연동한 상향 방식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정액급여액 일시 상향이였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방식으로 물가상승률 연동 방식과 정액급여액 일시 상향을 기준으로 시나리오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방식에 정액급여액 일시 상향 기준이 포함됨에 따라 지급액 상향 수준도 고려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수준도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III장 3절에 제시한 바와 같이, OECD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현금급여 월 지급액은 25~30만원 선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급여에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함께 현금성 지원인 세제지원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적합한 일시 상향 급여액은 20만원, 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FGI에서 부모들은 30~50만원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지급연령이 낮을수록 지급액을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국제 급여 수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월 20만원이나 월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고제이 외, 2022; 이소영 외, 2023).

추가적으로 아동수당 지급연령 또는 지급액 개정과 관련하여 2024년에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8개를 살펴보았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에 대한 발의안은 8개로 이 중 5개 안은 만 18세 미만까지, 3개 안은 만 19세 미만으로 제안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을 제안한 발의안은 7개로,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안은 물가변동률과 연동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3개 안은 20만원, 2개 안은 30만원, 1개 안은 5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표 IV-3-2〉 2024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주요 내용

발의안	주요 내용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2024. 6. 5.)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2024. 6. 14.)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2024. 6. 17.)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024. 6. 18.)	가.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함 (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나.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금액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안 제4조제1항).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2024. 7. 5.)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제4조제1항 등).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2024. 8. 5.)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2024. 9. 13)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자료: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4. 9. 30. 인출).

다음으로 아동수당의 차등 지급 기준과 방식이다. OECD 주요국 분석에서 대다수의 국가가 아동수당(가족수당) 제도에 소득수준, 출생순위, 자녀수, 연령, 한부모 여부 등을 적용하여 지급기준이나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액 자체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아동수당과 부가급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아동수당 차등 보다 모든 아동 동일 적용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국 아동수당은 도입 당시 90% 소득기준이 있었으나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낮은 수준의 일괄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본 시나리오에서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아동수당 지급액 자체에 차등보다는 집단의 욕구 차이를 고려한 부가급여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차등지급 기준에서는 출생순위 및 자녀수를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액 및 유관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국가는 절반 가량이었으므로 확인되었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차등 적용할 경우 자녀수별 차등 적용이 70.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아동연령별 차등 적용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FGI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연령별 차등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수별 차등, 한부모 가구,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순으로 개편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다만, 소득수준별 차등은 저소득 집단이 가장 희망하는 부분으로 파악되어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 부가급여를 다자녀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축소이다. OECD 국가 분석에서 가정양육을 전제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본 만 2~3세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기간에만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가정양육수당 전면 폐지와 특별 대상 양육수당 지급만 유지가 다수 의견을 차지하였다. FGI에서 부모들도 가정양육수당의 중요성과 제도 필요성을 양육지원 중에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본 시나리오에서는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보편적 양육수당인 24개월~85개월 대상 양육수당은 폐지하고, 농어촌 아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유지한다.

한편, 현재 도입된 부모급여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도입 당시부터 있었다. 부모급여가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초 정액급여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으며, 영아를 둔 부모의 소득보장을 위한 영아기 집중 현금급여 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박은정 외, 2022). 게다가 부모급여는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보육 바우처와 현금이 혼합되어 지급되는 형태이다. 이에 제도 성격이 상당히 모호하고 복잡하다. 이에 부모급여의 개편은 육아휴직제도 개혁 및 유관 제도 개편이 함께 추진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한편, FGI에서는 지급수준이 높아 현재 수급받고 있는 부모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현재 지급방식을 유지하거나 보육료 포함 전액 현금 지급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시나리오에서는 부모급여 현행 지급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급여 개편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 육아정책 로드맵에 관한 논의에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 시에 유관 세제지원 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세액공제 제도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연동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고려해야하는 유관 제도로 자녀세액공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소득수준이 적용되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아동수당 부가급여 도입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자녀세액공제를 연동하였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수당 부가급여 도입 시 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합하여 설계하였다.

V

# 정책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01 종합적 정책 시나리오

02 정책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03 정책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 V. 정책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 1. 종합적 정책 시나리오

지금까지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제도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FGI 및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출한 주요 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구성하고, 현금급여 제도 개편을 위한 종합적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정책 시나리오 핵심 요인

##### 1) 주요 결정 요인 검토 범위

먼저, 정책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제도의 범주를 명확화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책 시나리오에는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 보장 제도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돌봄 비용 지원은 서비스 영역으로, 육아휴직 등 시간 지원 관련 급여 지원은 시간 지원 영역으로 구분한다. 한편, 현금성 지원으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소득 보장 성격이 강한 제도로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연동되어 있고 자녀장려금은 아동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에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포함하여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현금급여 제도 관련 결정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도 현황 분석, 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현금급여 정책 시나리오 관련 결정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주요 결정 요인으로는 정책 목적 부합성, 지급 대상 및 범위의 적합성, 지급수준의 적절성, 제도 간 조정 가능성 등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 2) 주요 환경 요인 검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인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환경 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요인의 가능성과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고 시나리오의 방향성을 구상할 수 있다. 현금급여 정책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환경 부문은 인구학적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 국가 재정, 유관 양육지원 정책 변화 등 다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각 부문에 속하는 환경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실질적으로 현금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국제 비교 및 정책 분석, 전문가 및 부모 의견 조사 등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요 환경 요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 요인이다. 출생률의 극적인 반등이 있지 않을 경우, 출생아수의 감소로 인해 정책 대상인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아동수의 감소는 아동 대상 현금급여 대상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지급수준을 유지할 경우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감소된다. 이는 일정 수준에서 현금급여 수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 인구의 감소는 우리 사회 유지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정책에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요인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아동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요인이 주요 정책 환경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되는 현상이 아동의 성장환경 및 요인에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 및 노동시장 요인이다. 이는 경제적 양극화와도 관련된다.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고 AI 등 기술발달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의 감소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될 정도로 향후 가구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현금급여의 체계 구축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금급여 제도 논의에서 항상 제기되는 것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 이상 출산율과 부적 관계가 아니며, 고소득 선진국가들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오히려 출산율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Doepke et al., 2023). 이에 현금급여 제도 개편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가정양육을 유도하는 제도적 특징이 있는 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용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육아휴직 이후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해 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이다. 즉, 현금급여 제도 개편에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휴직과 보육서비스 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제도 간 조정 요인이다. 제도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친다. 우선 한정된 국가 재정 내에서 특정 제도의 확대는 다른 정책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유관 제도나 제도 간 정합성으로 인해 개별 제도의 특성이나 효과성도 달라질 수 있다(송다영, 박은정, 2019). 현금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현금급여 체계 내에서 제도 간에 중복성이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통폐합이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 재정 관리 및 재정 확보 요인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전체 국가 세수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에 투입되는 자원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대상 정책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에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라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제도 간 조정 요인과의 연결되며,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성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또한 현금급여의 확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구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구조를 점검하여 분담 비율의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 3) 정책 시나리오 핵심 요인 구성

여기에서는 IV장에서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주요 요인을 토대로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핵심요인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정책 시나리오 구성 핵심 요인은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및 지급액 상향, 다자녀와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수당 부가급여 도입, 가정양육수당 축소이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연령 연동, 소득수준별 아동수당 부가급여 지급 시 자녀장려금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먼저, 본 시나리오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앞선 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조사, FGI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만 18세 미만까지를 고정 요인으로 적용한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른 지급액 조정, 월 20만원, 월 30만원을 적용한다. 아동수당 부가급여에는 다자녀와 소득수준 기준을 반영한다.

여기에서는 부가급여 세부 요인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다자녀 아동수당은 출생순위에 따라 둘째아, 셋째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셋째아 비중도 상당히 낮아서 이 이상 출생순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재 아동수당이 가구단위가 아니라 아동단위로 지급되므로 가구의 자녀수보다는 아동의 출생순위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녀세액공제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으로 대체됨으로 자녀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수 및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원리를 아동수당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 III장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은 2022년 기준으로 셋째아는 6유로, 넷째아부터는 25유로(37,129원)<sup>114)</sup> 추가 지급하였다. 오스트리아는 7명 이상까지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2자녀는 8.2유로(12,178원), 3자녀는 20.2~23.2유로(34,455원), 4자녀는 23.3유로~30.7유로(45,593원) 추가 지급한다. 스웨덴은 2자녀는 150크로나(19,647원), 3자녀는 730크로나(95,615원)를 추가 지급하였다. 폴란드는 셋째아부터 95즈워티(32,999원)를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 지원 성격이 강한 프랑스의 가족수당 중간 소득구간을 살펴보면, 두자녀(74.26유로)와 세자녀(169.40유로)의 지급액은 약 95유로(141,110원) 차이였다. 국가별로 지급수준이나 다자녀 지원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상당히 지급액에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 지급수준 및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을 고려하였을 때 3~4만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둘째아는 3만원, 셋째아 이상은 4만원의 다자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세제지원인 자녀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자녀장려금을 아동수당에 통합하여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아동가구에 대한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성격의 수당 제도를 도

114) 해당 문단의 환율들은 2024년 9월 19일 기준 환율로 계산됨.

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4,0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신청 비율이 모두 낮다. 또한 자녀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조세감면을 받는 비율은 18.2%에 그친다(정유석, 2020: 178). 즉, 저소득 아동가구를 지원하여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조세지원의 역진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지원 방식보다는 직접 현금 지급이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빈곤 및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율적일 수 있다(정유석, 2020: 179).

자녀장려금은 연 7,000만원 미만 소득을 가진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두 구간으로 구분한다. 첫 소득구간 구분 기준은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위소득 50%(차상위), 경상소득 2분위와 근접한 소득기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장려금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하고, 자녀장려금 제도의 구조를 최대한 살려 소득구간에 따라 추가 아동수당 I, II로 구분한다. 추가 아동수당 I은 차상위(소득 1, 2분위)까지이며, 추가 아동수당 II는 차상위 초과에서 연 7,000만원 미만(소득 3~7분위)까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요재정 추계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각 소득범위를 포함하는 소득 분위 기준을 함께 적용하였다. 지급액은 기존 자녀장려금이 아동당 연 100만원이 지급되는 구간인 추가 아동수당 I에는 월 10만원으로, 자녀장려금이 보통 50~70만원 정도 지급되는 구간인 추가 아동수당 II는 월 5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연동하여 실시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만 18세 미만까지는 아동수당으로 지급되고, 만 18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보편적 양육수당은 폐지하고, 농어촌 아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유지한다. 농어촌 아동과 장애아동도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나, 현재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부모급여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적용한다. 부모급여 개편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인 육아정책 로드맵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나. 종합적 정책 시나리오 안

상기에 제시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에 따라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다음 <표 V-1-1>과 같다. 전체 시나리오는 만 0~1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개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수당 지급액(물가상승률 반영 상향, 월 20만원, 월 30만원)이 한 축이며, 여기에 아동수당 부가급여(다자녀 아동수당, 추가 아동수당)를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부모급여 유지,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 존치,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연동되는 자녀세액공제 현행 유지(만 18~20세 지급)는 고정 요인으로 모든 시나리오안에 적용하였다.

전체 시나리오는 크게 아동수당 일괄 정액급여 시나리오 I과 아동수당에 부가급여를 추가 설계한 시나리오 II로 구분된다. 시나리오 I은 아동수당 지급액에 따라 3개 시나리오(시나리오 1, 2, 3)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II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 각각 다자녀 아동수당과 추가 아동수당을 조합하여 4개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시나리오 4, 5, 6, 7).

시나리오 1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상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안이다. 2018년 1월에서 2024년 1월 물가상승률은 1.153배로 2024년 기준 115,300원이다.<sup>115)</sup> 소요재정 추계에서는 전년도(2024년) 산출 급여액을 2025년 지급액으로 적용하였다. 다른 고정요인들은 모두 동일하다.

시나리오 2는 아동수당을 만 17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시나리오 3은 아동수당 지급액 수준이 가장 높은 안으로 만 17세까지 월 3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른 고정요인들은 시나리오 1과 모두 동일하다.

시나리오 4(1-A)는 시나리오 1안에 부가급여로 다자녀 아동수당(A)을 추가 지급하는 안이다. 즉, 아동수당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하고, 여기에 다자녀 아동수당을 아동당 추가 지급한다. 아동이 둘째아일 경우는 월 3만원, 셋째아 이상일 경우는 월 4만원의 다자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외에 다른 고정요인들은 모두 동일하다.

시나리오 5(1-B)는 시나리오 1안에 부가급여로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B)을 지급하는 안이다. 이 안은 시나리오 4안과 달리 고정요인 중에 자녀장려금

115) CPI 소비자물가지수, <https://www.kostat.go.kr/mondyValueCalc.es?mid=b70302000000> (2024. 5. 31. 인출)

제도에 변화가 있다. 즉, 추가 아동수당은 세액환급 방식의 자녀장려금이 소득수준이 낮은 아동가구에 대한 역소득세 방식의 추가 현금지원 제도로 전환되어 아동수당에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아동수당은 2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차상위에게 지급되는 추가 아동수당 I로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 초과에서 연 7,000만원 미만 소득구간에는 추가 아동수당 II가 월 5만원 지급된다.

시나리오 6(2-A)은 시나리오 2안에 부가급여로 다자녀 아동수당(A)이 지급되는 안이다. 즉, 아동수당은 만 17세까지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더하여 아동당 둘째아는 월 3만원, 셋째아부터는 월 4만원이 지급된다. 다른 고정요인들은 모두 동일하다.

시나리오 7(2-B)은 시나리오 2안에 추가 아동수당(B)이 조합된 안으로, 시나리오 5안과 같이 자녀장려금이 아동수당에 통합되었다. 시나리오 7안은 아동수당의 지급액 수준이 월 20만원으로 5안보다 높고, 여기에 동일하게 추가 아동수당 I, II가 각각 월 10만원, 월 5만원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월 30만원까지 상향하는 안은 기본적인 아동수당의 지급수준이 높은 안이다. 여기에 부가급여까지 더해지게 되면 지급수준이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가구소득에서 비과세 공적이전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 이 경우는 아동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과세할 것인지까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나리오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V-1-1〉 시나리오 I 핵심 내용

구분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현행	• 만7세 x 월 10만원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 가정양육수당: 24개월~85개월 가정양육시 월 10만원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 별도 책정	• 자녀수별 세액공제 - 1명:15만원 - 2명:35만원 - 3명:65만원 - 4명:95만원... • 만 8~20세까지	• 소득기준별 세액한금 - 2천 100만원 미만 - 2천 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만0~17세까지	
시나리오 I : 일괄 정액급여	시나리오 1	• 만17세 x 물가상승률 반영	• 유지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만 존치	• 아동수당 지급연령 연동: 만 18세~ 만 20세 유지	• 유지
	시나리오 2	• 만17세 x 월 20만원	• 유지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만 존치	• 아동수당 지급연령 연동: 만 18세~ 만 20세 유지	• 유지
	시나리오 3	• 만17세 x 월 30만원	• 유지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만 존치	• 아동수당 지급연령 연동: 만 18세~ 만 20세 유지	• 유지

- 주: 1) 물가상승률은 2018년 1월에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영: 1.153배(2018년 100,000원 → 2024년 115,300원)  
 2)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48~85개월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원, 36~85개월 월 10만원  
 3) 자녀장려금: 홑벌이 -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4천900분의 50]  
 맞벌이 -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4천500분의 50]  
 4)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적용 불가: 신청가능하나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

〈표 V-1-2〉 시나리오 II 핵심 내용

구분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시나리오 II : 부가급여 추가	시나리오 4 (시나리오 1-A) • 만17세 x 물가상승률 반영 [부가급여 A: 다자녀 아동수당] • 둘째아: 월3만원 • 셋째아 이상: 월4만원	• 유지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만 존치	• 아동수당 지급연령 연동: 만 18세~ 만 20세 유지	• 유지
	시나리오 5 (시나리오 1-B) • 만17세 x 물가상승률 반영 [부가급여 B: 추가 아동수당] • I (차상위/소득1, 2분위): 월10만원 • II (차상위 초과~연7000만원미만/소득3~7분위): 월5만원	• 유지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만 존치	• 아동수당 지급연령 연동: 만 18세~ 만 20세 유지	• 아동수당으로 통합
	시나리오 6 (시나리오 2-A) • 만 17세 x 월 20만원 [부가급여 A: 다자녀 아동수당] • 둘째아: 월3만원 • 셋째아 이상: 월4만원	• 유지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만 존치	• 아동수당 지급연령 연동: 만 18세~ 만 20세 유지	• 유지
	시나리오 7 (시나리오 2-B) • 만 17세 x 월 20만원 [부가급여 B: 추가 아동수당] • I (차상위/소득1, 2분위): 월10만원 • II (차상위 초과~연7000만원미만/소득3~7분위): 월5만원	• 유지	• 농어촌/장애아 양육수당만 존치	• 아동수당 지급연령 연동: 만 18세~ 만 20세 유지	• 아동수당으로 통합

- 주: 1) 물가상승률은 2018년 1월에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영: 1.153배(2018년 100,000원 → 2024년 115,300원)  
 2)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48~85개월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원, 36~85개월 월 10만원  
 3) 자녀장려금: 출발이 -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4천900분의 50]  
 맞벌이 -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4천500분의 50]  
 4)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적용 불가: 신청가능하나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

## 2. 정책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 가.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

개편 시나리오별 양육비 부담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5차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했다. 재정패널은 첫째, 아동 가구 표본 규모가 크고, 둘째, 아동 대상 현금 급여에 대한 정보가 다른 데이터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15차 데이터는 2024년 현재 가용한 데이터 중 가장 최신의 데이터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15차 데이터의 조사시점이 2022년으로 소득과 지출에 대한 항목은 조사시점 기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21년도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으나, 가구단위의 분석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소득은 가구 단위 경상소득<sup>116)</sup>을 활용했다. 지출은 가구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특정 아동에게 해당하는 지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구원 모두가 함께 지출하는 항목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했다. 그러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와 같이 지출 대상 아동과 해당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지출액을 산출했다.

재정패널 데이터의 소득은 2021년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어 영아수당(부모급여)에 대한 급여는 2021년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24년 현행 기준 경상소득과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경상소득과 비교하여, 시나리오별 경상소득의 변화에 따라 양육비 지출 부담완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기준 현금급여를 반영한 경상소득을 산출해야하며, 둘째, 시나리오별 현금급여를 적용한 경상소득이 따로 산출되어야 한다.

아래 표는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기준을 재정패널 데이터의 시점과 현행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2024년 경상소득 산출은 2021년 기준인 재정패널 데이터

116) 경상소득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비경상소득(당첨금이나 경조사 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 정부의 공적이전 소득을 합한 소득으로 사회보장 기여금과 세금을 지출하기 전의 소득을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된 경상소득은 재정패널에서 제공하는 총소득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했다.

상의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경상소득에서 차감하고 2024년 기준의 아동수당<sup>117)</sup>과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을 더했다<sup>118)</sup>. 시나리오에 적용되지 않은 다른 모든 현금급여는 2021년 기준을 적용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표 V-2-1〉 15차 재정패널 데이터의 현금급여

	데이터 (2021년)	현행(2024)
아동수당	만 0세~만 7세 미만: 월10만원	만 0세~만 8세 미만(95개월): 월10만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없음 : 22년 도입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가정양육수당	만 0세~12개월 미만: 월 20만 12~23(24개월 미만): 월15만 24~86개월 미만: 월10만원	24개월~ 86개월 미만:월 10만원
경상소득 <sup>a</sup>	2021년 기준 가구 총소득에서 비경상소득 제외	21년 기준 경상소득 - [21년 기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sup>119)</sup> + [24년 기준 아동수당+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주 a: 2024년도 경상소득을 산출할 때 2021년의 가정양육수당을 차감하고 2024년의 가정양육수당을 합산하게 되는데, 이때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2024년에 가정양육수당을 산출할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했음. 2021년도에 양육수당을 받은 만 2세에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2024년도에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것으로 적용.

아동의 만 연령의 기준을 어느 해로 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아동 대상 현금 급여의 기준은 아동의 연령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현금급여와 지출이 2021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만 연령<sup>120)</sup> 또한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양육비 부담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먼저 2024

- 117) 시나리오에 적용된 아동수당은 부가급여를 반영하여 산출했다.
- 118) 가정양육수당은 연령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아동의 가구에 대해서만 지급하므로 여기서는 2021년도에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한 아동이 현행 기준으로도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4년 현행기준 가정양육수당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아동대상 현금급여 이외의 현금급여는 재정패널 데이터상의 기준을 사용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19) 재정패널 데이터에서는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과 연간 총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양육수당 총액에는 가정양육수당 이외의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월평균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만 0세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만 2세에서 만 7세 미만은 월 평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초과하는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패널데이터 상 가정양육을 선택한 사례 수는 실제 선택한 사례 수보다 다소 높게 추정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21년 기준의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2021년 기준의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저자가 직접 변수를 생성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할 것으로 가정한 아동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경상소득에서 차감했다.
- 120)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때 연령은 실제로는 만 월령을 적용하였으며 그 해에 받는 총 금액은 만 연령이 시작되는 월부터 적용하여 계산했다.



년 기준의 경상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양육비 부담률을 산출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별 경상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양육비 부담률을 계산했다.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는 2024년 기준의 양육비 부담률과 시나리오별 양육비 부담률을 비교하여 산출하였으며, 아동대상 현금급여 개편방향이 급여 대상 연령 확대, 자녀수와 소득 계층을 고려하여 설계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아동 연령별, 아동수별, 소득계층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를 함께 제시했다. 먼저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나.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률 변화

시나리오 안별 아동 대상 현금급여액과 양육비 부담비율은 아래 표에 제시했다. 아동수당은 3안이 가장 관대한 안으로, 연평균 357만원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지급액이 높은 안은 7안으로 연평균 299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시된 개편 안중 1안과 4안이 아동 1인당 받는 급여액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1안과 4안은 각각 아동 1인당 연평균 137만과 155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이 관대한 순서로 가구의 경상소득이 높게 나타난다([그림 V-2-1] 참조)

개편안에 따른 양육비 부담비율 변화는 아동수당 급여액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양육비 부담률은 현행 기준으로 19.1%이지만, 3안은 가장 낮은 17.7%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급여액이 가장 높은 안이기 때문이다. 현행을 제외하면 양육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안은 18.6%로 아동수당 급여액이 가장 적은 1안이다.

〈표 V-2-2〉 아동가구의 개편안별 평균 현금급여액과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단위: 만원/년, %, %pt

시나리오 구분	현행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아동수당	40	138	240	359	156	200	257	301
	(73)	(255)	(443)	(664)	(255)	(255)	(443)	(443)
부모급여	52	52	52	52	52	52	52	52
	(95)	(95)	(95)	(95)	(95)	(95)	(95)	(95)
양육비부담률	19.1	18.6	18.2	17.7	18.6	18.4	18.1	18.0
	(38.6)	(37.7)	(36.9)	(35.9)	(37.6)	(37.2)	(36.7)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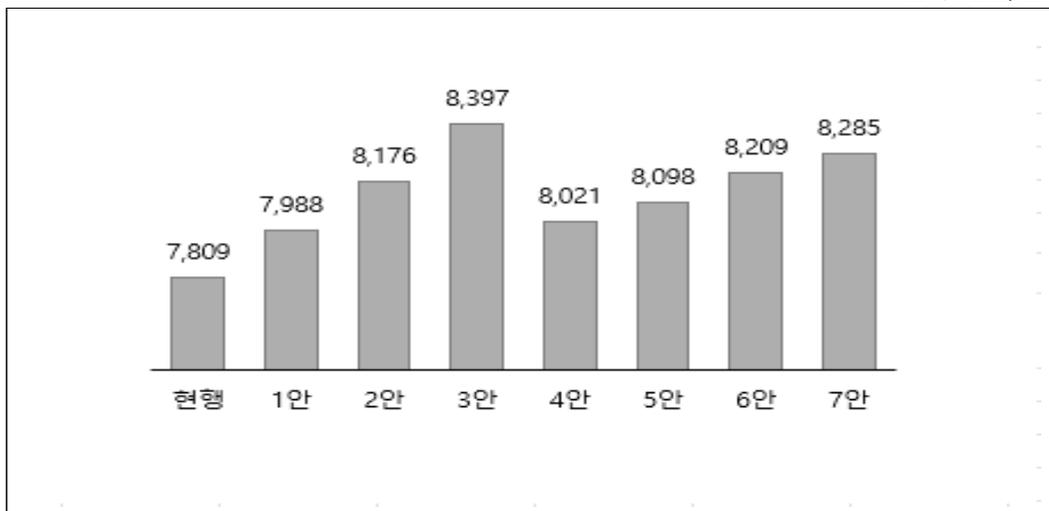
시나리오 구분	현행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원화효과	0.0	0.4	0.9	1.3	0.5	0.7	0.9	1.1
	0.0	(0.9)	(1.7)	(2.7)	(1.0)	(1.4)	(1.9)	(2.2)
가구 경상소득	7,826	7,973	8,158	8,377	8,005	8,081	8,191	8,267
양육비용	1,489							
	3016							

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안별 급여자격이 있는 개인 대상자에게 해당 급여액을 부여한 값임. 양육비용은 아동단위로 균등화한 값을 이용.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제시. 괄호 안은 가구단위로 산출한 것임.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만 0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그림 V-2-1] 개편안별 가구의 경상소득

단위: 만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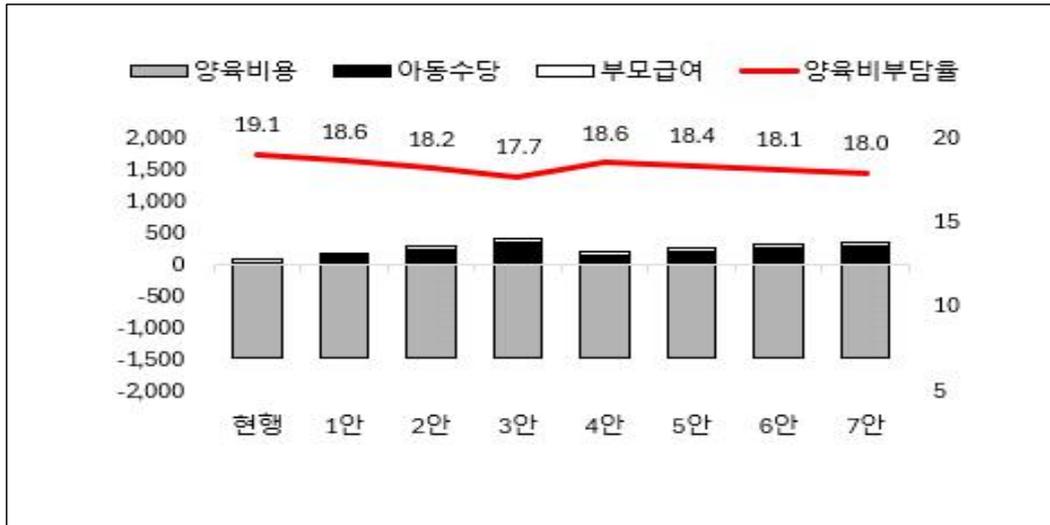
주: 경상소득 가구단위로 산출

자료: 15차 재정패널

다음 그림은 개편안별 현금급여액 규모와 양육비 부담비율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앞서 제시했듯 3안의 아동수당 급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2-2] 개편안별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단위: 만원/년, %



주: 경상소득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용은 각각 가구단위로 산출했으며, 경상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현금 급여 및 양육비용의 비율을 제시한 것임.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 다. 연령별 양육비 부담률 변화<sup>121)</sup>

아래 표는 아동 연령별 양육비와 개편안별 경상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하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상소득은 최소 6,948만원이며, 최대 9,218만원이다. 개편 시나리오 하에서 경상소득은 현행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다. 이는 모든 개편 시나리오가 현행에 비해 아동수당의 현금급여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행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양육비는 아동 1인당 연간 최소 1,040만원에서 최대 1,781만원이며, 대체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만 10세 미만의 경우 연간 1,500만원 미만이며 만 10세 이상에서 만 15세까지 연간 1,700만원 이하이지만 만 16세가 넘어서면 연간 1,7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출한다. 이는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21) 아동 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양육비 부담률은 <부표 V-3-1>~<부표 V-3-8>을 참조.

〈표 V-2-3〉 아동 연령별 개편안별 경상소득과 양육비

단위: 만원/년

시나리오 만 연령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현행	양육비
0	8,161	8,312	8,491	8,180	8,261	8,331	8,412	8,127	1,183
1	7,729	7,888	8,075	7,751	7,834	7,910	7,992	7,688	1,040
2	7,403	7,569	7,765	7,428	7,495	7,594	7,661	7,379	1,196
3	8,600	8,770	8,971	8,626	8,687	8,796	8,857	8,570	1,217
4	7,754	7,932	8,142	7,783	7,845	7,962	8,023	7,700	1,209
5	8,787	8,979	9,207	8,822	8,909	9,014	9,101	8,729	1,279
6	7,778	7,964	8,183	7,811	7,877	7,996	8,062	7,687	1,393
7	8,275	8,460	8,678	8,307	8,372	8,492	8,557	8,185	1,483
8	7,529	7,736	7,980	7,569	7,641	7,776	7,848	7,296	1,441
9	8,333	8,535	8,774	8,371	8,479	8,574	8,681	8,101	1,389
10	9,464	9,672	9,916	9,505	9,573	9,712	9,781	9,218	1,608
11	7,211	7,418	7,662	7,252	7,331	7,458	7,537	6,948	1,581
12	7,984	8,192	8,436	8,025	8,112	8,233	8,319	7,718	1,574
13	7,658	7,849	8,074	7,692	7,775	7,882	7,966	7,410	1,625
14	7,319	7,517	7,751	7,356	7,439	7,554	7,638	7,055	1,563
15	8,763	8,940	9,149	8,791	8,863	8,969	9,040	8,527	1,670
16	7,202	7,378	7,587	7,230	7,311	7,407	7,488	6,967	1,781
17	7,607	7,769	7,959	7,629	7,691	7,791	7,852	7,387	1,712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자료: 15차 재정패널

아래 표는 아동 연령별로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률을 제시했다. 현행을 기준으로 보면, 아동 연령별로 양육비 부담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령전기로 볼 수 있는 만 0세에서 만 5세 사이 아동의 경우 양육비 부담률은 13.5%에서 15.7% 범위에 있지만, 만 6세부터 만 10세까지는 17.1%에서 20%에 약간 못 미치는 19.8% 범위에 있다. 그러나 만 11세 이후부터 양육비 부담률은 20%를 넘어서며 가장 부담률이 높은 경우는 25.6%로 만 16세 아동이 이에 해당된다.

〈표 V-2-4〉 아동연령별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률

단위: %

시나리오 만 연령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현행
0	14.5	14.2	13.9	14.5	14.3	14.2	14.1	14.6
1	13.5	13.2	12.9	13.4	13.3	13.1	13.0	13.5
2	16.2	15.8	15.4	16.1	16.0	15.7	15.6	16.2
3	14.2	13.9	13.6	14.1	14.0	13.8	13.7	14.2
4	15.6	15.2	14.8	15.5	15.4	15.2	15.1	15.7
5	14.6	14.2	13.9	14.5	14.4	14.2	14.1	14.7
6	17.9	17.5	17.0	17.8	17.7	17.4	17.3	18.1
7	17.9	17.5	17.1	17.9	17.7	17.5	17.3	18.1
8	19.1	18.6	18.1	19.0	18.9	18.5	18.4	19.8
9	16.7	16.3	15.8	16.6	16.4	16.2	16.0	17.1
10	17.0	16.6	16.2	16.9	16.8	16.6	16.4	17.4
11	21.9	21.3	20.6	21.8	21.6	21.2	21.0	22.8
12	19.7	19.2	18.7	19.6	19.4	19.1	18.9	20.4
13	21.2	20.7	20.1	21.1	20.9	20.6	20.4	21.9
14	21.4	20.8	20.2	21.3	21.0	20.7	20.5	22.2
15	19.1	18.7	18.3	19.0	18.8	18.6	18.5	19.6
16	24.7	24.1	23.5	24.6	24.4	24.0	23.8	25.6
17	22.5	22.0	21.5	22.4	22.3	22.0	21.8	23.2

주: 현행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자료: 15차 재정패널

다음 표는 시나리오 안별로 아동의 연령별 양육비부담 경감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3안의 양육비 부담비율 완화 효과는 아동의 연령별로 0.6%pt에서 2.1%pt의 범위로 다른 안에 비해 가장 높다. 3안은 아동수당 급여액이 0세에서 만 17세까지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안에 비해 급여액 상승폭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림 V-2-3 참조]).

1안의 양육비 부담비율 경감효과는 다른 안에 비해 가장 낮으며, 1안이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17세까지 확장되지만, 급여액은 현행에 비해 15,300 원 정도로 적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4안의 경우에도 2세에서 6세까지는 현행에 비

해 양육비 부담비율 경감효과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 1안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급여액 변화 폭이 낮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동 대상 현금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8세 이상부터 양육비 부담 비율 완화 효과가 크게 증가한다(그림V-2-4 참조). 가장 관대한 3안의 경우에도 5세 이하까지는 양육비 부담 비율 완화효과가 1.0%pt에 못 미치지만, 만 6세 이후부터 1.1%pt로 1.0%pt를 넘어선다. 만 11세 이후에는 양육비 부담비율 완화효과가 큰 경우에는 2.1%pt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아동연령별 개편안별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단위: %, %pt

시나리오 만 연령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현행
0	0.1	0.3	0.6	0.1	0.2	0.4	0.5	14.6
1	0.1	0.3	0.6	0.1	0.3	0.4	0.5	13.5
2	0.1	0.4	0.8	0.1	0.3	0.5	0.6	16.2
3	0.0	0.3	0.6	0.1	0.2	0.4	0.5	14.2
4	0.1	0.5	0.9	0.2	0.3	0.5	0.6	15.7
5	0.1	0.4	0.8	0.2	0.3	0.5	0.6	14.7
6	0.2	0.6	1.1	0.3	0.4	0.7	0.8	18.1
7	0.2	0.6	1.0	0.3	0.4	0.7	0.8	18.1
8	0.6	1.1	1.7	0.7	0.9	1.2	1.4	19.8
9	0.5	0.9	1.3	0.6	0.8	0.9	1.1	17.1
10	0.5	0.8	1.2	0.5	0.6	0.9	1.0	17.4
11	0.8	1.4	2.1	1.0	1.2	1.6	1.8	22.8
12	0.7	1.2	1.7	0.8	1.0	1.3	1.5	20.4
13	0.7	1.2	1.8	0.8	1.0	1.3	1.5	21.9
14	0.8	1.4	2.0	0.9	1.1	1.5	1.7	22.2
15	0.5	0.9	1.3	0.6	0.7	1.0	1.1	19.6
16	0.8	1.4	2.1	0.9	1.2	1.5	1.8	25.6
17	0.7	1.1	1.7	0.7	0.9	1.2	1.4	23.2

주: 현행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안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는 현행 양육비 부담률에서 안별 양육비 부담률을 뺀 값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그림 V-2-3] 아동연령별 개편안별 현금급여액,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단위: %, %pt



주: 양육비용 중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만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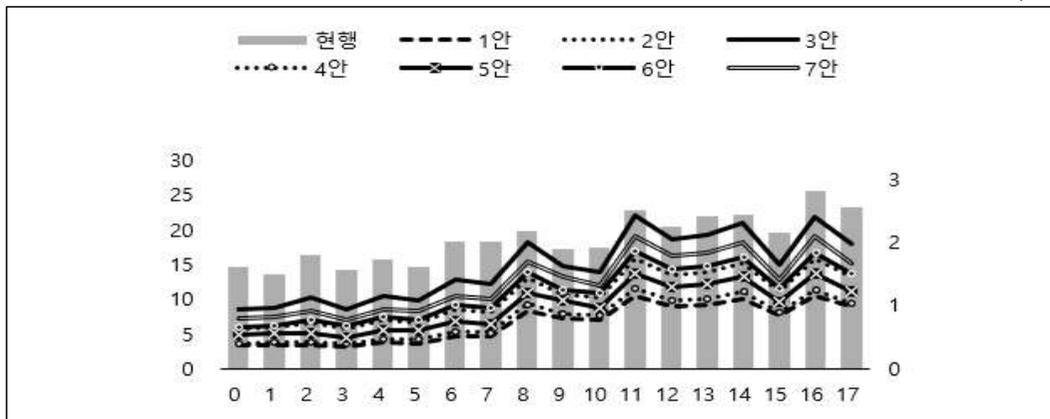
자료: 제15차 재정패널

다음 그림은 시나리오 안별로 아동의 연령별 양육비부담 경감 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현행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 부담비율이 증가하지만, 대부분의 개편안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 부담률의 경감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안이 다른 안에 비해 가장 높은 경감효과를 보이며, 다음으로 7안의 경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안이 가장 낮은 경감효과를 보이며 다음으로 4안이 낮은 경감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2-4] 아동연령별 개편안별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단위: %, %pt



주: 현행(막대)은 양육비 부담률을 의미하며, 개편 시나리오 안(선)은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를 나타냄.  
 자료: 15차 재정패널

## 라. 소득수준 양육비 부담률 변화

### 1) 소득계층별 양육비 부담률 변화<sup>122)</sup>

현행 하에서 소득계층별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경상소득은 4,661만원이며, 중위소득 50%초과에서 7,000만원 미만 소득구간에 있는 가구의 경상소득은 6,613만이며, 7,000만원 이상 가구는 11,472만원이다. 양육비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연간 1,192만원을 지출하며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연간 1,801만원 지출한다.

122) 아동가구의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양육비 부담률은 <부표 V-3-9>~<부표 V-3-16>을 참조.

저소득 계층의 경상소득이 가장 증가하는 안은 3안과 7안이며, 고소득 계층의 경상소득이 가장 증가하는 안은 3안과 6안이다. 3안에서 저소득 계층의 경상소득은 연간 5,100만원이며, 7안은 연간 5,091만원이다. 고소득 계층은 3안에서 11,873만원이며, 7안에서는 11,655만원이다. 고소득 계층에서 다자녀 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계층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5, 7안에 비해 다자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4, 6안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V-2-6〉 소득계층별 개편안별 경상소득

단위: 만원/년

시나리오 소득계층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현행	양육비
중위 50% 이하	4,661	4,862	5,100	4,700	4,889	4,901	5,091	4,464	1,192
중위50 초과~ 7000만원 미만	6,613	6,746	6,903	6,624	6,691	6,757	6,824	6,509	1,503
7000만 원 이상	11,472	11,655	11,873	11,503	11,471	11,687	11,655	11,296	1,801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자료: 15차 재정패널

아래 표는 소득계층별로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률을 제시한 것이다.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높게 나타난다. 현행 하에서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경상소득 대비 아동 한 명에 대해 약 26.7%를 지출한다. 소득계층이 가장 높은 가구는 경상소득 대비 아동 한 명에 대해 약 15.9%를 지출한다. 개편 시나리오 하에서 양육비 부담비율 변화는 저소득 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고소득 계층에서 적게 나타난다.

〈표 V-2-7〉 소득계층별 개편안별 양육비와 양육비 부담률

단위: %, 만원/년

시나리오 소득계층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현행	양육비
중위 50% 이하	25.6	24.5	23.4	25.4	24.4	24.3	23.4	26.7	1,192
중위50초과~7000만 원 미만	22.7	22.3	21.8	22.7	22.5	22.2	22.0	23.1	1,503
7000만원 이상	15.7	15.5	15.2	15.7	15.7	15.4	15.5	15.9	1,801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현행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안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는 현행 양육비 부담률에서 안별 양육비 부담률을 뺀 값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소득계층별 양육비 부담비율 완화 효과는 〈표 V-2-8〉에 제시했다. 모든 개편 시나리오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양육비 부담비율 경감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고소득 계층의 양육비 부담 경감효과는 낮게 나타난다. 양육비 부담비율 완화효과는 안별로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은 현행에 비해 1.0%pt에서 3.1%pt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계층은 현행에 비해 0.2%pt에서 1.2%pt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안 중에서 양육비 부담비율 완화효과가 가장 높은 3안은 소득계층별로 0.7%pt에서 3.1%pt까지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1안은 소득계층별로 0.2%pt에서 1.0%pt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계층의 양육비 부담비율 완화효과가 가장 높은 안은 3안과 7안이지만, 고소득계층의 양육비 부담비율 완화효과가 가장 큰 안 또한 3안(0.7%pt)이다. 그러나 7안은(0.4%pt) 3안에 비해 고소득층의 양육비 부담비율 완화효과가 다소 낮다. 3안과 7안 다음으로 저소득계층의 양육비 부담비율 완화효과가 높은 안은 6안과 5안으로 각각 2.2%pt 와 2.1%pt이다. 그러나 이 두 안 중 5안은 고소득층의 양육비 부담비율도 가장 낮은 0.2%pt다.

〈표 V-2-8〉 소득계층별 개편안별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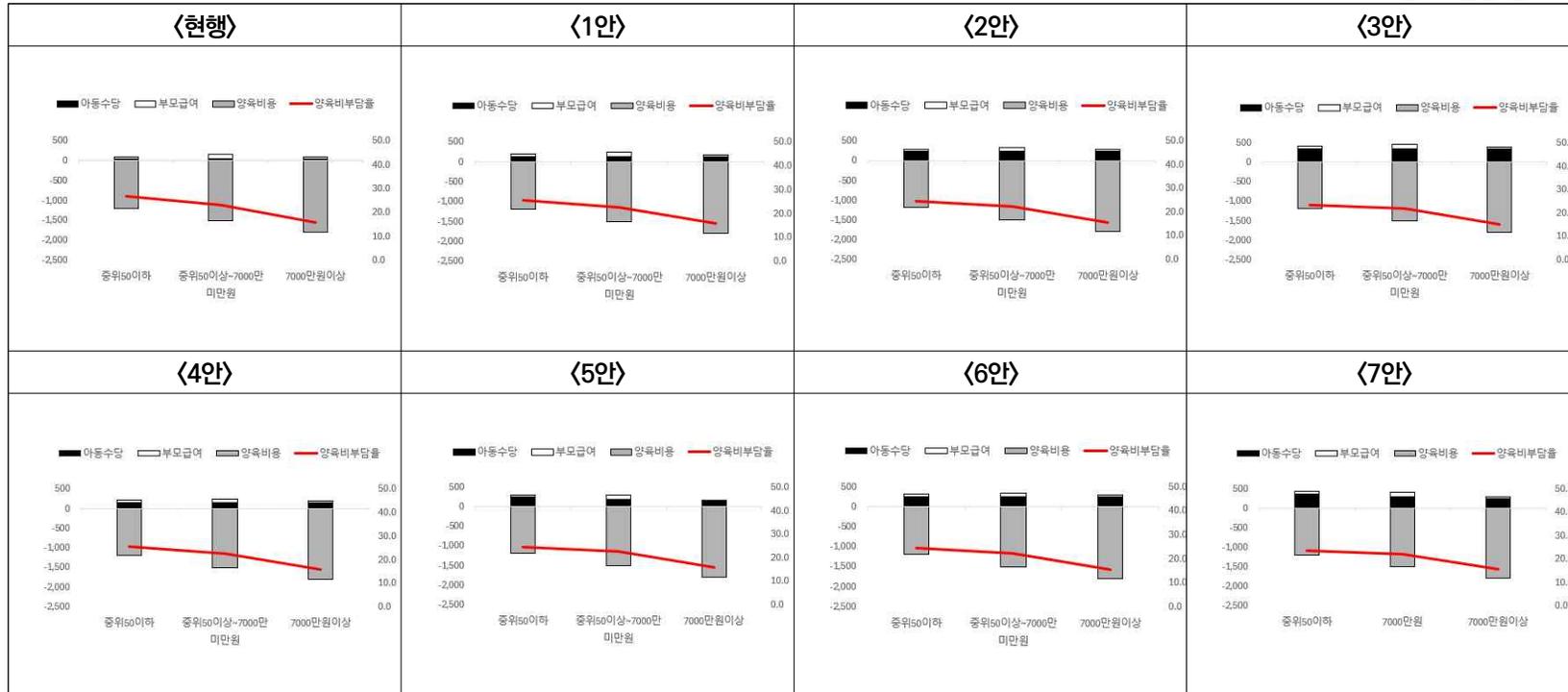
단위: %, %pt

시나리오 소득계층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현행
중위 50% 이하	1.0	2.0	3.1	1.2	2.1	2.2	3.1	26.5
중위50초과~7000만원 미만	0.2	0.7	1.2	0.3	0.5	0.7	0.9	22.9
7000만원 이상	0.2	0.4	0.7	0.2	0.2	0.5	0.4	15.9

주: 현행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안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는 현행 양육비 부담률에서 안별 양육비 부담률을 뺀 값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그림 V-2-5] 소득계층별 개편안별 현금급여액,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단위: 만원/년, %



주: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만 0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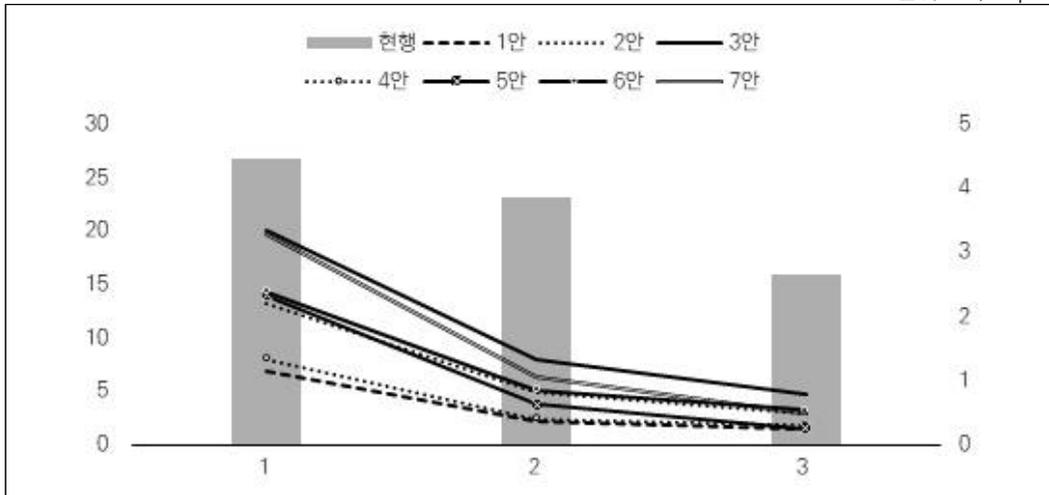
자료: 제15차 재정패널



다음 그림은 시나리오 안별로 소득계층별 양육비 부담비율 경감 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현행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양육비 부담비율이 증가하지만, 모든 안에서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양육비 부담비율 경감효과는 낮아짐을 보여준다.

[그림 V-2-6] 소득계층별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단위: %, %pt



주: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가구의 경상소득으로 1은 중위 50% 이하, 2는 중위 50% 이상~7000만원 미만, 3은 7000만원 이상임. 현행은 양육비 부담률을 제시했으나 개편 시나리오 안은 양육비부담률 완화효과를 나타냄  
 자료: 15차 재정패널

### 마.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률 변화<sup>123)</sup>

다음 표는 자녀 수별로 개편안별 경상소득과 양육비를 제시했다. 현행 하에서 경상소득은 세 자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8,894만원이며, 다음으로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순이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지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한 자녀당 지출하는 비용은 감소한다([그림 V-2-9]와 [그림 V-2-7] 참조). 한 자녀 가구의 자녀 한명당 양육비는 1,623만원이지만 세 자녀 이상인 경우 1,406만원이다. 이는 식품과 외식 비 등과 같이 가족 구성원이 함께 지출하는 비용이 자녀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더라도(자녀수별 가구의 양육비 부담비율은 괄호 안에 표기), 균등화한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sup>124)</sup>

개편 안 중에서 한 자녀 가구의 경상소득이 가장 높은 안은 3안이며, 다음으로

123) 아동가구의 자녀수 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양육비 부담률은 <부표 V-3-17> ~<부표 V-3-24>를 참조.  
 124) 이는 동일한 비용일지라도 한 명일 때보다 여러 명일 때 그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7안이다. 세 자녀 이상의 경상소득은 3안과 7안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3안에서 한 자녀 가구의 경상소득은 연간 7,957만원이며 세 자녀 가구는 9,896만원이다. 7안에서 한 자녀 가구의 경상소득은 7,890만원이며 세 자녀 가구는 9,746만원이다.

〈표 V-2-9〉 자녀수별 개편안별 경상소득

단위: 만원/년

시나리오 자녀수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현행	양육비
한자녀	7,735	7,837	7,957	7,735	7,788	7,837	7,890	7,649	1,623
두자녀	7,745	7,948	8,189	7,781	7,856	7,985	8,059	7,552	1,487
세자녀 이상	9,218	9,529	9,896	9,306	9,435	9,617	9,746	8,894	1,406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자료: 15차 재정패널

다음 〈표 V-2-10〉은 자녀수별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률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표 V-2-11〉, [그림 V-2-9] 참조) 양육비 지출을 균등화할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게([그림 V-2-8] 참조) 나타난다. 이는 앞서 논의했듯, 동일 비용의 금액이라도 공동으로 지출해서 쓰는 경우 한 사람당 사용되는 지출은 낮아지지만 효용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행 하에서 한 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비율은 21.2%이지만 세 자녀 가구의 1인당 양육비 부담비율은 15.8%다. 세 자녀 가구의 1인당 양육비 부담비율이 낮은 이유는 지출의 균등화 이외에도 가구의 경상소득이 세 자녀 가구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다(〈표 V-2-9〉 참조).

〈표 V-2-10〉 자녀수별 개편안별 1인당 양육비와 양육비 부담률

단위: %, 만원/년

시나리오 자녀수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현행	양육비
한자녀	21.0	20.7	20.4	21.0	20.8	20.7	20.6	21.2	1,623
두자녀	19.2	18.7	18.2	19.1	18.9	18.6	18.4	19.7	1,487
세자녀 이상	15.2	14.7	14.2	15.1	14.9	14.6	14.4	15.8	1,406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자료: 15차 재정패널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비율 경감 효과는 다음 <표 V-2-11>에 제시했다. 개편 안별로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비율 완화효과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현행에 비해 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당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는 0.2%pt에서 0.6%pt이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당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는 0.5%pt에서 1.3%pt이다.

전체 안 중에서는 3안의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가 0.7%pt에서 1.5%pt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1안이 가장 낮은 0.2%pt에서 0.5%pt다. 한 자녀의 양육비 부담률을 가장 크게 완화하는 안은 3안으로 0.7%pt 낮추며 가장 적게 낮추는 안은 1안과 4안으로 모두 0.2%pt다. 세 자녀의 양육비 부담률을 가장 크게 완화하는 안은 3안(1.5%pt), 7안(1.3%pt) 순이며 가장 적게 낮추는 안은 1안(0.5%pt)이다.

<표 V-2-11> 자녀수별 개편안별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

단위: %, %pt

시나리오 자녀수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현행
한자녀	0.2	0.4	0.7	0.2	0.3	0.4	0.6	21.0
	(0.3)	(0.7)	(1.2)	(0.3)	(0.5)	(0.7)	(0.9)	(33.6)
두자녀	0.4	0.9	1.4	0.5	0.7	1.0	1.1	19.5
	(0.8)	(1.8)	(3.0)	(1.0)	(1.4)	(2.0)	(2.4)	(40.7)
세자녀 이상	0.5	1.0	1.5	0.6	0.9	1.1	1.3	15.7
	(1.3)	(2.6)	(4.0)	(1.7)	(2.2)	(2.9)	(3.4)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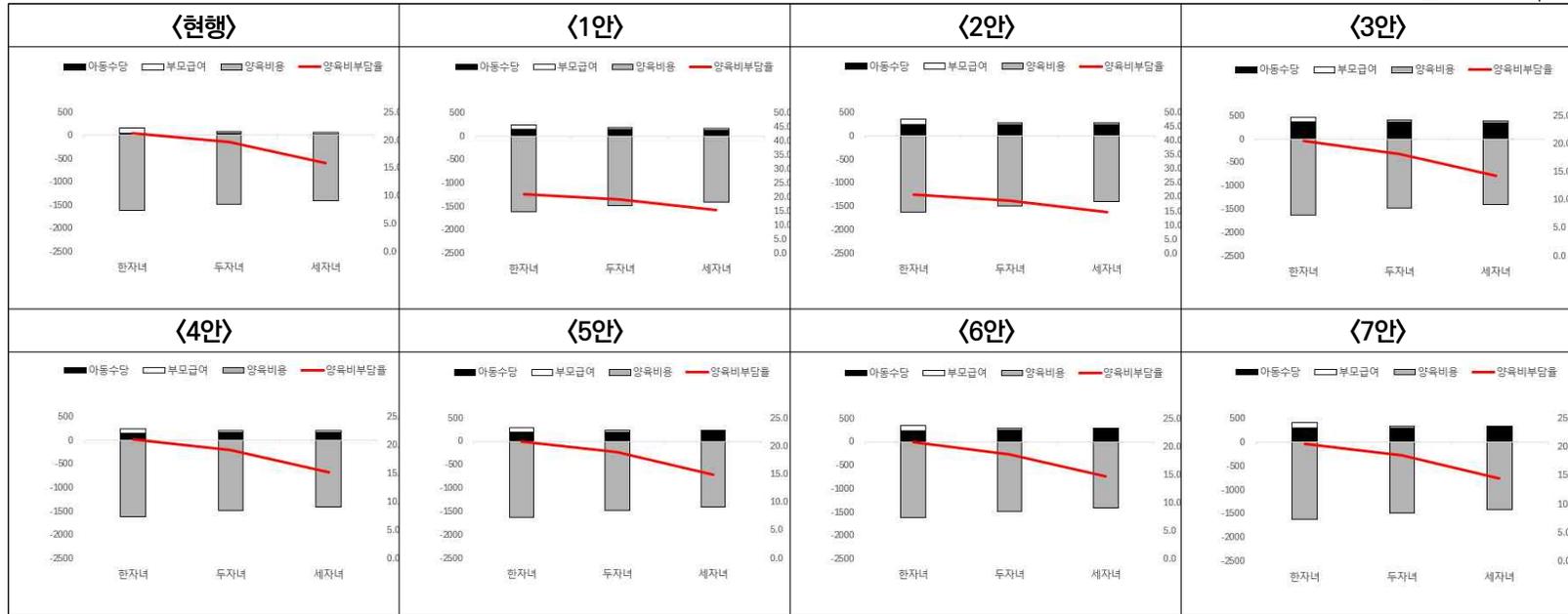
주: 안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는 현행 양육비 부담률에서 안별 양육비 부담률을 뺀 값임. 소득분위는 균등화하였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산출했음<sup>125)</sup>. 괄호 안의 숫자는 가구단위 경상소득 대비 가구단위 양육비 지출의 비율을 백분율로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125) 아동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저소득층에 노인 1-2인 가구가 상당비율로 포함되어 특정분위에 아동이 없는 가구가 포함되기 때문임

[그림 V-2-7] 자녀수별 개편안별 현금급여액, 현행대비 양육비 부담률

단위: %, %pt



주: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8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만 0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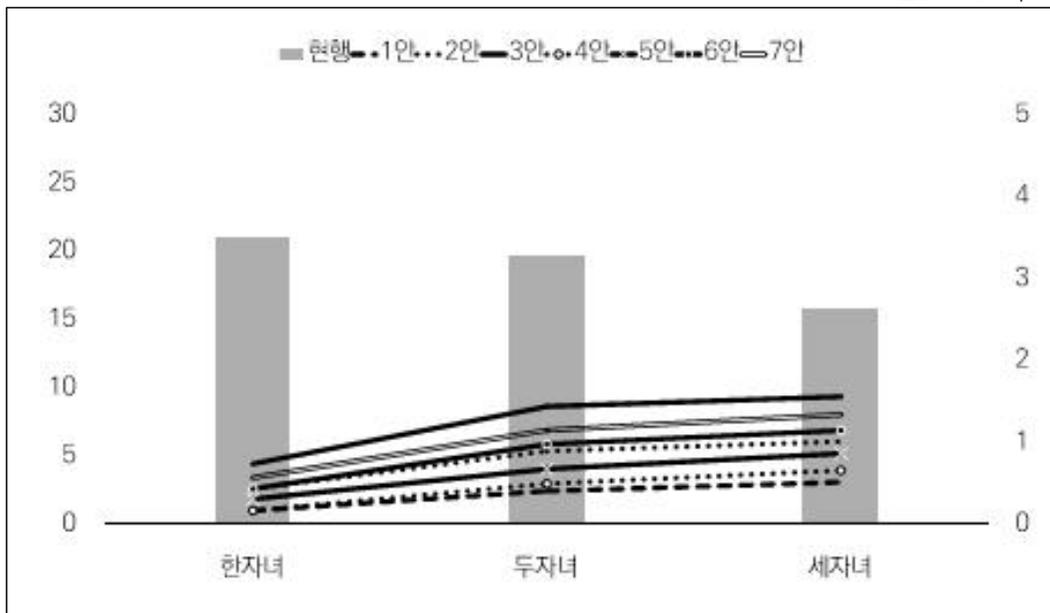
자료: 제15차 재정패널



아래 그림은 시나리오 안별로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비율 경감 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했다. 현행 하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수로 균등화한 양육비 부담비율이 감소하지만, 모든 안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비율 경감효과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수별로 가장 높은 경감효과를 보이는 안은 3안이며, 그 다음으로 7안이며, 1안이 가장 낮은 경감효과를 보이며 다음으로 4안이 낮은 경감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4, 6안이 다자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임에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하는 5, 7안이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림 V-2-8] 자녀수별 개편안별 양육비 부담을 완화효과: 균등화 개인

단위: %,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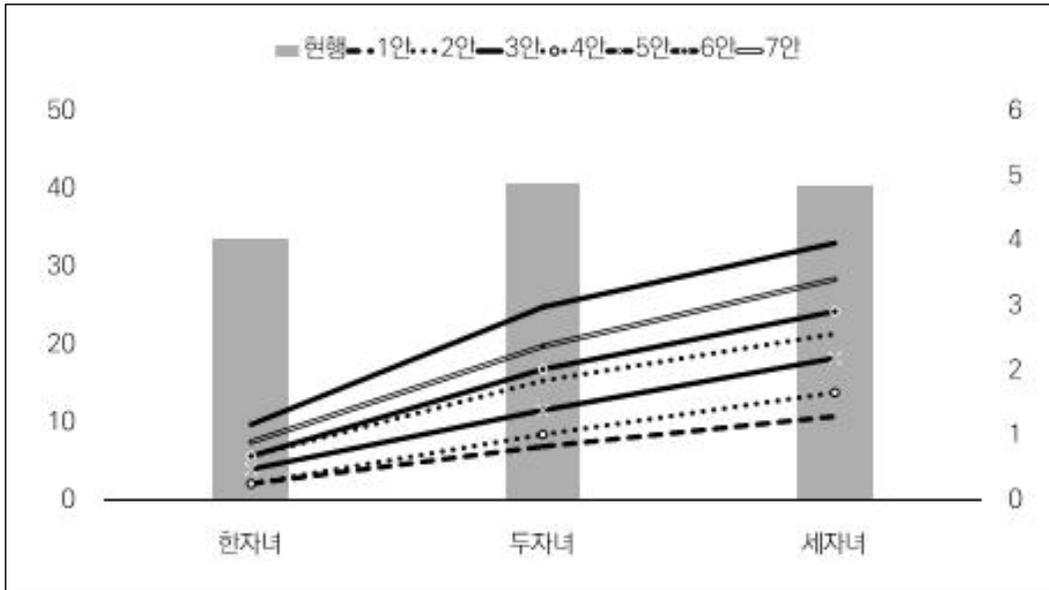


주: 현행(막대)은 양육비 부담률을 의미하며, 개편 시나리오 안(선)은 양육비 부담을 완화효과를 나타냄.  
자료: 15차 재정패널

아래 그림은 시나리오 안별로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비율 경감 효과를 가구단위로 산출하여 그래프로 제시했다. 현행 하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비율이 높아지지만, 개인 단위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안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비율 경감효과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2-9]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률과 개편안별 부담완화효과: 가구

단위: %, %pt



주: 현행은 양육비 부담률을 제시했으나 개편 시나리오 안은 양육비부담률 완화효과를 나타냄  
 자료: 15차 재정패널

### 3. 정책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 가. 아동 인구 변화 추이

정책 시나리오별로 소요재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금급여 지급 대상자 규모 추이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육아가구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향후 출생아수와 한국의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모두 중위추계한 결과이며,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향후 몇 년 후 출생아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생아수 증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인구수는 더 감소할 수 있다.

〈표 V-3-1〉 장래 인구변동 추계: 2024~2040년

단위: 천명

인구변동요인별	2024	2025	2030	2035	2040
인구	51,751	51,685	51,306	50,825	50,059
출생아수	218	218	263	279	259
사망자수	348	358	411	468	533
국제순이동자수	63	65	65	65	66
조출생률	4.2	4.2	5.1	5.5	5.2
조사망률	6.7	6.9	8.0	9.2	10.7
국제순이동률	1.2	1.3	1.3	1.3	1.3

주: 중위추계 -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자료: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가구유형별 가구규모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증가 추이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반면, 부부+미혼자녀 가구, 부/모+미혼자녀, 부부+미혼자녀+부(모)의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2040년에는 미혼자녀를 둔 4가지 가구유형을 모두 합산해도 27.9%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V-3-2〉 가구유형별 추계가구

단위: %(명)

	2024	2025	2030	2035	2040
계	100.0 (22,179,961)	100.0 (22,388,820)	100.0 (23,348,522)	100.0 (24,019,893)	100.0 (24,358,262)
부부	17.6	17.9	19.2	20.4	21.4
1세대 기타	1.8	1.8	1.7	1.7	1.7
<b>부부+미혼자녀</b>	<b>25.8</b>	<b>25.2</b>	<b>22.8</b>	<b>21.0</b>	<b>19.6</b>
부+미혼자녀	2.2	2.2	2.0	1.9	1.8
모+미혼자녀	6.8	6.7	6.3	6.0	5.9
부부+부(모)	0.5	0.5	0.4	0.4	0.3
조부(모)+미혼손자녀	0.5	0.5	0.5	0.5	0.5
2세대 기타	3.7	3.6	3.4	3.3	3.4
<b>부부+미혼자녀+부(모)</b>	<b>1.4</b>	<b>1.3</b>	<b>0.9</b>	<b>0.7</b>	<b>0.6</b>
3세대 이상 기타	1.3	1.2	1.0	0.8	0.8
1인	35.8	36.4	38.6	39.8	40.6
비친족	2.6	2.7	3.2	3.4	3.5

자료: 통계청 KOSIS 장래가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4. 인출)에서 자료 추출하여 산출함.

본 연구의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아동 연령은 만 0~17세 까지이며,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만 20세까지이다. 시나리오 대상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2024년~2029년까지 연령별 인구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3-3〉 연령별 아동 인구 추계: 2024년~2029년

단위: %(명)

연령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20세)	(8,257,237)	(7,986,769)	(7,754,633)	(7,545,626)	(7,328,073)	(7,092,335)
(0~17세)	(6,864,617)	(6,625,299)	(6,358,318)	(6,136,084)	(5,931,220)	(5,700,261)
0세	2.8	2.7	2.8	3.0	3.2	3.5
1세	2.9	2.9	2.8	2.9	3.1	3.3
2세	3.1	3.0	2.9	2.9	3.0	3.2
3세	3.3	3.2	3.1	3.0	3.0	3.1
4세	3.5	3.4	3.3	3.2	3.1	3.1
5세	3.9	3.7	3.5	3.4	3.3	3.2
6세	4.2	4.0	3.8	3.6	3.5	3.4
7세	4.6	4.3	4.1	3.9	3.7	3.6
8세	5.2	4.8	4.5	4.2	4.0	3.8
9세	5.3	5.3	4.9	4.6	4.3	4.1
10세	5.2	5.5	5.5	5.1	4.7	4.5
11세	5.6	5.4	5.7	5.6	5.2	4.9
12세	5.7	5.7	5.6	5.8	5.8	5.4
13세	5.8	5.9	5.9	5.7	6.0	6.0
14세	5.3	6.0	6.0	6.1	5.9	6.2
15세	5.4	5.5	6.1	6.2	6.2	6.1
16세	5.8	5.6	5.7	6.3	6.4	6.5
17세	5.5	6.0	5.8	5.8	6.5	6.6
18세	5.3	5.7	6.3	6.0	6.1	6.8
19세	5.5	5.6	6.0	6.5	6.2	6.3
20세	6.0	5.8	5.8	6.2	6.8	6.5

주: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 h=l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 h=l3) (2024. 9. 9. 인출)을 참조하여 작성함.

## 나. 기본 시나리오 소요재정 추계

### 1) 시나리오 1안

시나리오 1안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18세 미만(만 17세)까지이며, 지급액은 전년도 기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하는 방안이다. 2025년에는 2018년 1월에서 2024년 1월까지 물가상승률인 1.153배를 적용하여 115,300원으로 증액한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간 매년 물가상승률의 평균인 1.027배를 적용하였다.

〈표 V-3-4〉 물가상승률 반영한 아동수당 월 지급액

단위: 원, 배

구분	현행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아동수당 월 지급액	100,000	115,300	118,400	121,600	124,900	128,300
적용 물가상승배수	-	1.153	1.027	1.027	1.027	1.027

주: 1) 최근 5년간(2019년 1월 ~ 2024년 1월) 매년 물가상승배수 평균인 1.027을 적용

2) 2025년 물가상승률 1.153은 2018년 1월 ~ 2024년 1월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임.

자료: CPI 소비자물가지수. <https://www.kostat.go.kr/mondyValueCalc.es?mid=b70302000000> (2024. 5. 31. 인출)에서 물가상승률 데이터 추출.

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연령별로 0~20세까지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아동수당 지급액에 0~17세까지 아동수를 곱하여 월별 아동수당 소요재정을 산출하고 연간 소요재정을 환산하였다. 2025년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연령의 증가로 인해 현행에 비해 아동수당 재정이 9조 1,6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아동수의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아동수당 소요재정이 감소하여 2029년에는 8조 7,757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부모급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아동수 감소에 따라 2026년까지는 0, 1세 모두 재정이 감소하나, 장래인구추계에서 2027년부터 출생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세제지원에서 먼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연동

되어 아동수당 미지급연령부터 20세까지 적용된다. 본 시나리오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7세까지로 정하였으므로 18~20세까지만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여 소요재정을 산출하였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가구의 자녀수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해당 대상 아동수에 따른 소요재정 산출이 어려우므로 아동수 비율을 적용하였다. 즉, 연령별 아동수의 비율과 변화율을 적용하여 소요재정을 산출하였다. 이에 2024년 자녀세액공제 예산인 8,772억원은 2025년에 약 2,02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18~20세 아동수에 따라 재정에 다소 변화를 보이거나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은 0~17세 대상자수의 변화율을 반영하여 소요재정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2024년 10,10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년 후에 2029년에는 약 8,924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은 전체 0~6세 아동 중 이용자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아동수 감소에 따라 소요재정을 산출하였다. 이 중 농어촌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유지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동일하다고 간주하였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서 월령별로 농어촌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 이용자 수를 추출하여 총 예산을 계산한 결과 약 1.4억원이었다.

각 시나리오 요소를 모두 합산하여 소요재정을 추계한 결과, 2025년 연간 소요재정은 약 10조 6,930억원으로 2024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6년부터는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요재정이 감소하여 2029년에는 10조 2,408억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V-3-5〉 시나리오 1안 소요재정 추계

단위: 천명, 억원

구분		현행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수		2,346	6,625	6,358	6,136	5,931	5,700
아동수당		28,152	91,663.2	90,334.8	89,536.8	88,893.6	87,757.2
부모 급여	0세	2,290.3	2,172.3	2,170.8	2,278.3	2,378.0	2,472.8
	1세	1,217.2	1,141.3	1,082.7	1,082.1	1,135.6	1,186.1
자녀세액공제		8,772	2,020.3	2,072.0	2,091.6	2,072.8	2,065.7
자녀장려금		10,105	9,931.3	9,758.5	9,559.5	9,282.5	8,924.4
가정양 육수당	전체	1,081	-	-	-	-	-
	농어촌· 장애		1.4	1.4	1.4	1.4	1.4
연간 총 소요재정		51,617.5	106,929.8	105,420.2	104,549.7	103,763.9	102,407.6

- 주: 1) 현행 대상자수는 장애인구추계 연령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상자수와 차이가 있음  
 2) 아동수당, 부모급여 소요재정은 연간 지급액에 대상자수를 곱하여 산출  
 자료: 1) 대상자수: 통계청 KOSIS 장애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2)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p.99.  
 3) 가정양육수당: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2) 시나리오 2안

시나리오 2안은 시나리오 1안과 다른 요소는 동일하며 아동수당 지급액만 월 2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1안에 비해 아동수당 지급액의 증가폭이 커서 소요재정의 증가폭도 크다. 시나리오 2안의 2025년 아동수당 재정은 15조 9,000억원으로 1안 대비 6조 7천억원 이상 높다. 2025년 연간 총 소요재정은 17조 4,267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이후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소요재정도 감소하며, 1안에 비해 시나리오 2안에서는 감소폭이 크다. 2029년에 연간 총 소요재정은 2025년 대비 2조 2천억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6〉 시나리오 2안 소요재정 추계

단위: 천명, 억원

구분		현행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수		2,346	6,625	6,358	6,136	5,931	5,700
아동수당		28,152	159,000	152,592	147,264	142,344	136,800
부모 급여	0세	2,290.3	2,172.3	2,170.8	2,278.3	2,378.0	2,472.8
	1세	1,217.2	1,141.3	1,082.7	1,082.1	1,135.6	1,186.1
자녀세액공제		8,772	2,020.3	2,072.0	2,091.6	2,072.8	2,065.7
자녀장려금		10,105	9,931.3	9,758.5	9,559.5	9,282.5	8,924.4
가정양 육수당	전체	1,081	-	-	-	-	-
	농어촌·장 애		1.4	1.4	1.4	1.4	1.4
연간 총 소요재정		51,617.5	174,266.6	167,677.4	162,276.9	157,214.3	151,450.4

주: 1) 현행 대상자수는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상자수와 차이가 있음  
 2) 아동수당, 부모급여 소요재정은 연간 지급액에 대상자수를 곱하여 산출

자료: 1) 대상자수: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2)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p.99.  
 3) 가정양육수당: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3) 시나리오 3안

시나리오 3안은 아동수당 지급액만 월 30만원으로 증액하고 다른 요인들은 동일하게 적용한 방안이다. 현행에 비해 아동수당 지급액이 3배로 상승하기 때문에 소요재정 증가폭이 가장 크다. 시나리오 3안에서 2025년에 아동수당 재정이 23조 8,5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시나리오 3안은 아동수당 지급액 수준이 높아 아동수 감소에 따른 감소폭도 가장 크다. 연간 총 소요재정은 2025년 25조 3,767억원에서 2029년 21조 9,850억원으로 3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V-3-7〉 시나리오 3안 소요재정 추계

단위: 천명, 억원

구분		현행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수		2,346	6,625	6,358	6,136	5,931	5,700
아동수당		28,152	238,500	228,888	220,896	213,516	205,200
부모 급여	0세	2,290.3	2,172.3	2,170.8	2,278.3	2,378.0	2,472.8
	1세	1,217.2	1,141.3	1,082.7	1,082.1	1,135.6	1,186.1
자녀세액공제		8,772	2,020.3	2,072.0	2,091.6	2,072.8	2,065.7
자녀장려금		10,105	9,931.3	9,758.5	9,559.5	9,282.5	8,924.4
가정양 육수당	전체	1,081	-	-	-	-	-
	농어촌장애		1.4	1.4	1.4	1.4	1.4
연간 총 소요재정		51,617.5	253,766.6	243,973.4	235,908.9	228,386.3	219,850.4

주: 1) 현행 대상자수는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상자수와 차이가 있음  
 2) 아동수당, 부모급여 소요재정은 연간 지급액에 대상자수를 곱하여 산출  
 자료: 1) 대상자수: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2)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p.99.  
 3) 가정양육수당: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다. 부가급여 시나리오 소요재정 추계

### 1) 다자녀 아동수당 적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4, 6안

아동수당 대상에게 다자녀 아동수당 부가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먼저 출생순위별 출생아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0년 기준 출생아 약 47만명 중 50.1%가 첫째아이며, 둘째아는 38.7%, 셋째아 이상은 10.6%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첫째아 비중은 증가하고,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3년에는 2010년 대비 첫째아 비중이 10.0%p 증가하여 60.1%로 나타났으며, 둘째아는 32.3%, 셋째아 이상은 7.5%이다.

〈표 V-3-8〉 출생순위별 비율: 2010, 2015, 2020, 2023년 출생아

단위: 명, %

구분	2010		2015		2020		2023	
	명	(%)	명	(%)	명	(%)	명	(%)
전체	470,171	100.0	438,420	100.0	272,337	100.0	230,028	100.0
첫째아	235,473	50.1	228,637	52.2	149,211	54.8	138,352	60.1
둘째아	181,763	38.7	166,119	37.9	97,828	35.9	74,361	32.3
셋째아 이상	49,900	10.6	42,443	9.7	25,177	9.2	17,252	7.5

주: 출생순위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많고 둘째아와 셋째아 비중이 낮기 때문에 2023년 기준 17세 이하 아동의 출생순위 비중을 2025년 이후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출생순위 비율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최근 10년간(2014~2023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비율을 적용하여 다자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산출하였다. 2014년~2023년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은 53.9%이며, 둘째아는 36.6%, 셋째아 이상은 9.3%이다.

〈표 V-3-9〉 최근 10년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비율: 2014~2023년

단위: 명, %

구분	2014		...	2023		계 (2014~2023년)	
	명	%		명	%	명	%
전체	435,435	100.0	...	230,028	100.0	3,279,480	100.0
첫째아	225,393	51.8		138,352	60.1	1,767,554	53.9
둘째아	165,331	38.0		74,361	32.3	1,201,134	36.6
셋째아 이상	43,712	10.0		17,252	7.5	305,679	9.3

주: 출생순위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2014년~2023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다자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수를 산출하였다. 이어서 출생순위 둘째아 아동에게 월 3만원,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월 4만원씩 다자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적용하여 다자녀 아동수당에 투입되는 연간 총 소요재정을 산출하였다. 2025년에 다자녀 아동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1조 1,704억원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9년에는 약 1조 66억원으로 예측된다.

〈표 V-3-10〉 다자녀 아동수당 소요재정 산출

단위: 천명, (만원),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둘째아	셋째아 이상								
대상자수	2,427	618	2,329	593	2,247	572	2,172	553	2,088	531
연간 부가급여 액	(36)	(48)	(36)	(48)	(36)	(48)	(36)	(48)	(36)	(48)
연간 총 소요재정	8,737	2,966	8,384	2,846	8,089	2,746	7,819	2,654	7,517	2,549
	11,703.6		11,230.8		10,834.8		10,473.6		10,065.6	

주: 1) 출생순위 미상 제외  
 2) 2014~2023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비율 적용: 첫째아 53.9%, 둘째아 36.6%, 셋째아 이상 9.3%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시나리오 4안은 시나리오 1안에 부가급여로 다자녀 아동수당을 추가한 방안이다. 다자녀 아동수당 소요재정을 추가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2025년 연간 총 소요예산은 11조 8,633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시나리오 1안과 같이 시나리오 4안에서도 매년 총 소요재정이 차츰 감소하여 2029년에는 11조 2,473억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V-3-11〉 시나리오 4안 소요재정 추계

단위: 천명, 억원

구분	현행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수	2,346	6,625	6,358	6,136	5,931	5,700	
아동수당	28,152	91,207.2	90,235.2	90,062.4	88,773.6	87,619.2	
다자녀 아동수당	-	11,703.6	11,230.8	10,834.8	10,473.6	10,065.6	
부모 급여	0세	2,290.3	2,172.3	2,170.8	2,278.3	2,378.0	2,472.8
	1세	1,217.2	1,141.3	1,082.7	1,082.1	1,135.6	1,186.1
자녀세액공제	8,772	2,020.3	2,072.0	2,091.6	2,072.8	2,065.7	
자녀장려금	10,105	9,931.3	9,758.5	9,559.5	9,282.5	8,924.4	
가정양 육수당	전체	1,081	-	-	-	-	
	농어촌장래		1.4	1.4	1.4	1.4	1.4
연간 총 소요재정	51,617.5	118,633.4	116,651.0	115,384.5	114,237.5	112,473.2	

주: 1) 현행 대상자수는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상자수와 차이가 있음  
 2) 아동수당, 부모급여 소요재정은 연간 지급액에 대상자수를 곱하여 산출  
 자료: 1) 대상자수: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2)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p.99.  
 3) 가정양육수당: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시나리오 6안은 시나리오 2안에 부가급여로 다자녀 아동수당을 추가한 방안이다. 시나리오 4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시나리오에 다자녀 아동수당 소요재정을 추가 투입하여 재정규모를 추계하였다. 2025년 연간 총 소요예산은 18조 5,97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다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매년 총 소요재정이 차츰 감소하여, 2029년에 소요재정이 16조 1,516억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V-3-12〉 시나리오 6안 소요재정 추계

단위: 천명, 억원

구분		현행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수		2,346	6,625	6,358	6,136	5,931	5,700
아동수당		28,152	158,208	152,424	148,128	142,152	136,584
다자녀 아동수당		-	11,703.6	11,230.8	10,834.8	10,473.6	10,065.6
부모 급여	0세	2,290.3	2,172.3	2,170.8	2,278.3	2,378.0	2,472.8
	1세	1,217.2	1,141.3	1,082.7	1,082.1	1,135.6	1,186.1
자녀세액공제		8,772	2,020.3	2,072.0	2,091.6	2,072.8	2,065.7
자녀장려금		10,105	9,931.3	9,758.5	9,559.5	9,282.5	8,924.4
가정양 육수당	전체	1,081	-	-	-	-	-
	농어촌장애		1.4	1.4	1.4	1.4	1.4
연간 총 소요재정		51,617.5	185,970.2	178,908.2	173,111.7	167,687.9	161,516.0

주: 1) 현행 대상자수는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상자수와 차이가 있음  
 2) 아동수당, 부모급여 소요재정은 연간 지급액에 대상자수를 곱하여 산출  
 자료: 1) 대상자수: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2)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p.99.  
 3) 가정양육수당: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소득수준별 추가 아동수당 적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5, 7안

아동가구의 가구소득별 아동수는 사회조사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어 소득분위별로 아동가구의 규모를 산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소요재정을 대략적으로 추산하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4년 이사분기 기준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경상소득을 살펴보았다.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세전소득이고, 기준중위소득은 경상소득으로 평가하므로 가처분소득이 아닌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검토한 결과, 소득

2분위까지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sup>126)</sup>인 차상위계층에 모두 포함되며, 7분위까지가 연간 경상소득 7,000만원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시나리오 5, 7안에서 추가 아동수당 I은 소득 2분위까지, 추가 아동수당 II는 소득 3~7분위까지로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실시한 연구<sup>127)</sup>에서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사용하여 발표한 아동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2년 기준 0~17세 아동가구의 가처분소득 10분위별 비율을 살펴보면 1~3분위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1분위는 6.3%, 2분위는 5.4%, 3분위는 6.8%로 나타났다. 8분위가 1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아동가구 중 2분위까지 비중은 11.7%이며, 3~7분위까지 비중은 51.9%이다.

〈표 V-3-13〉 소득 10분위별 평균 경상소득 및 아동가구 비율

단위: 원, %

구분	경상소득 기준	아동가구 비율
1분위	1,327,509	6.3
2분위	2,627,661	5.4
3분위	3,569,515	6.8
4분위	4,334,644	9.9
5분위	5,110,298	11.0
6분위	5,836,004	11.5
7분위	6,646,735	12.7
8분위	7,790,035	13.0
9분위	9,324,583	11.9
10분위	14,065,409	11.4

자료: 1) 경상소득 기준: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2) 경상소득은 2024년 이사분기 기준

3) 아동가구 비율: 이현주 외(202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6) 2024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는 2,864,957원임(e-나라지표, 기준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24. 9. 18. 인출)

127) 이현주 외(202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가 아동수당의 소요재정을 산출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수에 11.7%(1~2분위)를 적용하여 추가 아동수당 I의 대상자수를 산출하고, 51.9%(3~7분위)를 적용하여 추가 아동수당 II의 대상자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에 추가 아동수당 I 지급액 월 10만원, 추가 아동수당 II 지급액 월 5만원의 연간 지급액을 적용하여 각각 연간 소요재정을 산출한 후 합산하였다. 2025년 추가 아동수당 연간 총 소요재정은 2조 9,932억원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9년은 2조 5,753억원으로 추계되었다.

〈표 V-3-14〉 소득수준별 추가 아동수당 소요재정 추계

단위: 천명, (만원),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전체 대상자수		6,625	6,358	6,136	5,931	5,700
추가 아동수당 I	대상자수	775	744	718	694	667
	연간 지급액	(120)	(120)	(120)	(120)	(120)
	소요재정	9,301.5	8,926.6	8,614.9	8,327.1	8,002.8
추가 아동수당 II	대상자수	3,438	3,300	3,185	3,078	2,958
	연간 지급액	(60)	(60)	(60)	(60)	(60)
	소요재정	20,630.3	19,798.8	19,107.5	18,469.1	17,749.8
연간 총 소요재정		29,931.8	28,725.4	27,722.5	26,796.3	25,752.6

자료: 1) 대상자수: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2) 아동가구 비율: 이현주 외(202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나리오 5안은 시나리오 1안에서 자녀장려금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하면서 부가급여로 소득수준별로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추계한 추가 아동수당 소요재정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2025년 연간 총 소요예산은 12조 6,93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2029년에는 11조 9,236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나리오 5안의 재정은 시나리오 1안에 비해 2025년은 약 2조 정도 더 소요되며, 2029년에는 1조 7천억 정도 더 소요되었다.

〈표 V-3-15〉 시나리오 5안 소요재정 추계

단위: 천명, 억원

구분		현행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수		2,346	6,625	6,358	6,136	5,931	5,700
아동수당		28,152	91,663.2	90,334.8	89,536.8	88,893.6	87,757.2
추가 아동수당		-	29,931.8	28,725.4	27,722.5	26,796.3	25,752.6
부모 급여	0세	2,290.3	2,172.3	2,170.8	2,278.3	2,378.0	2,472.8
	1세	1,217.2	1,141.3	1,082.7	1,082.1	1,135.6	1,186.1
자녀세액공제		8,772	2,020.3	2,072.0	2,091.6	2,072.8	2,065.7
자녀장려금		10,105	-	-	-	-	-
가정양 육수당	전체	1,081	-	-	-	-	-
	농어촌장애		1.4	1.4	1.4	1.4	1.4
연간 총 소요재정		51,617.5	126,930.3	124,387.1	122,712.7	121,277.7	119,235.8

주: 1) 현행 대상자수는 장애인구추계 연령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상자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대상자수: 통계청 KOSIS 장애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2)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p.99.  
 3) 가정양육수당: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시나리오 7안은 시나리오 2안에 자녀장려금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하여 소득수준 별로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추계한 추가 아동수당 소요재정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2025년 연간 총 소요예산은 19조 4,267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2029년에는 16조 8,27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나리오 7안의 재정은 시나리오 2안에 비해 2025년은 약 2조 정도 더 소요되며, 2029년에는 1조 7천억 정도 더 소요된다. 시나리오 7안은 3안에 이어 소요재정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시나리오안으로 파악되었다.

〈표 V-3-16〉 시나리오 7안 소요재정 추계

단위: 천명, 억원

구분		현행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수		2,346	6,625	6,358	6,136	5,931	5,700
아동수당		28,152	159,000	152,592	147,264	142,344	136,800
추가 아동수당		-	29,931.8	28,725.4	27,722.5	26,796.3	25,752.6
부모 급여	0세	2,290.3	2,172.3	2,170.8	2,278.3	2,378.0	2,472.8
	1세	1,217.2	1,141.3	1,082.7	1,082.1	1,135.6	1,186.1
자녀세액공제		8,772	2,020.3	2,072.0	2,091.6	2,072.8	2,065.7
자녀장려금		10,105	-	-	-	-	-
가정양 육수당	전체	1,081	-	-	-	-	-
	농어촌장애		1.4	1.4	1.4	1.4	1.4
연간 총 소요재정		51,617.5	194,267.1	186,644.3	180,439.9	174,728.1	168,278.6

- 주: 1) 현행 대상자수는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상자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대상자수: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2)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p.99.  
 3) 가정양육수당: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VI

##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및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

01 현금급여 제도 개편

02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



# VI.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및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

## 1. 현금급여 제도 개편

### 가. 현금급여 제도 개편 기본방향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뒤늦게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확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현금급여 제도 확대 논의에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현금급여를 도입한다고 해서 초저출생을 해소할 수는 없음을 앞서 여러 선행연구 및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초저출생 대응을 이유로 개별 현금급여의 정치성을 부각하거나 단편적 효과성을 기대하고 도입하기보다는 현금급여의 목적성과 중장기적인 육아정책의 목표와의 적합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제도와의 높은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하며 발전적인 현금급여 제도가 구축되어야 수요자의 체감도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적인 현금급여 제도의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가 추구해야 할 주된 목적은 아동수당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도 도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과 ‘양육비 부담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아동가구의 소득 보장을 통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동 대상 현금급여 지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 및 아동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은 결국 양육자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실현된다. 이외에 추가되는 출산율 제고, 양육 방식 선택권 보장 등은 개별 현금급여의 세부적인 제도 성격을 결정하는 부가적인 목적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현금급여 제도에 대한 통합적 개편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및 양육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편성, 포괄성, 지속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아동수당 제도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기 전체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이다.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양육수당, 세제지원 등 타 현금성 지원 제도 들은 실시 여부나 실시 기간 등에서 격차를 보이나, 아동수당(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16~20세까지 실시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는 복지체제나 정책 이데올로기 와는 크게 상관없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복지를 보장하는 소득보장 제도로 오랜 기간 실시되어 왔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가정양육수당이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2018년에서야 도입되었으며 지급연령이나 지급액 수준도 낮아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 부합성이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셋째, 새로운 여러 개별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보편성, 포괄성을 확보하면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현금급여 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급여수준이 높은 영아수당, 부모급여가 도입되고, 지자체별로는 초저출생에 따른 출산지원금 성격의 현금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시류에 의해 효과성과 무관하게 현금급여 제도가 난립될 경우 재원이 낭비될 가능성도 높다. 이제는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현금급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보편적 수당 제도는 대상자의 욕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게 보편적 정액급여를 하는 방식이 보편주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에는 소득기준이나 가구형태 등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차등지급 기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모두 최근에 재정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상별 재분배, 소득기준 적용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보편적인 현금급여의 수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대부분 재정 효율성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일괄 보편 정액급여 방식을 고수해야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욕구에 따른 급여와 보편적 할당 방식이 동시에 제도 내에 설계될 수 있다는 정책적 인식 즉, 보편주의 내 표적화를 현금급여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제도 개편 시 고려해야 할 방향성을 종합하여 기본방향 4가지를 제시하면 다음 <표 VI-1-1>과 같다.

<표 VI-1-1> 현금급여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발전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방향 1: 현금급여 제도의 합목적성 추구: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및 양육비 부담 완화</li> <li>• 기본방향 2: 아동수당 중심의 통합적 현금급여 체계 구축</li> <li>• 기본방향 3: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 현금급여 제도 틀 구축</li> <li>• 기본방향 4: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현금급여 체계 구축: 보편주의 내 표적화(targeting)</li> </ul>

## 나. 시나리오 검토 종합

여기에서는 제시된 정책 시나리오 7개 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나리오 우선순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안이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가장 높고, 7안, 6안, 2안, 5안, 4안, 1안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2-2 참조).

먼저, 아동연령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는 3안이 0.6~2.1%pt이며, 가장 낮은 1안은 0.1~0.8%pt 수준이다. 현재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만 7세 이하에 비해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만 8세 이상이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양육비 부담률이 크게 증가하는 만 11세와 만 16세에서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V-2-5 참조).

소득수준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 분석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양육비 부담률이 높지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즉, 기본적으로 경상소득 규모가 작은 저소득층에게는 현금급여 지급액 증가가 양육비 부담률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위 50% 이하 저소득층에서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는 1.0~3.1%pt로 크게 나타났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3안과 7안의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컸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아동수당에 소득수준별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5안은 중위 50% 이하 저소득층에서만 2안(아동수당 20만원 지급)에 비해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위 50%를 초과하는 두 소득집단에서는 2안이 5안에 비해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크다. 즉, 중위 5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3안, 7안 다음으로 6안, 5안, 2안, 4안, 1안 순이었다. 중위 50% 초과~7,0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게는 7,000만원 이상 소득계층에 비해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컸으나, 추가 아동수당으로 인해 시나리오별 순위가 변경되지는 않았다(표 V-2-8 참조).

자녀수별로는 기존 시나리오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자녀수가 증가할 때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의 증가폭이 컸다. 그러나 다자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4, 6안에 비해 5, 7안에서 오히려 자녀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나리오에서 다자녀 아동수당에 비해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의 지급액을 높게 설정하여 아동당 지급액 자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표 V-2-11 참조).

시나리오별 연간 총 소요재정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3안의 소요재정 규모가 약 25조로 가장 크고, 7안, 6안, 2안, 5안, 4안, 1안 순이다. 즉, 투입 재정에 규모가 클수록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도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이 투입되는 5안이 저소득계층에서 보다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컸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표 VI-1-2〉 정책 시나리오별 연간 총 소요재정

단위: 억원

구분	현행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시나리오 1안	51,617.5	106,929.8	105,420.2	104,549.7	103,763.9	102,407.6
시나리오 2안		174,266.6	167,677.4	162,276.9	157,214.3	151,450.4
시나리오 3안		253,766.6	243,973.4	235,908.9	228,386.3	219,850.4
시나리오 4안		118,633.4	116,651.0	115,384.5	114,237.5	112,473.2
시나리오 5안		126,930.3	124,387.1	122,712.7	121,277.7	119,235.8
시나리오 6안		185,970.2	178,908.2	173,111.7	167,687.9	161,516.0
시나리오 7안		194,267.1	186,644.3	180,439.9	174,728.1	168,278.6

주: 연간 총 소요재정은 아동수당, 아동수당 부가급여, 부모급여,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소요재정을 종합하여 산출됨.

모든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시나리오 3안이 가장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재정 규모의 약 5배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나리오 7안은 시나리오 3안에 비해 약 6조 정도 재정 규모가 작으면서 소득계층이나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안으로 판단된다. 6안에 비해 소득수준별로 지급하는 7안이 자녀수별 양육비 부담률 완화효과도 더 크다.

다음으로는 아동가구 현금지원 제도의 방향성 설정에 따라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녀장려금 제도를 아동수당에 통합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하되 재정적 부담이 적은 방안은 5안이다. 한편, 다자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아동수당에 도입하면서 전체 아동가구의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를 동시에 정책 목표로 삼는다면 6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개편안 적합성 논의

여기에서는 적합한 시나리오로 7안, 5안, 6안, 3안 순으로 안에 따른 개편 시 기대효과와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제시한 시나리오 7안은 만 0~17세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2안에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을 부가급여로 추가한 안이다. 이 안은 자녀장려금 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 도입으로 아동수당에 통합한다. 현행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아동빈곤 및 불평등 감소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정유석, 2020).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률이 높은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에 대한 추가 아동수당 지급은 높은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저소득가구 아동 빈곤 해소에 기존 제도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나리오 7안은 소득수준에 따른 부가급여이지만 자녀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률 완화 효과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7안은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여 지급하였던 자녀장려금 제도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아동수당에서 소득 파악을 통해 지급할 경우 원활한 행정 처리와 행정 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나리오 7안은 3안에 비해 소요재정이 적으나 현행에서 지급연령 및 지급액을 동시에 일정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소득수준 차등 부가급여를 도입하는 안이기 때문에 19조 이상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선결과제도 있다.

시나리오 5안은 만 0~17세까지 불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시나리오 1안에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을 부가급여로 추가한 안이다. 5안은 7안과 같이 자녀장려금을 아동수당으로 통합하면서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재정 부담은 7안에 비해 낮은 안이다. 5안은 재정 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7안에 비해서 소득수준 및 자녀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완화 효과도 더 낫다. 따라서 시나리오 5안은 현금급여 제도의 목적 및 방향성을 욕구에 따른 차등 지급에 초점을 두었을 때 선택가능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6안은 만 0~17세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2안에 출생순위에 따른 다자녀 아동수당을 부가급여로 추가한 안이다. 시나리오 7안에 이어 양육비 부담을 완화 효과가 큰 안이다. 그러나 투입되는 소요재정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5안에 비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소득층일수록 양육비 부담을 완화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다자녀 가구 비율이 고소득층에서 다소 높다. 이에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6안의 전체 양육비 부담을 완화효과는 투입 재정 대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시나리오 6안의 경우는 저출생 대책의 성격을 보다 강조하면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에 비해서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3안은 만 0~17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부모급여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가정양육수당은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만 존치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에 연동하여 만 18세~만 20세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유지하는 안이다. 아동수당만 실시되고 있다고 하면 월 30만원이 적합할 수 있으나, 0~1세는 높은 지급수준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자녀장려금 제도와 선별적 현금지원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함께 실시되고 있어서 특정 연령, 특정 가구유형에 공적 이전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에 3안은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내에서 아동가구에 대한 총 지급수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안이다. 3안을 선택한다면, 프랑스가 사회보장재정법(LFSS)을 개정하여 소득보장 제도의 지급수준을 조정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폴란드의 가족소득지원 임계치 설정 제도로 검토해볼만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나리오 중 부가급여 제도인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과 다자녀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안인 7안과 6안을 도입하였을 때 현금지원 체계의 변화를 [그림 II-2-1]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아래 [그림 VI-1-1]을 제시하였다.

[그림 VI-1-1] 현금급여 개편을 위한 부가급여 시나리오 안

개편안 I (시나리오 7안)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17세	
현금급여 /수당	보편	아동수당(월 20만원)	●	●	●	●	●	●	●	●	●	●	●	●	●	●	
		(부가) 추가 아동수당	●	●	●	●	●	●	●	●	●	●	●	●	●	●	●
	부모급여		◐	◐													
	선별	양육수당 <sup>3)</sup>			◐	◐	◐	◐	◐								
		장애아동수당	●	●	●	●	●	●	●	●	●	●	●	●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	●	●	●	●	●	●	●	●	●	●	●	●	●	
세제지원	자녀세액공제															▲ <sup>4)</sup>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														
개편안 II (시나리오 6안)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17세	
현금급여 /수당	보편	아동수당(월 20만원)	●	●	●	●	●	●	●	●	●	●	●	●	●	●	
		(부가) 다자녀 아동수당	●	●	●	●	●	●	●	●	●	●	●	●	●	●	●
	부모급여		◐	◐													
	선별	양육수당 <sup>3)</sup>			◐	◐	◐	◐	◐								
		장애아동수당	●	●	●	●	●	●	●	●	●	●	●	●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	●	●	●	●	●	●	●	●	●	●	●	●	●	
세제지원	자녀세액공제															▲ <sup>4)</sup>	
	자녀장려금		▲	▲	▲	▲	▲	▲	▲	▲	▲	▲	▲	▲	▲	▲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														

주: 1) 지급형태: ● - 현금 지급, ◐ -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지급 혼합 또는 선택, ○ - 바우처, ▲ - 세제 지원

2) 색깔표시 칸: 소득수준 및 취약가구 대상 차등지급

3) 양육수당은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 대상 차등 지급

4) 자녀세액공제는 18~20세 이하까지만 지급

자료: 연구진 작성.

## 2.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

이 절에서는 육아정책을 현금급여, 세제지원, 시간 지원(육아휴직제도), 돌봄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금까지 제시한 현금급여 제도 시나리오에 따른 시기별(단기/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제도적 기반

우선 현금급여 제도 개편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아동수당법 제4조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지급액 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며, 동법에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미 IV장에서 2024년에 발의된 8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개편안에 따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을 위해서는 제4조제1항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부가급여 도입 시에는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하고 추가 아동수당 및 다자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이 만 17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자녀세액공제 조항은 만 18세로 수정한다. 추가 아동수당 지급으로 자녀장려금이 아동수당 제도에 통합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5개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를 근거로 실시된다. 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양육을 전제로 기관 미이용 영유아 연령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 조항을 영유아의 연령과 거주지 및 장애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정책 시나리오 7안 또는 6안을 기준으로 개편안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면 아래 <표 VI-2-1>과 같다.

<표 VI-2-1> 개편안에 따른 법률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아동수당법	연령 확대에 따른 개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아동수당 도입 시 개정	신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⑥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의2(추가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연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매월 10만원의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연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초과~7,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월 5만원의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자녀 아동수당 도입 시 개정	신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⑥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자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의2(다자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둘째아 아동에게 매월 3만원의 다자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셋째아 아동에게 매월 4만원의 다자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 연령과 거주지(농어촌) 및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삭제

구분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는 최근 확대되었으며 영아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다른 공적이전소득과의 관련성이나 조정 방식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조정할 경우에 기존 공공부조 제도나 공적이전소득 제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보장 체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적정 생계비나 적정 양육비 산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프랑스나 폴란드와 같이 아동가구에 대한 전체 소득보장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 나. 통합적 육아정책 개편

### 1) 아동수당 개편

본 연구는 아동수당 중심의 현금급여 제도 개편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아동수당 개편에 있어서 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하면, 아동수당 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 방식 결정,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아동수당 부가급여 도입 순이다. 먼저, 정책 시나리오에서 고정 요인으로 제시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18세 미만(17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을 위해서는 지급액 조정 방식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회에서 발의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액을 조정할 것인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부가급여 방식 도입이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른 부가급여를 제안하였으나, 아동 연령이나 가구 유형(한부모 등)을 반영한 차등지급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동수당 개편이 단계적으로 추진된 이후에는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 방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해나가면서 체계화, 고도화된 아동수당을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 2) 아동수당 관련 세제 개편

아동수당 개편은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제도와 맞물려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연동되어 있는 자녀세액공제 개편이 함께 추진된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기존 제도의 틀과 수준을 유지한 채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연동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수당 지급수준 확대에 따라 폐지하거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추진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중복성이나 지원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역소득세 성격의 소득수준별 추가 아동수당이 도입될 경우 아동수당 부가급여로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세제지원 개편은 아동수당 개편과 함께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 3) 가정양육수당과 돌봄 지원 개편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폐지하나, 농어촌 및 장애아 양육수당은 존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대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낮은 수준의 현금급여 지급이 서비스를 대체하기 어려우나, 이는 서비스 수요 미충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시적인 현금급여 유지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거주지 및 장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충족을 위해 보육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여야 한다. 오히려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위해서는 취약성이 있는 아동의 보육 및 조기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장애아 보육서비스 공백을 해소를 통해 농어촌 및 장애아 양육수당을 폐지하고 모든 아동이 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부모급여 제도 성격 규정과 육아휴직제도 개편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는 현행 지급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도입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부모급여 성격 규정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현재 부모급여 지급방식이 현금과 돌봄 비용 바우처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은 제도적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법적 정비와 제도적 성격의 명료화에 대한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부모급여 도입이 아동수의 감소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공공 영아 보육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 영아 보육서비스 유지 및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함께 성격을 규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독립적인 계정으로 분리되거나 별도 기금이 마련될 경우에는 부모급여 재원도 육아 지원 기금에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열린다. 이 경우에 부모급여 성격을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 정액급여 성격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인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재원을 통합하기 어려울 경우는 아동수당법 내에서 영아기 소득보장을 위한 수당 제도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 다. 추가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현금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금급여 확대 시에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동 지원을 위한 재정 규모 확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전히 현금 중심으로 육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정책을 점검하여 정책 방향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육아정책을 현금 중심에서 서비스와 시간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현금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통합적 육아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를 종합하면 다음 <표 VI-2-2>과 같다.

〈표 VI-2-2〉 현금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통합적 육아정책 로드맵(안)

구분		단기 (~2026)	중장기 (2027~)
제도적 기반		[법률 개정] • 아동수당법 개정 • 영유아보육법 개정 • 소득세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통합적·유기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전체 가구당, 아동당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를 유기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체계 구축
현금 급여	아동수당	[정책 우선순위] 1) 아동수당 연령 상향 2)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 방식 결정 3)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4) 아동수당 부가급여 도입	•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 방식에 따른 정기 적 조정
	가정양육 수당	가정양육수당 축소 - 일반 가정양육수당 폐지 - 농어촌/장애 아동 양육수당 존치	가정양육수당 전면 폐지
	부모급여	• 현행 지급수준 유지 • 부모급여 제도적 성격 명확화	[부모급여 성격 규정에 따른 안] • 영아기 소득보장을 위한 수당 제도: 현 행 제도에서 지급액 조정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 • 육아휴직급여의 기초 정책급여: 육아휴 직급여 제도와의 통합 추진
세제 지원	자녀 세액공제	•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연동하여 자 녀장려세제 연령 축소: 18~20세	-
	자녀 장려금	• 아동수당에 소득수준별 추가 아동 수당(부가급여) 도입 시 자녀장려금 폐지	-
유관 제도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육아휴직 재정을 위한 별도 기금이나 독 립 계정 분리
	돌봄 지원	• 공공 영아 보육 서비스 강화	• 현금 지원 제도와 돌봄 비용 지원 제도 의 분리 • 농어촌/장애아 아동의 보육 서비스 공백 해소



- 강지영, 전용, 안서연. (2020). 아동수당 도입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변화시켰는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7, 5-31.
- 강지영. (2020). 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72(1), 63-87.
- 고용노동부.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2023a).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2023b).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 고용노동부. (2024).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따라잡기. [file:///C:/Users/ejpark/Downloads/%EC%B5%9C%EC%A2%85\\_6+6%20%EB%B6%80%EB%AA%A8%EC%9C%A1%EC%95%84%ED%9C%B4%EC%A7%81%EC%A0%9C\\_Q&A%20\(1\).pdf](file:///C:/Users/ejpark/Downloads/%EC%B5%9C%EC%A2%85_6+6%20%EB%B6%80%EB%AA%A8%EC%9C%A1%EC%95%84%ED%9C%B4%EC%A7%81%EC%A0%9C_Q&A%20(1).pdf).
- 고은혜, 이일주. (2015).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 실 천유아교육, 20(1), 1-23.
- 고제이, 하솔잎, 박노옥, 안영. (2022).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II)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 진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제이, 하솔잎, 나원희, 박소은, 이진이, 최환용. (2022).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육부. (2023).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 교육부. (2024a).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 (2024b). 교육부 2024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 권미경, 박원순, 엄지원. (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 이윤진, 최윤경, 김영민. (2023).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 (I):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미곤, 고제이, 이철희, 홍석철, 전병옥, 여유진, 이소영, 조성은, 전진아, 김은정,

- 노용환, 서문희, 정희정, 최은영, 김성아, 권선정, 고경표, 서효진. (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사현, 홍경준. (2014). 출산율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1(2), 213-238.
- 김은지, 최진희. (2017).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유자녀가족 지원정책 정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지. (2022). 저출생시대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젠더리뷰 2022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재현. (2021). 아동수당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70, 133-166.
- 노대명, 김대중, 김영아, 김은경, 나병균, 박찬용, 박혜미, 신윤정, 심창학, 이성애, 봉인식. (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대한민국정부. (2023a).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1권.
- 대한민국정부. (2023b).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박은정. (2019a). 독일 가족정책의 현금급여 분석과 시사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7-221.
- 박은정. (2019b). 독일 정당의 가족정책 프레이밍 분석: 2002년 이후 기독교 연합당과 시민당의 정책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9(2), 94-120.
- 박은정. (2022). 부모급여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육아정책포럼, 74, 20-28.
- 박은정, 이정원, 윤지연, 김난주. (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은정, 조미라, 윤지연, 류연규, & 윤자영. (2022).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I):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박연서, 조형태. (2023).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재정 및 조세정책이 가구의 소

- 득수준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4(4), 135-173.
- 박해남. (2022). 20세기 프랑스 가족 정책의 변화와 복지 엘리트의 역할. 프랑스학연구, 98, 117-149.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영아수당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23a).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c). 2023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d). 2022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24a) 2024 아동수당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24c).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d).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e). 2023년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 안내.
- 송다영, 박은정. (2019).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4, 93-135.
- 신윤정. (2013).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2, 88-99.
- 신윤정. (2017).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 25-34.
- 안종배, 이남식, 이광형, 김병희, 김진화, 서재철, 이민영, 엄창섭, 김재능, 문영호, 손승원, 이승민, 박병원, 김광옥, 박경식, 류청산, 차원용, ... 소재학. (국제미래학회, 공저), (2014).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 Bible: 미래를 보는 힘 34가지 미래예측 방법론 완벽 해설서. 두남.
- 양미선, 김나영, 박은정, 오미애, 송신영. (2022).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양재진, 유란희, 장우윤. (2021). 초저출산 시대, 전국민 부모급여 제도의 설계. 육아정책연구, 15(3), 3-27.

- 여성가족부. (2024a).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유은경. (2016).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와 부모성 담론의 부상. 페미니즘 연구, 16(1), 221-264.
-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 (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안: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 박은정, 홍희정, 신윤정, 송신영. (2021).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 최효미, 김아름, 박은정, 이희현, 김재윤. (2023). 아동양육 지원정책 체계화 및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육아정책연구소. (2023). 2022 영유아 주요통계.
- 윤승희. (2015).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 비교 연구: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1-24.
- 윤홍식, 남찬섭, 김교성, 주은선. (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경희, 민인식. (2018). 아동수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활용. 조사연구, 19(2), 25-49.
- 이래혁, 남재현. (2020).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3), 27-56.
- 이문숙. (2016).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558-567.
- 이상은, 정찬미. (2016).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 827-850.
- 이상은. (202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사회과학논총, 24, 161-185.
- 이소영, 황남희, 오신휘, 임준경, 강은나, 김동진,...이상림.(2024).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이지혜, 이철희. (2023).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윤, 박고은, 김윤영. (2014). 가족정책의 세 가지 지원유형과 그 조합에 관한

- 국제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213-240.
- 이영숙, 하슬잎, 김은정, 국중호, 손동기, 고제이, 박영선. (2020). 아동수당 발전 방향별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숙, 하슬잎, 고숙자. (2021).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강희정, 오욱찬, 이원진, 이혜정, 이병재, 한겨레, 이상정, 류정희, 성재민, 이길제, 이재원. (202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김진, Hudson, J., Kühner, S., 전지현. (2018).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호용, 박세영, 문용필.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6(1), 91-115.
- 이희현, 김효정, 최형주, 김은경, 손호성, 염주영. (2021b).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3. 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 정유석. (2020). 자녀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자녀지원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92, 161-182.
- 정은희, 백승호, 김성아. (2018).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재훈, 박은정. (2012). 가족정책 유형에 따른 독일 가족정책 변화 분석. 가족과 문화, 24(1), 1-31.
- 정찬미. (2017). 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사회복지정책, 44(1), 47-78.
- 조성은, 이상정, 전진아, 주보혜, 김현진. (2018). 아동수당 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은, 신윤정, 김미숙, 임완섭. (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영. (2017). 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국제사회보장리뷰, 2, 5-15.

- 최영, 김슬기. (2017).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0, 59-86.
- 플란데런 의회 전체회의 보고자료(2024. 4. 30). “Verslag plenaire vergadering”  
<https://www.vlaamsparlement.be/nl/parlementair-werk/plenaire-vergaderingen/1823481/verslag/1824906>
- 한국보육진흥원. (2024). 비전보육 32호.
- Allocations Familiales. (2024). Guide Des Prestations 2024. <https://www.calameo.com/read/00755733794c250b904e8> (2024. 5. 30 인출).
- Alt, C., Hubert, S., Jehles, N., Lippert, K., Meiner-Teubner, C., Schilling, C., & Steinberg, H. (2015). Datenbericht Betreuungsgeld: Auswertung amtlicher Daten und der Kifög-Länderstudien aus den Jahren 2013/2014/2015 – Abschlussbericht.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
- Anttonen, Anneli, Liisa Häikiö, Kolbeinn Stefánsson and Jorma Sipilä. (2012). Universalism and the Challenge of Diversity. In A. Anttonen, L. Häikiö, & K. Stefánsson (Eds.), *Welfare State. Universalism and Diversity*. (pp. 1-15). Cheltenham, UK: Edward Elgar.
- Asakawa, S., & Sasaki, M. (2020). Can childcare benefits increase maternal employment? Evidence from childcare benefits policy in Japan. IZA Discussion Paper, 13589.
- Bach, S. (2024). Kindergeld oder Kinderfreibetrag?. *Wirtschaftsdienst*, 104(2), 70-71. <https://doi.org/10.2478/wd-2024-0021>
- Becker, I. & Hauser, R. (2008). Vom Kinderzuschlag zum Kindergeldzuschlag: ein Reformvorschlag zur Bekämpfung von Kinderarmut. SOEPpapers on Multidisciplinary Panel Data Research, 87.
- Béland, D., & Lecours, A. (2018). Federalism, policy change, and social security in Belgium: Explaining the decentralization of family allowances in the Sixth State Reform.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8(1), 55-69.
- Bertram, H., & Bujard, M., (2012). Zur Zukunft der Familienpolitik. *Zeit*,

- Geld, Infrastruktur: zur Zukunft der Familienpolitik. Special Issue Soziale Welt, 19, 3-24.
- Bertram, H., & Deuffhard, C. (2013). Das einkommensabhängige Elterngeld als Element einer nachhaltigen Familienpolitik (The parental allowance as an element of a sustainable family policy). *Journal of Family Research*, 25(2), 154-172. <https://doi.org/10.20377/jfr-151>
- Blomqvist, P., & Palme, J. (2020).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The Swedish case beyond 1990. *Social Inclusion*, 8(1), 114-123. <https://doi.org/10.17645/si.v8i1.2511>
- Blundell, R., & MaCurdy, T. (1999). Labor supply: A review of alternative approaches. In O. Ashenfelter & 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pp. 1559-1695). New York: Elsevier. [https://doi.org/10.1016/S1573-4463\(99\)03008-4](https://doi.org/10.1016/S1573-4463(99)03008-4)
- Böhmer, M., Matuschke, M., & Zweers, U. (2008). Dossier: Kindergeld in Deutschland-Familien wirksam fördern. Basel,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Chłóń-Domińczak, A. (2022), Poland: New tax benefit solutions improve incomes of families, ESPN Flash Report 2022/53,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ESPN),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Folkesson, M. (2023. 4. 13). 300 000 kronor dyrare att ha barn på två år. *Dagens Nyheter*. <https://www.dn.se/ekonomi/300-000-kronor-dyrare-att-ha-barn-pa-tva-ar>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06). Familie zwischen Flexibilität und Verlässlichkeit: Perspektiven für eine lebenslaufbezogene Familienpolitik. Siebter Familienbericht. Baden-Baden: BMFSFJ.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13). Informationen zum Betreuungsgeld.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1), Gute-KiTa-Bericht 2021.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4). Familienreport 2024. Berlin: BMFSFJ.
- Björklund, A. (2006).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Lessons from Swede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9, 3-24.
- Björklund, J. & Kristersson, U. (2013). Utbetalning av barnbidrag och flerbarnstillägg. Regeringens Proposition 2013/14:6. Stockholm: Socialdepartementet.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proposition/utbetalning-av-barnbidrag-och-flerbarnstillagg\\_h1036/](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proposition/utbetalning-av-barnbidrag-och-flerbarnstillagg_h1036/)
- Blomqvist, P. (2004). The choice revolution: Privatization of Swedish welfare services in the 1990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8(2), 139-155.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1). Datenreport 2021: Ein Sozialbericht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bpb.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023). Datensammlung zur Steuerpolitik.
- Cantillon, B., & Verbist, G. (1995). Belgium: Issues Concerning the Family in 1995. In J. Ditch, H. Barnes, & J. Bradshaw (eds), *Developments in National Family Policies in 1995. European Observatory on National Family Policies*. European Commission.
- Currie, J. & Gahvari, F. (2007). Transfers in Cash and In Kind: Theory Meets the Data. NBER Working Papers, 13557. <http://www.nber.org/papers/w13557>.
- Daly, M., & Ferragina, E. (2018). Family policy in high-income countries: Five decades of developmen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8(3), 255-270.
- Davis, A., Hirsch, D., Padley, M., & Shepherd, C. (2021). A Minimum Income Standard for the United Kingdom in 2021.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Doepke, M., Hannusch, A., Kindermann, F., & Tertilt, M. (2023). The economics of fertility: A new era. I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the Family* (Vol. 1, No. 1, pp. 151-254). North-Holland.

- Ellingsæter, A. L. (2014). Nordic earner-carer models-why stabi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Social Policy*, 43(3), 555-574.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2029 Edition*. Eurydic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Familienkasse. (2024a). Merkblatt Kindergeld.
- Familienkasse. (2024b). Merkblatt Kinderzuschlag.
- Folkessoon, M. (2023, April 13). 300 000 kronor dyrare att ha barn på två år. *Dagens Nyheter*. <https://www.dn.se/ekonomi/300-000-kronor-dyrare-att-ha-barn-pa-tva-ar>
- Folkessoon, M. (2023. 4. 13). 300 000 kronor dyrare att ha barn på två år. *Dagens Nyheter*. <https://www.dn.se/ekonomi/300-000-kronor-dyrare-att-ha-barn-pa-tva-ar>
- Försäkringskassan. (2005) Utredning om könsneutralt och delat barnbidrag.
- Försäkringskassan. (2020) Barn- och familjeersättningar har stor betydelse för ekonomin i låginkomstfamiljer. *Korta analyser 2020:1*.
- Försäkringskassan. (2023a). Flerbarnstillägget har störst betydelse för familjer med många barn. *Korta analyser 2023:2*. Försäkringskassan Analysavdelningen.
- Försäkringskassan. (2023b). *Socialförsäkringen i siffror 2023*. Stockholm.
- Förster, M., & Verbist, G. (2012). Money or kindergarten? Distributive effects of cash versus in-kind family transfers for young childr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35. Paris: OECD.
- Fusulier, B. & Mortelmans, D. (2021). Belgium country note. In A.

- Koslowski, S. Blum, I. Dobrotić, G. Kaufman & P. Moss (Eds.),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21*. Available at: <https://www.leavenetwork.org/annual-review-reports/>
- Gerlach, I. (2010). Familienpolitik,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Germany, Berlin: Springer.
- Gilbert, N., & Terrell, P. (2007). 사회복지정책론: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남찬섭, 유태균, 공역). 서울: 나눔의 집.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Goldschmidt, P. (1936). Family Allowances in Belgium. *International Labour Review*, 34, 220.
- Goldstein, J., Koulovatianos, C., Li, J., & Schröder, C. (2017). Evaluating how child allowances and daycare subsidies affect fertility. CFS Working Paper Series, 568. Retrieved from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155334/1/880726970.pdf>.
- Gornick, J. C., & Meyers, M. K. (2009). Gender Equality: Transforming Family Divisions of Labor. In E. O. Wright (Ed.), *Real Utopias Project* (Vol. VI, pp. 3-66). London, UK: Verso.
- Huebener, M., Müller, K. U., Spieß, C. K., & Wrohlich, K. (2016). Zehn Jahre Elterngeld: Eine wichtige familienpolitische Maßnahme. *DIW-Wochenbericht*, 83(49), 1159-1166.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1946). *Legislative Series 1944*. Montreal: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1950). *Legislative Series 1948*. Geneva: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1973). *Legislative Series 1971*. Geneva: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1986). *Legislative Series 1985*. Geneva: ILO.
- Inspektionen för Socialförsäkringen (ISF). (2016). Delat barnbidrag: Ett steg på vägen mot ökad jämställdhet?. Rapport 2016-15. Stockholm: ISF.

- Neyer, G. (2013). Welfare states,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Europe. In *The demography of Europe* (pp. 29-53). Springer, Dordrecht.
- Jamin, C., Perrin, N., Guillaume, J. F., Verjans, P., & Martiniello, M. (2005). Politiques publiques en matière d'enfance et de jeunesse au XXème siècle en Belgique et en Communauté française. Recherche commanditée par l'Observatoire de l'enfance, de la jeunesse et de l'aide à la jeunesse et placée sous la direction scientifique de Jean-François Guillaume, Université de Liège, Institut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Liège (Belgique).
- Kaufmann, F. X. (1995). Zukunft der Familie im vereinten Deutschland: Gesellschaftliche und politische Bedingungen [The future of the family in the united Germany: Societal and political conditions] (Vol. 16). Munich: C. H. Beck.
- Knijin, T. & Kremer, M. (1997). Gender and the caring dimension of welfare states: toward inclusive citizenship.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4(3), 328-361.
- Klüsener, S., Neels, K., & Kreyenfeld, M. (2013). Family policies and the Western European fertility divide: Insights from a natural experiment in Belg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9(4), 587-610.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
- Kunglig Majestät (1937). Kungl. Maj:ts proposition nr 276 till riksdagen med förslag till lag om barnbidrag, m. m.; given Stockholms slott den 19 mars 1937.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proposition/kungl.-majts-proposition-nr-276\\_dy30276/](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proposition/kungl.-majts-proposition-nr-276_dy30276/)
- Kunglig Majestät. (1947). Kungl. Maj:ts proposition nr 220 till riksdagen med förslag till lag om allmänna barnbidrag, m. m.; given Stock

holms slott den 11 april 1947.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proposition/kungl.-majts-proposition-nr-220\\_e830220/html/](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proposition/kungl.-majts-proposition-nr-220_e830220/html/)

Laroque, G., & Salanié, B. (2003). Fertility and financial incentives in France. *CESifo Economic Studies*, 50(3), 423-450. <https://doi.org/10.1093/cesifo/50.3.423>

Leitner, S. (2003).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5(4), 353-375. <https://doi.org/10.1080/1461669032000127642>

Leitner, S. (2005). Conservative familialism reconsidered: The case of Belgium. *Acta Politica*, 40, 419-439.

Lemmer, J. (2015). Kindergeld und Kinderfreibetrag\_Funktionsweise, Entlastungswirkung und aktueller Handlungsbedarf. *DSi kompakt*, 16.

Lepperhoff, J. (2014). Familienpolitik in Deutschland. *Zeszyty Pracy Socjalnej*, 19(2), 55-63.

Lundqvist, Å. (2011). Family policy paradoxes: Gender equality and labour market regulation in Sweden, 1930-2010. Bristol University Press, Policy Press. <https://doi.org/10.2307/j.ctt9qgqx7>

Lundqvist, Å. (2013). Regulating the family in times of economic crisis: Sweden in the 1930s and the 1990s. In M. Benner (Ed.), *Before and beyo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Economics, politics and settlement* (pp. 112-131). Cheltenham: Edward Elgar. doi:10.4337/9781781952016.00014

Magda, I., Kiełczewska, A., & Brandt, N. (2020). The effect of child benefit on female labor supply. *IZA Journal of Labor Policy*, 10(1), 10-17.

Marx, I., & Verbist, G. (2008). When familialism fails: the nature and causes of in-work poverty in Belgium. In H.-J. Andreß & H. Lohman (Eds.), *The Working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pp. 77-95). Cheltenham, UK: Edward Elgar.

Milovanska-Farrington, S. (2022). The effect of child benefits on

- financial difficulties and spending habits: evidence from Poland's Family 500+ program. *International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19(4), 719-739.
- Morel, Nathalie. (2007). From subsidiarity to 'free choice': Child-and elder-care policy reforms in France,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1(6), 618-647.
- Motiejunaite-Schulmeister, A., Balcon, M. P., & de Coster, I. (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2019 Edition. Eurydice Report.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uropean Commission.
- Neyer, G. (2013). Welfare states,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Europe. In G. Neyer, G. Andersson, H. Kulu, L. Bernardi, & C. Bühler (Eds.). *The demography of Europe* (pp. 29-53).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 Nyberg, A. (2004). Parental leave, public childcare and the dual earner/dual carer-model in Sweden. Discussion paper for Swedish National Institute for Working Life.
- Ohlander, A.-S. (2012). The invisible child? The struggle for a Social democratic family policy in Sweden, 1900-1960s. In G. Bock & P. Thane (Eds.). *Maternity and Gender Policies: Women and the Rise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1880s-1950s* (pp. 60-72). London: Routledge.
- Österbacka, E., & Räsänen, T. (2022). Back to work or stay at home? Family policies and maternal employment in Finland.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5(3), 1071-1101.
- Paradowski, P. R., Wolszczak-Derlacz, J., & Sierminska, E. (2020). Inequality, poverty and child benefit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LIS Working Paper Series, 799. Esch-sur-Alzette/Belval: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 Parent, D., & Wang, L. (2007).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in Canada: Quantum vs tempo effect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 Revue canadienne d'économique, 40(2), 371-400.
- Pfau-Effinger, B. (2005). Welfare state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care arrangements. *European Societies*, 7(2), 321-347.
- Rainer, H., Bauernschuster, S., Danzer, N., Hener, T., Holzner, C., & Reinkowski, J. (2012). *Kindergeld*. München, Germany: ifo Forschungsberichte.
- Regeringen. (1976). Regeringens proposition 1975/76: 170 om ändring i föräldrabalken, m. m.; beslutad den 11 mars 1976. <https://lagen.nu/prop/1975/76:170>
- Rekord i bidragsfusk bland utlandssvenskar. (2024. 3. 18). Dagens Nyheter. <https://www.dn.se/ekonomi/rekord-i-bidragsfusk-bland-utlandssvenskar/>
- Richardson, J. H. (1924). The family allowance system. *The Economic Journal*, 34(135), 373-386.
- Riksförsäkringsverket. (2000). Delat barnbidrag. RFV analyserar, 3, 1454-1650. Stockholm: Riksförsäkringsverket.
- Rizzi, E. L., Rees, A., & Decoster, C. (2021). Belgian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hat works and what is missing. *Document de Travail*, 23, 1-51.
- Roman, C. (2008). Academic discourse, social policy and the construction of new families. In K. Melby, A.-B. Ravn, & C. Carlsson Wetterberg (Eds.), *Gender equality and Welfare politics in Scandinavia: The limits of political Ambition* (pp. 101-116). Bristol, UK: Policy Press.
- Rowe, G., Wright, G., & Bolger, F. (1991). Delphi: a reevaluation of research and theor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9(3), 235-251.
- Sainsbury, D.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les, A. (2020). *Familienpolitik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im Vergleich. ifb-Familienreport Bayern 2020* (pp. 126-154). Staatsinstitut

- für Familienforschung an der Universität Bamberg. hal-03098464.
- Skocpol, T. (1991).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Politically Viable Policies to Comba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In C. Jencks & P. E. Peterson (Eds.), *The Urban Underclass* (pp. 411-436).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 Socialdepartementet. (1946) Betänkande om barnkostnadernas fördelning med förslag angående allmänna barnbidrag m.m.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1954: 4). <https://lagen.nu/sou/1954:4>
- Socialdepartementet. (1954). Moderskapsförsäkring m.m. Betänkande 2 av Socialförsäkringsutredningen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1954: 4). <https://lagen.nu/sou/1954:4>
- Socialdepartementet. (2011). Fortsatt föräldrar – om ansvar, ekonomi och samarbete för barnets skull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2011: 51).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statens-offentliga-utredningar/2011/06/sou-201151/>
- Socialstyrelsen. (1937). Lönestatistisk årsbok för Sverige 1937. Löner, Löner privat sektor, Lönestatistisk årsbok för Sverige (SOS) 1929-1951. <https://www.scb.se/hitta-statistik/aldre-statistik/innehall/sveriges-officiella-statistik-sos/loner-19292003/lonestatistisk-arsbok-for-sverige.-19291951>
- Susswein, E. (1948). Family allowances in Belgium. *Population Studies*, 2(3), 278-291.
- Thévenon, O. (2016). The influence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France: Lessons from the past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In R. R. Rindfuss & M. k. Choe (Eds.), *Low Fertility, Institutions, and their Policies: Variations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pp. 49-76). Berlin: Springer.
- Teodoru, I. R., & Vermeulen, M. R. (2023). Spending Efficiency and Reforms: France. (Selected Issues Paper No. 14, pp. 2-2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Trebilcock, M. J., & Daniels, R. J. (2009). 복지국가와 바우처 [Rethinking the welfare state: The prospects for government by voucher] (장

- 승옥, 지은구, 김은정, 공역), 학지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Van Lancker, A., Aranguiz, A., & Verschueren, H. (2020). Expert study on a binding EU framework on adequate national minimum income schemes: Making the case for an EU framework directive on minimum income. Study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Anti-Poverty Network (EAPN). Brussels: EAPN Europe.
- Vinck, J. & Van Lancker, W. (2024). Het Groeipakket inzetten in de strijd tegen kinderarmoede, Sociaal Beleidsbrieven, 2024-02, Leuven: ReSPOND.
- Vinck, J. en Van Lancker, W. (2024). Het Groeipakket inzetten in de strijd tegen kinderarmoede, Sociaal Beleidsbrieven 2024-02, ReSPOND: Leuven.
- Waggaman, M. T. (1926). *Family Allowances in Foreign Countries*. (Bulletin of the 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 40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 Waggaman, M. T. (1943). Family allowances in various countries (Bulletin of the 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ulletin No. 75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 Waggaman, M. T. (1946). Family Allowances in Various Countries 1944-45. (Bulletin of the 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 85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24.).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 1. 5.). 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8. 19.).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8. 30.).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통계청 보도자료. (2022. 12. 21.),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도자료. (2022 5. 20.). 필요한 시간에 아이 맡기는 시간제 보육반 89개 확대 운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도자료. (2023. 4. 11.). 자녀 양육 지원 ‘첫만남이용권’ 사업 1년, 만족도 높아-첫만남이용권 1년간 30만3천만 명에게 6072억 원 바우처 지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도자료. (2023. 5. 30.). 필요한 시간에 아이 맡기는 시간제 보육반 89개 확대.

#### 【국내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_s\\_seq=20241000314](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_s_seq=20241000314) (2024. 10. 30. 인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2023. 3. 3 인출)
-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14-3-13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현황 I(산정구간).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2024. 2. 26 인출).
-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총괄).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2024. 2. 26 인출).
- 근로소득.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2024. 2. 26 인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684> (2024. 2. 20. 인출).
- CPI 소비자물가지수, <https://www.kostat.go.kr/mondyValueCalc.es?mid=b70302000000> (2024. 5. 31. 인출)

아동수당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B%8F%99%EC%88%98%EB%8B%B9%EB%B2%95#undefined> (2024. 2. 26.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front/biz/stts> (2024. 5. 27. 인출).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undefined> (2024. 2. 26. 인출).

e-나라지표. 기준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24. 9. 18. 인출)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23. 11. 22. 인출).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 (2024. 9. 18. 인출)

통계청 KOSIS. 장래가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4. 인출)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2024. 9. 9. 인출)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4. 9. 18.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4.do> (2024. 5. 29. 인출).

### 【해외 참고 사이트】

alcimed 홈페이지. <https://www.alcimed.com/en/insights/lfss-french-social-security-financing-act/> (2024. 6. 7. 인출).

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2024. 6. 6. 인출).

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2024. 6. 30. 인출).

CLEISS 홈페이지.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 (2024. 6. 3. 인출).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13&langId=en&intPageId=4574> (2024. 7. 15. 인출).

코펜하겐 정부 홈페이지. <https://www.kk.dk/borger/pasning-og-skole/pasning-0-6-aar/private-tilbud-om-pasning/tilskud-til-pasning-af-egget-barn#:~:text=Du%20kan%20f%C3%A5%207.431%20kroner,Tilskuddet%20er%20bagudbetalt.> (2024. 7. 15. 인출)

노르웨이 노동·복지청 홈페이지 <https://www.nav.no/barnetrygd> (2024. 7. 1. 인출)

노르웨이 노동·복지청 홈페이지 <https://www.nav.no/kontantstotte#hvor-lenge> (2024. 7. 15. 인출).

노르웨이 노동·복지청 홈페이지. <https://www.nav.no/kontantstotte.> (2024. 7. 15. 인출).

노르웨이 법률 정보 포털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2-03-08-4/KAPITTEL\\_4#KAPITTEL\\_4](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2-03-08-4/KAPITTEL_4#KAPITTEL_4) (2024. 7. 1. 인출)

덴마크 정부 포털. <https://www.borger.dk/familie-og-boern/Familieydelse-oversigt/Boerne-ungeydelse> (2024. 7. 7. 인출)

독일 Familien portal.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steuerentlastungen/was-sind-freibetraege-fuer-kinder-->

125198 (2024. 7. 1. 인출).

독일 Sozialpolitik-aktuell.de.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Familienpolitik/Datensammlung/PDF-Dateien/abbVII99.pdf](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Familienpolitik/Datensammlung/PDF-Dateien/abbVII99.pdf) (2024. 5. 13. 인출).

독일 Sozialpolitik-aktuell.de.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nanzierung-datensammlung.html\\_Einkommensteuer\\_und\\_Familienleistungsausgleich,\\_Eckwerte\\_2005\\_-\\_2024.pdf](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nanzierung-datensammlung.html_Einkommensteuer_und_Familienleistungsausgleich,_Eckwerte_2005_-_2024.pdf). (2024. 5. 10. 인출).

독일 시민수당 홈페이지. <https://www.buergergeld.org/kindergeld/> (2024. 5. 16. 인출).

독일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s://www.kindergeld.org/> (2024. 5. 10. 인출).

독일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s://www.kindergeld.org/> (2024. 5. 10. 인출); Familienkasse(2024a). Merkblatt Kindergeld.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zweites-gesetz-zur-weiterentwicklung-der-qualitaet-und-zur-teilhabe-in-der-kindertagesbetreuung-kita-qualitaetsgesetz-201142> (2024. 5. 2. 인출).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kindergrundsicherung/fragen-und-antworten-zur-kindergrundsicherung-230378> (2024. 5. 13. 인출).

독일 연방 정부 홈페이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ntlastung-fuer-deutschland/unterstuetzung-fuer-familien-2125014> (2024. 5. 10. 인출).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die-neue-kindergrundsicherung-eine-leistung-fuer-alle-kinder-228230> (2024. 5. 13. 인출).

독일 연방 정부 홈페이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ntlastung-fuer-deutschland/buergergeld-2125010>, 2024. 5. 16. 인출).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zweites-gesetz-zur-weiterentwicklung-der-qualitaet-und-zur-teilhabe-in-der-kindertagesbetreuung-kita-q>

- ualitaetsgesetz—201142 (2024. 5. 2. 인출).
- 독일 Sozialpolitik-aktuell.de.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nanzierung-datensammlung.html\\_Einkommensteuer und Familienleistungsausgleich, Eckwerte 2005-2024.pdf](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nanzierung-datensammlung.html_Einkommensteuer_und_Familienleistungsausgleich,_Eckwerte_2005-2024.pdf). (2024. 5. 10. 인출)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 독일 연방 정부 홈페이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ntlastung-fuer-deutschland/buergergeld-2125010> (2024. 5. 16. 인출).
- 독일 시민수당 홈페이지. <https://www.buergergeld.org/kindergeld/> (2024. 5. 16. 인출).
- 독일 Sozialpolitik-aktuell.de.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Familienpolitik/Datensammlung/PDF-Dateien/abbVII99.pdf](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Familienpolitik/Datensammlung/PDF-Dateien/abbVII99.pdf) (2024. 5. 13. 인출).
-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Soziales/Elterngeld/Tabellen/empfaenger-ausgaben.html> (2024. 5. 10. 인출).
- 벨기에 플란데런 Groeipakket. <https://www.groeipakket.be> (2024. 7. 1. 인출).
- 벨기에 왈로니 AVIQ. <https://aviqkid.aviq.be/Pages/regulations/decret-relatif-gestion-et-au-paiement-des-prestions-familiales-4.aspx> (2024. 7. 1. 인출).
- 벨기에 왈로니 AVIQ. <https://aviqkid.aviq.be> (2024. 7. 1. 인출).
- 벨기에 재무부 홈페이지. <https://finance.belgium.be/> 1) Children | FPS Finance (belgium.be) 2) Terms & Conditions | FPS Finance (belgium.be) 3) Tax rates | FOD Financiën (belgium.be) 4) Jonger dan 3 jaar | FOD Financiën (belgium.be) (2024. 7. 15. 인출).
- 벨기에 플란데런 Groeipakket. <https://www.groeipakket.be> (2024. 7. 1. 인출)
- 벨기에 플란데런 Groeipakket. <https://www.groeipakket.be/en/compensations-groeipakket/moving-to-flanders> (2024. 7. 1. 인출),
- 벨기에 플란데런 아동수당 기관 홈페이지, [https://www.kidslife.be/en/key-moments/co-parenting?\\_gl=1\\*1joe2p\\*\\_up\\*MQ.\\*\\_ga\\*MjA4Nzk2NjQ3Mi4xNzIwOTI3NDg1\\*\\_ga\\_KQKZ95D672\\*MTcyMDkyNzQ4NS4xLj](https://www.kidslife.be/en/key-moments/co-parenting?_gl=1*1joe2p*_up*MQ.*_ga*MjA4Nzk2NjQ3Mi4xNzIwOTI3NDg1*_ga_KQKZ95D672*MTcyMDkyNzQ4NS4xLj)

- EuMTcyMDkyNzQ5MS4wLjAuMA (2024. 7. 14. 인출).
- 벨기에 사회보장 웹사이트. <https://www.socialsecurity.be/citizen/fr/conges-credit-temps-et-interruption-de-carriere>. (2024. 7. 1. 인출).
- 벨기에 왈로니 AVIQ. <https://www.aviq.be/fr/allocations-familiales/caisse-et-affiliation/caisses-dallocation> (2024. 6. 5. 인출).
- 비영리단체 TASZ. <https://tasz.hu/tudastar/csaladtamogatasi-ellatasok/#section-65b3cd479b21f> (2024. 7. 15. 인출).
- 스웨덴 국회 홈페이지.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motion/behovsprova-barnbidraget\\_h8021988/](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motion/behovsprova-barnbidraget_h8021988/),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motion/behovsprovat-barnbidrag\\_hb02532/](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motion/behovsprovat-barnbidrag_hb02532/) (2024. 6. 7. 인출).
- 스웨덴 국회홈페이지.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socialforsakringsbalk-201010\\_sfs-2010-110/](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socialforsakringsbalk-201010_sfs-2010-110/) (2024. 6. 7. 인출).
-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 (2024. 7. 1. 인출).
- 스웨덴 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publikationer.konsumentverket.se/privatkonomi/beraknade-hushallskostnader> (2024. 6. 7. 인출).
- 스웨덴 중앙은행 홈페이지. <https://www.swedbank.se/privat/livet/familj/ekonomens-tips-till-blivande-foraldrar.html> (2024. 6. 7. 인출).
- 스웨덴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6/regeringen-bjuder-in-till-presstraff-om-bidragssystemet> (2024. 6. 7. 인출).
- 스웨덴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6/regeringen-ger-utredare-i-uppdrag-att-ta-fram-bidragstak> (2024. 6. 7. 인출).
- 영국 정부 정보 포털. <https://www.gov.uk/child-benefit> (2024. 7. 1.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5. 3.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

- FAMILY. (2024. 5. 3. 인출).
- OECD. (2019). Family Database-PF1.3: Family cash benefit.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 OECD. (2022). Family Database-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 OECD. (2023a). Family Database-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 OECD. (2023b). Family Database-PF3.2: Enrol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 OECD Data Explorer. [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earnings/gross-earnings-decile-ratios\\_data-00302-en?parent=http%3A%2F%2Finstance.metastore.ingenta.com%2Fcontent%2Fcollection%2Fifs-data-en](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earnings/gross-earnings-decile-ratios_data-00302-en?parent=http%3A%2F%2Finstance.metastore.ingenta.com%2Fcontent%2Fcollection%2Fifs-data-en) (2024. 9. 18. 인출).
- OECD. (2023c). Family Database-LMF1.2: Maternal employment rate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 OECD. (2023d). Family Database-PF2.1 Fertility rate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4. 23.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_ 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2024. 3. 28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4. 5. 3. 인출).
- OECD family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2024. 5. 3. 인출).
- ONEM 공식 홈페이지. <https://www.onem.be/page/breakwork-travailleurs-1> (2024. 6. 5. 인출).
-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실 홈페이지. <https://www.bundeskanzleramt.gv.at/agenda/familie/familienbeihilfe/basisinformation-zur-familienbeihilfe>

e/familienbeihilfenbeträge.html (2024. 7. 1. 인출).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실 홈페이지. <https://www.bundeskanzleramt.gv.at/en/agenda/family/family-benefits/family-allowance-and-tax-credit-for-children.html> (2024. 7. 1. 인출)

오스트리아 재무부 홈페이지. <https://www.bmf.gv.at/themen/steuern/arbeitsnehmerinnenveranlagung/steuertarif-steuerabsetzbeträge/alleinverdiener-alleinerzieher-absetzbetrag.html> (2024. 7. 15. 인출).

오스트리아 USP. <https://www.usp.gv.at/themen/steuern-finanzen/einkommensteuer-ueberblick/weitere-informationen-est/steuerabsetzbeträge.html>. (2024. 7. 1. 인출).

이스라엘 국가보험 홈페이지. <https://www.btl.gov.il/English%20Homepage/Benefits/Children/Pages/Conditions.aspx> (2024. 7. 1. 인출).

이스라엘 국가보험 홈페이지. <https://www.btl.gov.il/English%20Homepage/Benefits/Children/Pages/Rates%20of%20child%20allowance.aspx> (2024. 7. 1. 인출).

이스라엘 비영리단체 Nefesh B'Nefesh. <https://www.nbn.org.il/life-in-israel/government-services/rights-and-benefits/monthly-child-benefits-from-bituach-leumi> (2024. 7. 1. 인출).

이스라엘 정부 홈페이지. [www.gov.il](http://www.gov.il). Tax Benefits Guide for Parents with Young Children Israel Tax Authority (2024. 7. 15. 인출).

유럽연합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02&langId=en&intPageId=4415>. (2024. 7. 1. 인출)

폴란드 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gov.pl/web/rodzina/co-robimy-wsparcie-dla-rodzin-z-dziecmi> (2024. 7. 1. 인출)

폴란드 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gov.pl/web/rodzina/odpowiedzi-na-najczesciej-zadawane-pytania2> (2024. 7. 1. 인출)

폴란드 정부 세금 포털. <https://www.podatki.gov.pl/>. Ulga dla rodzin 4+ (podatki.gov.pl) (2024. 7. 15. 인출).

폴란드 세금 관련 정보 사이트. <https://www.pit.pl/>. Ulga prorodzinna - ulga na dzieci - PITy roczne 2023/2024 - PIT.pl - PIT.pl (2024. 7. 15. 인출).

-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qui> (2024. 5. 31. 인출).
-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omplement-familial/> (2024. 5. 31. 인출).
-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la-prime-a-la-naissance-et-adoption-caf/> (2024. 5. 31. 인출).
-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m-g-caf/> (2024. 6. 5. 인출).
-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qui> (2024. 5. 31. 인출).
-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allocation-bas-e-caf/> (2024. 6. 5. 인출).
-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m-g-caf/> (2024. 6. 5. 인출).
- 프랑스 가족수당기금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e-complement-de-libre-choix-du-mode-de-garde-cmg> (2024. 7. 15. 인출).
- 프랑스 가족수당기금 홈페이지.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es-allocations-familiales-af> (2024. 6. 28. 인출).
- 프랑스 경제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quotient-familial#> (2024. 7. 15. 인출).
- 프랑스 사회보장 정보 웹사이트. <https://www.previs-sima.fr/dossier/quelle-remuneration-pour-un-conge-parental.html#prepare-pour-un-conge-parental-combien-gagne-t-on> (2024. 6. 11. 인출).
- 프랑스 세무청 홈페이지.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deductions-liees-la-famille#:~:text=Le%20montant%20de%20la%20r%C3%A9duction,une%20formation%20d'enseignement%20sup%C3%A9rieur> (2024. 7. 15. 인출).
- 프랑스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lannuaire.service-public.fr/gouvernement/b1e14803-6c0f-4e1d-9d38-c0a2dc6096a6> (2024. 6. 3. 인출).

프랑스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965?lang=en> (2024. 6. 7. 인출).

핀란드 사회보장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lapsilisa> (2024. 7. 1. 인출)

핀란드 사회보장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child-care-allowances> (2024. 7. 15. 인출).

호주 사회서비스부 정책 가이드. <https://guides.dss.gov.au/family-assistance-guide/3/1/1/60> (2024. 7. 1. 인출)

호주 서비스청 홈페이지.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who-can-get-family-tax-benefit?context=22151> (2024. 7. 7. 인출)

호주 서비스청 홈페이지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residence-rules-for-family-tax-benefit?context=22151> (2024. 7. 1. 인출)

헝가리 국고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allamkincstar.gov.hu/csaladok-tamogatasa/Csalad\\_gyermek/csaladi-potlek](https://www.allamkincstar.gov.hu/csaladok-tamogatasa/Csalad_gyermek/csaladi-potlek) (2024. 7. 1. 인출).

헝가리 정보 포털 사이트. <https://hazavaro.gov.hu/ugyleiras/csaladi-ado-es-jarulekkedvezmeny> (2024. 7. 15. 인출).

헝가리 정부 홈페이지. <https://nav.gov.hu/ado/szja/szja-kedvezmenyek-2023/csaladi-kedvezmeny> (2024. 7. 15. 인출).

### **【해외 뉴스기사】**

Coumans(2024. 4. 29). Kinderbijslag mag niet afhangen van het inkomen. De Standaard. [https://www.standaard.be/cnt/dmf20240428\\_95979975](https://www.standaard.be/cnt/dmf20240428_95979975) (2024. 6. 5. 인출).

dvv(2023. 5. 7). CD&V-voorzitter Sammy Mahdi: ‘We stappen niet in volgende Vlaamse regering zonder indexering kinderbijslag’. De Standaard. [https://www.standaard.be/cnt/dmf20230507\\_93986310](https://www.standaard.be/cnt/dmf20230507_93986310) (2024. 6. 5. 인출).

Struys, J.(2023. 10. 27). PVDA: ‘Besparing groeipakket kostte gezin tot 1.500 euro’. De Standaard. [https://www.standaard.be/cnt/dmf20230926\\_97312542](https://www.standaard.be/cnt/dmf20230926_97312542) (2024. 6. 5. 인출).

TT Nyhetsbyrån (2024. 3. 18). Rekord i bidragsfusk bland utlandssvensk

ar. Dagens Nyheter. <https://www.dn.se/ekonomi/rekord-i-bidrag-sfuskbland-utlandssvenskar> (2024. 6. 7. 인출).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21호]

아동수당법[법률 제19455호]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0380호]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통계 원자료】**

15차 재정패널조사 데이터(2022년) 원자료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Cash Benefits for a Childcare Policy Roadmap

Eun Jung Park, Haemi Yoo, Hae Joo Cho, Yeon Jin Kim, Hyo Jin Seo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integrate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ash benefit systems targeting children and families within the context of childcare policies. In recent years, Korea has expanded its child-focused cash benefits, adding programs such as parental benefits, child allowances, and home care allowances. Home care allowances were introduced in 2009, followed by child allowances in 2018, and most recently, parental benefits in 2023, which now provide 1 million KRW per month for infants under one year old. Given these developments, a comprehensive review is necessary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consistency of these programs, moving beyond expansion to create a cohesive cash benefit system for the long term.

The research included an analysis of child cash benefit systems in Korea and OECD countries to identify key issues and trends in international systems. Additionally, it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the systems in Germany, France, Belgium, and Sweden. This study included a Delphi survey of cash benefit policy experts and an analysis of user experiences and needs, focusing on drawing out core elements to determining policy scenarios.

Key insights from analyzing 19 OECD countries include a trend among these nations to provide family allowances averaging around 5% of the mean full-time worker's earnings. Moreover, most OECD countries provide child allowances with differentiated benefits, though the criteria

vary widely by country. Some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Belgium, offer supplementary allowances or tax benefits to support low-income families with children. Countries with home care allowances, including Denmark, Finland, Norway, France, and Hungary, typically provide benefits until children are two to three years old and often limit the duration to 7–12 months, with restrictions on working hours or use of child care services. Adjustments to allowance amounts are regularly made according to specific standards.

The Delphi survey revealed that, according to experts, the primary objective of child and parental cash benefits is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f parenting. Experts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hild allowances as a means to safeguard children's basic rights. A significant majority supported extending the age eligibility for child allowances to 18 years. Both experts and parents prioritized increasing the eligibility age and raising the monthly payment amounts.

This study proposed seven policy scenarios. In all scenarios, child allowances are provided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ith the monthly payment amount set at three options—adjusted for inflation, 200,000 KRW, or 300,000 KRW. Parental benefits remain unchanged, while home care allowances are maintained onl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or families in rural areas. The child tax credit is gradually reduced in correlation with eligibility for child allowances. Additionally, four supplementary scenarios introduce extra child allowances for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and additional allowances based on household income.

Simulation analyses of these scenarios indicated that the scenario providing a 300,000 KRW monthly child allowance was the most effective in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child-rearing, followed by scenarios with multi-child and income-adjusted supplements. Notably, the option with income-based differentiation showed the highest effectiveness in reducing the cost burden for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Among the scenarios, the 300,000 KRW child allowance scenario required the largest budget (25 trillion KRW), but a scenario with income-based

adjustments proved to be nearly as effective while requiring significantly less funding.

For a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approach, the study emphasizes legislative amend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system for managing income security for families. Recommended adjustments include a restructured child allowance framework, incorporating reforms to the existing child tax credit and child incentive programs. In the long term, it may be beneficial to phase out home care allowances for general populations while maintaining those for rural and disabled children until adequate public childc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re available nationwide. Additionally, the ongoing need to clarify the purpose of parental benefits remains, especially regarding their potential impact on public infant care services and alignment with parental leave policies. Strengthening public infant care services and supporting a cohesive parental leave policy are crucial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se proposed chang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se scenarios can guide policymakers in selecting the most suitable direction for Korea's family cash support programs based on national priorities for child welfare and family support.

Keyword: Child Allowances, Parental Benefits, Cash Benefit System, Policy Scenarios, Sustainability



---

# 부 록

---

- 01 전문가 델파이 조사 1차 질문지
- 02 전문가 델파이 조사 2차 질문지
- 03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고자료
- 04 집단별 FGI 질문지
- 05 OECD 주요국 자녀장려세제 지급액 및 지급요건
- 06 부표



##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1차 질문지

###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전문가 의견조사(1차)

<p>안녕하십니까?</p> <p>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p> <p>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의 통합적인 맥락에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p> <p>전문가 의견 조사는 2024년 5~7월 사이에 총 2차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조사는 1차 조사입니다.</p> <p>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시어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견을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5월</p>		
※ 응답방법	• 응답 시 설명 자료를 읽어보신 후 구체적으로 의견을 작성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응답기한	• <b>2024년 5월 20일(월) 오후 3시까지</b> 회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소요예상시간	• 30분 내외	
◆ 조사문의	에스티아이	02- @
◆ 연구진		



## 0. 응답자 일반사항

※ 귀하가 해당하는 보기 문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 ① 30대 이하
- ② 40대
- ③ 50대
- ④ 60대 이상

### 3. 귀하의 현재 소속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대학교
- ② 연구기관
- ③ 정부소속 기관
- ④ 기타( )

### 4. 귀하의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1개 응답)

- ① 아동학·가족학
- ② 사회복지학
- ③ 경제학
- ④ 사회학
- ⑤ 행정학
- ⑥ 기타( )

### 5. 귀하가 활동하고 계신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 )년 ( )개월

※ 아동 대상 현금급여에 대한 설명 자료를 읽어보신 후, 다음 질문에 응답해주시시오.



## I. 제도 일반

1. 아래에 제시된 각 아동 관련 현금급여 제도의 고유한 목적 및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주시고, 보기 외에 기타 의견은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고유 목적
1) 아동수당	①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②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③ 출산율 제고 ④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⑤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⑥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⑦ 기타(적어주세요: )
2) 부모급여	①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②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③ 출산율 제고 ④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⑤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⑥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⑦ 기타(적어주세요: )
3) 가정양육수당	①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②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③ 출산율 제고 ④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⑤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⑥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⑦ 기타(적어주세요: )



## II. 제도별 평가

2. 다음에 제시된 목적 실현을 위해 각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제도의 중요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해주시시오.

(※ 각 제도의 현행 지급수준에 상관없이 제도 간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응답  
해주시시오.)

### 2-1)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2-1-1)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  
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응답	이유
1) 아동수당	①	예) 아동 단위로 지급되므로 아동의 권리가 중요함
2) 부모급여	②	
3) 가정양육수당	③	

### 2-2)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2-2-1)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  
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응답	이유
1) 아동수당	①	
2) 부모급여	②	
3) 가정양육수당	③	

## 2-3) 출산을 제고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2-3-1) 출산을 제고 측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응답	이유
1) 아동수당	①	
2) 부모급여	②	
3) 가정양육수당	③	

## 2-4)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2-4-1)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응답	이유
1) 아동수당	①	
2) 부모급여	②	
3) 가정양육수당	③	

## 2-5)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2-5-1)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측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기술해주세요.

구분	응답	이유
1) 아동수당	①	
2) 부모급여	②	
3) 가정양육수당	③	

3. 다음에 제시된 각 제도 설계 측면에서 현행 기준으로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7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3-1) 지급대상 연령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3-1-1) (1~4를 응답한 경우) 지급대상 연령 측면에서 지원 수준의 적절성이 낮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예)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지급기간이 85개월까지만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3세 미만으로 축소 필요

3-1-2) (5~7을 응답한 경우) 지급대상 연령 측면에서 지원 수준의 적절성이 높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 3-2) 지급대상 적용 범위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등)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 3-2-1) (1~4를 응답한 경우) 지급대상 적용 범위 측면에서 지원 수준의 적절성이 낮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 3-2-2) (5~7을 응답한 경우) 지급대상 적용 범위 측면에서 지원 수준의 적절성이 높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 3-3) 지급액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 3-3-1) (1~4를 응답한 경우) 지급액 측면에서 지원 수준의 적절성이 낮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1) 아동수당	예) 도입 이후 지급액 상향이 없었음. 상향 조정 필요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3-3-2) (5~7을 응답한 경우) 지급액 측면에서 지원 수준의 적절성이 높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각 현금급여 제도의 현행 지급방식의 적절성을 7점 척도로 평가해주시요.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1) (1~4를 응답한 경우) 지급방식의 적절성이 낮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예)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혼합 지급하는 방식의 비효율성
3) 가정양육수당	

4-2) (5~7을 응답한 경우) 지급방식의 적절성이 높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5. 각 아동 관련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개편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편 필요성 정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해주시시오.

(※ 개편 필요성: 현행 지원 대상 및 수준, 지급방식 개편, 제도 폐지, 타 제도와 의 통합 등 전반을 포함하여 평가해주시시오.)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5-1 (5~7을 응답한 경우) 개편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 의견란에는 개별 제도 개편 외에 제도 통합이나 연계 방안 등 추가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이유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기타 의견	

6. 아동수당 제도 개편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개선안을 3 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

(※ 아래 항목 외에 3순위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개선안은 기타에 적으시고 순위를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우선순위
1) 지급 연령 확대	
2) 월 지급액 상향	
3)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4) 자녀수별 차등 지급	
5) 자녀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6) 한부모 가구 여부별 차등 지급	
7)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적용 등)	
8) 기타(적어주세요: )	



### Ⅲ. 정책 영향 요인

7. 중장기적인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할 정책적 환경 요인(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제도 기반 요인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부문에 정책 환경 요인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제시된 부문 이외에 고려가 필요한 부문이 있을 경우,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정책 환경 부문	정책 환경 요인	이유
1) 인구학적 변화	예) 아동수 감소	
2) 사회경제적 요인	예) 노동시장 변화	
3) 유관 양육지원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예)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 강화	
4) 국가재정 및 재원의 변화	예) 세수 감소	
5) 기타(적어주세요: )		

8. 아동 대상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할 유관 제도에 표시해주십시오. 고려해야할 유관 제도라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십시오.

(※ 제시된 유관 제도 이외에 고려가 필요한 제도가 있을 경우,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유관 제도		필요 여부	이유
1) 세제 지원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2) 첫만남 이용권			
3)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4) 아이돌봄서비스			
5) 일시보육(시간제 보육)			
6)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7) 육아휴직급여			
8) 출산전후휴가 급여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 지자체 출산지원금			
11) 기타(적어주세요: )			

9.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 외에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단,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등 특별지원 대상 현금급여가 아닌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2차 질문지

###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의 통합적인 맥락에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답해주신 전문가께 2차 의견조사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 2차 의견조사는 1차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시어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견을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4년 6월

※ 응답방법

- 응답 시 설명 자료를 읽어보신 후 구체적으로 의견을 작성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응답기한

- **2024년 7월 9일(화) 오후 3시까지** 회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소요예상시간

- 30분 내외

◆ 조사문의

에스티아이

02-  
@

◆ 연구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아동 대상 현금급여 및 유관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읽어보신 후, 다음 질문에 응답해주십시오.



## 1. 제도별 개편 방안

[문 1~3번은 아동수당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은 몇 세까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0세~만 8세 미만(현행)
- ② 만 0세~만 12세
- ③ 만 0세~만 15세
- ④ 만 0세~만 18세

### 2.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월 10만원 지급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아동수당 지급액 조정 방식 중에 가장 동의하는 안은 무엇입니까?

- ①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정액급여액 일시 상향 (☞ 2-1로 이동)  
(예시: 월 20만원, 월 30만원 등)
- ②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와 연동하여 상향 (☞ 2-5로 이동)  
(※ 2018년 1월에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1.153배: 100,000원 → 115,300원)
- ③ 평균 자녀 양육비 보전 비율을 적용하여 상향 (☞ 2-2로 이동)  
(※ 예시: 평균 자녀 양육비 100만원 중 20%, 아동수당 20만원 지급)
- ④ 현재 지급액에 매년 고정 상승률을 적용하여 상향 (☞ 2-3로 이동)  
(※ 예시: 매년 5% 상승 적용: 5% 적용(천원 단위) 시  
105,000원, 110,000원, 116,000원으로 상승)
- ⑤ 아동 최저생계비 산출 후 연동하여 상향 (☞ 2-5로 이동)
- ⑥ 이외에 다른 방안 제안 (☞ 2-4로 이동)
- ⑦ 현행 지급수준 유지 (☞ 2-5로 이동)

2-1) 현행과 같은 동일금액 지급방식을 유지한다면, 아동수당 지급액을 일시에 얼마로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5로 이동)

아동수당 지급액: _____ 만원
--------------------

2-2) 아동수당 지급액이 평균 자녀 양육비의 몇 %를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5로 이동)

평균 자녀 양육비 대비 _____ %
----------------------

2-3) 아동수당 지급액에 매년 몇 %의 고정 상승률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5로 이동)

연 고정 상승률 _____ %
------------------

2-4)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방안을 기술해주시시오. (☞ 2-5로 이동)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방안

2-5) 이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이유

3.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급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 개편 시 차등 지급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차등 적용 필요 (☞ 3-1로 이동)
- ② 모든 아동 동일 적용

**3-1) 다음 중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아동수당 차등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아동수당 지급액을 차등 지급  
(※ 예시: 아동수당 지급액을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② 대상별 추가급여 방식 적용  
(※ 예시: 저소득 추가아동수당 지급)
- ③ 두 방식을 혼용하여 모두 적용
-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3-1-1) 해당 차등 적용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이유

**3-2) 다음 중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아동수당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

- ① 연령별 차등 적용
- ② 자녀수별 차등 적용(출생순위별 차등 적용 포함)
- ③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3-2-1) 해당 차등 적용 기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이유	
응답번호	
응답번호	

[문 4번은 가정양육수당 개편 질문입니다.]

4. 가정양육수당 개편안으로 가장 동의하는 안은 무엇입니까?

- ① 가정양육수당 지급연령 축소  
(☞ 4-1로 이동)
- ② 가정양육수당 전면 폐지  
(☞ 4-2로 이동)
- ③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폐지하고, 특별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급  
(☞ 4-3로 이동)
- ④ 현행 가정양육수당 유지
- ⑤ 현행 가정양육수당 체계를 유지하고 가정양육수당 지급액 상향  
(☞ 4-4로 이동)

4-1)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은 몇 세까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급연령	이유

4-2) 가정양육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폐지 방식 예시: 기존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중지, 이후 출생아동에 대한 지원 중지, 다른 제도(부모급여, 아동수당 등)로 통합 등)

폐지 방식	이유

4-3) 특별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떤 대상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② 기관 이용이 어려운 아동(알려지 등 집단 보육이 어려운 아동 등)
- ③ 장애아를 돌보는 경우(보육시설 접근성이 낮은 경우 포함)
- ④ 기타(적어주세요:                    )

4-4) 가정양육수당 지급액을 얼마나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급액	이유

[문 5번은 부모급여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5. 현행 부모급여 제도의 지급방식을 개편한다면,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개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액 바우처 지급
- ② 전액 현금 지급(보육료 포함)
- ③ 전액 현금 지급(보육료 별도 지원)
-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 ⑤ 현행 지급방식 유지(현금+보육료 바우처)

5-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II. 통합적 개편 방안

1. 아7동 및 아동가구 대상 보편적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 시 우선해야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

(※ 1차 조사 결과 참조)

- ①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 ②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 ③ 출산율 제고
- ④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 ⑤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성장 및 발달 지원
- ⑥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1-1) 이 목적을 보편적 현금급여의 통합적 개편 시 우선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기술해주시시오.

구분	이유
1순위	
2순위	

2. 다음은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 개편 관련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1	2	3	4	5	6	7
1)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 개편							
2)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축소 및 폐지							
3) 종장기적으로 부모급여를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연계 지급							
4) 취약가구 아동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보다 대상별 아동수당 추가급여 확대							
5)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							

2-1) (4점 이하 응답한 경우) 이 항목에 동의정도가 낮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1)	
2)	
3)	
4)	
5)	

2-2) (5점 이상 응답한 경우) 이에 따라 현금급여를 개편할 때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고려 사항 및 이유
1)	
2)	
3)	
4)	
5)	

3.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18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자녀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후부터 공제 대상 적용)

- ①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후로 공제 대상 연령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폐지
- ②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공제액 단계적 축소
- ③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무관하게 자녀세액공제액 유지
- ④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무관하게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 ⑤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함께 아동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제도 폐지
-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응답번호	



### Ⅲ. 정책 영향 요인

1.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 개편 시 고려해야할 정책 환경 요인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을 3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

정책 환경 부문	정책 환경 요인	우선순위
인구학적 변화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피부양인구 증가	
	다문화 인구 증가	
	지방 소멸 및 지역 격차	
사회경제적 요인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경제 및 고용 불안정	
	산업구조 변화(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 영향	
	가구 및 가족 구조 변화	
	양육비용 증가	
유관 양육지원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변화	
	제도 간 통폐합 및 조정	
	서비스 인프라 부족	
	돌봄 지원 서비스 변화	
	세제 지원 제도 개선	
국가재정 및 재원의 변화	세수 감소 및 재원 부족	
	재정지출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 증가	
	국가 채무 증가	

2.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의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금급여 지급방식의 일원화
- ② 지급수준 상향
- ③ 제도 실시 목적의 명확화 및 홍보
- ④ 현금급여 지급 시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부모교육 등) 활성화
- ⑤ 기타(적어주세요: )

## 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유
응답번호	

## 3. 아동수당 제도를 확대할 경우, 다음에 제시된 유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관 제도	3-1) 개편 필요 여부		3-2) 개편이 필요한 사항 및 이유
	예 (☞ 3-2로 이동)	아니오 (☞ 4로 이동)	
자녀장려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육아휴직급여			
근로시간단축제도 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자체 출산지원금			
기타1(구체적으로: )			
기타2(구체적으로: )			
기타1(구체적으로: )			

## 4. 지금까지 응답하신 내용 외에 중장기적 육아정책 개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고자료

#### [아동가구 현금 지원(수당) 개요]

구분		내용
아동수당	근거법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	만 8세 미만 아동(2022년 4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급액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부모급여	근거법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대상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2024년 이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지급방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혼합 가정보육: 전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만0세: 월54만원(바우처)+월46만원(현금) 만1세: 월47.5만원(바우처)+월2.5만원(현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전액(바우처) 차액 발생 시 해당 금액 현금 지급

구분	내용		
가정 양육수당	근거법	<p>「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div>	
	지급대상	<p>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p>	
	지급액	양육수당	24~85개월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48~85개월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원 36~85개월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유관 제도 개요]

구분		내용		
자녀 세액공제	근거법	• 「소득세법」 제59조의2		
	공제대상	•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 8세 이상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		
	공제액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지급방식	• 세액 환급			
자녀 장려금	근거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 목적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li> <li>• 자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li> <li>• 자녀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li> <li>•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국적자와 혼인상태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li> </ul>		
	지급액	출별이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출별이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4천900분의 50]
지급액	맞별이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맞별이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 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4천500분의 50]	
지급방식	세액 환급			
첫만남 이용권	근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li> <li>•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li> </ul>		

구분		내용						
	지급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 바우처 지급(단,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						
	근거법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4조 • 「유아교육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보육료 지원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지급액	구분 (천원)	0세반 (24.1.1~)	1세반 (24.1.1~)	2세반 (24.1.1~)	3-5세반 (24.1.1~ 2.29)	3-5세반 (24.1.1~)	장애아 (24.1.1~)
		계	1,169	817	626	280	280	1,273
		부모 보육료	540	475	394	280	280,000	587
		기관 보육료	629	342	232	-	-	686
지급방식	• 보호자(결제권자)가 보육료 지원카드로 결제하면 영유아가 재원중인 어린이집으로 입금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지원	근거법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24조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서비스 대상 연령과 가구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li> <li>※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한 가구</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li> <li>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적용(예: 부모급여 혹은 양육수당과 중복지급안됨)</li> </ul>						
	지급액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구분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1,630원, [(시간제) 기본형11,630원, 종합형 15,110원], (질병감염아동) 13,950원, (기관연계) 18,600원                 </div>		
	지급방식	• 정부지원 신청 후 본인분담금만 결제 후 서비스 이용		
시간제 보육 비용지원	근거법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8조의2		
	지급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유아로, 부모가 근로 및 병원 이용 등의 사유로 시간제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액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지원율	정부지원 60%+본인부담 40%	
지급방식	• 바우처 지급(제공기관 운영비 계좌로 입금)			
육아휴직 급여	근거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급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지급액	•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지급방식	• 사업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후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근거법	• 「근로기준법」 제74조		
	지급대상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지급액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		
	지급방식	• 사업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후 지급		

## 부록 4. 집단별 FGI 질문지

### 심층면담 질문지(영아 부모)

- ※ 육아정책연구소의 2024년 기본과제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의 수행을 위한 심층면담 질문지입니다.
-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양육 일반 및 기관 이용

- 1) 귀하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 가정 내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경험(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사교육 기관 이용 여부

#### [어린이집 이용]

- 2) 귀하의 자녀는 언제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습니까?  
 2-1) 그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어린이집 미이용]

- 2a) 귀하는 자녀를 언제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실 계획입니까?  
 2a-1) 현재 가정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 3) 자녀양육 시 경험하시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1) 자녀 양육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 2. 아동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아동수당	근거법	「아동수당법」

구분		내용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2022년 4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급액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p>1) 귀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정부가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2)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2-1)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p> <p>3) 귀하는 아동수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만 8세 미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2) 아동수당의 지급액(월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1)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2-2) 아동수당 지급액을 정기적으로 상향하는 조정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양육비용 상승 반영 등)</p> <p>4) 아동수당을 개편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응답해주시시오. 4-1)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 <th colspan="4">↔</th> <th>매우 동의함</th> </tr> <tr>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r> </thead> <tbody> <tr> <td>1) 지급연령 확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 월 지급액 상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 연령별 차등 지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 자녀수별 차등 지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지급연령 확대						2) 월 지급액 상향						3) 연령별 차등 지급						4)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5) 자녀수별 차등 지급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지급연령 확대																																												
2) 월 지급액 상향																																												
3) 연령별 차등 지급																																												
4)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5) 자녀수별 차등 지급																																												

구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6) 한부모 가구 여부별 차등 지급					
7)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적용 등)					

5) 귀하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ex. 양육비 지출(식비, 교육비 등), 저축 등)

### 3. 부모급여: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부모 급여	근거법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지급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2024년 이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지급 방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혼합	
		가정보육	전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만0세: 월54만원(바우처)+월46만원(현금) 만1세: 월47.5만원(바우처)+월2.5만원(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전액(바우처) 차액 발생 시 해당 금액 현금 지급	

1) 귀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부모급여 0, 1세 지급액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급방식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계좌이체) 혼합 지급 방식)

1-2) 정부가 부모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부모급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부모급여가 자녀양육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1) 부모급여를 받으시면서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달라지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2) 부모급여 신청 및 변경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4) 귀하는 부모급여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부모급여의 지급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귀하는 부모급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또는 사용하고 계십니까?

**4. 가정양육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가정양육수당	근거법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지급대상	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양육수당	24~85개월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48~85개월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1)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정부가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양육수당 수급 경험자]**

2) 가정양육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이 가정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3)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 3-1)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수당 수급 간에 변경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변경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 3-2)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변경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 4)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4-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5)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다? 또는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정양육수당 미경험자]**

- 2a)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a-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a)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가정양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a-1)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급될 때 가정양육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5. 제도 전반 인식**

1) 각 제도가 양육 지원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1) 귀하가 양육지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2) 각 제도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1) 귀하가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양육지원 중 어떤 지원이 추가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1) 현금 지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 출산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3-2) 현금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면 추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배문 1. 귀하 및 귀하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응답을 적거나 번호를 선택하여 √ 표시해주세요.)

1) 연령	_____세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4년제 대학 졸 ④ 대학원 졸 이상		
4)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5) 고용형태	5-1) ① 취업 중                    ② 취업 중(육아휴직 중)                    ③ 미취업 (☞ 6)로 이동)		
	5-2)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자(고용주) ④ 1인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 ③, ④, ⑤ 응답자는 6)로 이동)		
	5-3)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5-4)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 _____명(본인 포함) (동거 중인 가족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그 외 친인척(_____) ⑦기타(_____)		
7) 가구특성	구분	해당 여부	
		예	아니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아 가구		
장애부모 가구			

**배문 2.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문 2-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배문 2-2. 귀하의 자녀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연령(만 나이)	_____세	_____세	_____세	_____세
출생연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성별 ① 남 ② 여				
이용 중인 교육보육시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고등학교 ⑤ 기타 ☞ 적어주세요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층면담 질문지(유아 부모)

- ※ 육아정책연구소의 2024년 기본과제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의 수행을 위한 심층면담 질문지입니다.
-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양육 일반 및 기관 이용

- 1) 귀하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 가정 내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경험(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사교육 기관 이용 여부

#### [기관 이용]

- 2) 귀하의 자녀는 언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녔습니까?
- 2-1) 그 시기에 기관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관 미이용]

- 2a) 귀하는 자녀를 언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실 계획입니까?
- 2a-1) 현재 가정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자녀양육 시 경험하시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3-1) 자녀 양육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 2. 아동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아동수당	근거법	「아동수당법」
	지급대상	만 8세 미만 아동(2022년 4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

구분		내용				
		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금액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p>1) 귀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p> <p>1-1) 정부가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2)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p> <p>2-1)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p>						
<p>3) 귀하는 아동수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3-1)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만 8세 미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3-2) 아동수당의 지급액(월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3-2-1)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3-2-2) 아동수당 지급액을 정기적으로 상향하는 조정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양육비용 상승 반영 등)</p>						
<p>4) 아동수당을 개편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응답해주시시오.</p> <p>4-1)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p>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지급연령 확대						
2) 월 지급액 상향						
3) 연령별 차등 지급						
4)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5) 자녀수별 차등 지급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6) 한부모 가구 여부별 차등 지급					
7)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적 용 등)					

5) 귀하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ex. 양육비 지출(식비, 교육비 등), 저축 등)

### 3. 부모급여: 제도 인지 및 의견

구분	내용		
부모 급여	근거법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지급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2024년 이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지급 방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혼합	
		가정보육	전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만0세: 월54만원(바우처)+월46만원(현금) 만1세: 월47.5만원(바우처)+월2.5만원(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전액(바우처) 차액 발생 시 해당 금액 현금 지급	

1) 귀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정부가 부모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부모급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부모급여가 자녀양육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귀하는 부모급여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가정양육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가정 양육 수당	근거법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지급 대상	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양육수당	24~85개월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48~85개월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원		
	36~85개월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 1)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정부가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양육수당 수급 경험자]**

- 2) 가정양육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이 가정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3)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1)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수당 수급 간에 변경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변경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2)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변경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4)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또는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정양육수당 미경험자]**

2a)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a-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a)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가정양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a-1)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급될 때 가정양육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5. 제도 전반 인식**

1) 각 제도가 양육 지원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1) 귀하가 양육지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각 제도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매우 도움이 됨
	1	2	3	4	5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1) 귀하가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양육지원 중 어떤 지원이 추가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1) 현금 지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 출산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3-2) 현금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면 추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배문 1. 귀하 및 귀하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응답을 적거나 번호를 선택하여 √ 표시해주세요.)

1) 연령	_____세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4년제 대학 졸 ④ 대학원 졸 이상		
4)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5) 고용형태	5-1) ① 취업 중                    ② 취업 중(육아휴직 중)                    ③ 미취업 (☞ 6)로 이동)		
	5-2)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자(고용주) ④ 1인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 ③, ④, ⑤ 응답자는 6)로 이동)		
	5-3)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5-4)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 _____명(본인 포함)		
	(동거 중인 가족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그 외 친인척(_____) ⑦기타(_____)		
7) 가구특성	구분	해당 여부	
		예	아니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아 가구		
장애부모 가구			

**배문 2.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문 2-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배문 2-2. 귀하의 자녀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연령(만 나이)	_____세	_____세	_____세	_____세
출생연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성별 ① 남 ② 여				
이용 중인 교육보육시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고등학교 ⑤ 기타 ☞ 적어주세요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층면담 질문지(초등자녀 부모)

※ 육아정책연구소의 2024년 기본과제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의 수행을 위한 심층면담 질문지입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양육 일반 및 기관 이용

1) 귀하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 가정 내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자녀는 학교 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늘봄학교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경험(아이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 사교육 기관 이용 여부

2) 자녀양육 시 경험하시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1) 자녀가 영유아 시기일 때와 비교하여 자녀양육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2) 자녀 양육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 2. 아동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아동수당	근거법	「아동수당법」
	지급대상	만 8세 미만 아동(2022년 4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급액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1) 귀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

습니까?

1-1) 정부가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의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1) 받은 적이 있다면,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2-2)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3) 귀하는 아동수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만 8세 미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2) 아동수당의 지급액(월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1)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2-2) 아동수당 지급액을 정기적으로 상향하는 조정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양육비용 상승 반영 등)

4) 아동수당을 개편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응답해주시시오.

4-1)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지급연령 확대					
2) 월 지급액 상향					
3) 연령별 차등 지급					
4)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5) 자녀수별 차등 지급					
6) 한부모 가구 여부별 차등 지급					
7)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적용 등)					

5) 귀하의 자녀가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아동수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ex. 양육비 지출(식비, 교육비 등), 저축 등)

5-1)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3. 부모급여: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부모 급여	근거법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지급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2024년 이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지급 방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혼합		
		가정보육	전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만0세: 월54만원(바우처)+월46만원(현금) 만1세: 월47.5만원(바우처)+월2.5만원(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전액(바우처) 차액 발생 시 해당 금액 현금 지급		
1) 귀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정부가 부모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부모급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부모급여가 자녀양육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부모급여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4. 가정양육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b>				
구분		내용		
가정 양육 수당	근거법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지급 대상	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양육수당	24~85개월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구분		내용
		48~85개월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원 36~85개월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p>1)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p> <p>1-1) 정부가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b>[가정양육수당 수급 경험자]</b></p> <p>2) 언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셨습니까?</p> <p>2-1) 당시 가정양육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2-2) 가정양육수당이 가정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p> <p>3)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p> <p>3-1)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수당 수급 간에 변경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변경 과정은 어떠했습니까?</p> <p>3-2)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변경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p> <p>4)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4-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5)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p>		
<p><b>[가정양육수당 미경험자]</b></p> <p>2a)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2a-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3a)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액이 증가했다면 가정양육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3a-1)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었을 때 가정양육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p>		
<p><b>5. 제도 전반 인식</b></p>		

## 1) 각 제도가 양육 지원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 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1) 귀하가 양육지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각 제도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 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구분	전혀 중요하 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1) 귀하가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3) 양육지원 중 어떤 지원이 추가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1) 현금 지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 출산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3-2) 현금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면 추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배문 1. 귀하 및 귀하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응답을 적거나 번호를 선택하여 √ 표시해주세요.)

1) 연령	_____세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4년제 대학 졸 ④ 대학원 졸 이상		
4)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5) 고용형태	5-1) ① 취업 중                    ② 취업 중(육아휴직 중)                    ③ 미취업 (☞ 6)로 이동)		
	5-2)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자(고용주) ④ 1인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 ③, ④, ⑤ 응답자는 6)로 이동)		
	5-3)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5-4)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 _____명(본인 포함)		
	(동거 중인 가족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그 외 친인척(_____) ⑦기타(_____)		
7) 가구특성	구분	해당 여부	
		예	아니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아 가구		
장애부모 가구			

**배문 2.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문 2-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배문 2-2. 귀하의 자녀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연령(만 나이)	_____세	_____세	_____세	_____세
출생연월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 _____년 _____월
성별 ① 남 ② 여				
이용 중인 교육보육시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고등학교 ⑤ 기타 ☞ 적어주세요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층면담 질문지(중등자녀 부모)

- ※ 육아정책연구소의 2024년 기본과제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의 수행을 위한 심층면담 질문지입니다.
-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양육 일반 및 기관 이용

- 1) 귀하의 자녀는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계신 기관은 무엇입니까?
- 2)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 3) 자녀가 영유아 및 초등 시기일 때와 비교하여 자녀양육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2. 아동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아동수당	근거법	「아동수당법」
	지급대상	만 8세 미만 아동(2022년 4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급액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1) 귀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1-1) 정부가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귀하는 아동수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1)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만 8세 미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2) 아동수당의 지급액(월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1)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2-2) 아동수당 지급액을 정기적으로 상향하는 조정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양육비용 상승 반영 등)

4) 아동수당을 개편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응답해주시시오.

4-1)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지급연령 확대					
2) 월 지급액 상향					
3) 연령별 차등 지급					
4)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5) 자녀수별 차등 지급					
6) 한부모 가구 여부별 차등 지급					
7)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적용 등)					

5) 귀하의 자녀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ex. 양육비 지출(식비, 교육비 등), 저축 등)

### 3. 부모급여: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부모급여	근거법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지급대상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2024년 이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지급방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혼합

구분		내용	
	가정보육	전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만0세: 월54만원(바우처)+월46만원(현금) 만1세: 월47.5만원(바우처)+월2.5만원(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전액(바우처) 차액 발생 시 해당 금액 현금 지급	

1) 귀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정부가 부모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부모급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부모급여가 자녀양육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부모급여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가정양육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가정양육수당	근거법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지급대상	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양육수당	24~85개월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48~85개월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원 36~85개월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1)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정부가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자녀양육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제도 전반 인식**

1) 각 제도가 양육 지원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1) 귀하가 양육지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각 제도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1) 귀하가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양육지원 중 어떤 지원이 추가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문 1. 귀하 및 귀하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응답을 적거나 번호를 선택하여 √ 표시해주세요.)

1) 연령	_____세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4년제 대학 졸 ④ 대학원 졸 이상		
4)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5) 고용형태	5-1) ① 취업 중                    ② 취업 중(육아휴직 중)                    ③ 미취업 (☞ 6)로 이동)		
	5-2)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자(고용주) ④ 1인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 ③, ④, ⑤ 응답자는 6)로 이동)		
	5-3)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5-4)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 _____명(본인 포함) (동거 중인 가족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그 외 친인척(_____) ⑦기타(_____)		
7) 가구특성	구분	해당 여부	
		예	아니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아 가구		
장애부모 가구			

**배문 2.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문 2-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배문 2-2. 귀하의 자녀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연령(만 나이)	_____세	_____세	_____세	_____세
출생연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성별 ① 남 ② 여				
이용 중인 교육보육시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고등학교 ⑤ 기타 ☞ 적어주세요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층면담 질문지(저소득 영유아 부모)

- ※ 육아정책연구소의 2024년 기본과제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의 수행을 위한 심층면담 질문지입니다.
-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양육 일반 및 기관 이용

- 1) 귀하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 가정 내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경험(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사교육 기관 이용 여부

#### [기관 이용]

- 2) 귀하의 자녀는 언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녔습니까?  
 2-1) 그 시기에 기관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관 미이용]

- 2a) 귀하는 자녀를 언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실 계획입니까?  
 2a-1) 현재 가정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자녀양육 시 경험하시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1) 자녀 양육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 ※ 다자녀 영유아 부모 대상 추가 질문  
 - 둘째 출산 이후 이전보다 더 느끼시는 자녀양육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2. 아동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아동수당	근거법	「아동수당법」
	지급	만 8세 미만 아동(2022년 4월부터)

구분		내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급액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1) 귀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정부가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2-1)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3) 귀하는 아동수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만 8세 미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2) 아동수당의 지급액(월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1)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2-2) 아동수당 지급액을 정기적으로 상향하는 조정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양육비용 상승 반영 등)

4) 아동수당을 개편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응답해주시오.  
4-1)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지급연령 확대					
2) 월 지급액 상향					
3) 연령별 차등 지급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4)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5) 자녀수별 차등 지급					
6) 한부모 가구 여부별 차등 지급					
7)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적용 등)					

5) 귀하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ex. 양육비 지출(식비, 교육비 등), 저축 등)

### 3. 부모급여: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부모 급여	근거법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지급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2024년 이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지급 방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혼합	
		가정보육	전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만0세: 월54만원(바우처)+월46만원(현금) 만1세: 월47.5만원(바우처)+월2.5만원(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전액(바우처) 차액 발생 시 해당 금액 현금 지급		

1) 귀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부모급여 0, 1세 지급액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급방식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계좌이체) 혼합 지급 방식)

1-2) 정부가 부모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부모급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1) 부모급여가 자녀양육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 3-1) 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 3-2) 부모급여를 받으시면서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달라지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 과정은 어떠했 습니까?
- 3-3) 부모급여 신청 및 변경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 4) 귀하는 부모급여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4-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5) 부모급여의 지급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 귀하는 부모급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또는 사용하고 계십니까?

**4. 가정양육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가정 양육 수당	근거법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지급 대상	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양육수당	24~85개월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48~85개월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원 36~85개월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 1)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1-1) 정부가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양육수당 수급 경험자]**

2) 가정양육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이 가정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3)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1)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수당 수급 간에 변경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변경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2)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변경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4)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또는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정양육수당 미경험자]**

2a)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a-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a)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가정양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a-1)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급될 때 가정양육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5. 제도 전반 인식**

1) 각 제도가 양육 지원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1) 귀하가 양육지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각 제도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매우 도움이 됨
	1	2	3	4	5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1) 귀하가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양육지원 중 어떤 지원이 추가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1) 현금 지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 출산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3-2) 현금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면 추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배문 1. 귀하 및 귀하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응답을 적거나 번호를 선택하여 √ 표시해주세요.)

1) 연령	_____세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4년제 대학 졸 ④ 대학원 졸 이상		
4)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5) 고용형태	5-1) ① 취업 중            ② 취업 중(육아휴직 중)            ③ 미취업 (☞ 6)로 이동)		
	5-2)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자(고용주) ④ 1인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 ③, ④, ⑤ 응답자는 6)로 이동)		
	5-3)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5-4)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 _____명(본인 포함)		
	(동거 중인 가족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그 외 친인척(_____) ⑦기타(_____)		
7) 가구특성	구분	해당 여부	
		예	아니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아 가구		
장애부모 가구			

**배문 2.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문 2-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배문 2-2. 귀하의 자녀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주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연령(만 나이)	_____세	_____세	_____세	_____세
출생연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성별 ① 남 ② 여				
이용 중인 교육보육시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고등학교 ⑤ 기타 ☞ 적어주세요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심층면담 질문지(저소득 초등자녀 부모)

- ※ 육아정책연구소의 2024년 기본과제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의 수행을 위한 심층면담 질문지입니다.
-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양육 일반 및 기관 이용

- 1) 귀하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 가정 내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자녀는 학교 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늘봄학교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경험(아이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 사교육 기관 이용 여부
- 2) 자녀양육 시 경험하시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1) 자녀가 영유아 시기일 때와 비교하여 자녀양육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2) 자녀 양육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 ※ 다자녀 초등 부모 대상 추가 질문  
 - 둘째 출산 이후 이전보다 더 느끼시는 자녀양육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2. 아동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아동수당	근거법	「아동수당법」
	지급대상	만 8세 미만 아동(2022년 4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급액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p>1) 귀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p> <p>1-1) 정부가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2) 귀하의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p> <p>2-1) 받은 적이 있다면,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p> <p>2-2)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p>												
<p>3) 귀하는 아동수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3-1)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만 8세 미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3-2) 아동수당의 지급액(월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3-2-1)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3-2-2) 아동수당 지급액을 정기적으로 상향하는 조정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양육비용 상승 반영 등)</p>												
<p>4) 아동수당을 개편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응답해주시시오.</p> <p>4-1)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p>												
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혀 동의하지 않음</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우 동의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able>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지급연령 확대												
2) 월 지급액 상향												
3) 연령별 차등 지급												
4)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5) 자녀수별 차등 지급												
6) 한부모 가구 여부별 차등 지급												
7) 지급대상 적용 범위 확대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적용 등)												
<p>5) 귀하의 자녀가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아동수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ex. 양육비 지출(식비, 교육비 등), 저축 등)</p>												

5-1) (받고 있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자녀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 원하십니까?

**3. 부모급여: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부모 급여	근거법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지급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2024년 이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지급 방식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혼합	
		가정보육	전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만0세: 월54만원(바우처)+월46만원(현금) 만1세: 월47.5만원(바우처)+월2.5만원(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 용		정부지원금 전액(바우처) 차액 발생 시 해당 금액 현금 지급	

1) 귀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  
 습니까?

1-1) 정부가 부모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부모급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부모급여가 자녀양육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부모급여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가정양육수당: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구분		내용
가정 양육 수당	근거법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지급 대상	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는 아동

구분	내용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액	양육수당	24~85개월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원
		36~47개월 월 12.9만원 48~85개월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원 36~85개월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1)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1) 정부가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양육수당 수급 경험자]**

2) 언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셨습니까?

2-1) 당시 가정양육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가정양육수당이 가정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3)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1)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수당 수급 간에 변경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변경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2)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변경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4)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가정양육수당 미경험자]**

2a) 귀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a-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a)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액이 증가했다면 가정양육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a-1)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었을 때 가정양육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5. 제도 전반 인식**

1) 각 제도가 양육 지원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1) 귀하가 양육지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각 제도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1) 아동수당					
2) 부모급여					
3) 가정양육수당					
4) 첫만남이용권					
5) 영유아 교육보육료 지원					
6)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2	3	4	5
7) 자녀세액공제					
8) 자녀장려금					
9)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10) 육아휴직급여					
11) 출산전후휴가 급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1) 귀하가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양육지원 중 어떤 지원이 추가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1) 현금 지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 출산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3-2) 현금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면 추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배문 1. 귀하 및 귀하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응답을 적거나 번호를 선택하여 √ 표시해주세요.)

1) 연령	_____세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 ③ 4년제 대학 졸 ④ 대학원 졸 이상		
4)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5) 고용형태	5-1) ① 취업 중                    ② 취업 중(육아휴직 중)                    ③ 미취업 (☞ 6)로 이동)		
	5-2)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자(고용주) ④ 1인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 ③, ④, ⑤ 응답자는 6)로 이동)		
	5-3)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5-4)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 _____명(본인 포함)		
	(동거 중인 가족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그 외 친인척(_____)		
	⑦기타(_____)		
7) 가구특성	<b>구분</b>	<b>해당 여부</b>	
		<b>예</b>	<b>아니오</b>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아 가구		
장애부모 가구			

**배문 2.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문 2-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배문 2-2. 귀하의 자녀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주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연령(만 나이)	_____세	_____세	_____세	_____세
출생연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성별 ① 남 ② 여				
이용 중인 교육보육시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고등학교 ⑤ 기타 ☞ 적어주세요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5. OECD 주요국 자녀장려세제 지급액 및 지급요건

〈부록 표 5-1〉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대상 및 요건

국가	제도명	지급액	지급요건										
독일	자녀세액공제 (Kinderfreibetrag)	- 부모 각각 3,192€, 총 6,384€(2024년 기준) - 한부모의 경우 추가 자녀 당 240유로씩 세금감면액 추가	-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제도 적용(일정 소득수준 이상일 경우 자녀세액공제 적용) - 세무서(Finanzamt)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자동 적용 - 자녀의 독립적 수입 반영										
	돌봄·양육·교육 공제액 (Freibetrag für BEA)	- 부모 각각 1,464€, 총 2,928€(2024년 기준)	-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적용										
프랑스	자녀 세액공제 (crédit d'impôt)	- 양육비의 50% (식비 제외, 기타 가족 수당 제외 후) (단, 부모가 따로 아동을 공동양육하는 경우, 절반) - 아동 당 최대 양육비 3,500유로 (단, 부모가 따로 아동을 공동 양육하는 경우, 최대 비용은 절반)	- 프랑스의 주민등록자로 세금의 대상이어야 함. - 아동은 훈련을 제외하고 고용계약 등 소득 활동을 해서는 안됨. - 아동은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5세까지 부양가족으로 간주함.										
	학교 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une réduction d'impôt sur le revenu)	- 중등학교(Collège) = 61유로 - 고등학교(Lycée) = 153 유로 - 대학 = 183 유로											
오스트리아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 (Kinderabsetzbetrag)	- 각 아동 당 월 67.8유로의 세액이 공제됨	- 조세 대상자 - 가족수당 대상자 - 일인소득자 가구인 경우, 적어도 한 명의 부양 아동이 있는 가정 내 한 명만 세금을 내는 소득자여야 함. 단, 역년 내 적어도 6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한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는 세금대상자이며, 역년 6개월 이상 배우자 및 파트너와 함께 살지 않고, 6개월 이상 가족수당을 받았어야 함.										
	일인소득자 및 한부모가정 세액공제 (Alleinerzieherabsetzbetrag)	<table border="1"> <thead> <tr> <th>아동수</th> <th>인상값</th> <th>세액공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572</td> </tr> <tr> <td>2</td> <td>(둘째) 202</td> <td>774</td> </tr> <tr> <td>3+</td> <td>(셋째+) 255</td> <td>1,029</td> </tr> </tbody> </table> 단위: 유로		아동수	인상값	세액공제	1		572	2	(둘째) 202	774	3+
아동수	인상값	세액공제											
1		572											
2	(둘째) 202	774											
3+	(셋째+) 255	1,029											
벨기에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자녀 수에 따른 세금면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아동수</th> <th>2023년 임금, 2024년 세금</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850</td> </tr> </tbody> </table>	아동수	2023년 임금, 2024년 세금	1	1,850	- 자취를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 - 이때 자녀는 전문적 소득활동이 없어야 하며,						
아동수	2023년 임금, 2024년 세금												
1	1,850												

국가	제도명	지급액	지급요건								
		<table border="1"> <tr> <td>2</td> <td>4,760</td> </tr> <tr> <td>3</td> <td>10,660</td> </tr> <tr> <td>4</td> <td>17,250</td> </tr> <tr> <td>5+ (추가되는 4세 이상 아동 당 부가액)</td> <td>17,250 (6,580)</td> </tr> </table> <p>단위: 유로; 2024년 세금연 (tax year) 기준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 세액공제로 전 (2024년 세금연 기준 아동 당 최대 530 유로)</p>	2	4,760	3	10,660	4	17,250	5+ (추가되는 4세 이상 아동 당 부가액)	17,250 (6,580)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활동을 할 경우 법으로 지정한 임금 수준을 넘어서면 안됨.
2	4,760										
3	10,660										
4	17,250										
5+ (추가되는 4세 이상 아동 당 부가액)	17,250 (6,580)										
	보육료 세금감면 (déduire de l'impôt à payer pour la garde de vos enfants; belastingvermindering voor de kosten voor kinderopvang; Betreuungskosten für Kinder steuerlich abzusetzen)	- 최대 일일16.4유로 (45%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취를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li> <li>- 부모가 전문소득이 있음 (전문소득: 임금, 연금, 실어급여 등)</li> <li>- 승인된 보육시설</li> <li>- 증거제출</li> </ul>								
폴란드	가족친화감면 혹은 아동감면 (Ulga prorodzinna 혹은Ulga na dzieck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둘째 아동에 대하여 감면은 각각 연 PLN 1112.04이며, 셋째 아동의 경우 PLN 2000.04, 넷째 이상의 아동은 각 PLN 2700</li> <li>- 아동이 한 명인 경우,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총 가구 소득이 PLN 112,000 초과이거나 한부모 가정의 총 가구 소득이 PLN 56,000초과일 경우, 세금감면의 대상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가 있음</li> <li>-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 및 법적 보호자 (임시보호 포함)</li> </ul>								
	4+가족면세 (Ulga dla rodzin 4+)	- 최대 PLN 85,528가능. (이때 소득은 모성수당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가 있음</li> <li>-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 및 법적 보호자 (임시보호 포함)</li> <li>- 아동이 소득세가 없어야 함</li> </ul>								
헝가리	가족세및기여금 수당 (Családi adó- és járulékkedvezmény)	<p>아동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금액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가족(아동)이 한 명인 경우 각 아동에 대하여 월 HUF 10,000 감면 (세금감면대상자가 월 받는 감면액은 HUF 66,670)</li> <li>- 두 명인 경우, 각 아동에 대하여 월 HUF 20,000 감면 (세금감면대상자가 월 받는 감면액은 HUF 133,330)</li> <li>- 세 명 이상인 경우, 각 아동에 대하여 월 HUF 33,000 감면 (세금감면대상자가 월 받는 감면액은 HUF 22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임시보호가정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수당(családi pótlék) 대상자인 경우</li> <li>- 임신한 여성과 그와 함께 사는 배우자</li> </ul>								

국가	제도명	지급액	지급요건
이스라엘	어린 아동이 있는 일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크레딧 (מדריך הטבות במס להורים עם ילדים קטני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출생부터 5세까지:</li> <li>- 아동 출생 해 1.5크레딧포인트 ( 129)128) זיכוי קודות 1 + 추가 포인트 = 2.5 크레딧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음.</li> <li>- 1-2세: 2.5 크레딧 포인트 + 2 추가 포인트 = 4.5 크레딧 포인트</li> <li>- 2-3세: 2.5 크레딧 포인트 + 1 추가 포인트 = 3.5 크레딧 포인트</li> <li>- 3-5세: 2.5 크레딧 포인트</li> <li>- 6-18세 아동:</li> <li>- 결혼한 여성 및 부모가 따로 살고 있으나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 크레딧 포인트</li> <li>- 결혼한 남성 및 부모가 따로 살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1 크레딧 포인트</li> <li>- 18세가 된 성인 아동:</li> <li>- 결혼한 여성 및 부모가 따로 살고 있으나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0.5 크레딧 포인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아동이 있음</li> <li>- 부모가 일을 하고 있음</li> <li>- 부모 혹은 둘 중 하나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음</li> </ul>

주: 아동가구 세제 미지원 국가 -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자료: 독일: Familien portal,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steuerentlastungen/was-ist-der-entlastungsbetrag-fuer-alleinerziehende-und-wie-werden-kinderfreibetraege-bei-nicht-verheirateten-eltern-aufgeteilt--125202> (2024. 7. 1 인출).

프랑스: 1)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deductions-liees-la-famille#:~:text=Le%20montant%20de%20la%20r%C3%A9duction,une%20formation%20d%27enseignement%20sup%C3%A9rieur> 2)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deductions-liees-la-famille#:~:text=Le%20montant%20de%20la%20r%C3%A9duction,une%20formation%20d%27enseignement%20sup%C3%A9rieur> (2024.7.15 인출)

오스트리아: 1) <https://www.bundeskanzleramt.gv.at/en/agenda/family/family-benefits/family-allowance-and-tax-credit-for-children.html> 2) <https://www.bmf.gv.at/themen/steuern/arbeitnehmerinnenveranlagung/steuertarif-steuerabsetzbetraege/alleinverdiener-alleinerzieher-absetzbetrag.html> (2024.7.15 인출)

벨기에: 1) Kinderen | FOD Financiën (belgium.be) 2) Voorwaarden | FOD Financiën (belgium.be) (2024.7.15 인출)

폴란드: Chłoań-Domińczak, A. (2022), Poland: New tax benefit solutions improve incomes of families, E SPN Flash Report 2022/53,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ESPN),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정부 홈페이지 1) Ulga dla rodzin 4+ (podatki.gov.pl) 2) Ulga prorodzinna - ulga na dzieci - PITy roczne 2023/2024 - PIT.pl - PIT.pl (2024.7.15 인출)

헝가리: <https://nav.gov.hu/ado/szja/szja-kedvezmenyek-2023/csaladi-kedvezmeny> (2024.7.15 인출)

뉴질랜드: 1) Guidance material for Working for Families consultation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govt.nz) 2) FamilyBoost overview (ird.govt.nz) (2024.7.15 인출)

이스라엘: <https://www.gov.il/en/pages/tax-benefits-for-parents-with-small-children> (2024.7.15 인출)

128) 각 대상자 별 포인트는 정부 홈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다. Tax Benefits Guide for Parents with Young Children Israel Tax Authority (www.gov.il)

129) 2024년 기준, 각 크레딧포인트는 연 2,904NIS

## 부록 6. 부표

〈부표 6-1〉 현금급여 제도 개편 시 정책 환경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구분	개편시 고려해야 하는 주된 이유	(수)
<b>인구학적 변화</b>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	아동 수 감소로 인해 보편적 현금급여 수준을 현재보다 증액 가능함	(33)
	정책의 주요 목적이 저출생 완화면, 그 취지에 따라 정책의 성격 및 내용도 바뀔. 예를 들어,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저출생 완화는 다른 목표로, 만약 저출생 완화가 주요 목적이라면 아동수당보다는 부모급여 및 보육시설에 더 힘을 쏟아야 함.	
	저출생 현상이 지속될 경우 출산 제고 정책이 필요하고 출산율 변화를 보아 가면서 출산 제고 정책의 유인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를 덜 불평등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 사회는 당분간 그러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여전히 경쟁 중심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될 것이므로 아동수당과 같은 권리 형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지급대상 아동의 수가 축소됨으로써, 아동 1인당 지급액 상향조정 가능	
<b>사회경제적 요인</b>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일자리 기회 감소로 부모의 소득 계층화가 향후에도 심각해 질 수 있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보편적 현금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임.	(14)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음. 모두에게 균등하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소득과 자산에 근거하여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음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지원 강화 필요함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의 부담이 다르므로 고려할 필요 있음	
<b>유관 양육지원정책 및 제도의 변화</b>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의 확대 및 아이돌봄 및 보육서비스 확대에 따라 현금급여 정책의수준을 변화할 필요가 있음	(15)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육아휴직 적용 범위 높아짐에 따라 부모급여 점진적 폐지함	
	육아휴직 및 시간지원제도 변화에 맞추어 현금급여제도 변화 필요	
	육아휴직의 확대 -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육아휴직과 부모급여의 관계성 고려함	
	부모급여 및 보육서비스 지원과의 중복지원 타당성에 대한 고려 필요함	

구분	개편시 고려해야 하는 주된 이유	(수)
제도간 통폐합 고려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함	(12)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현금지원과 지방정부에서 보충적 또는 추가로 지원되는 현금지원 제도가 동일 대상에게 중복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조세체계 내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은 편으로, 국가가 공적이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현금지원, 조세혜택을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아동수당과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가구별로 선택하여 유리한 제도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b>국가재정 및 재원의 변화</b>		
비효율적 재정 관리	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재설계와 교육분권 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 아동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과대해지고 있음	(1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려. 현금지원제도는 수당방식으로서의 도입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조세 방식으로 재원이 충당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조세 수입에 대한 고려 필요함	
	현재 아동 관련 예산 및 초중등 교육관련 예산의 배분 구조 변경 필요	
	지나치게 현금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아동과 관련한 현금성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아동수당은 지방정부와 분담하고 있음. 전체적인 복지지출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은 그 재정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함	
재원 부족	고령화로 고령 인구에 대한 서비스와 현금 지원 요구 또한 커질 것임.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기금 재원이 있는 반면, 아동 인구에 대한 재원은 없음. 부모보험과 같은 별도 기금을 확보할 필요 있음.	(12)
	아동수당 재원 확보	
	아동양육과 관련된 재원은 재원 편성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음. 아동수당은 법률적으로 불가연동을 명시할 필요 있음. 불가인상에 의해 실질급여액이 자동 삭감됨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동가족지출 재정 확대에 대한 의지. 통합기금 설치 등의 재원 확보 방안 없이는 한계적일 것임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1차)” 결과임.

## 〈부표 6-2〉 현금급여 개편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

구분	현금급여 개편 방향의 고려사항
<b>아동수당 중심으로 아동 대상 현금급여 개편</b>	
급여액 및 대상 연령	대상, 급여기간 측면에서 아동수당이 현금급여의 주요 급여라고 생각함. 이에 따라 타 현금급여를 아동수당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 목표에 따라 대상, 급여체계, 급여수준 등 체계적 설계 필요함
노동시장 및 성별 규범	한국의 노동시장 및 성별 규범을 고려한 아동수당 확대가 필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대원칙으로 하되, 수당액의 급격한 증가는 아동 수가 많은 가구의 주 양육자를 가정 내 양육자로 고착화시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확대 필요함
보편성 및 단일화	산재되어 있는 급여체계 단일화로 효율성 제고 필요함 아동수당의 경우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는 현금지원으로, 대상과 형태 및 지원 목적이 유사하지만 일부에게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등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이해도 및 인지도	아동수당이 중심이 되고 이를 중심으로 가급적 통합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수급자들의 이해도나 행정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함. 다양한 집단에 대한 현금급여를 설계하기보다 아동수당 중심으로 현금급여를 일원화하여 제도를 간소화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함
아동권리 보장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아동수당의 현실화(상향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함(세수 확보, 연령 상향 실현 시기 등)
양육 부담	아동수당은 보편적 현금급여로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역할이 크다. 이때 각 가정에서 적정 액수를 추계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임 중앙정부가 비용을 전담하도록 제도 개편을 해야 함 아동 연령대별 양육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측.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현금, 서비스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함
유관 제도	가정양육수당이 폐지되면 남은 현금급여는 부모급여인데, 부모급여도 향후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함께 점차 육아휴직제도에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과의 조정 문제
기타	오남용 문제 대비 정책목표 분명히 설정
<b>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축소 및 폐지</b>	
급여액 및 대상 연령	가정양육수당의 지급기간이 김. 3세 이상의 경우 장애아동이나 특수육구를 가진 아동에 국한하고 유아학교 등의 서비스 이용 확대 필요함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와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함. 0~2세는 가정양육수당을 축소하지 않고, 만3세부터 축소하여 보육시설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 아동수당은 급여기간, 급여수준의 확대가 필요하고 현재 24개월 이상에게만 적용

구분	현금급여 개편 방향의 고려사항
	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유아의 기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폐지가 필요함
국민 이해도	<p>가정양육수당 축소 및 폐지시 국민에 대한 정책시그널을 명확히 할 필요 단순히 수당액의 감소만으로 해당 제도 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을 통해 아동돌봄 노동을 인정 받고 돌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p> <p>가정양육수당을 누가(어느 지역 및 계층)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폐지 및 예외 사유의 근거 마련 필요함</p>
중복 및 모호성	아동수당은 확대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가정양육수당은 중복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가정양육수당은 특수한 필요를 가진 아동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반아동가정에게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제공함
기타	가정양육수당은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육아휴직급여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부모급여를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연계 지급**

<p>자원대상 연령 및 급여수준</p>	<p>부모급여를 존치한다면, 이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으로 지급함</p> <p>현재는 부모급여가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대응 측면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들의 급여를 추가하는 측면의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처럼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두 제도의 연계가 필요함</p> <p>육아휴직을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출산후 1-2년 동안 소요되는 양육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축소된 가구 소득의 보전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임</p> <p>현재의 부모 급여는 폐지하고, 부모급여 도입 논의 때 제기되었던 것 중 하나인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p> <p>육아휴직급여와 연계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고 있고 불안정고용이나 비정형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야함. 현 상황에서는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 소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p>
<p>급여액</p>	<p>부모급여가 현재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메꿔주는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육아휴직급여와 연계 지급하여 적정 금액내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아니면, 아예 아동에게 투자되는 비용과 부모의 휴직으로 인한 급여 보완을 분리한 제도 설계가 필요)</p> <p>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제도를 보충하는 역할로 두 급여의 합계 금액에 대한 상한 마련 등 모색함</p> <p>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연계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경우 부모급여를 안 받거나 감액된 금액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육아휴직 시에 부모들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모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p>

취약가구 아동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보다 대상별 아동수당 추가급여 확대

구분	현금급여 개편 방향의 고려사항
사전검토 사항	<p>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정책들이 일정부분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수당들과 취약가구 대상별 아동수당의 관계를 정립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p> <p>자녀장려세제, 자녀 및 자녀양육, 교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최근 확대됐는데, 현금급여 제도 개편은 세제 개편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재 세제지원이 어느 계층에게 더 혜택을 주고 있는지, 계층별 혜택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음</p>
세제지원의 한계	<p>일반적으로 세제지원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상류층에 유리한 제도임. 즉, 취약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아 세제혜택(특히, 세액공제)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또한 세금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취약가구 아동의 추가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급여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함</p> <p>세제지원은 안정적인 취업을 한 가정을 위한 것이므로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제적인 혜택보다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아동가구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됨</p> <p>세제지원 방식은 소득이 높고 세금을 많이 낸 대상에게 유리한 방식의 정책수단임. 따라서 수당 추가급여 방식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임. 다만 이러한 조정을 자녀장려세까지 확대할 경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p>
형평성 제고	<p>빈곤가정의 비용부담을 추가급여를 통해 해소하는 것은 아동에게나 부모에게나 평등권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필요함</p> <p>취약가구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로 아동 성장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함</p> <p>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수당을 지원해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취약가구 아동들에 대한 추가수당의 지원이 필요함</p>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 〈부표 6-3〉 아동수당 확대 시 유관제도의 개편 필요 사항 및 이유

구분	이유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에 아동수당 추가 지급으로 대체
	아동수당과 통합하여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에서 추가급여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 마련 필요함
	폐지 후 아동수금 지급액 및 지급연령 확대함
	점진적으로 추가 아동수당분 만큼 장려금 축소함
	아동수당 액수가 월 30정도로 인상되면, 자녀장려금 연 100보다 크게 많아지므로, 폐지해도 무방함
	일회성 현금 지원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현금 중복 지원임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만큼 보육료 지원이 감소 필요함

구분	이유
	영유아 대상 보육료는 아동수당의 확대에 따라서 다소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보육서비스 부모 부담 강화해야 함 부모급여를 통해 부모가 돌봄 방식을 선택하고 보육료를 내야하면 부모가 부담하도록 개선 필요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만큼 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감소 필요함 아동수당이 바우처로 지급될 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계함 아이돌봄서비스는 필요한 가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음. 개별 방식의 가정방문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직장 여성을 우선으로 서비스 제공 영유아보육서비스와 연계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와 중복시 금액에 대해 슬라이딩 스케일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조정을 통해 정책혜택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이중 수혜 발생. 급여액 조정 필요
근로시간단축제도 급여	근로시간단축제도는 돌봄의 시간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사료됨.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의 보편적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급여 상향, 선제공, 실질적 이용가능성 제고 등 필요함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로 통합함 첫만남 이용권은 보편급여이며 일시급여이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일회성 급여이므로 아동수당에 통합함
지자체 출산지원금	중앙정부의 현금급여 확대 전제로 지자체 출산지원금 폐지 또는 축소 필요함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과거 도입된 제도들은 당연히 조정되어야 함. 단 중앙정부가 현금급여 책임을 전제로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 폐지를 유도함 현금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며, 지자체는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지역 간 풍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출산을 제고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인프라 지원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 있음.
기타1(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일원화 혹은 육아휴직급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 아동수당과 기능이 겹침. 0-1세에 집중되어 있어 조정 필요함
기타2(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으로 통합함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함
기타3(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과 유사성격의 제도임. 자녀장려금과 달리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게 유리한 제도로 역진성을 가짐. 따라서 아동수당의 확대와 더불어 폐지 필요함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 결과임.

〈부표 6-4〉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선택 이유

구분	자녀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의 선택 이유
아동수당 지급연령 이후로 공제 대상 연령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폐지	<p>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복 급여므로 아동수당의 확대는 자녀세액공제를 자동적으로 대체하여 포괄하는 것임</p> <p>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의 연령을 제외한다면 거의 비슷함. 다만, 환급 형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부담이 아주 적은 저소득층은 세액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아동수당과 차이점이 존재하여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는 경우 아동수당 대상아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연령과 지급액이 확대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함</p>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공제액 단계적 축소	<p>제도 중첩의 여지가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보다 더 폭넓게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아동수당 현금지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p> <p>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면서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지 않으면 이중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임</p> <p>아동수당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공제액을 축소할지 폐지할지가 달라짐. 아동수당 액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동수당이 늘어나는 만큼 공제액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됨</p> <p>아동수당 지급연령의 확대와 공제액 확대가 함께 이루어 지면 좋겠으나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임</p>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무관하게 자녀세액공제액 유지	<p>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이므로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사료됨</p> <p>아동수당 인상액만큼 세액 공제액을 축소할 때 전체 세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제액을 유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함</p> <p>아동수당은 보편적 지급인데 반해 자녀세액공제는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무관하게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p>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무관하게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p>아동수당은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자녀세액공제는 부모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보조이므로 아동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이 있는 경우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p>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함께 아동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제도 폐지	<p>아동수당 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세액공제도 같이 이루어질 경우 중복지원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혼, 무자녀 가구와의 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 있을 수 있음</p> <p>자녀세액공제제도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 유리한 역진적 제도일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지급액이 자녀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자녀세액공제 제도 폐지 고려함</p> <p>세액공제의 경우 대부분 중산층 이상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취약계층은 세금을 내지 못하므로), 일회성으로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지만 아동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문명하기 때문임</p>

구분	자녀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의 선택 이유
	세제를 통한 혜택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됨. 아동 양육으로 사용된 비용을 세제로 혜택을 줄 것이라면, 아동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통한 세제혜택이 중복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현금 및 세제 지원을 통합 개편하는 과정은,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수요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임. 과학적 근거를 갖고 지급연령 및 지급액 확대하는 방향이 확정될 경우 이와 함께 세제지원 개편도 고려되어야 함

자료: 본 연구의 “현금급여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2차)”결과임.

〈부표 6-5〉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현행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0	1,183	120	1,200	14.6	8,127
1	1,040	120	600	13.5	7,688
2	1,196	120	0	16.2	7,379
3	1,217	120	0	14.2	8,570
4	1,209	118	0	15.7	7,700
5	1,279	120	0	14.7	8,729
6	1,393	119	0	18.1	7,687
7	1,483	120	0	18.1	8,185
8	1,441	0	0	19.8	7,296
9	1,389	0	0	17.1	8,101
10	1,608	0	0	17.4	9,218
11	1,581	0	0	22.8	6,948
12	1,574	0	0	20.4	7,718
13	1,625	0	0	21.9	7,410
14	1,563	0	0	22.2	7,055
15	1,670	0	0	19.6	8,527
16	1,781	0	0	25.6	6,967
17	1,712	0	0	23.2	7,387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록 표 6-6〉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1인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0	1,183	138	1,200	14.5	8,161
1	1,040	138	600	13.5	7,729
2	1,196	138	0	16.2	7,403
3	1,217	138	0	14.2	8,600
4	1,209	136	0	15.6	7,754
5	1,279	138	0	14.6	8,787
6	1,393	137	0	17.9	7,778
7	1,483	138	0	17.9	8,275
8	1,441	138	0	19.1	7,529
9	1,389	138	0	16.7	8,333
10	1,608	138	0	17.0	9,464
11	1,581	138	0	21.9	7,211
12	1,574	137	0	19.7	7,984
13	1,625	138	0	21.2	7,658
14	1,563	138	0	21.4	7,319
15	1,670	138	0	19.1	8,763
16	1,781	138	0	24.7	7,202
17	1,712	138	0	22.5	7,607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7〉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2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0	1,183	240	1,200	14.2	8,312
1	1,040	240	600	13.2	7,888
2	1,196	240	0	15.8	7,569
3	1,217	240	0	13.9	8,770
4	1,209	236	0	15.2	7,932
5	1,279	240	0	14.2	8,979
6	1,393	238	0	17.5	7,964
7	1,483	240	0	17.5	8,460
8	1,441	240	0	18.6	7,736
9	1,389	240	0	16.3	8,535
10	1,608	240	0	16.6	9,672
11	1,581	240	0	21.3	7,418
12	1,574	238	0	19.2	8,192
13	1,625	240	0	20.7	7,849
14	1,563	240	0	20.8	7,517
15	1,670	240	0	18.7	8,940
16	1,781	240	0	24.1	7,378
17	1,712	239	0	22.0	7,769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 〈부표 6-8〉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3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0	1,183	360	1,200	13.9	8,491
1	1,040	360	600	12.9	8,075
2	1,196	360	0	15.4	7,765
3	1,217	360	0	13.6	8,971
4	1,209	354	0	14.8	8,142
5	1,279	360	0	13.9	9,207
6	1,393	357	0	17.0	8,183
7	1,483	360	0	17.1	8,678
8	1,441	360	0	18.1	7,980
9	1,389	360	0	15.8	8,774
10	1,608	360	0	16.2	9,916
11	1,581	360	0	20.6	7,662
12	1,574	357	0	18.7	8,436
13	1,625	360	0	20.1	8,074
14	1,563	360	0	20.2	7,751
15	1,670	360	0	18.3	9,149
16	1,781	360	0	23.5	7,587
17	1,712	359	0	21.5	7,959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9〉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4만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0	1,183	140	1,200	14.5	8,180
1	1,040	142	600	13.4	7,751
2	1,196	146	0	16.1	7,428
3	1,217	150	0	14.1	8,626
4	1,209	146	0	15.5	7,783
5	1,279	152	0	14.5	8,822
6	1,393	149	0	17.8	7,811
7	1,483	153	0	17.9	8,307
8	1,441	156	0	19.0	7,569
9	1,389	154	0	16.6	8,371
10	1,608	157	0	16.9	9,505
11	1,581	156	0	21.8	7,252
12	1,574	159	0	19.6	8,025
13	1,625	160	0	21.1	7,692
14	1,563	164	0	21.3	7,356
15	1,670	164	0	19.0	8,791
16	1,781	166	0	24.6	7,230
17	1,712	164	0	22.4	7,629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 〈부표 6-10〉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5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0	1,183	207	1,200	14.3	8,261
1	1,040	210	600	13.3	7,834
2	1,196	196	0	16.0	7,495
3	1,217	192	0	14.0	8,687
4	1,209	189	0	15.4	7,845
5	1,279	203	0	14.4	8,909
6	1,393	194	0	17.7	7,877
7	1,483	194	0	17.7	8,372
8	1,441	197	0	18.9	7,641
9	1,389	214	0	16.4	8,479
10	1,608	194	0	16.8	9,573
11	1,581	201	0	21.6	7,331
12	1,574	202	0	19.4	8,112
13	1,625	202	0	20.9	7,775
14	1,563	203	0	21.0	7,439
15	1,670	197	0	18.8	8,863
16	1,781	204	0	24.4	7,311
17	1,712	194	0	22.3	7,691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11〉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6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0	1,183	242	1,200	14.2	8,331
1	1,040	244	600	13.1	7,910
2	1,196	248	0	15.7	7,594
3	1,217	252	0	13.8	8,796
4	1,209	246	0	15.2	7,962
5	1,279	253	0	14.2	9,014
6	1,393	249	0	17.4	7,996
7	1,483	255	0	17.5	8,492
8	1,441	257	0	18.5	7,776
9	1,389	255	0	16.2	8,574
10	1,608	259	0	16.6	9,712
11	1,581	258	0	21.2	7,458
12	1,574	260	0	19.1	8,233
13	1,625	261	0	20.6	7,882
14	1,563	265	0	20.7	7,554
15	1,670	265	0	18.6	8,969
16	1,781	268	0	24.0	7,407
17	1,712	266	0	22.0	7,791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 〈부표 6-12〉 아동연령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7만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0	1,183	308	1,200	14.1	8,412
1	1,040	311	600	13.0	7,992
2	1,196	298	0	15.6	7,661
3	1,217	293	0	13.7	8,857
4	1,209	289	0	15.1	8,023
5	1,279	305	0	14.1	9,101
6	1,393	294	0	17.3	8,062
7	1,483	296	0	17.3	8,557
8	1,441	298	0	18.4	7,848
9	1,389	315	0	16.0	8,681
10	1,608	296	0	16.4	9,781
11	1,581	302	0	21.0	7,537
12	1,574	303	0	18.9	8,319
13	1,625	304	0	20.4	7,966
14	1,563	304	0	20.5	7,638
15	1,670	299	0	18.5	9,040
16	1,781	306	0	23.8	7,488
17	1,712	295	0	21.8	7,852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13〉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현행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중위50이하	1,192	37	56	26.7	4,464
중위50초과~ 7000만원 미만	1,503	55	97	23.1	6,509
7000만원이상	1,801	40	41	15.9	11,296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14〉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1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중위50이하	1,192	138	56	25.6	4,661
중위50초과~ 7000만원 미만	1,503	138	97	22.7	6,613
7000만원이상	1,801	138	41	15.7	11,472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15〉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2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중위50이하	1,192	240	56	24.5	4,862
중위50초과~ 7000만원 미만	1,503	240	97	22.3	6,746
7000만원이상	1,801	239	41	15.5	11,655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16〉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3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중위50이하	1,192	360	56	23.4	5,100
중위50초과~ 7000만원 미만	1,503	360	97	21.8	6,903
7000만원이상	1,801	359	41	15.2	11,873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17〉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4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중위50이하	1,192	158	56	25.4	4,700
중위50초과~ 7000만원 미만	1,503	147	97	22.7	6,624
7000만원이상	1,801	155	41	15.7	11,503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18〉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5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중위50이하	1,192	258	56	24.4	4,889
중위50초과~ 7000만원 미만	1,503	198	97	22.5	6,691
7000만원이상	1,801	138	41	15.7	11,471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19〉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6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중위50이하	1,192	259	56	24.3	4,901
중위50초과~7000 만원 미만	1,503	248	97	22.2	6,757
7000만원이상	1,801	256	41	15.4	11,687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20〉 소득계층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7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중위50이하	1,192	360	56	23.4	5,091
중위50초과~7000 만원 미만	1,503	300	97	22.0	6,824
7000만원이상	1,801	239	41	15.5	11,655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21〉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현행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한자녀	1,623	50	108	21.2	7,649
두자녀	1,487	40	43	19.7	7,552
세자녀	1,406	31	32	15.8	8,894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 〈부표 6-22〉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1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한자녀	1,623	138	108	21.0	7,735
두자녀	1,487	138	43	19.2	7,745
세자녀	1,406	138	32	15.2	9,218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 〈부표 6-23〉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2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한자녀	1,623	240	108	20.7	7,837
두자녀	1,487	240	43	18.7	7,948
세자녀	1,406	239	32	14.7	9,529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 〈부표 6-24〉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3안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한자녀	1,623	360	108	20.4	7,957
두자녀	1,487	360	43	18.2	8,189
세자녀	1,406	358	32	14.2	9,896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25〉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4인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한자녀	1,623	138	108	21.0	7,735
두자녀	1,487	156	43	19.1	7,781
세자녀	1,406	166	32	15.1	9,306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26〉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5인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한자녀	1,623	193	108	20.8	7,788
두자녀	1,487	196	43	18.9	7,856
세자녀	1,406	212	32	14.9	9,435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부표 6-27〉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6인

단위: %, 만원/년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한자녀	1,623	240	108	20.7	7,837
두자녀	1,487	258	43	18.6	7,985
세자녀	1,406	267	32	14.6	9,617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 〈부표 6-28〉 자녀수별 현금급여액과 경상소득: 7만

단위: %, 만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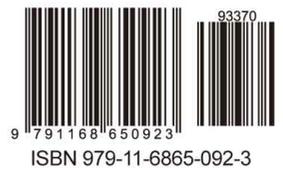
만 연령	양육비용(a)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비부담률 (a÷b)×100	경상소득(b)
한자녀	1,623	295	108	20.6	7,890
두자녀	1,487	297	43	18.4	8,059
세자녀	1,406	313	32	14.4	9,746

주: 양육비용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는 지출은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였으며 사교육비 공교육비 지출 대상 아동  
을 특정할 수 있는 지출은 개인단위의 지출을 활용하여 산출함. 양육비 부담률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균등화  
한 아동 양육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 부모급여와 현행기준의 아동수당 금액은 대상 아동 연령이 각각 만 7세  
미만과 만 1세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개편안과 비교를 위해 0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 개인당 연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자료: 15차 재정패널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SBN 979-11-6865-092-3